202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토보고

총괄
부처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202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토보고

| 총괄 |
| --- |
| 부처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 CONTENTS

## 총 괄


**Ⅰ. 개 관 ····· 3**

1. 편성 배경 ····· 3

2. 주요 내용 및 세부구성 ····· 15

**Ⅱ. 주요 검토사항 ····· 38**

1. 재정총량 및 재정건전성 ····· 38

2. 세입경정 ····· 48

3. 추경안의 재원 ····· 58

4. 예비비 ····· 65

**Ⅲ. 유형별 검토 ····· 72**

1. 개요 ····· 72

2. 고유가 부담 완화 ····· 73

3. 민생 안정 ····· 78

4.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86

# 부 처 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재정경제부


**Ⅰ. 개 관 ····· 97**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97
2. 세입경정 현황 ····· 101
3.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02

**Ⅱ. 사업별 검토 ····· 105**

**【총 괄】**

1. 세입경정: 세입경정의 적정성 검토 및 사후 점검 필요 등 ····· 10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지출증액> ····· 115**

2.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 국고채 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노력 강화 필요 ····· 115
3.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필요 ····· 119

## ❖ 기획예산처

**Ⅰ. 개 관 ····· 123**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2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26

**Ⅱ. 사업별 검토 ····· 128**

**【일반회계】**

**<세출증액> ····· 128**

1. 예비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상 등 고유가 대응 관련 재정소요의 목적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 ····· 128

## ❖ 국 세 청

**Ⅰ. 개 관 ····· 136**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36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38

**Ⅱ. 사업별 검토 ····· 140**

**【일반회계】**

**<세출증액> ····· 140**

1.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등 ····· 140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신규): 사업수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 제·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 ····· 148

## ❖ 조 달 청

**Ⅰ. 개 관 ····· 154**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54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56

**Ⅱ. 사업별 검토 ····· 159**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세출증액> ····· 159**

1.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신규):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59

# 교육위원회

## ❖ 교 육 부


**Ⅰ. 개 관 ····· 167**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6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70

**Ⅱ. 사업별 검토 ····· 173**

**【일반회계】**

**<세출증액> ····· 173**

1.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합리적인 지원기준 설정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지원대상(용량) 확정 필요 ····· 17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증액> ····· 177**

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신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177
3. 국립대학 시설확충: 태양광설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의 적절한 배분방안 검토 필요 ····· 18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 187**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18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91

**Ⅱ. 사업별 검토 ····· 194**

**【일반회계】**

**<세출증액> ····· 194**

1.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사업: 사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19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증액> ····· 200**

2.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신규): 초기 스케일업 지원 전 기술이전 관련 논의 필요 ····· 200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증액> ····· 203**

3.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신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03

**【기후대응기금】**

**<지출증액> ····· 207**

4. CCU 메가프로젝트(R&D): 민간자본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207

# 행정안전위원회

## ❖ 행정안전부


**Ⅰ. 개 관 ····· 213**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1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15

**Ⅱ. 사업별 검토 ····· 217**

**【일반회계】**

**<세출증액> ····· 217**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신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 검토 필요 등 ····· 217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 추경 증액분의 신속교부 필요 ····· 226
3.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신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23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부


**Ⅰ. 개 관 ····· 239**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23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43

**Ⅱ. 사업별 검토 ····· 246**

**【일반회계】**

**<세출증액> ····· 246**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청년콘텐츠 중심으로 투자비율 상향조정 필요 등 ····· 246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증액> ····· 251**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실효성 있는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51
3.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자금 사용기간의 단축을 고려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55
4.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신규): 사전홍보 강화 등 이용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 ····· 259

## 【영화발전진흥기금】

**<지출증액>** ····· 263

5.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신규): 지원 편중 완화를 위한 영화관별 지원금 배분기준 조정 검토 필요 ····· 263

6.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신규):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268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증액>** ····· 271

7.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경영피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필요 등 ····· 271

8.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당초 편성단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 등 ····· 275

9.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신규): 장기성과 및 고용효과 반영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28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 287**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28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91

**Ⅱ. 사업별 검토 ····· 29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증액> ····· 294**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사업: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농어촌 관련 사업 활용 확대 필요 ····· 294
2.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신규): 시설농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 에너지 신기술 보급확대 노력 필요 ····· 298
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지속 지원업체 중 성과 미흡업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 상향 검토 등 ····· 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증액> ····· 304**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 및 재정보강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30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증액> ····· 307**

5.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발행 후 단시간 내 소진되고 있는 농할 상품권의 할인율 하향 조정 검토 필요 등 ····· 307

【농지관리기금】

<지출증액> ····· 313

6.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조사결과의 집행력 제고와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13

【축산발전기금】

<지출증액> ····· 317

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기존 대출액의 상환 부담 집중 및 연체율 상승 추세를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317

❖ 해양수산부

Ⅰ. 개 관 ····· 320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320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23

Ⅱ. 사업별 검토 ····· 3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증액> ····· 325

1. 수출바우처 사업: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필요 ····· 3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증액> ····· 329

2.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신규): 면세경유 지원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필요 ····· 3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증액> ····· 333

3.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반영한 유류세보조금 재산정 필요 등 ····· 333

【수산발전기금】

<지출증액> ····· 338

4.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전통시장 지원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비 관리 강화 필요 ····· 338

❖ 산 림 청

Ⅰ. 개 관 ····· 342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342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44

Ⅱ. 사업별 검토 ····· 345

【일반회계】

<세출증액> ····· 345

1. 항공유 구입 사업: 민·관 헬기에 대한 항공유 급유지원 시 지원요건 준수 및 환수관리 철저 ····· 3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산업통상부


**Ⅰ. 개 관 ····· 351**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351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55

**Ⅱ. 사업별 검토 ····· 358**

**【일반회계】**

**<세출증액> ····· 358**

1.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신규): 적시 수입을 위한 노력 및 재고 부족 대응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58
2. 긴급지원바우처 사업: 바우처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서비스 품질 감독 및 관리 강화 필요 ····· 364
3.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특례심사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368
4.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신규):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기획·평가·관리 필요 ····· 37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증액> ····· 379**

5.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적시 자금배정을 통한 원활한 비축유 확보 노력 필요 등 ····· 379
6. 석유품질관리지원 사업: 최고가격제 시행 후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철저한 시장 감독 필요 ····· 386

7.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 석유 최고가격 비규제 유종 유통시장 및 가격에 대한 감독 노력 필요 ····· 391
8.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협력 필요 ····· 396

## ❖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 400**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400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403

**Ⅱ. 사업별 검토 ····· 405**

**【총 괄】**

1. 모두의 창업 관련 사업: 관련성이 낮은 기존 사업비 활용 문제 ····· 405
2. 융자 사업: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규모 설정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410
3.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422

**【일반회계】**

**<세출증액> ····· 426**

4.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426
5.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431
6.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필요 ····· 43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증액> ····· 438

7.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신규 펀드의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43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증액> ····· 443

8.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443

9.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예방책 마련 필요 ····· 446

❖ 지식재산처

Ⅰ. 개 관 ····· 451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451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454

Ⅱ. 사업별 검토 ····· 455

【일반회계】

<세출증액> ····· 455

1.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신규):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 검토 필요 등 ····· 455

# 보건복지위원회

## ❖ 보건복지부


**Ⅰ. 개 관 ····· 463**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46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466

**Ⅱ. 사업별 검토 ····· 468**

**【일반회계】**

**<세출증액> ····· 468**

1.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신규):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 전환 등 기능 개편 필요 ····· 468
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신규): 야간 근무자 인건비 편성 방식 개선과 적기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 473
3. 의료급여 사업: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478
4. 긴급복지 사업: 합리적인 사업 수요 예측 및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483
5.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현장 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필요 ····· 48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증액> ····· 492**

6. 긴급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유형별 예산 편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필요 ····· 49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기후에너지환경부


**Ⅰ. 개 관 ····· 499**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49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502

**Ⅱ. 사업별 검토 ····· 505**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증액> ····· 505**

1. 난방 전기화 사업: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관련 수익 귀속 주체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 ····· 505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 추가 선정되는 운영기관과 지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 필요 ····· 5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증액> ····· 513**

3.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 513
4.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517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증액> ····· 521**

5. 가정형 태양광 사업(신규): 편성 물량의 연내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521

6.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 융자지원 대상 여부의 철저한 검토 필요 ····· 524
7.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조속한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필요 ····· 527

## ❖ 고용노동부

**Ⅰ. 개 관 ····· 530**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530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534

**Ⅱ. 사업별 검토 ····· 537**

**【일반회계】**

**<세출증액> ····· 537**
1. K-뉴딜아카데미 사업(신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 필요 ····· 537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유형(청년) 지원 목표인원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5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증액> ····· 548**
3.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 필요 ····· 548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계정)】

<지출증액> ····· 552

4.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 552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출증액> ····· 558

5.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 개선 필요 ····· 558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지출증액> ····· 563

6.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 563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증액> ····· 569

7.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미상환 융자금 관리 강화 필요 ····· 569

# 국토교통위원회

## ❖ 국토교통부


**Ⅰ. 개 관 ····· 577**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57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580

**Ⅱ. 사업별 검토 ····· 583**

**【일반회계】**

**<세출증액> ····· 583**

1.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신규): 관련 법률 개정 경과를 반영한 사전준비 필요 등 ····· 583
2.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 분쟁의 선제적 대처를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590
3. 정책연구개발사업: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실적을 충실히 반영한 연구용역 관리 필요 ····· 593
4.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속한 ISP 추진 필요 ····· 596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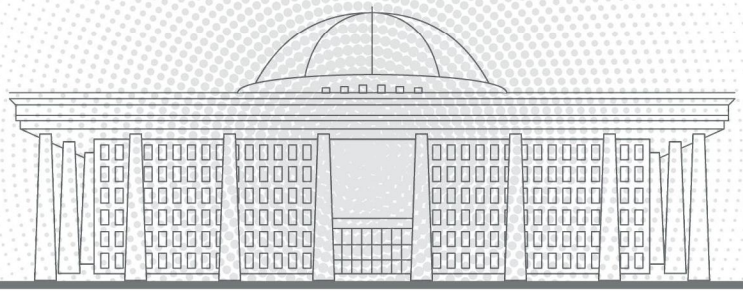
**<세출증액> ····· 600**

5.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매칭 지방비 확보 등 사전확인 필요 ····· 60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 【 총 괄 】



# 총 괄

# Ⅰ. 개 관

## 1. 편성 배경

### 가. 개요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을 2026년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 규 모 | | 재 원 | |
|---|---|---|---|
| 세출 증액 | 26.2 | 세입경정 | 25.2 |
| - 고유가 부담 완화 | 10.1 | 기금 자체재원 | 1.0 |
| - 민생 안정 | 2.8 | 전년도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 - |
|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2.6 | 정부출자수입 등 | - |
| - 지방재정 보강 등 | 9.7 | 국고채 추가발행 및 차입금 | - |
| - 국채상환 | 1.0 | 지출 구조조정 | - |
| 합계 | 26.2 | 합계 | 26.2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esembly.go.kr (02-6788-5684)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79)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0개 상임위 18개 부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되었고, 그 중 세출사업은 133개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없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총 90개 세출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1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43개의 세출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구성]

| 구분 | 회계기금 | 소속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사업수(개) | |
|---|---|---|---|---|---|
| | | | | 증액 | 감액 |
|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 기획예산처 | 1 | - |
| | | | 국세청 | 1 | - |
| | | | 조달청 | 1 | - |
| |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9 | - |
| |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 - |
| |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6 |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6 | - |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5 | - |
| | | | 해양수산부 | 4 | - |
| | | | 산림청 | 1 | - |
|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 13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12 | - |
| | | | 지식재산처 | 1 | - |
| |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9 | - |
| |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4 | - |
| | | | 고용노동부 | 6 | - |
| |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5 | - |
| | | 소 계 | | 90 | |

| 구분 | 회계기금 | 소속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사업수(개) | |
|---|---|---|---|---|---|
| | | | | 증액 | 감액 |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공공자금 관리기금 |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 재정경제부 | 2 | - |
| | 정보통신 진흥기금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 - |
| | 문화예술 진흥기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6 | - |
| | 관광진흥 개발기금 | | | 6 | - |
| | 영화발전기금 | | | 2 | - |
| | 농지관리기금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1 | - |
| | 축산발전기금 | | | 1 | - |
| |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 | | 1 | - |
| | 수산발전기금 | | 해양수산부 | 1 | - |
|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5 | - |
|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 | | 5 | - |
| | 전력산업 기반기금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5 | - |
| | 기후대응기금 | | | 3 | - |
| | 고용보험기금 | | 고용노동부 | 1 | - |
| | 임금채권기금 | | | 1 | - |
| | 근로복지 진흥기금 | | | 2 | - |
| | 소 계 | | | 43 | |
| 합계 | | | | 133 | - |

주) 내부거래·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세출사업임
자료: 기획예산처

## 나. 편성이유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및 청년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에너지·해운·물류 등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원자재 등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여 대외적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및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2025년 11월 전망치 1.8% 대비 0.2%p 개선된 수치임.[1)]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들도 2026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2.1%로 예상하였고, IMF·한국은행 및 KDI는 2026년 1·2월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경기 활황,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 등을 기초로 경제성장률을 0.1%p~0.2%p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즉 2026년 2월까지의 경제전망을 종합해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산업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2)]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내역]

(단위: %, %p)

| 구분 | | 당초(A) | 조정(B) | 조정치(B-A) |
|---|---|---|---|---|
| 국제기구 | OECD | 2.1<br>(2025.12.) | 1.7<br>(2026.3.) | △0.4 |
| | IMF | 1.8<br>(2025.10.) | 1.9<br>(2026.1.) | +0.1 |
| 국내기관 | 한국은행 | 1.8<br>(2025.11.) | 2.0<br>(2026.2.) | +0.2 |
| | KDI | 1.8<br>(2025.11.) | 1.9<br>(2026.2.) | +0.1 |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한국은행, 「경제전망 Indigo Book(2026.2)」, 2026.2.

2)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2026.2.)」, 2026.2.

그러나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의 급등 및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였고, 회복세를 보이던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환율 상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가·환율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실물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OECD는 최근 중간 경제전망(2026.3.)을 통해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우려가 있어, 202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1%(2025.12월)에서 1.7%로 0.4%p 하향조정하였고, 물가상승률은 1.8%(2025.12월)에서 2.7%로 0.9%p 높게 전망하였음.[3)]

[2026년도 중동 상황 관련 일자별 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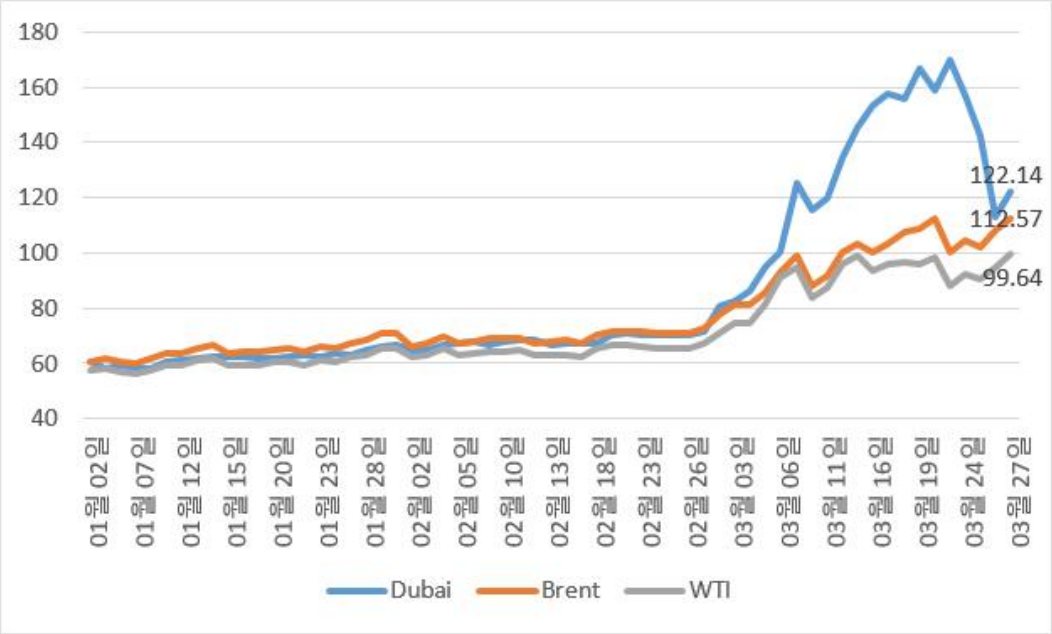
| 날짜 | 주요사건 및 전황 |
|---|---|
| 2.28. | 미국·이스라엘의 장엄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개시하여, 이란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 및 지휘부 기습 공습. 이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및 군 수뇌부의 대거 사망 |
| 3.1.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및 중동 내 미군기지 등 동시다발 보복 공습 |
| 3.2. |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 현실화 및 UAE 영공 폐쇄 |
| 3.4.~6.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글로벌 유가 급등. 쿠웨이트와 UAE 등 걸프 인근 국가들이 석유 생산 감축을 발표 |
| 3.7. | 이란의 보복. 이란이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사우디, 카타르 등)를 향해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면적인 보복 공격 감행 |
| 3.10.~11. | 미국의 이란 내 군사시설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2차 대폭격 |
| 3.13.~14. | 유전 지대 타격.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최대 석유 터미널인 하르그섬 시설을 무력화했다고 발표. 이란은 이에 대응해 UAE 항구에 대한 추가 공격을 경고 |
| 3.16. | 미군 인명 피해 증가. 미 중부사령부는 개전 이후 미군 전사자 13명, 부상자 200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방중 일정을 연기 |
| 3.17. | 국제연합(UN)은 이란 측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는 7,000명에 달한다고 보고. 양측 모두 휴전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교전 지속 중 |
| 3.20.~21. | 이란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공습 및 이스라엘 영토 피격 등 장거리 타격 역량 입증 시도 |
| 3.22.~25. | 호르무즈 해협 부분적 봉쇄/통제 강화, 금융기관 및 에너지시설 공격 발생 |
| 3.26.~28. | 미국 추가병력 파견, 이란과의 종전 협상 진행으로 4월 6일까지 발전소 공격 유예 |

자료: 중동 상황 관련 일자별 뉴스를 재정리하여 작성

3)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2026.3. p.6.

올해 2월까지는 국제 유가가 전반적인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로 2026년 연평균 배럴당 63~64달러 내외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4]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석유류의 수급 차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26년 이후 3대 국제 원유가격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일일국제원유가격" (검색일: 2026.3.30.)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및 나프타 수입의 약 3분의 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즉각적인 운송 지연과 운임 폭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는 곧 수입 제한 및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석유·화학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의 물가와 제조업 생산 비용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수정, 2026년 2월)」, 2026.2.11.

[2025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국별 수입량 현황]

(단위: 천 배럴, %)

| 순위 | 국가 | 지역 | 수입량 | 비중 |
|---|---|---|---|---|
| **1**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345,431** | **33.6** |
| 2 | 미국 | 미주 | 174,890 | 17.0 |
| **3** | **아랍에미리트(UAE)** | **중동** | **116,986** | **11.4** |
| **4** | **이라크** | **중동** | **106,945** | **10.4** |
| **5** | **쿠웨이트** | **중동** | **87,443** | **8.5** |
| **6** | **카타르** | **중동** | **44,948** | **4.4** |
| 7 | 브라질 | 미주 | 30,886 | 3.0 |
| 8 | 멕시코 | 미주 | 25,825 | 2.5 |
| 9 | 호주 | 오세아니아 | 23,510 | 2.3 |
| 10 | 카자흐스탄 | 아시아 | 15,547 | 1.5 |
| 기타 | | | 55,762 | 5.4 |
| 합계 | | | 1,028,173 | 100.0 |

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중동지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의 “국내석유통계-수출입정보”를 재가공하여 작성함

[2025년 우리나라 나프타 수입국별 수입량 현황]

(단위: 천 배럴, %)

| 순위 | 국가 | 지역 | 수입량 | 비중 |
|---|---|---|---|---|
| **1** | **아랍에미리트(UAE)** | **중동** | **56,592** | **23.8** |
| 2 | 알제리 | 아프리카 | 37,991 | 16.0 |
| **3** | **카타르** | **중동** | **30,254** | **12.7** |
| **4** | **쿠웨이트** | **중동** | **21,479** | **9.0** |
| 5 | 인도 | 아시아 | 19,090 | 8.0 |
| **6** | **오만** | **중동** | **17,215** | **7.3** |
| 7 | 미국 | 미주 | 11,791 | 5.0 |
| **8** | **이라크** | **중동** | **7,138** | **3.0** |
| **9** | **바레인** | **중동** | **6,463** | **2.7** |
| 10 | 그리스 | 유럽 | 4,855 | 2.0 |
| 기타 | | | 224,664 | 10.4 |
| 합계 | | | 237,532 | 100.0 |

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중동지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의 “국내석유통계-수출입정보”를 재가공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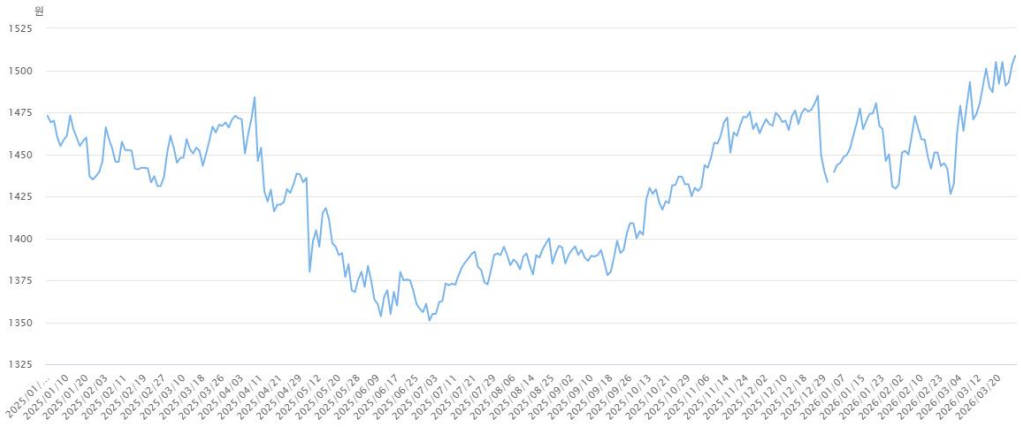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나프타를 정제해 만드는 에틸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공급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고 원자재 부족을 이유로 나프타분해시설(NCC)의 가동 중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5)]

더불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 등으로 인해 LNG 생산 과정에서 추출되는 헬륨의 수급마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6)]

이러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차질은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등 산업 전반의 원가 상승과 납기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반도체 공급망의 균열은 우리나라의 핵심 동력인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연초 1,400원대 내외로 추산되던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 상승과 유가 급등이 맞물려 국내 경제 전반에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202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행간거래 시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6.3.30.)

5) 중앙일보, “나프타 재고도 동났다... LG화학 여수 2공장 결국 가동 중단”, 2026.3.23.
SBS, “나프타 수급 차질에 여수산단 공장 가동 중단 현실화”, 2026.3.23.

6) 매일경제, “스마트폰, 오늘이 제일 쌀수도... 반도체 공정 핵심 ‘헬륨’ 가격 폭등”, 2026.3.22.
동아일보, “이란의 카타르 공격, K반도체에 불똥…핵심소재 공급 끊길 판”, 2026.3.19.

기초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교란이 겹치면서 중소 제조 및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를 초래해 국가 전반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올해 초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글로벌 통상 환경, 국제 금융 시장 등과 관련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진단하며, 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물가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음.[7)]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었고,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고유가와 고환율이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 경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한편, 국제 유가 변동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8)] ① (기준 시나리오) 2026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0.1%p)과 경상수지(△58억달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에는 다소 높은 +0.4%p의 증가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② (비관적 시나리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p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26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③ (오일 쇼크 시나리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최소 0.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p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76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2026년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상승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 변수 | 국제유가<br>연평균 80달러 | 국제유가<br>연평균 100달러 | 국제유가<br>연평균 150달러 |
|---|---|---|---|
| 경제성장률 | △ 0.1 %p | △ 0.3 %p | △ 0.8 %p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0.4 %p | + 1.1 %p | + 2.9 %p |
| 경상수지 | △ 58억 달러 | △ 260억 달러 | △ 767억 달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6.3.3.

7) 한국은행, 「경제전망 IndigoBook(2026년 2월)」, 2026.2.26.

8) 현대경제연구원,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6.3.3.

결론적으로, 현재의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이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산업 등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 요인임.

예기치 못한 대외적 충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고,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정부는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유가 상승이 연료비·물류비·배달비 등의 연쇄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바,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는 복합위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다. 편성요건

「국가재정법」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9)]

법령상 명시된 요건 외에도 추경안 제도의 취지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추경안 편성 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10)]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석유류 등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및 수출입 물류 및 공급망 교란 등은 그 자체로 대외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생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석유·화학산업, 물류·운송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직·간접적인 어려움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9)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10) 추경안 편성의 일반 요건으로는,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 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등이 있음.

또한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원유 등의 수급 차질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원자재 수입 및 물류 교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수출기업·석유화학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임.

아울러 정부는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11]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이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2026년 예비비[12]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는 상황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 상의 추경 편성요건 및 일반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측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안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13]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편성된 개별 세출·지출사업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추경안 편성목적에 부합하는지, 다른 재정·조세·금융 수단으로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상한 가격: (1차) 휘발유 리터당 1,724원, 차량용 경유 리터당 1,713원, 실내 등유 리터당 1,320원
(2차) 휘발유 리터당 1,934원, 차량용·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 등유 리터당 1,530원

12) 202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4조원(목적 3.2조원, 일반 0.8조원)이며, 이번 추경안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상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함.

13) 서울경제, “3월 CPI촉각... 고환율·추경에 2분기 3%대 갈 수도”, 2026.3.30.

## 2. 주요 내용 및 세부구성

### 가. 주요 내용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① 고유가 부담 완화, ② 민생 안정, ③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④ 지방재정 보강 등, ⑤ 국채 상환 등을 통해 적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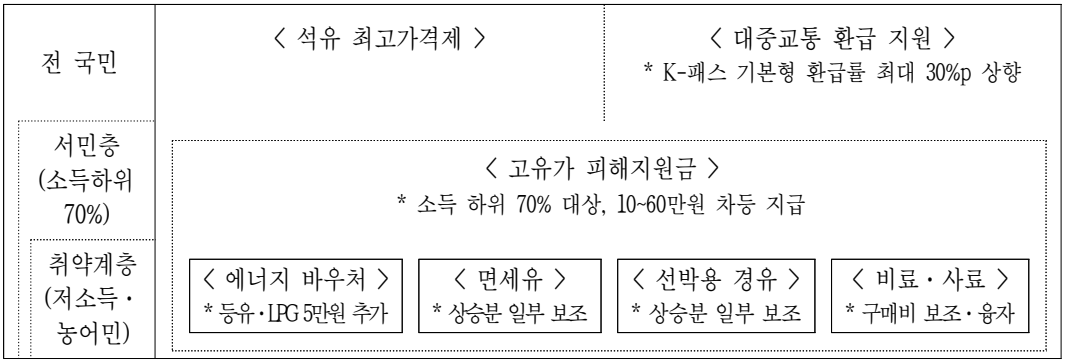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 | | |
|---|---|---|
| **기본방향** | **총 26.2조원** | |
| |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① 고유가 대응, ② 민생 안정,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 |
| **주요내용** | **1 고유가 부담 완화** | **10.1조원** |
| | ▸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 5.1조원 |
|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조원 |
| | ▸ 에너지 복지 | 0.2조원 |
| | **2 민생 안정** | **2.8조원** |
| | ▸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 0.8조원 |
| | ▸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 1.9조원 |
| | ▸ 고물가 대응 | 0.1조원 |
| | **3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2.6조원** |
| | ▸ 피해기업·산업 지원 | 1.1조원 |
| | ▸ 에너지·신산업 전환 | 0.8조원 |
| | ▸ 공급망 안정화 | 0.7조원 |
| | **4 지방재정 보강 등** | **9.7조원** |
| | *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금) 증액 등 | |
| | **5 국채 상환** | **1.0조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는 총 10.1조원 규모로, 석유 최고가격제 및 대중교통 환급 등 전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5.1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 에너지 복지 0.2조원이 편성되었음.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10.1조원) 개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구체적으로는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30%p, 기본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14]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원)을 신설하여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15]

다음, 민생 안정 분야는 총 2.8조원 규모로, 그냥드림센터 전국 확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0.8조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및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 등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조원, 농축수산물 및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등 고물가 부담경감 0.1조원이 편성되었음.

14) 〈k-패스 환급률 확대〉

| | 저소득 | 3자녀 | 청년·2자녀·어르신 | 일반 |
|---|---|---|---|---|
| 환급률(15회이상 이용시) | 53→83% | 50→75% | 30→45% | 20→3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15) 〈고유가 피해지원금〉

| 구 분 | 소득하위 70%(3,256만명) | 차상위·한부모(36만명) | 기초수급자(285만명) |
|---|---|---|---|
| 수도권 | 10만원 | 45만원(+35만원) | 55만원(+45만원) |
| 비수도권 | 15만원(+5만원) | 50만원(+40만원) | 60만원(+50만원) |
| 인구감소(우대) | 20만원(+10만원) | | |
| 인구감소(특별) | 25만원(+15만원)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구체적으로는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246억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0.2조원 추가 공급하며,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 선발 후 사업화자금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0.4조원)를 신설하고, 4대 과기원을 축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0.3조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연계하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0.1조원)를 신설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5→6만명)하며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2배 추가(1,500억원)하는 한편, 체납관리단(9,5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3,500명), 농지특별조사(5,000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 3,000개를 확충하려는 것임.

다음,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는 총 2.6조원 규모로, 수출 정책금융 공급 및 수출바우처 확대 등 피해 기업·산업 지원을 위해 1.1조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을 위해 0.8조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0.7조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수출 정책금융을 7.1조원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16]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0.1조원)하는 한편,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0.9→1.1조원)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를 추가 보급(900억원)하며,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를 지원(0.5조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0.2조원)하는 것임.

또한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원)을 제공하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320억원)하여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16) <수출 정책금융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 | | 공급규모 | 재정지원 | 내용 |
|---|---|---|---|---|
| 합계 | | 70,500 | 6,500 | |
| 대출 | 중진공 | 3,500 | 3,500 | · 긴급경영안정자금(2,5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 |
| 보증 | 신보 | 25,000 | 1,000 | · 직·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br>(보증료율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 조건 우대) |
| | 기보 | 12,000 | 1,000 | |
| | 무보 | 30,000 | 1,000 | · 수출기업(8,000), 현지법인(2,000) 유동성 공급<br>· 원자재 수입대금(6,500), 신시장진출(13,50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다음, 지방재정 보강 분야는 총 9.7조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9.4조원)하여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채 인수 규모를 0.1조원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1조원)에 사용하여 국채 및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4개 세목을 증액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3개 세목을 감액하여 총 7개 세목을 재산정한 결과 국세수입을 416조 4,190억원으로, 본예산(390조 2,334억원) 대비 25조 1,856억원(6.5%) 증액 편성함.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 고용호조를 이유로 근로소득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본예산 대비 4조 7,971억원(3.6%) 증액하고, 법인세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 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여 본예산 대비 14조 7,741억원(17.1%)을 증액하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자산시장 호조로 인한 거래량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각각 본예산 대비 5조 1,868억원(96.5%) 및 5조 1,223억원(60.3%)을 증액 편성함.

한편,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류 수입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대비 5,340억원(△5.7%) 감액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본예산 대비 3조 3,658억원(△20.5%) 감액하며, 교육세는 본예산 대비 7,949억원(△12.3%) 감액 편성함.

## 나. 분야별 재원배분

이번 추경안에 따른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25.2조원(3.5%) 증가한 753.1조원으로 이를 12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9.9조원(8.2%)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육 분야가 4.8조원(4.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3조원(10.3%) 순임. 이는 이번 세입경정으로 인해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방교육세 및 교육 분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동되어 증가한 것에 기인함.

반면, 국방 분야, 외교·통일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이번 추경안에 증액사업과 감액사업 모두 편성되지 않아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안]

(단위: 조원, %)

| 구 분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C=B-A) | |
|---|---|---|---|---|
| | | | | 증감률 (C/A) |
| **총지출** | **727.9** | **753.1** | **25.2** | **3.5** |
| 1. 보건·복지·고용 | 269.1 | 270.0 | 0.9 | 0.3 |
| 2. 교육 | 99.9 | 104.8 | 4.8 | 4.8 |
| 3. 문화·체육·관광 | 9.6 | 10.2 | 0.6 | 6.1 |
| 4. 환경 | 13.9 | 14.0 | 0.1 | 0.7 |
| 5. R&D | 35.5 | 35.6 | 0.1 | 0.4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31.8 | 35.0 | 3.3 | 10.3 |
| 7. SOC | 27.7 | 27.8 | 0.1 | 0.4 |
| 8. 농림·수산·식품 | 28.0 | 28.4 | 0.3 | 1.2 |
| 9. 국방 | 65.9 | 65.9 | - | - |
| 10. 외교·통일 | 7.0 | 7.0 | - | - |
| 11. 공공질서·안전 | 27.3 | 27.3 | - | - |
| 12. 일반·지방행정 | 121.4 | 131.3 | 9.9 | 8.2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 다. 소관별 구성

총지출 기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지출 증액 사업은 10개 상임위원회 18개 부처의 1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지출 감액 사업은 없음.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9조 5,240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기획예산처 5조원, 교육부 4조 8,11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 9,375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지출 증액 사업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수 | 증액규모 |
|---|---|---|---|---|
|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 재정경제부 | 공공자금관리기금 | 2 | 206,600 |
| | 기획예산처 | 일반회계 | 1 | 5,000,000 |
| | 국세청 | 일반회계 | 1 | 213,364 |
| | 조달청 | 조달특별회계 | 1 | 2,639 |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일반회계 | 7 | 4,770,637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 | 40,300 |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 5 | 64,268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8,700 |
| | | 정보통신진흥기금 | 1 | 20,000 |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6 | 9,524,04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회계 | 4 | 54,788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 | 13,683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6 | 95,805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6 | 345,410 |
| | | 영화발전기금 | 2 | 74,590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 | 21,379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70,630 |
| | | 농지관리기금 | 1 | 58,771 |
| | | 축산발전기금 | 1 | 65,000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 | 50,000 |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수 | 증액규모 |
|---|---|---|---|---|
| | 해양수산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 | 48,408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 | 10,551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2,944 |
| | | 수산발전기금 | 1 | 30,000 |
| | 산림청 | 일반회계 | 1 | 2,000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 일반회계 | 6 | 712,300 |
| | | 지역균형발전회계 | 2 | 21,000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5 | 190,833 |
|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12 | 771,914 |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5 | 720,000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5 | 445,520 |
| | 지식재산처 | 일반회계 | 1 | 9,500 |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8 | 316,360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9,917 |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 | 100,230 |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2 | 7,500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5 | 379,261 |
| | | 기후대응기금 | 3 | 37,530 |
| | 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 5 | 386,556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12,000 |
| | | 고용보험기금 | 1 | 18,559 |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1 | 89,944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2 | 31,556 |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일반회계 | 4 | 29,474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 | 87,708 |
| **10개 상임위** | **18개 부처** | **합 계** | **133** | **25,172,178**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 라. 회계·기금별 구성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증액내역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예산에서 22조 5,036억원, 기금에서 2조 6,685억원이 증액되어 총 25조 1,722억원이 증액되었음.

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21조 8,552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1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89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기금 중에서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7,2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45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793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45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066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회계·기금 | | 세부사업수 | 증감규모 | 주요 증액내용 |
|---|---|---|---|---|
| 예산 | 일반회계 | 61 | 21,855,210 | · 예비비 5조원<br>·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억원<br>· 교부세·교부금 9조 4,487억원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 | 69,787 |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68억원<br>·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 | 87,708 |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877억원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 | 301,614 | · 석유비축사업출자 1,584억원<br>· 무공해차 보급사업 900억원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2 | 7,500 |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56억원 |
| | 지역균형발전회계 | 9 | 138,874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br>· 산업단지환경조성 140억원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 | 40,300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83억원 |
| | 조달특별회계 | 1 | 2,639 | ·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26억원 |
| | **소 계** | **90** | **22,503,632** | -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기금 | | 세부사업수 | 증감규모 | 주요 증액내용 |
|---|---|---|---|---|
|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 2 | 206,600 | · 국고채이자상환 1,066억원 |
| | 정보통신진흥기금 | 1 | 20,000 | · AI통합바우처 200억원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6 | 95,805 | ·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500억원<br>·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320억원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6 | 345,410 | · 관광산업 융자지원 2,800억원<br>·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306억원 |
| | 영화발전기금 | 2 | 74,590 | · 영화 창·제작 지원 385억원 |
| | 농지관리기금 | 1 | 58,771 | · 농지이용관리지원 588억원 |
| | 축산발전기금 | 1 | 65,000 |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650억원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 | 50,000 |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500억원 |
| | 수산발전기금 | 1 | 30,000 | ·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300억원 |
| | 중소벤처기업<br>창업및진흥기금 | 5 | 720,0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0억원<br>·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5 | 445,520 | · 소상공인지원(융자) 3,200억원<br>·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603억원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5 | 379,261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205억원<br>·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624억원 |
| | 기후대응기금 | 3 | 37,530 | · CCU메가프로젝트(R&D) 224억원 |
| | 고용보험기금 | 1 | 18,559 | · 고용유지지원금 186억원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1 | 89,944 | · 체불청산 지원 융자 899억원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2 | 31,556 | · 신용보증대위변제 226억원 |
| | **소 계** | **43** | **2,668,546** | - |
| **합 계** | | **133** | **25,172,178** | - |

자료: 기획예산처

## 마. 비목별 구성

이번 추경안에서 순증액된 세목은 총지출 기준 총 39개이고 순감액된 세목은 없음.

순증액된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교부금(330-02) 9조 4,487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조 3,852억원, 예비비(710-01) 5조원, 기타민간융자금(450-04) 1조 3,304억원, 민간경상보조(320-01) 1조 2,965억원 등의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비목별 증감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목 - 세목 | | 예산 | 기금 | 합계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04) | 120,603 | 5,018 | 125,621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01) | 3,196 | 36,524 | 39,720 |
| | 공공요금및제세(02) | 12,846 | 341 | 13,187 |
| | 피복비(03) | 474 | 59 | 533 |
| | 특근매식비(05) | 6 | - | 6 |
| | 임차료(07) | 25,474 | - | 25,474 |
| | 유류비(08) | 2,489 | - | 2,489 |
| | 시설장비유지비(09) | 96 | - | 96 |
| | 복리후생비(12) | 8 | - | 8 |
| | 일반용역비(14) | 6,974 | - | 6,974 |
| | 관리용역비(15) | 4,196 | - | 4,196 |
| | 소 계 | 55,758 | 36,924 | 92,682 |
| 여비 (220) | 국내여비(01) | 5,995 | 388 | 6,383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01) | 299 | 30 | 329 |
| 연구용역비 (260) | 일반연구비(01) | 200 | - | 200 |
| | 정책연구비(02) | 1,000 | - | 1,000 |
| | 소 계 | 1,200 | - | 1,200 |
| 보전금 (310) | 기타보전금(04) | 335,851 | 2,289 | 338,140 |

(단위: 백만원)

| 목 - 세목 | | 예산 | 기금 | 합계 |
|---|---|---|---|---|
| 민간이전 (320) | 민간경상보조(01) | 795,575 | 500,891 | 1,296,466 |
| | 민간위탁사업비(02) | 64,543 | - | 64,543 |
| | 보험금(04) | - | 18,559 | 18,559 |
| | 이차보전금(05) | 2,155 | 6,000 | 8,155 |
| | 민간자본보조(07) | 24,922 | - | 24,922 |
| | 고용부담금(09) | 13,050 | 575 | 13,625 |
| | 소 계 | 900,245 | 526,025 | 1,426,270 |
| 자치단체이전 (330) | 자치단체경상보조(01) | 5,339,280 | 45,898 | 5,385,178 |
| | 자치단체교부금(02) | 9,448,687 | - | 9,448,687 |
| | 자치단체자본보조(03) | 105,400 | - | 105,400 |
| | 소 계 | 14,893,367 | 45,898 | 14,939,265 |
| 일반출연금 (350) | 사업출연금(02) | 480,630 | 20,000 | 500,630 |
| | 금융성기금출연금(03) | 300,000 | - | 300,000 |
| | 소 계 | 780,630 | 20,000 | 800,630 |
| 연구개발출연금 (360) | 연구개발인건비(01) | 768 | - | 768 |
|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05) | 151,700 | 22,405 | 174,105 |
| | 소 계 | 152,468 | 22,405 | 174,873 |
| 건설비 (420) | 실시설계비(02) | 664 | - | 664 |
| | 공사비(03) | 29,174 | - | 29,174 |
| | 소 계 | 29,838 | - | 29,838 |
| 유형자산 (430) | 자산취득비(01) | 12,945 | - | 12,945 |
| 융자금 (450) | 통화금융기관융자금(02) | - | 280,000 | 280,000 |
| | 기타민간융자금(04) | - | 1,330,388 | 1,330,388 |
| | 지방자치단체융자금(05) | - | 100,000 | 100,000 |
| | 소 계 | - | 1,710,388 | 1,710,388 |
| 출자금 (460) | 일반출자금(01) | 214,433 | 170,000 | 384,433 |
| 상환지출 (510) | 차입금이자(03) | - | 106,600 | 106,600 |
| 예비비 (710) | 예비비(01) | 5,000,000 | - | 5,000,000 |
| | 반환금및손실금(03) | - | 22,581 | 22,581 |
| | 소 계 | 5,000,000 | 22,581 | 5,022,581 |
| **합 계** | | **22,503,632** | **2,668,546** | **25,172,178** |

자료: 기획예산처

## 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내역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함께 총 17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국회제출사유 | | 구 분 | 지출변경액 (총지출 기준) | 유형 |
|---|---|---|---|---|
|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국회제출 필요 | 프로그램(항) 20% 초과 증액 | 농지관리기금 | 58,771 | 사업성기금 |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720,000 |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31,556 |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379,261 |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95,805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345,410 | |
| | | 영화발전기금 | 74,590 | |
|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체변경도 가능하지만 국회 제출 | | 정보통신진흥기금 | 20,000 | 사업성기금 |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89,944 | |
| | | 수산발전기금 | 30,000 | |
| | | 축산발전기금 | 65,000 |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50,000 | |
| | | 기후대응기금 | 37,530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445,520 | |
| | | 고용보험기금 | 18,559 | 사회보험성기금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206,600 | 계정성기금 |
| 합 계 (17개) | | | **2,668,546** | |

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총지출과 관련 지출변경액은 없으나, 내부거래인 기금간거래(9000) 프로그램(항)이 계획액 대비 20% 초과 증액된 경우임

자료: 기획예산처

이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70조[17]에 따라 주요항목(프로그램)의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기존계획의 20%(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농지관리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영화발전기금 8개임.

그 밖에 정보통신진흥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수산발전기금・축산발전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기후대응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9개 기금은 자체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제출되었음.

17)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 사. 의무·재량지출 구성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을 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본예산 대비 9조 8,381억 2,400만원 증가한 397조 5,021억 2,700만원이고, 재량지출은 15조 3,340억 5,400만원 증가한 355조 5,491억 8,600만원임.

의무지출 규모에 비해 재량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면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로 △0.5%p 감소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47.2%로 0.5%p 증가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지출 유형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p)

| 구 분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 □ 의무지출 | 387,664,003 | 397,502,127 | 9,838,124 |
| (구성비) | (53.3) | (52.8) | (△0.5) |
| □ 재량지출 | 340,215,132 | 355,549,186 | 15,334,054 |
| (구성비) | (46.7) | (47.2) | (0.5) |
| 계 | 727,879,135 | 753,051,313 | 25,172,178 |

자료: 기획예산처

의무지출 구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5.2조원 규모의 세입(증액)경정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어 지방으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4조 6,793억 4,900만원 증액(보통교부세 4조 5,389억 6,900만원, 특별교부세 1,403억 8,000만원)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 7,693억 3,800만원(보통교부금 4조 5,771억 9,800만원, 특별교부금 1,92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이전’ 분야가 9조 4,486억 8,7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함.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의무지출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 의무지출 | 387,664,003 | 397,502,127 | 9,838,124 |
| 1. 지방이전 | 144,918,049 | 154,366,736 | 9,448,687 |
| 2. 복지분야 법정지출 | 196,281,550 | 196,564,387 | 282,837 |
| 3. 이자지출 | 33,607,809 | 33,714,409 | 106,600 |
| 4. 기타 의무지출 | 12,856,595 | 12,856,595 | - |

자료: 기획예산처

## 아. 신규 증액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 133개(25조 1,722억원)로, 이 중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세부사업은 총 9개(6.8%), 증액 규모는 5조 255억원 이며, 이 중 7개의 신규 세부사업은 최근 3년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바가 없는 사업임.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증액사업 중 신규사업 비중(총지출 기준)]

| 구분 | 증액 세부사업 개수 | | 증액 규모 | |
|---|---|---|---|---|
| 신규사업 | 9개 | 6.8% | 5조 255억원 | 20.0% |
| 최근 3년(2024~2026)간 편성연혁 없는 사업 | 7개 | 5.3% | 4조 9,708억원 | 19.7% |
| 기존사업 | 124개 | 93.2% | 20조 1,467억원 | 80.0% |
| 합 계 | 133개 | 100.0% | 25조 1,722억원 | 100.0% |

주) 신규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자료: 기획예산처

신규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포함)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18]에서 규정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되, 같은 조에 따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한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15호[19]에 따라 그 내역을 추경안에 첨부하여야 함.

---

1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9)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조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2026. 2. 10.>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 중등 교육시설의 신 · 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 ·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에 첨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1,610억원) 1건임.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 사업명 | 추경안 | 면제 사유 |
|---|---|---|---|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 161,000 |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 |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위 1건의 사업 외에 신규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포함)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없다는 입장임.

참고로, 이번 추경안에서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음.[20]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중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금액) | 비고 |
|---|---|---|---|---|
| 행안부 | 일반회계 |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 일반·지방행정 분야 |
| 산업부 | 일반회계 |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 80,000 | 연구개발(R&D) 사업 |
| 해수부 | 농특회계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2026년) | 46,819 | 2026년 한시사업 |

자료: 기획예산처

20) 아래 표의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추경안 중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목록임.

## 자. 12대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이번 추경안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총 5조 4,905억 7,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는 1조 7,122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대응지방비가 가장 크게 소요되는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분야(1조 3,201억 300만원)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지자체 보조금 4조 8,199억 1,000만원)사업에서 기인하며, 다음으로는 보건・복지・고용분야 1,314억 700만원, 농림・수산・식품 1,284억 1,600만원 순으로 나타남.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단위: 백만원)

| 분 야 | 금 액 | | |
|---|---|---|---|
| | 2026 지자체보조금 추경예산안(A) | 2026 대응지방비 추계(B) | 합계 (A+B) |
| **합 계** | **5,490,578** | **1,712,228** | **7,202,806** |
| 1. 보건・복지・고용 | 356,832 | 131,407 | 488,239 |
| 2. 교육 | - | - | - |
| 3. 문화・체육・관광 | - | - | - |
| 4. 환경 | 95,600 | 31,200 | 126,800 |
| 5. R&D | - | - | -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9,800 | 4,200 | 14,000 |
| 7. SOC | 87,708 | 96,902 | 184,610 |
| 8. 농림・수산・식품 | 120,728 | 128,416 | 249,144 |
| 9. 국방 | - | - | - |
| 10. 외교・통일 | - | - | - |
| 11. 공공질서・안전 | - | - | - |
| 12. 일반・지방행정 | 4,819,910 | 1,320,103 | 6,140,013 |

자료: 기획예산처

## 차. 성인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내용

### (1)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 총 265개 중 추경안의 대상이 되는 성인지 예산 사업은 9개 사업이며, 성인지 기금사업은 6개 사업임. 이번 추경안에 따라 전체 성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조 8,544억 400만원에서 27조 8,497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953억 5,200만원(3.7%) 증액되었음.

추경안에 따른 성인지 예산 사업의 수는 196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산 규모는 12조 3,059억 2,700만원에서 12조 7,281억 3,400만원으로 4,222억 700만원(3.4%) 증액되었음.

성인지 기금사업의 수는 69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성인지 기금사업 규모는 14조 5,484억 7,700만원에서 15조 1,216억 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731억 4,500만원(3.9%)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

| 구분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안 (B) | 증감 (B-A) | 증감률 |
|---|---|---|---|---|---|
| 중앙관서 수 | | 34 | 34 | - | - |
| 예산 | 예산 | 12,305,927 | 12,728,134 | 422,207 | 3.4 |
| | 사업수 | 196 | 196 | - | - |
| 기금 | 예산 | 14,548,477 | 15,121,622 | 573,145 | 3.9 |
| | 사업수 | 69 | 69 | - | - |
| 합계 | 예산 | 26,854,404 | 27,849,756 | 995,352 | 3.7 |
| | 사업수 | 265 | 265 | - | - |

자료: 기획예산처

추경안에 따른 부처별 성인지 예상 및 기금 증감액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6,198억 2,000만원(7.7%), 고용노동부 3,709억 700만원(4.0%), 문화체육관광부가 46억 2,500만원(1.6%) 각각 증가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

| 기관 | 본예산 (A) | 2026년 제1회 추경안(B) | 증감 (B-A) | 증감률 |
|---|---|---|---|---|
| 중소벤처기업부 | 8,010,392 | 8,630,212 | 619,820 | 7.7 |
| 고용노동부 | 9,341,223 | 9,712,130 | 370,907 | 4.0 |
| 문화체육관광부 | 290,435 | 295,060 | 4,625 | 1.6 |

자료: 기획예산처

추경안의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의 사업별 증액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사업 중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이 2,530억 2,400만원 증액되어 증액 규모가 카장 컸고, 기금 사업 중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이 3,200억원 증액되어 증액 규모가 가장 컸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 회계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 본예산 | 제1회 추경안 | 증감 |
|---|---|---|---|---|---|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회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89,022 | 89,722 | 700 |
| 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 청년일자리창출지원<b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907,959 | 933,709 | 25,750 |
| | | 내일배움카드(일반) | 627,325 | 880,349 | 253,024 |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1,012,830 | 1,092,963 | 80,133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 150,108 | 162,108 | 12,000 |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br>-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 17,519 | 27,519 | 10,000 |
| | | 창업사업화지원<br>-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br>초격차스타트업1000+프로젝트,<br>창업중심대학 | 411,599 | 435,599 | 24,000 |
| | | 중소기업 재기지원<br>- 중소기업 재기지원 | 14,966 | 24,966 | 10,000 |
| | | 마케팅지원사업 | 24,944 | 31,544 | 6,600 |
| 예산사업 합계(9개 사업) | | | 3,256,272 | 3,678,479 | 422,207 |

(단위: 백만원)

| 부처 | 회계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 본예산 | 제1회 추경안 | 증감 |
|---|---|---|---|---|---|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예술 진흥기금 | 예술인력 육성<br>-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 8,531 | 12,456 | 3,925 |
|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벤처 기업창업및 진흥기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1,605,800 | 1,755,800 | 150,000 |
| |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612,500 | 662,500 | 50,000 |
| |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br>-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 22,550 | 67,870 | 45,320 |
| | | 소상공인재기지원<br>-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지원) | 25,625 | 29,525 | 3,900 |
| | | 소상공인지원(융자) | 3,362,000 | 3,682,000 | 320,000 |
| 기금사업 합계 (6개 사업) | | | 5,637,006 | 6,210,151 | 573,145 |
|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 | | | 26,854,404 | 27,849,756 | 995,352 |

자료: 기획예산처

###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 총 347개 중 추경안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은 2개 사업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사업은 7개 사업임.

추경안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의 규모는 16조 8,188억 7,600만원에서 17조 3,821억 7,000만원으로 5,632억 9,400만원(3.3%) 증액되었음.

추경안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수는 185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산규모는 본예산 10조 4,206억 5,300만원에서 10조 5,983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77억 800만원(1.7%) 증액되었음.

기금사업 수는 162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규모는 6조 3,982억 2,300만원에서 6조 7,838억 9,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55억 8,600만원(6.0%)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

| 구분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안 (B) | 증감 (B-A) | 증감률 |
|---|---|---|---|---|---|
| 중앙관서 수 | | 16 | 16 | - | - |
| 예산 | 예산 | 10,420,653 | 10,598,361 | 177,708 | 1.7 |
| | 사업 수 | 185 | 185 | - | - |
| 기금 | 예산 | 6,398,223 | 6,783,809 | 385,586 | 6.0 |
| | 사업 수 | 162 | 162 | - | - |
| 합계 | 예산 | 16,818,876 | 17,382,170 | 563,294 | 3.3 |
| | 사업 수 | 347 | 347 | - | - |

자료: 기획예산처

추경안에 따른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 증감액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4,255억 8,600만원(4.6%), 국토교통부 877억 800만원(7.0%), 중소벤처기업부 500억원(2.6%) 각각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

| 기관 | 본예산 (A) | 제1회 추경안 (B) | 증감 (B-A) | 증감률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9,286,096 | 9,711,682 | 425,586 | 4.6 |
| 국토교통부 | 1,258,051 | 1,345,759 | 87,708 | 7.0 |
| 중소벤처기업부 | 1,902,075 | 1,952,075 | 50,000 | 2.6 |

자료: 기획예산처

추경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의 사업별 증액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 사업 중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900억원 증액되어 증액 규모가 카장 컸고, 기금 사업 중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이 2,204억 6,900만원 증액되어 증액 규모가 가장 컸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 회계 | 세부사업 | 본예산 | 제1회 추경안 | 증감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284,513 | 2,374,513 | 90,000 |
|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 특별회계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557,970 | 645,678 | 87,708 |
| 예산사업 합계(2개 사업) | | | 2,842,483 | 3,020,191 | 177,708 |
| **부처** | **기금** | **세부사업** | **본예산** | **제1회 추경안** | **증감** |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대응기금 | 산업·일자리전환지원 | 8,753 | 11,042 | 2,289 |
| |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108,575 | 121,411 | 12,836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14,952 | 151,276 | 36,324 |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648,000 | 868,469 | 220,469 |
| |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214,332 | 276,712 | 62,380 |
| | | 전력효율향상 | 125,922 | 127,210 | 1,288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612,500 | 662,500 | 50,000 |
| 기금사업 합계 (7개 사업) | | | 1,833,034 | 2,218,620 | 385,586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 | | | 16,818,876 | 17,382,170 | 563,294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Ⅱ. 주요 검토사항

## 1. 재정총량 및 재정건전성

### 가. 추경안에 따른 변동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700.6조원으로, 25.2조원 규모의 국세수입 경정 등에 따라 본예산 대비 25.4조원(3.8%) 증가하였음.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은 753.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25.2조원(3.5%) 증가하였음.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구분 | 2024년 본예산 | 2025년 | | 2026년 | | 본예산 대비 (B-A) |
|---|---|---|---|---|---|---|
| | | 본예산 | 제2회 추경안 | 본예산(A) | 제1회 추경안(B) | |
| ◇ 총수입 | 612.2 | 651.6 | 642.4 | 675.2 | 700.6 | 25.4 |
| (전년대비 증가율, %) | (△2.2) | (6.4) | (4.9) | (3.6) | (7.5) | (3.8) |
| ◇ 총지출 | 656.6 | 673.3 | 703.3 | 727.9 | 753.1 | 25.2 |
| (전년대비 증가율, %) | (2.8) | (2.5) | (7.1) | (8.1) | (11.8) | (3.5) |
| ◇ 통합재정수지 | △44.4 | △21.7 | △60.8 | △52.7 | △52.5 | 0.2 |
| (GDP 대비, %) | (△1.8) | (△0.8) | (△2.3) | (△1.9) | (△1.9) | - |
| ◇ 관리재정수지 | △91.6 | △73.9 | △111.6 | △107.8 | △107.6 | 0.2 |
| (GDP 대비, %) | (△3.6) | (△2.8) | (△4.2) | (△3.9) | (△3.8) | △0.1%p |
| ◇ 국가채무 | 1,195.8 | 1,273.3 | 1,301.9 | 1,413.8 | 1,412.8 | △1.0 |
| (GDP 대비, %) | (47.4) | (48.1) | (49.1) | (51.6) | (50.6) | △1.0%p |

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2025.6.23.)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을 기초로 재작성함

총수입은 세입경정 등으로 25.4조원이 증가하고 총지출은 25.2조원 증가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0.2조원 축소된 △52.5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 대비 적자규모는 △1.9%로 본예산과 동일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79)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22]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7.6조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0.2조원 축소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3.8%로 0.1%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합재정수지 개선(0.2조원) 및 GDP 전망 수정[23]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는 것에 기인함.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는 1,412.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조원 감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6%로 본예산 대비 1.0%p 감소할 전망임. 이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 편성 시 GDP 전망을 수정하고 국고채 원금상환 1조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함.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24]에 따라 추경안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였는데,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번 추경안에 따른 변화요인을 반영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총수입·총지출)]

(단위: 조원)

| | | 2025 | | 2026 | 2027 | 2028 | 2029 |
|---|---|---|---|---|---|---|---|
| | | 본예산 | 제2회 추경 | | | | |
| 총수입 | 2024~2028계획 | 651.6 | 642.4 | 675.2주) | 677.7 | 706.4 | 731.5 |
| | ■(+) 세외·기금수입 확대 | - | - | 0.2 | - | - | - |
| | ■(+) 국세수입 확대 | - | - | 25.2 | - | - | - |
| | 2026년 추경안 반영 | 651.6 | 642.4 | 700.6 | 677.7 | 706.4 | 731.5 |
| 총지출 | 2024~2028계획 | 673.3 | 703.3 | 727.9주) | 764.4 | 802.6 | 834.7 |
| | ■(+) 추경 사업 | - | - | 25.2 | - | - | - |
| | 2026년 추경안 반영 | 673.3 | 703.3 | 753.1 | 764.4 | 802.6 | 834.7 |

주) 2026년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2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3) 2025년 GDP 잠정치 반영 및 2026년 GDP 전망수정(2026년 2,741.6조원 → 2,793.8조원)

24)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먼저 총수입과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 등으로 총수입은 2026년에 25.2조원이 증가하고, 2027년 이후에는 당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총지출은 2026년에만 25.2조원이 증가하고,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2027년 이후에는 당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재정수지·국가채무)]

(단위: 조원)

| | | 2025 | | 2026 | 2027 | 2028 | 2029 |
|---|---|---|---|---|---|---|---|
| | | 본예산 | 제2회 추경 | | | | |
| 통합재정수지 | 2025 ~ 2029계획 | △21.7 | △60.8 | **△52.7**[1] | △59.4 | △68.9 | △63.6 |
| | (GDP대비, %) | (△0.8) | (△2.3) | **(△1.9)** | (△2.1) | (△2.3) | (△2.1) |
| | 2026년 제1회 추경 | △21.7 | △60.8 | **△52.5** | △59.4 | △68.9 | △63.6 |
| | (GDP대비, %) | (△0.8) | (△2.3) | **(△1.9)** | (△2.1) | (△2.3) | (△2.1) |
| 관리재정수지 | 2025 ~ 2029계획 | △73.9 | △111.6 | **△107.8**[1] | △115.4 | △128.9 | △124.9 |
| | (GDP대비, %) | (△2.8) | (△4.2) | **(△3.9)** | (△4.1) | (△4.4) | (△4.1) |
| | 2026년 제1회 추경 | △73.9 | △111.6 | **△107.6** | △115.4 | △128.9 | △124.9 |
| | (GDP대비, %) | (△2.8) | (△4.2) | **(△3.8)** | (△4.1) | (△4.4) | (△4.1) |
| 국가채무 | 2025 ~ 2029계획 | 1,273.3 | 1,301.9 | **1,413.8**[1] | 1,532.5 | 1,664.3 | 1,788.9 |
| | (GDP대비, %) | (48.1) | (49.1) | **(51.6)** | (53.8) | (56.2) | (58.0) |
| | 2026년 제1회 추경[2] | 1,273.3 | 1,301.9 | **1,412.8** | 1,530.5 | 1,661.9 | 1,786.5 |
| | (GDP대비, %) | (48.1) | (49.1) | **(50.6)** | (53.7) | (56.1) | (57.9) |
| ※ 명목GDP(2025~2029계획) | | 2,646.5 | 2,654.0 | **2,741.6** | 2,848.6 | 2,962.5 | 3,084.0 |
| (변경) | | | 2,663.3[3] | **2,793.8**[4] | 2,848.6 | 2,962.5 | 3,084.0 |

주 1) 2026년 본예산 기준
2) 2027년 이후는 당초 계획상 전망에 2026년 본예산 및 2026년 추경안 등 반영
3) 2025년 GDP 잠정치(한국은행)
4) 2026년 경제정책방향(2026.1.)의 2026년 성장전망 수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이번 추경안에 따라 2026년에만 당초 △52.7조원 적자에서 △52.5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0.2조원 개선되고, 2027년 이후 2029년까지 적자규모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관리재정수지 역시 이번 추경안에 따라 2026년에만 당초 △107.8조원 적자에서 △107.6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0.2조원 개선되고, 2027년 이후 2029년까지 적자규모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의 경우 이번 추경안에서 1.0조원의 국채를 순상환함에 따라 2026년에만 당초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1.0조원 감소하여 GDP 대비 5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전망치 수정 등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나. 검토의견

**첫째, 이번 추경안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총지출을 부담하고 국채를 일부 순상환함으로 인해 재정수지와 재정건전성이 소폭 호전되었으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앞으로 재정여건의 위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총지출을 증액하고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소폭 호전되었음.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는 1,412.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조원 감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본예산 대비 1.0%p 감소할 전망임. 이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 편성 시 국고채 원금상환 1조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위기 요건이 상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증가는 다른 민생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량지출의 여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함.

참고로, 2026년 1월 발표된 IMF의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25] 우리나라는 현재 지출 수요를 충족하고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추

25) IMF, "As Korea Ages, Fiscal Reforms Can Help Safeguard Government Finances(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 IMF COUNTRY FOCUS, 2026.1.15.

고 있으나 향후 수년간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 지출 압박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 바 있음.

IMF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출은 2050년경 GDP의 30~35%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포함하면서 이를 상쇄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를 가정할 때 2050년 한국의 부채 비율은 90~130%에 달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함.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채 순상환은 정부의 항구적인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나 재정 구조개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및 자산시장의 호조 등에 따라 변동성 높은 법인세·증권거래세 등의 초과세수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편성하면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고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26]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제고노력이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2021년 이후 5년만에 초과세수를 기초로 국채를 순상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을 유의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하여 2021년 이후 5년 만에 국채를 순상환하는 계획을 포함한 점은, 국가채무의 절대적 규모를 줄이고 최근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 시장에 발행물량 축소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단발적인 국채 순상환 조치만으로 현재 직면한 구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각종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6)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2026.3.30.

[(발행시장) 2024년 및 2025.10.~2026.2. 국고채 발행액 및 평균 조달금리]

(단위: 조원, %)

| | | 2024년 | 2025년 | | | | 2026년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 1월 | 2월 |
| □ 발행잔액 | | 1047.1 | 1159..4 | 1,166.8 | 1,178.9 | 1,159.4 | 1,198.7 | 1,176.8 | 1,198.7 |
| □ 발행액 | | 157.7 | 226.2 | 17.7 | 15.6 | 5.4 | 40.3 | 17.9 | 22.4 |
| **□ 평균 조달금리** | | **3.22** | **2.66** | **2.68** | **3.01** | **3.15** | **3.31** | **3.18** | **3.40** |
| □ 평균 응찰률 | | 321 | 267 | 262 | 274 | 284 | 254 | 259 | 250 |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증감) | 238.9 (+19.2) | 297.4 (+58.5) | 280.6 (+1.1) | 293.7 (+13.1) | 297.4 (+3.7) | 310.9 (+13.5) | 303.1 (+5.8) | 310.9 (+7.8) |
| | 보유비중 | 22.8 | 25.7 | 24.1 | 24.9 | 25.7 | 26.0 | 25.8 | 26.0 |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3월호, 2026.3.

[(유통시장) 최근 1년간 월평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 2025/03 | 2025/04 | 2025/05 | 2025/06 | 2025/07 | 2025/08 | 2025/09 | 2025/10 | 2025/11 | 2025/12 | 2026/01 | 2026/02 |
|---|---|---|---|---|---|---|---|---|---|---|---|---|
| 국고채(3년) | 2.590 | 2.395 | 2.331 | 2.441 | 2.465 | 2.427 | 2.464 | 2.601 | 2.880 | 3.010 | 3.044 | 3.167 |
| 국고채(5년) | 2.665 | 2.492 | 2.469 | 2.601 | 2.622 | 2.584 | 2.615 | 2.726 | 3.057 | 3.251 | 3.317 | 3.437 |
| 국고채(10년) | 2.795 | 2.658 | 2.710 | 2.842 | 2.840 | 2.815 | 2.849 | 2.933 | 3.248 | 3.366 | 3.485 | 3.612 |
| 국고채(20년) | 2.688 | 2.600 | 2.678 | 2.826 | 2.835 | 2.838 | 2.844 | 2.904 | 3.245 | 3.340 | 3.461 | 3.638 |
| 국고채(30년) | 2.581 | 2.507 | 2.584 | 2.737 | 2.738 | 2.740 | 2.754 | 2.819 | 3.169 | 3.239 | 3.358 | 3.549 |
| 국고채(50년) | 2.451 | 2.363 | 2.447 | 2.637 | 2.634 | 2.623 | 2.635 | 2.670 | 3.060 | 3.165 | 3.254 | 3.429 |

주) 월평균(영업일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평균 조달금리는 2025년 10월 2.68%에서 2026년 2월 3.40%로 상승하였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도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조달금리의 상승은 기존에 발행된 막대한 규모의 국가채무를 차환하거나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함.[27]

27) 정부는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채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3.27일(2.5조원)과 4.1일(2.5조원))을 양일에 걸쳐 실시할 계획임.(재정경제부,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 2026.3.26.)

국고채 이자비용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고채 유통·발행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재정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셋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은 아니나,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지출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 부채(D2)[28]는 전년 대비 53.5조원 증가한 1,270.8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29]

[연도별 일반정부 부채(D2) 추이]

(단위: 조원, %)

| 연도 | 일반정부 부채(D2) 금액 |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중 |
|---|---|---|
| 2019년 | 810.7 | 39.7 |
| 2020년 | 945.1 | 45.9 |
| 2021년 | 1,066.2 | 48.0 |
| 2022년 | 1,157.2 | 49.8 |
| 2023년 | 1,217.3 | 50.5 |
| 2024년 | 1,270.8 | 49.7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5.12. 및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23.을 바탕으로 재작성

28) < 부채 유형 >

| 유형 | 2024년 규모 (GDP대비) | 포괄범위 | 산출기준 | 활용 |
|---|---|---|---|---|
| 국가채무 (D1) | 1,175.0조원 (46.0%)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 국가재정 운용계획 |
| 일반정부 부채 (D2) | 1,270.8조원 (49.7%) | D1 + 비영리공공기관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국제비교 (IMF, OECD) |
| 공공부문 부채 (D3) | 1,738.6조원 (68.0%) | D2 + 비금융공기업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5.12.

29)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에서 일반정부 부채비율 확정치는 2024년까지이고, 2025년부터는 전망치를 나타냄. 각국과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 2026년 추경안의 국가채무 비율이 아닌 2024년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사용함.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참고하여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4년 49.82%[30]로 기축통화국인 미국(122.32%), 영국(101.23%), 일본(236.11%)에 비해 낮고 G7(123.98%), EU(82.43%), 선진국(109.05%)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의 증가속도는 주요국 대비 빠른 편에 속함. 2017년 대비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1.81%p로 G7(6.52%p), EU(△0.89%p), 선진국(5.82%p) 대비 높은 상황임.

[주요 국가의 2017~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단위: %, %p)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17 대비 차이 |
|---|---|---|---|---|---|---|---|---|---|
| **한국** | **38.01** | **37.85** | **39.73** | **45.92** | **47.99** | **49.80** | **50.54** | **49.82** | **11.81** |
| 미국 | 106.37 | 107.63 | 108.75 | 132.51 | 125.01 | 119.10 | 119.84 | 122.32 | 15.95 |
| 영국 | 86.72 | 86.35 | 85.66 | 105.84 | 105.13 | 99.61 | 100.35 | 101.23 | 14.51 |
| 프랑스 | 98.72 | 98.49 | 98.10 | 114.91 | 112.79 | 111.37 | 109.62 | 113.15 | 14.43 |
| 독일 | 63.99 | 60.758 | 58.68 | 68.04 | 67.99 | 64.44 | 62.38 | 63.47 | △0.52 |
| 이탈리아 | 133.74 | 134.20 | 133.90 | 154.38 | 145.81 | 138.35 | 134.64 | 135.33 | 1.59 |
| 스페인 | 101.14 | 99.72 | 97.58 | 119.18 | 115.59 | 109.23 | 105.07 | 101.65 | 0.51 |
| 호주 | 79.06 | 74.59 | 71.01 | 83.18 | 82.40 | 78.38 | 78.51 | 80.79 | 1.73 |
| 캐나다 | 90.94 | 90.78 | 90.21 | 118.07 | 112.62 | 104.21 | 107.71 | 111.30 | 20.36 |
| 중국 | 53.90 | 55.58 | 59.44 | 69.04 | 70.15 | 75.45 | 82.01 | 88.32 | 34.42 |
| 일본 | 231.32 | 232.38 | 236.38 | 258.37 | 253.65 | 248.25 | 240.46 | 236.11 | 4.79 |
| 대만 | 34.46 | 33.83 | 32.61 | 31.96 | 30.09 | 29.48 | 29.04 | 26.35 | △8.11 |
| G7 | 117.46 | 117.28 | 118.22 | 139.68 | 132.41 | 124.60 | 123.12 | 123.98 | 6.52 |
| EU | 83.32 | 81.27 | 79.09 | 91.31 | 88.43 | 83.92 | 81.91 | 82.43 | △0.89 |
| 선진국 (Advanced Economics) | 103.23 | 102.75 | 103.81 | 122.16 | 115.62 | 109.33 | 108.51 | 109.05 | 5.82 |

주)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와 기획재정부,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5.12. 간에 시차가 발생하여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한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IMF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 Indicator.ID: GGXWDG_NGDP을 재가공하여 작성

30)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2025.12.)에서는 49.7%로 발표하였으나, IMF WEO Database(2025.10.)에서는 49.82%로 표시되어 있음.

향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4년 49.82%에서 2030년 64.2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30년 예상치를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호주(49.36%), 대만(9.84%)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예상됨.

[주요 국가의 2024~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전망치]

(단위: %, %p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24 대비 차이 |
|---|---|---|---|---|---|---|---|---|
| **한국** | **49.82** | **53.37** | **56.66** | **58.89** | **60.94** | **62.73** | **64.29** | **14.47** |
| 미국 | 122.32 | 125.05 | 128.75 | 132.69 | 136.64 | 140.13 | 143.39 | 21.07 |
| 영국 | 101.23 | 103.36 | 104.77 | 105.39 | 105.83 | 105.86 | 105.42 | 4.19 |
| 프랑스 | 113.15 | 116.51 | 119.56 | 122.14 | 124.55 | 126.97 | 129.43 | 16.28 |
| 독일 | 63.47 | 64.42 | 66.00 | 67.82 | 69.65 | 71.56 | 73.58 | 10.11 |
| 이탈리아 | 135.33 | 136.84 | 138.30 | 138.48 | 137.86 | 137.31 | 137.01 | 1.68 |
| 스페인 | 101.65 | 100.40 | 98.71 | 96.92 | 95.55 | 94.08 | 92.56 | △9.09 |
| 호주 | 50.72 | 51.04 | 50.73 | 50.51 | 50.16 | 49.76 | 49.36 | △1.36 |
| 캐나다 | 111.30 | 113.94 | 112.95 | 111.80 | 110.70 | 109.73 | 107.89 | △3.41 |
| 중국 | 88.32 | 96.26 | 102.32 | 106.33 | 109.70 | 112.89 | 116.14 | 27.82 |
| 일본 | 236.11 | 229.57 | 226.82 | 224.46 | 222.94 | 222.18 | 222.16 | △13.95 |
| 대만 | 26.35 | 23.42 | 20.87 | 18.17 | 15.44 | 12.65 | 9.84 | △16.51 |
| G7 | 123.98 | 125.69 | 127.96 | 130.41 | 132.91 | 135.07 | 137.17 | 13.19 |
| EU | 82.43 | 83.18 | 84.46 | 85.33 | 86.12 | 86.95 | 87.82 | 5.39 |
| 선진국 (Advanced Economics) | 109.05 | 110.25 | 111.81 | 113.60 | 115.46 | 117.04 | 118.50 | 9.45 |

주)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와 기획재정부,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5.12. 간에 시차가 발생하여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한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IMF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 Indicator.ID: GGXWDG_NGDP을 재가공하여 작성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의 증가속도 전망 역시 주요국 대비 빠른 편에 속함. 2024년 대비 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4.47%p로 G7(13.19%p), EU(5.39%p), 선진국(9.45%p) 대비 높은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유사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하는 대만은 2024년에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6.35%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낮으나 2030년에는 9.84%로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2026년 1월 발표된 IMF의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31] 우리나라는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밑돌고 있어, 현재의 지출 수요를 충족하고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향후 수년간 고령화와 관련된 정부 지출 압박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입여건의 악화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 및 조세특례 정비 등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1) IMF, “As Korea Ages, Fiscal Reforms Can Help Safeguard Government Finances(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 IMF CCUNTRY FOCUS, 2026.1.15.

# 2. 세입경정

## 가. 개 요

세입경정은 당해연도 세입이 실제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현실화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재원의 부족으로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증가함.[32)]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415조 4,190억원으로, 본예산(390조 2,334억원) 대비 25조 1,856억원(6.5%) 증액 편성하였음.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8조 6,528억원으로, 본예산(378조 5,895억원) 대비 20조 633억원(5.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6조 7,662억원으로 본예산(11조 6,439억원) 대비 5조 1,223억원(44.0%)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경정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 | | | 2026년 | | 증감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실적 | 본예산 (A) | 제1회 추경 (B) | (B-A) | 비율 |
| □ 국세수입 | 3,824,296 | 3,720,850 | 3,739,193 | 3,902,334 | 4,154,190 | 251,856 | (6.5) |
| ㅇ 일반회계 | 3,718,050 | 3,614,604 | 3,614,941 | 3,785,895 | 3,986,528 | 200,633 | (5.3) |
| ㅇ 특별회계 | 106,246 | 106,246 | 124,252 | 116,439 | 167,662 | 51,223 | (44.0) |

자료: 재정경제부

32) 2023년 및 2024년 세입경정 없이 △56.4조원,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타 회계·기금의 가용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불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음.

[2026년 국세수입 세목별 추경안 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 | | | 2026년 | | 2025년 실적比 | | 2026년 본예산比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실적(A) | 본예산(B) | 추경예산(C) | 증감 (C-A) | 증감률 (C-A)/A | 증감 (C-B) | 증감률 (C-B)/B |
| **총국세** | **3,824,296** | **3,720,850** | **3,739,193** | **3,902,334** | **4,154,190** | **414,997** | **(11.1)** | **251,856** | **(6.5)** |
| **일반회계** | **3,718,050** | **3,614,604** | **3,614,941** | **3,785,895** | **3,986,528** | **371,587** | **(10.3)** | **200,633** | **(5.3)** |
| ㅇ 내국세 | 3,381,292 | 3,291,519 | 3,302,404 | 3,438,893 | 3,681,133 | 378,730 | (11.5) | 242,240 | (7.0) |
| 1. 소득세 | 1,268,192 | 1,268,192 | 1,304,526 | 1,320,208 | 1,368,179 | 63,655 | (4.9) | 47,971 | (3.6) |
| 종합소득세 | 220,582 | 220,582 | 212,830 | 226,270 | 226,270 | 13,440 | (6.3) | - | - |
| 양도소득세 | 194,116 | 194,116 | 198,855 | 204,278 | 204,278 | 5,423 | (2.7) | - | - |
| 이자소득세 | 63,121 | 63,121 | 70,137 | 60,118 | 60,118 | △10,019 | (△14.3) | - | - |
| 배당소득세 | 46,757 | 46,757 | 45,530 | 46,423 | 46,423 | 893 | (2.0) | - | - |
| 사업소득세 | 51,060 | 51,060 | 49,625 | 52,665 | 52,665 | 3,040 | (6.1) | - | - |
| 근로소득세 | 647,310 | 647,310 | 684,216 | 684,511 | 732,482 | 48,266 | (7.1) | 47,971 | (7.0) |
| 연금소득세 | 6,914 | 6,914 | 6,880 | 8,775 | 8,775 | 1,895 | (27.5) | - | - |
| 기타소득세 | 26,647 | 26,647 | 24,021 | 24,679 | 24,679 | 658 | (2.7) | - | - |
| 퇴직소득세 | 11,685 | 11,685 | 12,430 | 12,490 | 12,490 | 60 | (0.5) | - | - |
| 2. 법인세 | 882,544 | 835,671 | 846,090 | 865,474 | 1,013,215 | 167,125 | (19.8) | 147,741 | (17.1) |
| 신고분 | 658,570 | 596,605 | 609,029 | 633,653 | 766,801 | 157,772 | (25.9) | 133,148 | (21.0) |
| 원천분 | 223,974 | 239,066 | 237,061 | 231,821 | 246,415 | 9,354 | (3.9) | 14,593 | (6.3) |
| 3. 상속증여세 | 145,059 | 154,437 | 164,799 | 170,163 | 170,163 | 5,364 | (3.3) | - | - |
| 상속세 | 84,637 | 94,015 | 100,393 | 109,468 | 109,468 | 9,075 | (9.0) | - | - |
| 증여세 | 60,422 | 60,422 | 64,406 | 60,695 | 60,695 | △3,711 | (△5.8) | - | - |
| 4. 부가가치세 | 876,388 | 833,292 | 791,790 | 866,039 | 866,039 | 74,249 | (9.4) | - | - |
| 5. 개별소비세 | 96,663 | 87,479 | 85,144 | 94,344 | 89,004 | 3,860 | (4.5) | △5,340 | (△5.7) |
| 6. 증권거래세 | 38,454 | 38,454 | 34,430 | 53,753 | 105,621 | 71,191 | (206.8) | 51,868 | (96.5) |
| 7. 인지세 | 8,836 | 8,836 | 7,637 | 7,734 | 7,734 | 97 | (1.3) | - | - |
| 8. 과년도수입 | 65,156 | 65,156 | 67,989 | 61,178 | 61,178 | △6,811 | (△10.0) | - | - |
| ㅇ 교통세 | 151,048 | 140,012 | 132,351 | 164,122 | 130,464 | △1,887 | (△1.4) | △33,658 | (△20.5) |
| ㅇ 관세 | 84,093 | 84,093 | 76,409 | 72,214 | 72,214 | △4,195 | (△5.5) | - | - |
| ㅇ 교육세 | 60,402 | 57,765 | 57,235 | 64,433 | 56,484 | △751 | (△1.3) | △7,949 | (△12.3) |
| ㅇ 종합부동산세 | 41,215 | 41,215 | 46,542 | 46,233 | 46,233 | △309 | (△0.7) | - | - |
| **특별회계** | **106,246** | **106,246** | **124,252** | **116,439** | **167,662** | **43,410** | **(34.9)** | **51,223** | **(44.0)** |
| ㅇ 주세 | 32,093 | 32,093 | 32,120 | 31,451 | 31,451 | △669 | (△2.1) | - | - |
| ㅇ 농어촌특별세 | 74,153 | 74,153 | 92,132 | 84,988 | 136,212 | 44,080 | (47.8) | 51,223 | (60.3) |

자료: 재정경제부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4개 세목을 증액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3개 세목을 감액하여 총 7개 세목을 재산정하였음.

세입경정 내역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소득세는 본예산 132조 208억원 대비 4조 7,971억원(3.6%) 증액한 136조 8,17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용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 고용호조를 이유로 근로소득세수가 68조 4,511억원에서 73조 2,482억원으로 4조 7,971억원(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함.

둘째, 법인세는 본예산 86조 5,474억원 대비 14조 7,741억원(17.1%) 증액한 101조 3,21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분이 63조 3,653억원에서 76조 6,801억원으로, 법인세 원천분이 23조 1,821억원에서 24조 6,415억원으로 각각 13조 3,148억원, 1조 4,5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 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함.

셋째,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3,753억원 대비 5조 1,868억원(96.5%) 증액한 10조 5,62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세율 0.05%)·코스닥(증권거래세율 0.20%) 등의 거래대금이 급증하였고 거래량 증가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에 기인함.[33)]

넷째, 농어촌특별세는 본예산 8조 4,988억원 대비 5조 1,223억원(60.3%) 증액한 13조 6,21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가증권시장(농어촌특별세율 0.15%)의 거래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에 기인함.[34)]

---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3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감액세목을 살펴보면, ①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9조 4,344억원 대비 5,340억원(△5.7%) 감액한 8조 9,00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본예산 16조 4,122억원 대비 3조 3,658억원(△20.5%) 감액한 13조 46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③ 교육세는 본예산 6조 4,433억원 대비 7,949억원(△12.3%) 감액한 5조 6,484억원으로 편성되었음.

감액세목은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류 수입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감액경정된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7→15%) 및 경유(10→25%)에 대한 탄력세율 확대를 적용하였고,[35]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및 담배 개별소비세의 부진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본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하게 됨.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단위: %)

| 적용 기간 | 휘발유 | 경유·LPG |
|---|---|---|
| 2021.11.12. ~ 2022.4.30. | 20 | 20 |
| 2022.5.1. ~ 2022.6.30. | 30 | 30 |
| 2022.7.1. ~ 2022.12.31. | 37 | 37 |
| 2023.1.1. ~ 2024.6.30. | 25 | 37 |
| 2024.7.1. ~ 2024.10.31. | 20 | 30 |
| 2024.11.1. ~ 2025.4.30. | 15 | 23 |
| 2025.5.1. ~ 2025.10.31 | 10 | 15 |
| 2025.11.1. ~ 2026.3.26. | 7 | 10 |
| 2026.3.27. ~ 2026.5.31. | 15 | 25 |

자료: 재정경제부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거래액 | 1만분의 15 |

35)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 · 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7조원 적은 413.8조원으로 수정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세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은 정부 전망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추산한 것임.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 구분 | 본예산 (A) | 정부 | | 국회예산정책처 | | 차이 (C-B) |
|---|---|---|---|---|---|---|
| | | 추경안 (B) | 본예산 대비 (B-A) | 전망 (C) | 본예산 대비 (C-A) | |
| 국세 | 390.2 | 415.4 | 25.2 | 413.8 | 23.5 | △1.7 |
| 근로소득세 | 68.5 | 73.2 | 4.8 | 74.6 | 6.1 | 1.3 |
| 법인세 | 86.5 | 101.3 | 14.8 | 99.4 | 12.9 | △1.9 |
| 개별소비세 | 9.4 | 8.9 | △0.5 | 8.6 | △0.8 | △0.3 |
| 증권거래세 | 5.4 | 10.6 | 5.2 | 9.1 | 3.7 | △1.5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6.4 | 13.0 | △3.4 | 12.7 | △3.7 | △0.3 |
| 교육세 | 6.4 | 5.6 | △0.8 | 5.6 | △0.8 | △0.0 |
| 농어촌특별세 | 8.5 | 13.6 | 5.1 | 13.3 | 4.8 | △0.3 |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은 다소 이른 시기에 세입예산을 증액 경정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의 세수추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증액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정부는 올해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통해 세목별 추계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은 2000년대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2020년 제1회(3.5.), 2009년(3.30.) 다음으로 가장 이른 시점(3.31.)에 제출된 것임.

[2000년대 이후 세입경정이 포함된 추경안의 세입경정 내역]

(단위: 조원)

| 연도[1] | 추경안 제출일 | 본예산[2] | 추경안 증감[3] | 국회확정 증감 | 주요 증감액 사유 |
|---|---|---|---|---|---|
| 2003 | 6.5. | 113.6 | 1.0 | 1.3 | 예산대비 세수전망 초과<br>* 법인세 +2.6, 증권거래세 △0.8, 부가세 △0.4 |
| 2005 | 9.30. | 130.6 | △4.2 | △3.5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 2009 | 3.30. | 175.4 | △11.2 | △11.4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3.7, 법인세 △5.7, 부가세 △2.1, 교통세 +1.1, 관세 △1.1 |
| 2013 | 4.18. | 216.4 | △12.0 | △6.0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0.7, 법인세 △2.1, 부가세 △2.3, 관세 △0.7, 기타 △0.2 |
| 2015 | 7.6. | 221.1 | △5.6 | △5.4 |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 2016 | 7.26. | 222.9 | 9.8 | 9.8 |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br>* 소득세 +2.5, 법인세 +5.4, 부가세 +1.7, 교통세 +0.7, 관세 △0.4 |
| 2017 | 6.7. | 242.3 | 8.8 | 8.8 | 일자리 대책 추진<br>* 소득세 +3.9, 법인세 +3.3, 부가세 +1.0, 상증세 +0.6 |
| 2020 제1회 | 3.5. | 292.0 | △3.2 | △0.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0.1, 부가세 △0.2, 개소세 △0.4, 교육세 △0.1 |
| 2020 제3회 | 6.4. | 291.2 | △11.4 | △11.4 | 코로나19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br>* 법인세 △5.8, 부가세 △4.1, 관세 △1.1, 개소세 △0.4, 증권거래세 +0.6, 과년도수입 △0.5, 기타 △0.1 |
| 2021 제2회 | 7.2. | 282.7 | 31.5 | 31.5 |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우발세수<br>* 양도세 +8.6, 배당소득 +1.1, 법인세 +12.2, 부가세 +2.7, 상속세 +2.3, 증여세 +0.5, 증권거래세 +3.2, 농특세 +0.9 |
| 2022 제2회 | 5.13. | 343.4 | 53.3 | 53.3 | 법인실적 개선, 고용 · 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br>* 법인세 +29.1, 근로소득 +10.3, 부가세 +1.8, 양도소득 +11.8, 상증세 +2.8, 교통세 △4.5, 교육세 △4.5, 종부세 +1.2, 관세 +1.3 |
| 2025 제2회 | 6.23. | 382.4 | △10.3 | - | 법인실적 증가세 둔화 및 작년 12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4.7, 부가세 △4.3, 상속세 +0.9, 교통세 △1.1, 개소세 △0.9, 교육세 △0.3 |

주 1) 국세수입 경정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만 작성하였음
2)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1회만 제출된 경우 본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수 제출된 경우 직전의 추경예산을 의미함
3) 2009년과 2013년 추경은 세입경정 규모에 세외수입(2009년: +0.2조원, 2013년: △6.0조원)이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10년간 세입예산을 증액경정한 사례는 2016년, 2017년, 2021년 제2회, 2022년 제2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액경정 기준으로는 가장 이른 시점에 제출되었고 경정 규모로는 2022년 제2회(+53.3조원), 2021년 제2회(+31.5조원)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큼.

이번 추경안은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6.5% 증액 경정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세수추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로, 2021~2025년 본예산 대비 세수실적 오차는 각각 21.7%, 15.3%, △14.1% △8.4%, △8.5%로 큰 폭으로 발생한 바 있고, 이번 추경안과 같이 올해 국세수입이 수납될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6.5% 세수오차가 발생하게 됨.

[2016~2026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 구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예산 | 본예산(A) | 222.9 | 242.3 | 268.1 | 294.8 | 292.0 | 282.7 | 343.4 | 400.5 | 367.3 | 382.4 | 390.2 |
| | 추경예산(B) | 232.7 | 251.1 | 268.1 | 294.8 | 279.7 | 314.3 | 396.6 | 341.4 | 337.7 | 372.1 | 415.4 |
| 결산(C) | | 242.6 | 265.4 | 293.6 | 293.5 | 285.5 | 344.1 | 395.9 | 344.1 | 336.5 | 373.9 | - |
| 차이 | 본예산 대비 (C-A) | 19.6 | 23.1 | 25.4 | △1.3 | △6.5 | 61.3 | 52.6 | △56.4 | △30.8 | △8.5 | - |
| | 추경 대비 (C-B) | 9.8 | 14.3 | 25.4 | △1.3 | 5.8 | 29.8 | △0.7 | 2.7 | △1.2 | 1.8 | - |
| 오차율 | 본예산 대비 [(C-A)/A] | 8.8 | 9.5 | 9.5 | △0.5 | △2.2 | 21.7 | 15.3 | △14.1 | △8.4 | 2.2 | - |
| | 추경 대비 [(C-B)/B] | 4.2 | 5.7 | 9.5 | △0.5 | 2.1 | 9.5 | △0.2 | 0.8 | △0.4 | 0.5 | - |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정부가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세입예산을 증액 경정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이 실제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바,[36]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기초가 되는 본예산 세입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증액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부는 2026년 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55조의2[37]에 따른 9월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를 통해 세목별 추계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에 대해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본예산 당시의 세입예산 전망을 유지하고 별도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세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수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는 증액경정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당초 세수전망을 유지하였고, ② 2026년 5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까지 주택 매매 및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38] 양도소득세·증여세를 증액경정하지 않았으며, ③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39] ④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통주택 공시가격(2026.3.17.)이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과세대상이 속해 있는 서울(전년 대비 18.67% 상승), 경기(전년 대비 6.38%) 위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40]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41]

---

36)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산업 호황, 증권거래량 급증 등의 세입여건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37)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38) 뉴스1, “양도세 중과 임박... 강남발 갈아타기 도미노에 외곽 매물 확산”, 2026.3.23.
뉴스1, “3월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 641건... 양도세 종료 앞두고 거래 급증”, 2026.3.20.
한국경제, “강남 아파트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증여는 두배 늘었다”, 2026.3.12.

39) 참고로 기획예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3.)」에서도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등을 1월 국세수입의 증가요인으로 본 바 있음.

40)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 5년만에 최고 상승률”, 2026.3.17.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법인세를 대폭 증액하였으나,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거나 유가·환율 상승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될 경우 증액경정에 비해 세수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음.

AI 산업 성장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과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① 반도체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2%p 내년 0.3%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기본전망 대비 올해 △0.2%p, 내년 △0.3%p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AI 산업 성장의 시나리오별 성장 및 물가 전망]

| 구분 | 주요내용 |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전망 | | | 시나리오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 |
|---|---|---|---|---|---|---|---|
| | | 2025 | 2026e | 2027e | 2025 | 2026e | 2027e |
| 기본 |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세의 완만한 둔화 (2025 16%, 2026 10%, 2027년 8%) | 1.0% | 2.0% | 1.8% | 2.1% | 2.2% | 2.0% |
| 낙관적 시나리오 | 2025년(16%)에 근접하는 수출물량 증가세 지속 | - | +0.2%p | +0.3%p | - | +0.1%p | +0.1%p |
| 비관적 시나리오 | 금년 중 6% 내외, 내년 중 3% 내외로 증가세 빠르게 둔화 | - | △0.2%p | △0.3%p | - | △0.1%p | △0.1%p |

자료: 한국은행, "2026년 2월 경제전망(Indigo Book)", 2026.2.

또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국제 유가 변동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42] ① (기준 시나리오) 2026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p 감소하나 ② (비관적 시나리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p 하락하며 ③ (오일 쇼크 시나리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최소 0.8%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있음.

41)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① 종합소득세는 경상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재추계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경정하지 않았고, ②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잠김 등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③ 중동 전쟁, 미국 관세정책 방향 등에 따라 환율 및 수입액 등의 전망이 불확실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경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42) 현대경제연구원,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6.3.3.

[2026년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상승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 변수 | 국제유가<br>연평균 80달러 | 국제유가<br>연평균 100달러 | 국제유가<br>연평균 150달러 |
|---|---|---|---|
| 경제성장률 | △ 0.1 %p | △ 0.3 %p | △ 0.8 %p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0.4 %p | + 1.1 %p | + 2.9 %p |
| 경상수지 | △ 58억 달러 | △ 260억 달러 | △ 767억 달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6.3.3.

최근 OECD의 중간 경제전망(2026.3.)에서는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조정하였는데,[43] 이처럼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증액경정한 세입예산안에 비해 세수실적이 부진할 우려가 있음.[44]

43)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2026.3. p.6.

44)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규모가 큰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경제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세목이 아니고, 추경안 집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p 견인되어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함.

# 3. 추경안의 재원

## 가. 개 요

정부는 추경안의 총 26.2조원(국채상환 1조원 포함)에 대한 재원을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25.2조원을 세입 증액경정하고, 기금 자체재원 1.0조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당할 계획임.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 규 모 | | 재 원 | |
|---|---|---|---|
| 세출 증액 | 26.2 | 세입경정 | 25.2 |
| - 고유가 부담 완화 | 10.1 | 기금 자체재원 | 1.0 |
| - 민생 안정 | 2.8 | 전년도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 - |
|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2.6 | 정부출자수입 등 | - |
| - 지방재정 보강 등 | 9.7 | 국고채 추가발행 및 차입금 | - |
| - 국채상환 | 1.0 | 지출 구조조정 | - |
| 합계 | 26.2 | 합계 | 26.2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일반적으로 추경안의 주요 재원 조달방식으로는 ① 국고채 추가발행, ② 기금 여유재원 활용, ③ 지출 구조조정, ④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한국은행 잉여금 포함), ⑤ 당해연도 초과세수의 증액경정 등이 있으며,

이 중 이번 추경안의 재원조달 방식은 ② 기금 여유재원 활용(1.0조원) 및 ⑤ 당해연도 초과세수(25.2조원)임.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세부 재원]

(단위: 백만원, %)

| 항 목 | 재원 규모 | 비 중 |
|---|---|---|
| 초과세수 | 25,185,632 | 96.1 |
| 기금 여유자금 등 | 1,014,077 | 3.9 |
| 합계 | 26,199,709 | 100.0 |

자료: 기획예산처, 국고채원금상환 포함 규모

[역대 추경안 재원 조달방식]

| 구분 | | 국고채 추가발행 | 기금 재원 | 지출 구조조정 |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 당해연도 초과세수 |
|---|---|---|---|---|---|---|
| 2008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2013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 2017 | | × | ○ | × | ○ | ○ |
| 2018 | | × | ○ | × | ○ | × |
| 2019 | | × | ○ | × | ○ | × |
| 2020 | 제1회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2021 | 제1회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2022 | 제1회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2025 | 제1회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주) 정부안 기준이며,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재가공하여 작성

이번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기금은 11개임.

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기후대응기금・고용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은 기금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해당 기금 사업을 증액하는데 활용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여유자금을 타 기금 전출에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에 활용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재원 중 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규모 | 비고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20,000 |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 영화발전기금 | 20,000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550,000 | |
| 기후대응기금 | 41,064 | |
| 고용보험기금 | 18,559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89,944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31,556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231,805 | 타 기금 전출 |
| 정보통신진흥기금 | 3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
| 관광진흥개발기금 | 3,660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5,689 | |
| 합계 | 1,012,577 | - |

자료: 기획예산처

## 나. 검토의견

**첫째, 이번 추경안의 재원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이 마감되어 확정된 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가용재원을 소극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음.**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집행잔액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0.1조원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3.1조원 규모로 집계됨.[45)]

[2025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 총세입 (A) | 총세출 (B) | 결산상 잉여금 (A-B) | 이월 (C) | 세계잉여금 (A-B-C) |
|---|---|---|---|---|---|
| 합 계 | 597.9 | 591.0 | 6.9 | 3.7 | 3.2 |
| 일반회계 | 493.2 | 491.0 | 2.2 | 2.1 | 0.1 |
| 특별회계 | 104.7 | 100.0 | 4.7 | 1.6 | 3.1 |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발표”, 2026.2.10.

45)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발표”, 2026.2.10.

[세계잉여금 처리방법 및 절차]

| 순서 | 처리방법 |
|---|---|
| ① |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활용(선택) |
| ② | ①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30/10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의무) |
| ③ | ①과 ②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100 이상을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채무, 국가배상금 등의 상환에 사용(의무) |
| ④ | ①부터 ③까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선택) |
| ⑤ |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의무) |

자료:「국가재정법」 제90조 정리

재정경제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0.1조원)은「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1조원)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통해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828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46)47)]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 채무 증가와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인 세계잉여금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왔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총세입·총세출이 마감되어 그 금액이 확정된 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가용재원을 소극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보임.

46)「국가재정법」 제90조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① 2025년은 국세수입 경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본예산대로 지급하여 지방교부세는 정산할 것이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일부 정산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 국채 및 차입금 등 상환으로 활용한 이후 나머지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활용할 수 있음. 참고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이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함.

47)「국가재정법」 제90조제7항에서는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은 4월 초중순(예: 2025.4.11.)에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추경안 제출 시점으로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주체에게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신속히 통합작성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3.31.) 시점에 세계잉여금 사용·출연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에서 이미 2월에 확정된 한국은행 잉여금과 가결산 등으로 파악 가능한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세입추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재정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편성 시점의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을 예산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함.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수납이 완료되었거나 규모 추산이 가능한 주요 세외수입이 재원에서 제외되어 있음.

먼저,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48]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며[49], 최종 잔여분(이른바 "한은 잉여금")을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함.

한은 잉여금은 통상 2월 말 결산 완료 후 국고에 납입되는데, 이번 추경안 편성 시점에서 해당 잉여금은 이미 수납이 완료되어 국고에 편입된 기확정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참고로, 2025년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15조 3,275억원으로, 당기순이익 중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잉여금은 10조 7,060억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7조 2,691억원 대비 3조 4,369억원 초과 수납되었음.

---

48)「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이익금처분) ① 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025년 241억원)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처리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당기순이익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정부납입금 (한은잉여금) |
|---|---|---|---|---|
| 2018 | 32,137 | 9,641 | 354 | 22,142 |
| 2019 | 53,131 | 15,939 | 339 | 36,853 |
| 2020 | 73,659 | 22,098 | 341 | 51,220 |
| 2021 | 78,638 | 23,592 | 266 | 54,781 |
| 2022 | 25,452 | 7,636 | 270 | 17,546 |
| 2023 | 13,622 | 4,087 | 315 | 9,221 |
| 2024 | 78,189 | 23,457 | 241 | 54,491 |
| 2025 | 153,275 | 45,982 | 232 | 107,060 |

주) 임의적립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임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 정부 출자기업의 배당금 또한 추경안 제출 시점에 결산 실적에 기반한 정부배당액이 확정되었거나, 가결산을 통해 실질적인 배당 수익 추산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 예산 대비 초과수납분을 반영하지 않았음.

정부 출자기업은「국유재산법」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라 2~3월 중 배당협의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 규모를 확정함.[50][51] 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은 2조 2,987억원으로 전년(2조 1,322억원) 대비 1,665억원 증가한 바 있음.[52]

---

50)「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상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 · 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1) 배당절차 : 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 배당협의체 운영(2월) → 배당 확정(3~4월) → 수납(4~5월) → 배당실적 국회 보고 및 공표(5월)

추경안 제출 시점에서는 결산 실적에 기반한 실배당액이 확정되었거나 가결산을 통해 실질적인 배당 수익 추산이 가능한 상태이고, 2026년 실제 수납액과 본예산 편성 시점의 추산치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따라서 이미 법령에 따라 수납이 완료되었거나 배당 규모가 구체적으로 추산 가능한 한은 잉여금 및 정부출자수입은 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입추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53]

52) 예컨대 2026년 3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을 발표한 출자기관의 정부배당 예상액을 추산해보면, 2025년 정부배당금 납부실적 상위 2위인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6년 당기순이익(2조 3,858억원)과 2025년 배당성향(34.98%)을 고려할 때 2026년 정부배당금(예상)은 8,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6년 당기순이익(6,944억원)과 2025년 배당성향(46.0%)을 고려할 때 2026년 정부배당금(예상)은 3,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 증가할 것으로 보임.

53) 기획예산처는 추경안 편성 시 한국은행 잉여금 등의 세입경정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초과세수 전망의 결손 가능성, 세외수입 징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출자수입의 경우 아직 배당확정이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임의로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임.

# 4. 예비비

## 가. 개 요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54] 및 「국가재정법」[55]에 따라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으로서,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됨.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조원(125.0%) 증액된 9조원이 편성되었으며, 목적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5조원(156.3%)이 증액된 8조 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한 8,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56]

[2026년도 예비비 사업 추경안]

(단위: 억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예비비 | 24,000 | 38,000 | 40,000 | 90,000 | 50,000 | 125.0 |
| 목적예비비 | 16,000 | 26,000 | 32,000 | 82,000 | 50,000 | 156.3 |
| 일반예비비 | 8,000 | 12,000 | 8,000 | 8,000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54)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5)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56) 일반회계-예비비(3069-300)(예산실)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음.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57]이 있는 경우 예비비의 편성이 가능하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음.[58]

[2019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 2019 예산 | 2020 예산 | 2021 예산 | 2022 예산 | 2023 예산 | 2024 예산 | 2025 예산 | 2026 | |
|---|---|---|---|---|---|---|---|---|---|
| | | | | | | | | 본예산 | 추경안 |
| 합 계 | 30,000 | 56,100 | 97,000 | 55,000 | 46,000 | 42,000 | 38,000 | 40,000 | 90,000 |
| 목적예비비 | 18,000 | 42,100 | 81,000 | 37,000 | 28,000 | 22,000 | 26,000 | 32,000 | 82,000 |
| 일반예비비 | 12,000 | 14,000 | 16,000 | 18,000 | 18,000 | 20,000 | 12,000 | 8,000 | 8,000 |

주) 2019 ~ 2025년도 예비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19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은 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5조 6,100억원, 2021년 9조 7,000억원, 2022년 5조 5,000억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비비 편성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3조 4,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적예비비 2,000억원(△5.9%)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확정예산 기준으로 목적예비비의 지출대상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법정 지출의 부족액,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국제부담금, 긴급구호, 정부조직개편임.

57) (예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58)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예산안(A) | 국회확정(B) | 증감(B-A) | (B-A)/A |
|---|---|---|---|---|
| 예비비 | 4,200,000 | 4,000,000 | △200,000 | △4.8 |
| 목적예비비 | 3,400,000 | 3,200,000 | △200,000 | △5.9 |
| 일반예비비 | 800,000 | 800,000 | - | - |

자료: 기획예산처

이번 추경안에서는 목적예비비의 사용목적에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추가하고,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하고,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및 소요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워 산업통상부의 일반 세출사업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하되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예산총칙 상 목적예비비 금액 및 사용목적 비교]

| 2026년도 본예산<br>예산총칙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br>예산총칙 |
|---|---|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 나. 검토의견

**첫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전액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한 것은 예비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을 맞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로 인한 정유사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줄 정책적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재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현행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비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는데,[59]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목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유발되는 민간 부문의 손실보상 소요는 해당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정적 결과로 봐야 할 것임.

비록 향후 국제 유가의 변동폭과 환율의 추이,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최종적인 손실보상 규모를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확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60] 5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세부적인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지출 계획의 제시 없이 예비비 형태로 전액 편성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61]

---

59)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60)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3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장관 고시)을 제정하여 손실보전의 대략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음. 해당 고시에서는 석유정제업자가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석유정제업자별 원가 등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산정한 후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법률·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석유정제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이를 검증하여 적정 손실액 및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시 제정에도 불구하고, 5조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산정 기준을 부처 간 내부 협의로 결정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전액 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61) 향후 타 부처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신규 재정 지출소요가 발생할 때에도 세부적인 산출내역 작성을 생략하고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려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기초 소요액은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외 변수에 의한 불가피한 초과 변동분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목적예비비로 대처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정부는 목적예비비의 지출대상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포함시켜 현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추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보강,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음.[62]

중동 상황 고조화로 인해 원유·나프타 등의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예비비 지출의 대상이되는 공급 위기 대응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 위험 또는 위기상황에서의 조치에 해당함.[63]

---

62)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2026.3.

6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 통상 · 정치 · 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 · 대비 · 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안보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 · 통상 · 정치 · 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7. "공급망 위기상황"이란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 · 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

예컨대 정부는 중동 상황이 고조화되어 나프타 등 주요 석유류 원자재의 수급이 문제되자, 나프타를 위기품목으로 지정(3.23.)하여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수출통제)(3.27.), 나프타 취급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2025~2026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64)]

예비비는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안보품목의 확보, 도입 및 공급을 위한 구매자금 융·출자 등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예비비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현황]

| |
|---|
| ㅇ (지원대상) 핵심품목 · 서비스의 ① 확보 · 도입, ② 국내외 시설투자 · 운영, ③ 기술도입 · 상용화 등 안정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 (법 38조) |
| ㅇ (지원부문) 공급망안정화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 부문* 중점 지원<br>* 중점지원 4대 부문 : ①첨단전략사업, ②자원안보, ③경제필수재, ④물류·인프라 |
| ㅇ (기금 재원)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br>- 2026년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10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2025.12.9.)<br>* 국가채무보증한도 : 2025년도 10조원, 2026년도 10조원 |
| ㅇ (지원실적) 2025년 총 70건 사업 앞 7조 1,329억원 지원 승인<br>- 2024년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 공식 출범 이후 총 92건의 사업에 대해 9조 2,448억원 승인<br>-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망안정화펀드 조성 지원 |
| ㅇ (부문별 실적)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자원안보(40.5%), 첨단전략산업(33.5%), 경제필수재(22.9%) 중점 지원 |
| ㅇ (중소·중견기업) 대외 여건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 총 34건, 1조 8억원 지원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을 말한다.

64)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6월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기금임.
구체적으로는 ①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 정부·한국은행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③ 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 출연금, ④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⑤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을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참고로 지금까지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부문별 지원실적은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면경제필수재, 물류인프라・서비스 순으로 나타나는데, 중동 상황으로 인한 자원안보 및 물류인프라 등의 수급 교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원안보용 원자재 수급 및 물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원실적이 부진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있음.

[2024~20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 부문별·유형별 지원내역(승인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2024년 | | | 2025년 | | |
|---|---|---|---|---|---|---|
| | 대출 | 투자 | 소계 | 대출 | 투자 | 소계 |
| 첨단전략산업 | 12,200 (8건) | 1,000 (1건) | 13,200 (9건) | 23,771 (18건) | 150 (1건) | 23,921 (19건) |
| 이차전지 | 8,700 (6건) | 1,000 (1건) | 9,700 (7건) | 16,721 (14건) | 150 (1건) | 16,871 (15건) |
| 반도체 | 3,500 (2건) | - | 3,500 (2건) | 7,050 (4건) | - | 7,050 (4건) |
| 디스플레이 | - | - | - | - | - | - |
| 바이오 | - | - | - | - | - | - |
| 자원안보 | 3,990 (4건) | - | 3,990 (4건) | 28,909 (15건) | - | 28,909 (15건) |
| 핵심광물 | 3,990 (4건) | - | 3,990 (4건) | 6,320 (8건) | - | 6,320 (8건) |
| 에너지 | - | - | - | 22,589 (7건) | - | 22,589 (7건) |
| 국민경제 필수재 | 3,929 (9건) | - | 3,929 (9건) | 16,300 (29건) | - | 16,300 (29건) |
| 식량 | 810 (4건) | - | 810 (4건) | 8,110 (14건) | - | 8,110 (14건) |
| 산업원료 | 3,114 (4건) | - | 3,114 (4건) | 4,876 (10건) | - | 4,876 (10건) |
| 기계장비 | 5 (1건) | - | 5 (1건) | 3,314 (5건) | - | 3,314 (5건) |
| 물류인프라 ・서비스 | - | - | - | 2,000 (6건) | 200 (1건) | 2,200 (7건) |
| 운송 | - | - | - | 2,000 (6건) | 200 (1건) | 2,200 (7건) |
| 비축 | - | - | - | - | - | - |
| 항만 | - | - | - | - | - | - |
| 합계 | 20,119 (21건) | 1,000 (1건) | 21,119 (22건) | 70,979 (68건) | 350 (2건) | 71,329 (70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Ⅲ. 유형별 검토

## 1. 개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정부는 ① 고유가 부담 완화, ② 민생 안정, ③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④ 지방재정 보강 등, ⑤ 국채 상환 등을 통해 적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임.[1)]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 | | |
|---|---|---|
| **기본방향** | **총 26.2조원** | |
| |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① 고유가 대응, ② 민생 안정,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 |
| **주요내용** | **1 고유가 부담 완화** | **10.1조원** |
| | ▸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 5.1조원 |
|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조원 |
| | ▸ 에너지 복지 | 0.2조원 |
| | **2 민생 안정** | **2.8조원** |
| | ▸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 0.8조원 |
| | ▸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 1.9조원 |
| | ▸ 고물가 대응 | 0.1조원 |
| | **3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2.6조원** |
| | ▸ 피해기업・산업 지원 | 1.1조원 |
| | ▸ 에너지・신산업 전환 | 0.8조원 |
| | ▸ 공급망 안정화 | 0.7조원 |
| | **4 지방재정 보강 등** | **9.7조원** |
| | *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금) 증액 등 | |
| | **5 국채 상환** | **1.0조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89)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697)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기획예산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6.3.31.

## 2. 고유가 부담 완화

### 가. 개요

추경안의 고유가 부담 완화 관련 사업은 8개 부처 14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조 1,060억원이 증액된 12조 5,066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획예산처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예비비 총 5조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안전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4조 8,25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개 사업, 축산발전기금 1개 사업으로,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사업 42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22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78억원 등 총 792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개 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468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106억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 29억원 총 603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그 외에도 전국민 부담 경감 및 고유가 피해지원 등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산림청 20억원, 보건복지부 5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466억원, 국토교통부 877억원이 추경안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고유가 부담 완화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B) | 증감액 (B-A) |
| 기획예산처 | 일반회계 | 예비비 | 24,000 | 40,000 | 90,000 | 50,000 |
| 소계 | | | 24,000 | 40,000 | 90,000 | 50,000 |
| 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고유가 피해지원금 | - | - | 48,252 | 48,252 |
| 소계 | | | - | - | 48,252 | 48,252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 - | 156 | 198 | 42 |
| | | 농업자금이차보전 | 6,819 | 7,297 | 7,318 | 22 |
| |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 | - | 78 | 78 |
| | 축산발전기금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 3,000 | 2,500 | 3,150 | 650 |
| 소계 | | | 9,819 | 9,953 | 10,744 | 792 |
| 해양수산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 | - | 468 | 468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 | 169 | 187 | 292 | 106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244 | 257 | 286 | 29 |
| 소계 | | | 413 | 443 | 1,046 | 603 |
| 산림청 | 일반회계 | 산림헬기 도입·운영 | 939 | 1,938 | 1,958 | 20 |
| 소계 | | | 939 | 1,938 | 1,958 | 20 |
|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보험정책사업관리 | 9 | 4 | 54 | 50 |
| 소계 | | | 9 | 4 | 54 | 50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에너지바우처 | - | 4,940 | 5,043 | 102 |
| | 기후대응기금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150 | 1,150 | 1,513 | 363 |
| 소계 | | | 1,150 | 6,090 | 6,555 | 466 |
|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2,375 | 5,580 | 6,457 | 877 |
| 소계 | | | 2,375 | 5,580 | 6,457 | 877 |
| **8개 부처** | | **14개 사업** | **38,705** | **64,008** | **165,066** | **101,060** |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전액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안정화기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목적예비비의 사용목적에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추가하고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등을 보강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임.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이 아닌 전액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는 예비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기초 소요액은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목적예비비로 대처하는 것이 부합할 것으로 보임.

또한 목적예비비 지출 대상에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중동 상황 고조화로 인해 원유·나프타 등의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 위험 또는 위기 상황에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2] 예비비는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

2)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6월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기금임.
2025~2026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동 상황이 고조화되어 나프타 등 주요 석유류 원자재의 수급이 문제되자, 나프타를 위기품목으로 지정(3.23.)하여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수출통제)(3.27.), 나프타 취급기업에 대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 등을 추진하고 있음.

**둘째, 정부는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보호 및 부담 완화 효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산정 등 사전 준비를 신속히 이행하고, 보조금 지급주기 단축, 이용 촉진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유사사업인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당시 예산 확정일과 2차 지급을 위한 최초 신청일 간 상당한 시차(만 80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보호 및 경기부양 효과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산정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의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연안화물선에 대해 경유 유류세 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분기별'로 유류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방해양수산청이 이를 접수·심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나, 유류비 부담과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주기 단축 또는 선지급·정산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은 등유·LPG 사용 20만가구에 5만원 지급을 위하여 10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연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에 비해 실제 사용액이 저조하므로[3] 그 원인분석 및 절차 간소화 등 이용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력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매칭 지방비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지방비와 매칭되는 형태로 지원되는데, 현행 보조율 구조하에서는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액이 재정력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다층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최근 3년간 에너지바우처 실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발급액 (a) | 436,409 | 485,043 | 521,212 |
| 사용액 (b) | 267,977 | 342,198 | 376,239 |
| 사용률 (b/a) | 61.4% | 70.6% | 72.2% |
| 미사용액 | 168,432 | 142,845 | 144,973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비용 지원’**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급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서울 40%, 그 외 50%)으로, 추경안[4]에 따른 정부 분담액 877억 800만원에 대응하여 추가로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지방 분담액이 969억 200만원에 달하므로, 지방비가 적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추경 증액분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정부는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의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의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면세경유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일반유보다 면세유 가격이 낮아 사용량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등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면세유와 일반유의 실질적인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세유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5]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집행 중 예산을 변경하여 홍보 등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 재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6]

---

4)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모두의카드 사업, 종전 “K-패스” 사업에서 2026년 사업 명칭 변경)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에게 정률 또는 정액의 환급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은 기본형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2026년 추경안에 따른 모두의카드(기본형) 제도변경 내용]

| 환급률 | 일반 | 청년 | 2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 3자녀 | 저소득 |
|---|---|---|---|---|---|---|
| 기존 | 20% | 30% | 30% | 30% | 50% | 53.3% |
| 추경안 | 30% | 45% | 45% | 45% | 75% | 83.3% |

5) 해양수산부는 면세유에 착색제 혼합, 면세유 구입 전용카드 도입, 수협 직영주유소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 등은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에도 적발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 중 12억 6,100만원을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사업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3. 민생 안정

## 가. 개요

추경안의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은 13개 부처 60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조 7,703억원이 증액된 28조 1,690억원이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7개 사업,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개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융자) 3,2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창업저변확대 1,648억원 등 총 1조 1,8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5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고용보험기금 1개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1개 사업, 근로복지진흥기금 2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일반) 2,530억원,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89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01억원 등 총 5,3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7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의료급여 2,828억원, 긴급복지 131억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9억원 등 총 3,213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3개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2개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3개 사업, 영화발전기금 1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K-콘텐츠 펀드 출자 500억원, 영화정책지원 361억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174억원 등 총 1,2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국세청 2,13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79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5억원, 해양수산부 300억원, 교육부 286억원, 국토교통부 279억원, 행정안전부 195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42억원, 조달청 26억원 등이 추경안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민생 안정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B) | 증감액 (B-A) |
| 국세청 | 일반회계 | 압류재산공매 | 43 | 149 | 2,282 | 2,134 |
| 소계 | | | 43 | 149 | 2,282 | 2,134 |
| 조달청 | 조달특별회계 |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 30 | 34 | 60 | 26 |
| 소계 | | | 30 | 34 | 60 | 26 |
| 교육부 | 일반회계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 25 | 28 | 31 | 3 |
|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1,827 | 2,625 | 2,908 | 283 |
| 소계 | | | 1,852 | 2,652 | 2,938 | 28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2,184 | 2,971 | 3,114 | 143 |
| |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976 | 1,206 | 1,371 | 165 |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977 | 1,164 | 1,329 | 165 |
| |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902 | 1,263 | 1,428 | 165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1,061 | 1,673 | 1,760 | 87 |
| | 정보통신 진흥기금 | AI통합바우처 | - | 898 | 1,098 | 200 |
| 소계 | | | 6,100 | 9,175 | 10,099 | 925 |
| 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 | - | 195 | 195 |
| 소계 | | | - | - | 195 | 195 |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회계 | 예술창작활동 지원 | 234 | 326 | 341 | 15 |
| | | K-콘텐츠 펀드 출자 | 2,950 | 4,300 | 4,800 | 500 |
| |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443 | 632 | 658 | 26 |
| | 문화예술 진흥기금 | 문화예술향유 지원 | 2,806 | 3,276 | 3,327 | 51 |
| | | 예술인력 육성 | 224 | 239 | 278 | 39 |
| | 관광진흥 개발기금 | 국내관광 역량 강화 | 428 | 642 | 816 | 174 |
| |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131 | 143 | 199 | 57 |
| |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 150 | 156 | 173 | 17 |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B) | 증감액 (B-A) |
| | 영화발전기금 | 영화정책지원 | 165 | 281 | 642 | 361 |
| 소계 | | | 7,530 | 9,995 | 11,235 | 1,240 |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 2,341 | 3,047 | 706 |
| | 농지관리기금 | 농지이용관리지원 | 135 | 139 | 727 | 588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 | 1,227 | 1,727 | 500 |
| 소계 | | | 135 | 3,707 | 5,501 | 1,794 |
| 해양수산부 | 수산발전기금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1,017 | 1,017 | 1,317 | 300 |
| 소계 | | | 1,017 | 1,017 | 1,317 | 300 |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창업저변확대 | 203 | 248 | 1,896 | 1,648 |
| |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 2,083 | 2,399 | 3,383 | 984 |
| | |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 872 | 693 | 746 | 54 |
| | | 기술혁신기반조성 | 165 | 434 | 559 | 125 |
| | | 중소기업 재기지원 | 166 | 150 | 250 | 100 |
| | | 마케팅지원사업 | 218 | 249 | 315 | 66 |
| | | 창업사업화지원 | 4,036 | 4,618 | 5,369 | 751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5,000 | 8,200 | 9,900 | 1,700 |
|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16,358 | 16,058 | 17,558 | 1,500 |
| |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7,501 | 6,125 | 6,625 | 500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지원(융자) | 37,700 | 33,620 | 36,820 | 3,200 |
| | | 소상공인재기지원 | 2,748 | 3,516 | 3,762 | 246 |
|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834 | 1,311 | 1,914 | 603 |
| | | 소상공인성장지원 | 2,651 | 6,212 | 6,612 | 400 |
|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4,652 | 5,649 | 5,655 | 6 |
| 소계 | | | 85,188 | 89,482 | 101,365 | 11,883 |
|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긴급복지 | 3,501 | 4,053 | 4,183 | 131 |
| | | 의료급여 | 86,882 | 98,400 | 101,228 | 2,828 |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B) | 증감액 (B-A) |
| |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 77 | 146 | 167 | 21 |
| |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 - | 21 | 21 |
| |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42 | 163 | 176 | 13 |
| |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 43 | 59 | 93 | 34 |
| | |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 - | 66 | 66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91 | 436 | 535 | 99 |
| 소계 | | | 90,936 | 103,256 | 106,469 | 3,213 |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개선 특별회계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878 | 853 | 872 | 19 |
| | 기후대응기금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 112 | 88 | 110 | 23 |
| 소계 | | | 990 | 941 | 983 | 42 |
| 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 | 5,802 | 6,273 | 8,803 | 2,530 |
| |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 2,918 | 2,848 | 3,112 | 265 |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8,457 | 10,128 | 10,930 | 801 |
|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7,772 | 9,080 | 9,337 | 258 |
| | |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 1,097 | 1,068 | 1,080 | 12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 1,079 | 1,501 | 1,621 | 120 |
| | 고용보험기금 | 고용유지지원금 | 703 | 702 | 888 | 186 |
| | 임금채권 보장기금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 704 | 706 | 1,606 | 899 |
| | 근로복지 진흥기금 | 생활안정자금(융자) | 915 | 894 | 984 | 90 |
| | | 신용보증대위변제 | 317 | 377 | 603 | 226 |
| 소계 | | | 29,762 | 33,578 | 38,964 | 5,386 |
| 국토교통부 | 일반회계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 - | - | 279 | 279 |
| 소계 | | | - | - | 279 | 279 |
| **13개 부처** | | **60개 사업** | **223,581** | **253,987** | **281,690** | **27,703** |

자료: 기획예산처

## 나. 검토의견

**첫째, 일부 사업은 지방비 부담,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조속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일부 수상팀의 창업리그 진행 과정 및 이후의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시제품 제작 및 홍보까지의 단계적 지원이 7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상팀 선정 및 후속지원 일정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고, 사업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은 과거 지원실적을 고려할 때 발급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쿠폰이 실제 공연 관람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여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매처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동 홍보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 업종 및 지역에 대한 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추경안 확정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번 추경안의 증액사업 중에는 2025년에도 추경안을 통해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해당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있는바, 이번 추경안에서는 유사한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2026년 3월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사업은 2025년에도 본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을 통하여 부족 재원 228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자치단체 불용액이 67억 1,100만원으로 추경 증액분의 29.3%에 달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추경에서도 사업비 6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지만 실집행액은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정부는 일부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및 방식에 대한 면밀한 설계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은 동일인이 여러 예매처를 통해 쿠폰을 중복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예매에 익숙한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등 정책 수혜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예매처 간 발급 이력의 통합관리, 1인당 지원 한도의 합리적 설정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이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신규)’** 사업은 매출액에 기반한 배분 구조로 인해 영세한 비계열 영화관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화산업 전반의 회복 및 구조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중동 상황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제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집행 시 해당 업종·지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원요건의 설정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소득요건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융자금액 상향 및 융자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융자 인원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주 융자 등의 확대에 따라 융자금 실행 이후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 경로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업체의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물가 안정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바,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하여 할인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임.

**넷째,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숙박할인권 지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당초 편성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증가율(5.6%)을 반영한 증가건수(월 1,763건)가 연말까지 동일하게 이어질 것을 가정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단기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소요를 추산하는 방식은 정책환경의 변화, 계절적 요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추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서비스 유형별 바우처 기본한도, 서비스 유형별 선택 비율 등에 따라 산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구조이므로, 서비스 유형별 지원 단가 및 이용자 수 등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융자사업에서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등 일부 융자사업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설정에 관한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사업액의 조기 소진 및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하여 정책대상자에게 적시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정부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유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 리스크 관리 제고 등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은 이미 일부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단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 등의 융자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실률 및 한계기업 대출 비중이 유지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소상공인 융자 부실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출부실이 미래로 이연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4.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가. 개요

추경안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사업은 10개 부처 47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조 6,405억원이 증액된 11조 3,902억원이 편성되었음.

산업통상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6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으로,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4,734억원,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 등 총 9,241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5개 사업,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000억원 등 총 7,49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개 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1개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4개 사업, 기후대응기금 2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205억원, 무공해차 보급사업 900억원 등 총 4,738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4개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3개 사업, 영화발전기금 1개 사업으로, 관광산업 융자 지원(융자) 2,800억원,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500억원 등 총 4,6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그 외에도 수출기업의 비용을 경감하고 피해산업을 지원하며, 문화·첨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130억원, 지식재산처 9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72억원, 해양수산부 16억원, 국토교통부 1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억원이 제1회 추경안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B) | 증감액 (B-A) |
| 산업통상부 | 일반회계 | 수출지원기반활용 | 914 | 1,811 | 2,141 | 330 |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3,293 | 3,414 | 3,473 | 59 |
| | | 무역보험기금출연 | 800 | 705 | 1,705 | 1,000 |
| | |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 - | - | 800 | 800 |
| | |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 574 | 567 | 767 | 200 |
| |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45 | 1,350 | 6,084 | 4,734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산업위기대응 | - | 247 | 317 | 70 |
| | | 산업단지환경조성 | 3,314 | 4,099 | 4,239 | 140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2,007 | 769 | 829 | 60 |
| | |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 - | 38 | 59 | 21 |
| | | 석유비축사업출자 | 799 | 553 | 2,137 | 1,584 |
| | | 석유유통구조개선 | 8 | 8 | 27 | 20 |
|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 159 | 163 | 387 | 223 |
| 소계 | | | 11,913 | 13,724 | 22,966 | 9,241 |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수출지원기반활용 | 1,276 | 1,502 | 2,502 | 1,000 |
| |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821 | 936 | 1,058 | 122 |
| | | 신용보증기금출연 | - | 800 | 1,800 | 1,000 |
| | | 기술보증기금출연 | 400 | 600 | 1,600 | 1,000 |
|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2,361 | 4,021 | 4,891 | 870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2,500 | 2,500 | 5,000 | 2,500 |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3,825 | 3,164 | 4,164 | 1,000 |
| 소계 | | | 11,181 | 13,522 | 21,014 | 7,492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2,631 | 22,845 | 23,745 | 900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 424 | 314 | 370 | 56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 | 1,043 | 1,259 | 1,272 | 13 |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3,263 | 6,480 | 8,685 | 2,205 |
| |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564 | 2,143 | 2,767 | 624 |
| | |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 - | 2,171 | 2,759 | 588 |
| | 기후대응기금 | CCU메가프로젝트(R&D) | - | 200 | 424 | 224 |
| |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1,076 | 1,086 | 1,214 | 128 |
| 소계 | | | 30,001 | 36,498 | 41,236 | 4,738 |

(단위: 억원)

|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 본예산 (A) | 제1회 추경(B) | 증감액 (B-A) |
| 문화체육 관광부 | 일반회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828 | 890 | 897 | 7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 636 | 519 | 608 | 89 |
| | | 국민문화활동지원 | 274 | 238 | 286 | 48 |
| | 문화예술 진흥기금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180 | 280 | 600 | 320 |
|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9 | 8 | 16 | 8 |
| | |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 - | 200 | 700 | 500 |
| | | 예술창작 지원 | 647 | 691 | 731 | 40 |
| | 관광진흥 개발기금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 5,919 | 6,441 | 9,241 | 2,800 |
| | |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574 | 483 | 789 | 306 |
| |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637 | 1,045 | 1,145 | 100 |
| | 영화발전기금 | 영화 창제작 지원 | 217 | 409 | 794 | 385 |
| 소계 | | | 9,920 | 11,204 | 15,807 | 4,603 |
| 교육부 | 일반회계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574 | 613 | 623 | 10 |
|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929 | 9,109 | 9,229 | 120 |
| 소계 | | | 11,503 | 9,722 | 9,852 | 130 |
| 지식 재산처 | 일반회계 |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 - | - | 95 | 95 |
| 소계 | | | - | - | 95 | 95 |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927 | 1,158 | 1,230 | 72 |
| 소계 | | | 927 | 1,158 | 1,230 | 72 |
| 해양 수산부 |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546 | 791 | 807 | 16 |
| 소계 | | | 546 | 791 | 807 | 16 |
| 국토 교통부 | 일반회계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565 | 565 | 569 | 4 |
| | | 정책연구개발사업 | 49 | 35 | 45 | 10 |
| 소계 | | | 614 | 600 | 614 | 14 |
|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일반회계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 58 | 276 | 281 | 5 |
| 소계 | | | 58 | 276 | 281 | 5 |
| **10개 부처** | | **47개 사업** | **76,664** | **87,497** | **113,902** | **26,405** |

자료: 기획예산처

##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는 중동상황 피해 기업의 비용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나, 바우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의 품질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위주로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사업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중동전쟁 피해 기업들을 위해 'Fast-Track'을 신설하거나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물류 지원 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바우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수요기업이 대폭 증가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위기 대응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수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대응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위주로 바우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은 23개 지원대상 메뉴 중 기업이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한도(최소 1,500만원~15억원)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추경증액분이 단순 홍보 등 추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약 7.1조원 규모의 보험·보증 등 정책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나 자금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보증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 심사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성장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 **‘재도전특별자금’**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나, 계획액과 실집행액간 상당한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자금수요를 반영한 적정사업규모를 면밀히 산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보증 규모가 이번 추경안에서 확대되었으나, 매년 보증사고율이 증가하고 구상권 회수율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보증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공급되는 보험·보증 규모가 이번 추경안에서 확대되었으나, 중동상황과 무관한 기업이 단순 금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제한된 보증한도 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은 기업이 배제되어 무역보험의 수출안정화 및 위기대응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나, 수요가 불명확하고 집행까지 필요한 사전절차 등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대수가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정형 태양광’** 사업은 2016~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던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3년간 보급 개소 합계인 7만 8,912개소에 2030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 목표를 고려하여 산출되었는바, 편성 물량이 연내에 전량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청년콘텐츠 분야의 투자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 수요 또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민간자금이 해당 분야의 실질적 투자로 원활히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은 추경을 통해 연도 중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공고부터 협약체결까지의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함.

**넷째,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나프타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적시에 자원의 수입 및 비축이 이루어지고 석유의 가격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나프타 국내 재고 고갈 후 대체 공급선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로 인해 수급 격차가 심화되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체수입 물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프타 재고 부족 시 배분 우선순위 설정 및 수요 분산 등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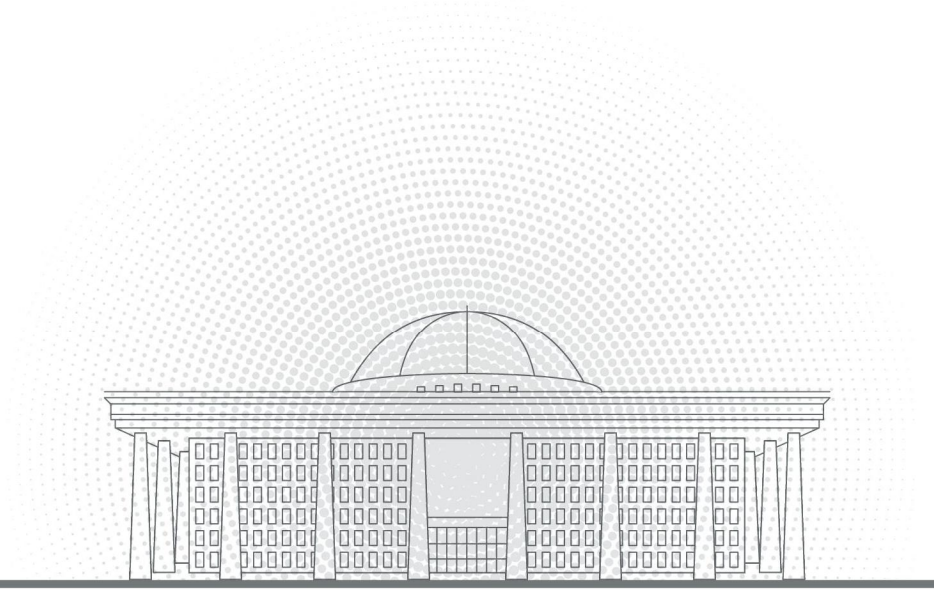
산업통상부의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으로 비축유 구입을 위한 출자예산 492억 1,800만원 중 185억 4,800만원이 미교부(이월)되어 한국석유공사가 단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선례를 고려하여 추경으로 편성된 출자예산이 적시에 교부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석유품질관리지원사업’** 및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공급부족 및 비규제 유종의 과도한 인상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가격과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석유제품 시장 전반으로 감독 및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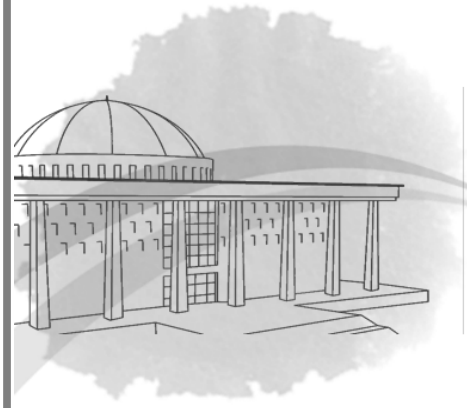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 【 부처별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411조 6,65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조 648억원(5.1%) 증가함.

예산은 408조 4,57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조 633억원(5.2%) 증가하고, 기금은 3조 2,08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원(0.1%) 증가함.[1)]

---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3,808,092 | 3,717,137 | 3,883,937 | 4,084,570 | 200,633 | 5.2 |
| 기 금 | 111,068 | 112,320 | 32,074 | 32,089 | 15 | 0.1 |
| 합 계 | 3,919,160 | 3,829,457 | 3,916,011 | 4,116,659 | 200,648 | 5.1 |

주 1) 2025년도 총수입은 기획재정부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4)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5)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이체 후 금액을 기재한 것임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34조 5,09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66억원(0.6%) 증가함.

예산은 1조 7,234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고, 기금은 32조 7,86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66억원(0.6%) 증가함.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33,367 | 49,367 | 17,234 | 17,234 | - | - |
| 기 금 | 361,238 | 378,677 | 325,796 | 327,862 | 2,066 | 0.6 |
| 합계 | 394,605 | 428,044 | 343,030 | 345,096 | 2,066 | 0.6 |

주 1) 2025년도 총지출은 기획재정부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4)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5)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이체 후 금액을 기재한 것임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7조 2,993억원(3.5%) 증가함.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4,638,148 | 4,871,212 | 4,969,171 | 5,142,164 | 172,993 | 3.5 |
| 합 계 | 4,638,148 | 4,871,212 | 4,969,171 | 5,142,164 | 172,993 | 3.5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이체 후 금액을 기재한 것임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8조 5,74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14억원(△0.1%) 감소함.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409,310 | 440,780 | 286,162 | 285,748 | △414 | △0.1 |
| 합 계 | 409,310 | 440,780 | 286,162 | 285,748 | △414 | △0.1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이체 후 금액을 기재한 것임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1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328조 81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022억원(△0.1%) 감소함.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공공자금관리기금 | 3,048,300 | 3,397,263 | 3,284,837 | 3,284,837 | 3,280,815 | △4,022 | △0.1 |
| 합계 | 3,048,300 | 3,397,263 | 3,284,837 | 3,284,837 | 3,280,815 | △4,022 | △0.1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세입경정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415조 4,190억원으로, 본예산(390조 2,334억원) 대비 25조 1,856억원(6.5%) 증액 편성하였음.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8조 6,528억원으로, 본예산(378조 5,895억원) 대비 20조 633억원(5.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6조 7,662억원으로 본예산(11조 6,439억원) 대비 5조 1,223억원(44.0%)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경정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 | | | 2026년 | | 증감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실적 | 본예산 (A) | 제1회 추경 (B) | (B-A) | 비율 |
| □ 국세수입 | 3,824,296 | 3,720,850 | 3,739,193 | 3,902,334 | 4,154,190 | 251,856 | (6.5) |
| ㅇ 일반회계 | 3,718,050 | 3,614,604 | 3,614,941 | 3,785,895 | 3,986,528 | 200,633 | (5.3) |
| ㅇ 특별회계 | 106,246 | 106,246 | 124,252 | 116,439 | 167,662 | 51,223 | (44.0) |

자료: 재정경제부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4개 세목을 증액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3개 세목을 감액하여 총 7개 세목을 재산정하였음.

법인세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 전망 상향을 반영하여 14조 7,741억원을 증액하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세를 반영하여 각각 5조 1,868억원과 5조 1,22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율 전망 상향, 2025년 세수실적 증가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4조 7,97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반영하고, 에너지 수요 전망 변경 등을 고려하여 3조 3,658억원을 감액하고,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담배분 개별소비세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5,340억원을 감액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분에 대해 7,949억원 감액 편성하였음.

## 3.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4,436억 4,100만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조 3,648억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2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3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하고, 국가채무 및 채권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고채 원금 상환’ 1조 275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 | - | - |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 194,766,313 | 197,468,253 | 193,356,454 | 195,721,270 | 2,364,816 | 1.2 |
| 1 | 지방채인수(융자) | 10,000 | 1,210,000 | 100,000 | 200,000 | 100,000 | 100.0 |
| 2 | 국고채이자상환 | 29,977,898 | 30,409,038 | 34,315,479 | 34,422,079 | 106,600 | 0.3 |
| 3 | *기타기금예탁* | *44,477,199* | *45,033,785* | *39,810,441* | *40,634,919* | *824,478* | *2.1* |
| 4 | *특별회계예탁* | *2,766,163* | *3,280,377* | *2,912,541* | *3,218,748* | *306,207* | *10.5* |
| 5 | *국고채원금상환* | *117,535,053* | *117,535,053* | *116,217,993* | *117,245,524* | *1,027,531* | *0.9* |
| 합계 | | 194,766,313 | 197,468,253 | 193,356,454 | 195,721,270 | 2,364,816 | 1.2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6)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이체 후 금액을 기재한 것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2조 8,084억 5,7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없음. 그 구성내역은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414억원(△0.2%)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및 일반회계 예탁 △2조 7,670억원(△2.5%)임.

2) 재정경제부 소관 4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1개(공공자금관리기금)임.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 | | 112,662,551 | 145,268,027 | 134,613,456 | 131,804,999 | △2,808,457 | △2.1 |
| 일반회계 | | 28,992,437 | 29,403,558 | 25,558,448 | 25,517,028 | △41,420 | △0.2 |
| 1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 *28,992,437* | *29,403,558* | *25,558,448* | *25,517,028* | *△41,420* | *△0.2* |
| 공공자금관리기금 | | 83,670,114 | 115,864,469 | 109,055,008 | 106,287,971 | △2,767,037 | △2.5 |
| 2 |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 *904,817* | *915,666* | *750,900* | *745,211* | *△5,689* | *△0.8* |
| 3 | *일반회계예탁* | *82,765,297* | *114,948,803* | *108,304,108* | *105,542,760* | *△2,761,348* | *△2.6* |
| 합계 | | 112,662,551 | 145,268,027 | 134,613,456 | 131,804,999 | △2,808,457 | △2.1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6)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이체 후 금액을 기재한 것임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경정은 다소 이른 시점에 세입예산안을 증액 경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수납실적에 비추어 추계가 정확한지를 면밀히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2026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중동 상황 등의 변화가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집행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세입경정: 세입경정의 적정성 검토 및 사후 점검 필요 등

### 가. 개 요

세입경정은 당해연도 세입이 실제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현실화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재원의 부족으로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증가함.[3)]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415조 4,190억원으로, 본예산(390조 2,334억원) 대비 25조 1,856억원(6.5%) 증액 편성하였음.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8조 6,528억원으로, 본예산(378조 5,895억원) 대비 20조 633억원(5.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6조 7,662억원으로 본예산(11조 6,439억원) 대비 5조 1,223억원(44.0%) 증액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경정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 | | | 2026년 | | 증감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실적 | 본예산 (A) | 제1회 추경 (B) | (B-A) | 비율 |
| □ 국세수입 | 3,824,296 | 3,720,850 | 3,739,193 | 3,902,334 | 4,154,190 | 251,856 | (6.5) |
| ㅇ 일반회계 | 3,718,050 | 3,614,604 | 3,614,941 | 3,785,895 | 3,986,528 | 200,633 | (5.3) |
| ㅇ 특별회계 | 106,246 | 106,246 | 124,252 | 116,439 | 167,662 | 51,223 | (44.0) |

자료: 재정경제부

3) 2023년 및 2024년 세입경정 없이 △56.4조원,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타 회계·기금의 가용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불용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음.

[2026년 국세수입 세목별 추경안 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 | | | 2026년 | | 2025년 실적比 | | 2026년 본예산比 | |
|---|---|---|---|---|---|---|---|---|---|
| | 본예산 | 추경예산 | 실적(A) | 본예산(B) | 추경예산(C) | 증감 (C-A) | 증감률 (C-A)/A | 증감 (C-B) | 증감률 (C-B)/B |
| **총국세** | **3,824,296** | **3,720,850** | **3,739,193** | **3,902,334** | **4,154,190** | **414,997** | **(11.1)** | **251,856** | **(6.5)** |
| **일반회계** | **3,718,050** | **3,614,604** | **3,614,941** | **3,785,895** | **3,986,528** | **371,587** | **(10.3)** | **200,633** | **(5.3)** |
| ㅇ 내국세 | 3,381,292 | 3,291,519 | 3,302,404 | 3,438,893 | 3,681,133 | 378,730 | (11.5) | 242,240 | (7.0) |
| 1. 소득세 | 1,268,192 | 1,268,192 | 1,304,526 | 1,320,208 | 1,368,179 | 63,655 | (4.9) | 47,971 | (3.6) |
| 종합소득세 | 220,582 | 220,582 | 212,830 | 226,270 | 226,270 | 13,440 | (6.3) | - | - |
| 양도소득세 | 194,116 | 194,116 | 198,855 | 204,278 | 204,278 | 5,423 | (2.7) | - | - |
| 이자소득세 | 63,121 | 63,121 | 70,137 | 60,118 | 60,118 | △10,019 | (Δ14.3) | - | - |
| 배당소득세 | 46,757 | 46,757 | 45,530 | 46,423 | 46,423 | 893 | (2.0) | - | - |
| 사업소득세 | 51,060 | 51,060 | 49,625 | 52,665 | 52,665 | 3,040 | (6.1) | - | - |
| 근로소득세 | 647,310 | 647,310 | 684,216 | 684,511 | 732,482 | 48,266 | (7.1) | 47,971 | (7.0) |
| 연금소득세 | 6,914 | 6,914 | 6,880 | 8,775 | 8,775 | 1,895 | (27.5) | - | - |
| 기타소득세 | 26,647 | 26,647 | 24,021 | 24,679 | 24,679 | 658 | (2.7) | - | - |
| 퇴직소득세 | 11,685 | 11,685 | 12,430 | 12,490 | 12,490 | 60 | (0.5) | - | - |
| 2. 법인세 | 882,544 | 835,671 | 846,090 | 865,474 | 1,013,215 | 167,125 | (19.8) | 147,741 | (17.1) |
| 신고분 | 658,570 | 596,605 | 609,029 | 633,653 | 766,801 | 157,772 | (25.9) | 133,148 | (21.0) |
| 원천분 | 223,974 | 239,066 | 237,061 | 231,821 | 246,415 | 9,354 | (3.9) | 14,593 | (6.3) |
| 3. 상속증여세 | 145,059 | 154,437 | 164,799 | 170,163 | 170,163 | 5,364 | (3.3) | - | - |
| 상속세 | 84,637 | 94,015 | 100,393 | 109,468 | 109,468 | 9,075 | (9.0) | - | - |
| 증여세 | 60,422 | 60,422 | 64,406 | 60,695 | 60,695 | △3,711 | (△5.8) | - | - |
| 4. 부가가치세 | 876,388 | 833,292 | 791,790 | 866,039 | 866,039 | 74,249 | (9.4) | - | - |
| 5. 개별소비세 | 96,663 | 87,479 | 85,144 | 94,344 | 89,004 | 3,860 | (4.5) | △5,340 | (△5.7) |
| 6. 증권거래세 | 38,454 | 38,454 | 34,430 | 53,753 | 105,621 | 71,191 | (206.8) | 51,868 | (96.5) |
| 7. 인지세 | 8,836 | 8,836 | 7,637 | 7,734 | 7,734 | 97 | (1.3) | - | - |
| 8. 과년도수입 | 65,156 | 65,156 | 67,989 | 61,178 | 61,178 | △6,811 | (Δ10.0) | - | - |
| ㅇ 교통세 | 151,048 | 140,012 | 132,351 | 164,122 | 130,464 | △1,887 | (△1.4) | △33,658 | (△20.5) |
| ㅇ 관세 | 84,093 | 84,093 | 76,409 | 72,214 | 72,214 | △4,195 | (Δ5.5) | - | - |
| ㅇ 교육세 | 60,402 | 57,765 | 57,235 | 64,433 | 56,484 | △751 | (△1.3) | △7,949 | (△12.3) |
| ㅇ 종합부동산세 | 41,215 | 41,215 | 46,542 | 46,233 | 46,233 | △309 | (△0.7) | - | - |
| **특별회계** | **106,246** | **106,246** | **124,252** | **116,439** | **167,662** | **43,410** | **(34.9)** | **51,223** | **(44.0)** |
| ㅇ 주세 | 32,093 | 32,093 | 32,120 | 31,451 | 31,451 | △669 | (Δ2.1) | - | - |
| ㅇ 농어촌특별세 | 74,153 | 74,153 | 92,132 | 84,988 | 136,212 | 44,080 | (47.8) | 51,223 | (60.3) |

자료: 재정경제부

이번 추경안의 세입경정은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4개 세목을 증액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3개 세목을 감액하여 총 7개 세목을 재산정하였음.

세입경정 내역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소득세는 본예산 132조 208억원 대비 4조 7,971억원(3.6%) 증액한 136조 8,17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용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 고용호조를 이유로 근로소득세수가 68조 4,511억원에서 73조 2,482억원으로 4조 7,971억원(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함.

둘째, 법인세는 본예산 86조 5,474억원 대비 14조 7,741억원(17.1%) 증액한 101조 3,21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분이 63조 3,653억원에서 76조 6,801억원으로, 법인세 원천분이 23조 1,821억원에서 24조 6,415억원으로 각각 13조 3,148억원, 1조 4,5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 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함.

셋째,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3,753억원 대비 5조 1,868억원(96.5%) 증액한 10조 5,62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세율 0.05%)·코스닥(증권거래세율 0.20%) 등의 거래대금이 급증하였고 거래량 증가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에 기인함.[4)]

넷째, 농어촌특별세는 본예산 8조 4,988억원 대비 5조 1,223억원(60.3%) 증액한 13조 6,21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가증권시장(농어촌특별세율 0.15%)의 거래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에 기인함.[5)]

---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5)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감액세목을 살펴보면, ①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9조 4,344억원 대비 5,340억원(△5.7%) 감액한 8조 9,00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본예산 16조 4,122억원 대비 3조 3,658억원(△20.5%) 감액한 13조 46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③ 교육세는 본예산 6조 4,433억원 대비 7,949억원(△12.3%) 감액한 5조 6,484억원으로 편성되었음.

감액세목은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류 수입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감액경정된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7→15%) 및 경유(10→25%)에 대한 탄력세율 확대를 적용하였고,[6]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및 담배 개별소비세의 부진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본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하게 됨.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단위: %)

| 적용 기간 | 휘발유 | 경유·LPG |
|---|---|---|
| 2021.11.12. ~ 2022.4.30. | 20 | 20 |
| 2022.5.1. ~ 2022.6.30. | 30 | 30 |
| 2022.7.1. ~ 2022.12.31. | 37 | 37 |
| 2023.1.1. ~ 2024.6.30. | 25 | 37 |
| 2024.7.1. ~ 2024.10.31. | 20 | 30 |
| 2024.11.1. ~ 2025.4.30. | 15 | 23 |
| 2025.5.1. ~ 2025.10.31 | 10 | 15 |
| 2025.11.1. ~ 2026.3.26. | 7 | 10 |
| 2026.3.27. ~ 2026.5.31. | 15 | 25 |

자료: 재정경제부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거래액 | 1만분의 15 |

6)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 · 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7조원 적은 413.8조원으로 수정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세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은 정부 전망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추산한 것임.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 구분 | 본예산 (A) | 정부 | | 국회예산정책처 | | 차이 (C-B) |
|---|---|---|---|---|---|---|
| | | 추경예산안 (B) | 본예산 대비 (B-A) | 전망 (C) | 본예산 대비 (C-A) | |
| 국세 | 390.2 | 415.4 | 25.2 | 413.8 | 23.5 | △1.7 |
| 근로소득세 | 68.5 | 73.2 | 4.8 | 74.6 | 6.1 | 1.3 |
| 법인세 | 86.5 | 101.3 | 14.8 | 99.4 | 12.9 | △1.9 |
| 개별소비세 | 9.4 | 8.9 | △0.5 | 8.6 | △0.8 | △0.3 |
| 증권거래세 | 5.4 | 10.6 | 5.2 | 9.1 | 3.7 | △1.5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6.4 | 13.0 | △3.4 | 12.7 | △3.7 | △0.3 |
| 교육세 | 6.4 | 5.6 | △0.8 | 5.6 | △0.8 | △0.0 |
| 농어촌특별세 | 8.5 | 13.6 | 5.1 | 13.3 | 4.8 | △0.3 |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검토의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소 이른 시기에 세입예산안을 증액 경정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의 세수추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바,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입 증액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정부는 올해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통해 세목별 추계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대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2020년 제1회(3.5.), 2009년(3.30.) 다음으로 가장 이른 시점(3.31.)에 제출된 것임.

[2000년대 세입경정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경정 내역]

(단위: 조원)

| 연도[1] | 추경안 제출일 | 본예산[2] | 추경안 증감[3] | 국회확정 증감 | 주요 증감액 사유 |
|---|---|---|---|---|---|
| 2003 | 6.5. | 113.6 | 1.0 | 1.3 | 예산대비 세수전망 초과<br>* 법인세 +2.6, 증권거래세 △0.8, 부가세 △0.4 |
| 2005 | 9.30. | 130.6 | △4.2 | △3.5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 2009 | 3.30. | 175.4 | △11.2 | △11.4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3.7, 법인세 △5.7, 부가세 △2.1, 교통세 +1.1, 관세 △1.1 |
| 2013 | 4.18. | 216.4 | △12.0 | △6.0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0.7, 법인세 △2.1, 부가세 △2.3, 관세 △0.7, 기타 △0.2 |
| 2015 | 7.6. | 221.1 | △5.6 | △5.4 |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 2016 | 7.26. | 222.9 | 9.8 | 9.8 |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br>* 소득세 +2.5, 법인세 +5.4, 부가세 +1.7, 교통세 +0.7, 관세 △0.4 |
| 2017 | 6.7. | 242.3 | 8.8 | 8.8 | 일자리 대책 추진<br>* 소득세 +3.9, 법인세 +3.3, 부가세 +1.0, 상증세 +0.6 |
| 2020 제1회 | 3.5. | 292.0 | △3.2 | △0.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0.1, 부가세 △0.2, 개소세 △0.4, 교육세 △0.1 |
| 2020 제3회 | 6.4. | 291.2 | △11.4 | △11.4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br>* 법인세 △5.8, 부가세 △4.1, 관세 △1.1, 개소세 △0.4, 증권거래세 +0.6, 과년도수입 △0.5, 기타 △0.1 |
| 2021 제2회 | 7.2. | 282.7 | 31.5 | 31.5 |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우발세수<br>* 양도세 +8.6, 배당소득 +1.1, 법인세 +12.2, 부가세 +2.7, 상속세 +2.3, 증여세 +0.5, 증권거래세 +3.2, 농특세 +0.9 |
| 2022 제2회 | 5.13. | 343.4 | 53.3 | 53.3 | 법인실적 개선, 고용 · 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br>* 법인세 +29.1, 근로소득 +10.3, 부가세 +1.8, 양도소득 +11.8, 상증세 +2.8, 교통세 △4.5, 교육세 △4.5, 종부세 +1.2, 관세 +1.3 |
| 2025 제2회 | 6.23. | 382.4 | △10.3 | - | 법인실적 증가세 둔화 및 작년 12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4.7, 부가세 △4.3, 상속세 +0.9, 교통세 △1.1, 개소세 △0.9, 교육세 △0.3 |

(단위: 조원)

| 연도[1] | 추경안 제출일 | 본예산[2] | 추경안 증감[3] | 국회확정 증감 | 주요 증감액 사유 |
|---|---|---|---|---|---|

주 1) 국세수입 경정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만 작성하였음
2)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1회만 제출된 경우 본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수 제출된 경우 직전의 추경예산을 의미함
3) 2009년과 2013년 추경은 세입경정 규모에 세외수입(2009년: +0.2조원, 2013년: △6.0조원)이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10년간 세입예산을 증액경정한 사례는 2016년, 2017년, 2021년 제2회, 2022년 제2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액경정 기준으로는 가장 이른 시점에 제출되었고 경정 규모로는 2022년 제2회(+53.3조원), 2021년 제2회(+31.5조원)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큼.

이번 추경안은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6.5% 증액 경정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세수추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로, 2021~2024년 본예산 대비 세수실적 오차는 각각 21.7%, 15.3%, △14.1% △8.4%로 큰 폭으로 발생한 바 있고, 올해 이번 추경안과 같이 국세수입이 수납될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6.5% 세수오차가 발생하게 됨.

[2016~2026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 구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예산 | 본예산(A) | 222.9 | 242.3 | 268.1 | 294.8 | 292.0 | 282.7 | 343.4 | 400.5 | 367.3 | 382.4 | 390.2 |
| | 추경예산(B) | 232.7 | 251.1 | 268.1 | 294.8 | 279.7 | 314.3 | 396.6 | 341.4 | 337.7 | 372.1 | 415.4 |
| 결산(C) | | 242.6 | 265.4 | 293.6 | 293.5 | 285.5 | 344.1 | 395.9 | 344.1 | 336.5 | 373.9 | - |
| 차이 | 본예산 대비 (C-A) | 19.6 | 23.1 | 25.4 | △1.3 | △6.5 | 61.3 | 52.6 | △56.4 | △30.8 | △8.5 | - |
| | 추경 대비 (C-B) | 9.8 | 14.3 | 25.4 | △1.3 | 5.8 | 29.8 | △0.7 | 2.7 | △1.2 | 1.8 | - |
| 오차율 | 본예산 대비 [(C-A)/A] | 8.8 | 9.5 | 9.5 | △0.5 | △2.2 | 21.7 | 15.3 | △14.1 | △8.4 | △2.2 | - |
| | 추경 대비 [(C-B)/B] | 4.2 | 5.7 | 9.5 | △0.5 | 2.1 | 9.5 | △0.2 | 0.8 | △0.4 | 0.5 | - |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정부가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세입예산을 증액 경정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이 실제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바,[7]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기초가 되는 본예산 세입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증액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부는 2026년 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55조의2[8]에 따른 9월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를 통해 세목별 추계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에 대해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본예산 당시의 세입예산 전망을 유지하고 별도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세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수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는 증액경정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당초 세수전망을 유지하였고, ② 2026년 5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까지 주택 매매 및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9] 양도소득세·증여세를 증액경정하지 않았으며, ③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10] ④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통주택 공시가격(2026.3.17.)이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과세대상이 속해 있는 서울(전년 대비 18.67% 상승), 경기(전년 대비 6.38%) 위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11]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12]

---

7)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산업 호황, 증권거래량 급증 등의 세입 여건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8)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뉴스1, “양도세 중과 임박... 강남발 갈아타기 도미노에 외곽 매물 확산”, 2026.3.23.
뉴스1, “3월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 641건... 양도세 종료 앞두고 거래 급증”, 2026.3.20.
한국경제, “강남 아파트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증여는 두배 늘었다”, 2026.3.12.

10) 참고로 기획예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3.)」에서도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등을 1월 국세수입의 증가요인으로 본 바 있음.

11)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 5년만에 최고 상승률”, 2026.3..17.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법인세를 대폭 증액하였으나,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거나 유가·환율 상승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될 경우 증액경정에 비해 세수실적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음.

AI 산업 성장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과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① 반도체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2%p 내년 0.3%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기본전망 대비 올해 △0.2%p, 내년 △0.3%p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AI 산업 성장의 시나리오별 성장 및 물가 전망]

| 구분 | 주요내용 |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전망 | | | 시나리오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 |
|---|---|---|---|---|---|---|---|
| | | 2025 | 2026e | 2027e | 2025 | 2026e | 2027e |
| 기본 |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세의 완만한 둔화 (2025 16%, 2026 10%, 2027년 8%) | 1.0% | 2.0% | 1.8% | 2.1% | 2.2% | 2.0% |
| 낙관적 시나리오 | 2025년(16%)에 근접하는 수출물량 증가세 지속 | - | +0.2%p | +0.3%p | - | +0.1%p | +0.1%p |
| 비관적 시나리오 | 금년 중 6% 내외, 내년 중 3% 내외로 증가세 빠르게 둔화 | - | △0.2%p | △0.3%p | - | △0.1%p | △0.1%p |

자료: 한국은행, "2026년 2월 경제전망(Indigo Book)", 2026.2.

또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국제 유가 변동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13] ① (기준 시나리오) 2026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p 감소하나 ② (비관적 시나리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p 하락하며 ③ (오일 쇼크 시나리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최소 0.8%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있음.

1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① 종합소득세는 경상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재추계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경정하지 않았고, ②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잠김 등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③ 중동 전쟁, 미국 관세정책 방향 등에 따라 환율 및 수입액 등의 전망이 불확실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경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13) 현대경제연구원,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6.3.3.

[2026년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상승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 변수 | 국제유가<br>연평균 80달러 | 국제유가<br>연평균 100달러 | 국제유가<br>연평균 150달러 |
|---|---|---|---|
| 경제성장률 | △ 0.1 %p | △ 0.3 %p | △ 0.8 %p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0.4 %p | + 1.1 %p | + 2.9 %p |
| 경상수지 | △ 58억 달러 | △ 260억 달러 | △ 767억 달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6.3.3.

최근 OECD의 중간 경제전망(2026.3.)에서는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조정하였는데,[14] 이처럼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증액경정한 세입예산안에 비해 세수실적이 부진할 우려가 있음.[15]

14)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2026.3. p.6.

15)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규모가 큰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경제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세목이 아니고, 추경안 집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p 견인되어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 <지출증액>

## 2.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 국고채 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노력 강화 필요

### 가. 개 요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은 국고채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066억원(0.3%)이 증액된 34조 4,220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 29,977,898 | 30,409,038 | 34,315,479 | 34,315,479 | 34,422,079 | 106,600 | 0.3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재정경제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원금 1조 275억원을 추가 상환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을 2조 7,613억원을 감액하는 한편,[17)] 최근 국고채 금리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평균 금리를 당초 3.0%에서 3.4%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국고채이자상환 계획액을 1,066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16)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1071-780)(국고국)

17) 이번 추경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은 본예산 108조 3,041억 800만원에서 2조 7,613억 4,800만원 감액한 105조 5,42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나. 검토의견

**정부는 2026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중동 상황 등의 변화가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시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빌리는 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조달금리의 추이를 보면, 2025년 평균조달 금리는 2.66%이나 2025년 10월부터 평균조달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6년 2월의 금리는 3.40%임.

[2024년 및 2025.10.~2026.2. 국고채 발행액 및 평균 조달금리]

(단위: 조원, %)

| | | 2024년 | 2025년 | | | | 2026년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 1월 | 2월 |
| □ 발행잔액 | | 1047.1 | 1159..4 | 1,166.8 | 1,178.9 | 1,159.4 | 1,198.7 | 1,176.8 | 1,198.7 |
| □ 발행액 | | 157.7 | 226.2 | 17.7 | 15.6 | 5.4 | 40.3 | 17.9 | 22.4 |
| **□ 평균 조달금리** | | **3.22** | **2.66** | **2.68** | **3.01** | **3.15** | **3.31** | **3.18** | **3.40** |
| □ 평균 응찰률 | | 321 | 267 | 262 | 274 | 284 | 254 | 259 | 250 |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증감) | 238.9 (+19.2) | 297.4 (+58.5) | 280.6 (+1.1) | 293.7 (+13.1) | 297.4 (+3.7) | 310.9 (+13.5) | 303.1 (+5.8) | 310.9 (+7.8) |
| | 보유비중 | 22.8 | 25.7 | 24.1 | 24.9 | 25.7 | 26.0 | 25.8 | 26.0 |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3월호, 2026.3.

그리고 이미 발행된 국고채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각 연물별 시장금리는 2025년 3월 2.451 ~ 2.795% 수준에서 2025년 8월 2.427 ~ 2.838%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8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 2026년 2월에는 3.167 ~ 3.638% 수준에 이르렀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은 3.167%, 5년물은 3.437%, 국고채 10년물은 3.612%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대비 높은 상황임.

[최근 1년간 월평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 2025/03 | 2025/04 | 2025/05 | 2025/06 | 2025/07 | 2025/08 | 2025/09 | 2025/10 | 2025/11 | 2025/12 | 2026/01 | 2026/02 |
|---|---|---|---|---|---|---|---|---|---|---|---|---|
| 국고채(3년) | 2.590 | 2.395 | 2.331 | 2.441 | 2.465 | 2.427 | 2.464 | 2.601 | 2.880 | 3.010 | 3.044 | 3.167 |
| 국고채(5년) | 2.665 | 2.492 | 2.469 | 2.601 | 2.622 | 2.584 | 2.615 | 2.726 | 3.057 | 3.251 | 3.317 | 3.437 |
| 국고채(10년) | 2.795 | 2.658 | 2.710 | 2.842 | 2.840 | 2.815 | 2.849 | 2.933 | 3.248 | 3.366 | 3.485 | 3.612 |
| 국고채(20년) | 2.688 | 2.600 | 2.678 | 2.826 | 2.835 | 2.838 | 2.844 | 2.904 | 3.245 | 3.340 | 3.461 | 3.638 |
| 국고채(30년) | 2.581 | 2.507 | 2.584 | 2.737 | 2.738 | 2.740 | 2.754 | 2.819 | 3.169 | 3.239 | 3.358 | 3.549 |
| 국고채(50년) | 2.451 | 2.363 | 2.447 | 2.637 | 2.634 | 2.623 | 2.635 | 2.670 | 3.060 | 3.165 | 3.254 | 3.429 |

주) 월평균(영업일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네 차례[18] 인하한 이후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하고 있음.[19]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고 하면서도,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준금리의 상하방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20]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고채 평균금리를 3.0%로 추산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고채 발행·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고채 평균금리를 3.4%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증액 편성하였음.

---

18) 2024년 10월 11일: 3.50% → 3.25% (0.25%p 인하)
2024년 11월 28일: 3.25% → 3.00% (0.25%p 인하)
2025년 2월 25일: 3.00% → 2.75% (0.25%p 인하)
2025년 5월 29일: 2.75% → 2.50% (0.25%p 인하)

19) 한국은행은 2026년 1월과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성장은 수출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하고 향후 정책방향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음.

20)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3.)

그러나 단기적인 금리 변동 뿐만 아니라,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WGBI 편입이라는 구조적 자금 유입 및 중동 상황의 변화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국채가 2026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경우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규모 국내 유입을 구조적으로 유인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원화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면 국고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이와 달리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는 등 '유가상승 → 물가 자극 → 금리 인하 기대 약화' 경로로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늘리고 국고채 유통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5,000억원 교환을 2026년 4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1)]

이처럼 국고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6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중동 상황 등의 변화가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 재정경제부, "26.4월 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 2026.3.26.

# 3.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필요

## 가. 개 요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국가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융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000억원(100.0%)이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지방채 인수 (융자) | 10,000 | 1,21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100,000 | 100.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지방채 인수 사업은 세수 결손이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필수 인프라나 복지 사업 등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지방채)을 발행하려는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대부계약을 맺고 융자하는 제도임.[23)]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반 지방채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소화되지만,[24)]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중 금융권 금리보다 낮은 장기 저리(低利)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리 차이에

22) 공공자금관리기금 - 지방채 인수(융자)(1031-100)(국고국)

23) 이 사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의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승인액(증서차입) 범위 내에서 공자기금이 정해진 이율표에 따라 대부계약을 맺고 자금을 직접 융자해 주는 구조로 진행됨. 다만 이하에서는 사업명과 동일하게 지방채 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함.

24) 참고로 지방채 발행절차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다음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통보(~7.1.)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7.15)과 지방채발행계획안(~8.31.)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확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10.31.)함.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에 가능함.

해당하는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참고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5년간 거치된 이후 원금 상환은 10년간 이루어짐.

## 나. 검토의견

**재정경제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인수 사업을 보다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인 지역 인프라 유지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금융시장보다 유리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바, 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고려할 때 지방채 인수 사업은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2020년 이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지방채 인수액 1조 712억원 중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6,661억원(62.2%),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4,051억원(37.8%) 배분되었음.

[2020년 이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인수액 합계 | 광역 지방자치단체 | | 기초 지방자치단체 | |
|---|---|---|---|---|---|
| | | 인수규모 | 비중 | 인수규모 | 비중 |
| 2020 | 15,566 | 14,081 | 90.5 | 1,485 | 9.5 |
| 2021 | 19,956 | 16,143 | 80.9 | 3,814 | 19.1 |
| 2022 | 79 | 79 | 100.0 | - | - |
| 2023 | 100 | 100 | 100.0 | - | - |
| 2024 | 25,962 | 20,653 | 79.6 | 5,309 | 20.4 |
| 2025 | 10,712 | 6,661 | 62.2 | 4,051 | 37.8 |
| 2026.3. | - | - | - | - | - |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인구감소지역[25]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채를 849억원 인수하였는데 이는 전체 인수액의 7.93%에 해당함.

[연도별 공자기금의 인구감소지역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지방채 인수 | | | 전체 대비 비중 (A/B) |
|---|---|---|---|---|
| | 인구감소지역(A) | 인구감소지역 외 | 전체(B) | |
| 2020 | 313 | 15,253 | 15,566 | 2.05 |
| 2021 | 426 | 19,531 | 19,956 | 2.18 |
| 2022 | - | 79 | 79 | - |
| 2023 | - | 100 | 100 | - |
| 2024 | 527 | 25,435 | 25,962 | 2.07 |
| 2025 | 849 | 9,863 | 10,712 | 7.93 |
| 2026.3. | - | - | - | - |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5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41개, 10% 이상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48개이고, 2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건전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10~20%대에 불과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낮은 신용도로 인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25)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구 분 | 내 용 |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지정절차 |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 지정현황 | 89개 시군구 |
| 지정주기 | 5년 단위 지정(2021.10월 최초 지정) |

자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단위: %)

| 구 분 | 인구감소지역(2025년 재정자립도) |
|---|---|
| 부산(3) | 동구(14.75) 서구(12.41) 영도구(9.49) |
| 대구(3) | 남구(10.08) 서구(12.52) 군위군(9.72) |
| 인천(2) | 강화군(11.96) 옹진군(10.05) |
| 경기(2) | 가평군(17.11) 연천군(15.29) |
| 강원(12) | 고성군(10.19) 삼척시(13.01) 양구군(8.63) 양양군(13.72) 영월군(13.14) 정선군(14.47) 철원군(10.98) 태백시(15.08) 평창군(12.62) 홍천군(12.20) 화천군(8.18) 횡성군(11.97) |
| 충북(6) | 괴산군(10.65) 단양군(12.29) 보은군(9.87) 영동군(11.80) 옥천군(11.16) 제천시(14.05) |
| 충남(9) | 공주시(12.87) 금산군(9.27) 논산시(10.65) 보령시(13.56) 부여군(10.01) 서천군(8.92) 예산군(13.69) 청양군(9.32) 태안군(12.46) |
| 전북(10) | 고창군(9.54) 김제시(9.77) 남원시(8.98) 무주군(8.65) 부안군(9.61) 순창군(8.26) 임실군(8.69) 장수군(7.57) 정읍시(9.94) 진안군(6.68) |
| 전남(16) | 강진군(8.47) 고흥군(6.36) 곡성군(8.89) 구례군(7.66) 담양군(11.30) 보성군(7.37) 신안군(6.74) 영광군(11.93) 영암군(12.08) 완도군(7.21) 장성군(17.63) 장흥군(8.51) 진도군(8.68) 함평군(8.54) 해남군(7.82) 화순군(13.47) |
| 경북(15) | 고령군(11.42) 문경시(10.08) 봉화군(7.28) 상주시(8.37) 성주군(11.57) 안동시(9.84) 영덕군(7.72) 영양군(6.08) 영주시(10.25) 영천시(12.30) 울릉군(14.23) 울진군(12.25) 의성군(8.50) 청도군(9.30) 청송군(7.91) |
| 경남(11) | 거창군(8.97) 고성군(10.30) 남해군(10.04) 밀양시(12.99) 산청군(10.48) 의령군(8.42) 창녕군(13.07) 하동군(9.79) 함안군(16.12) 함양군(10.39) 합천군(8.06) |

주) 지방자치단체명 뒤 괄호의 수치는 2025년 재정자립도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를 재가공하여 작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사업은 단순한 융자 창구를 넘어 인구 소멸과 세수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민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불리한 재정 열악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지방채를 적극 인수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을 통한 지방채 인수 시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정하여, 보다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기획예산처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1조 4,807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예산은 3조 1,495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고, 기금은 8조 3,313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32,218 | 32,218 | 31,495 | 31,495 | - | - |
| 기 금 | 77,645 | 78,747 | 83,313 | 83,313 | - | - |
| 합 계 | 109,863 | 110,965 | 114,807 | 114,807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4)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현계획)은 2026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이체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임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5조 1,9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조원(49.1%) 증가함.

예산은 9조 2,47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조원(117.7%) 증가한 반면, 기금은 5조 9,435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5,210 | 39,210 | 42,472 | 92,472 | 50,000 | 117.7 |
| 기 금 | 54,880 | 56,283 | 59,435 | 59,435 | - | - |
| 합 계 | 80,090 | 95,493 | 101,908 | 151,908 | 50,000 | 49.1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4)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현계획)은 2026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이체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임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389억원(0.6%) 증가함.

[2026년도 기획예산처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125 | 125 | 44 | 44 | - |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39,089 | 153,808 | 219,541 | 220,930 | 1,389 | 0.6 |
| 합 계 | 139,214 | 153,933 | 219,585 | 220,974 | 1,389 | 0.6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2026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이체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임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세출추경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7조 2,50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901억원(1.7%) 증가함.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84,743 | 111,122 | 169,608 | 172,509 | 2,901 | 1.7 |
| 합 계 | 84,743 | 111,122 | 169,608 | 172,509 | 2,901 | 1.7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계하면서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은 2026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이체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임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2,901억 100만원임.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5조 673억 1,6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1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목적으로 '예비비' 사업에 5조원을 증액하고, 세입경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을 673억 1,600만원 증액하였음.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8,474,315 | 11,112,195 | 16,960,821 | 17,250,922 | 290,101 | 1.7 |
| 1 | 예비비 | 2,400,000 | 3,800,000 | 4,000,000 | 9,000,000 | 5,000,000 | 125.0 |
| 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 - | - | *4,878,032* | *4,945,348* | *67,316* | *1.4* |
| 합계 | | 2,400,000 | 3,800,000 | 8,878,032 | 13,945,348 | 5,067,316 | 57.1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하면서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현계획)은 2026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이체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4조 7,772억 1,500만원임. 2개 사업 모두 세입경정에 따른 내부거래로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감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8,474,315 | 11,112,195 | 16,960,821 | 17,250,922 | 290,101 | 1.7 |
| 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 | *634,194* | *634,194* | *328,243* | *260,927* | *△67,316* | *△20.5* |
| 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전출* | *4,986,707* | *6,224,587* | *7,038,984* | *2,329,085* | *△4,709,899* | *△66.9* |
| 합계 | | 5,620,901 | 6,858,781 | 7,367,227 | 2,590,012 | △4,777,215 | *△64.8*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6)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를 승하면서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을 이체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현계획)은 2026년 1월 2일 기획예산처가 이체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임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예비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전액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한 것은 예비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 증액>

## 1. 예비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상 등 고유가 대응 관련 재정소요의 목적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2] 및 「국가재정법」[3]에 따라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으로서,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조원(125.0%) 증액된 9조원이 편성되었으며, 목적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5조원(156.3%)이 증액된 8조 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한 8,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4]

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세부사업: 예비비(3069-300)(예산실)

[2026년도 예비비 사업 추경안]

(단위: 억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예비비 | 24,000 | 38,000 | 40,000 | 90,000 | 50,000 | 125.0 |
| 목적예비비 | 16,000 | 26,000 | 32,000 | 82,000 | 50,000 | 156.3 |
| 일반예비비 | 8,000 | 12,000 | 8,000 | 8,000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음.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5]이 있는 경우 예비비의 편성이 가능하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음.[6]

[2019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 2019 예산 | 2020 예산 | 2021 예산 | 2022 예산 | 2023 예산 | 2024 예산 | 2025 예산 | 2026 | |
|---|---|---|---|---|---|---|---|---|---|
| | | | | | | | | 본예산 | 추경안 |
| 합 계 | 30,000 | 56,100 | 97,000 | 55,000 | 46,000 | 42,000 | 38,000 | 40,000 | 90,000 |
| 목적예비비 | 18,000 | 42,100 | 81,000 | 37,000 | 28,000 | 22,000 | 26,000 | 32,000 | 82,000 |
| 일반예비비 | 12,000 | 14,000 | 16,000 | 18,000 | 18,000 | 20,000 | 12,000 | 8,000 | 8,000 |

주) 2019 ~ 2025년도 예비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19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은 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5조 6,100억원, 2021년 9조 7,000억원, 2022년 5조 5,000억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비비 편성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5) (예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6)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3조 4,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적예비비 2,000억원(△5.9%)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확정예산 기준으로 목적예비비의 지출대상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법정 지출의 부족액,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국제부담금, 긴급구호, 정부조직개편임.

[202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예산안(A) | 국회확정(B) | 증감(B-A) | (B-A)/A |
|---|---|---|---|---|
| 예비비 | 4,200,000 | 4,000,000 | △200,000 | △4.8 |
| 목적예비비 | 3,400,000 | 3,200,000 | △200,000 | △5.9 |
| 일반예비비 | 800,000 | 800,000 | - | - |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는 목적예비비의 사용목적에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추가하고,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하고,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및 소요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워 산업통상부의 일반 세출사업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하되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예산총칙 상 목적예비비 금액 및 사용목적 비교]

| 2026년도 본예산<br>예산총칙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br>예산총칙 |
|---|---|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 나. 검토의견

**첫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전액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한 것은 예비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을 맞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로 인한 정유사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줄 정책적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재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현행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비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는데,[7]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목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유발되는 민간 부문의 손실보상 소요는 해당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정적 결과로 봐야 할 것임.

---

7)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비록 향후 국제 유가의 변동폭과 환율의 추이,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최종적인 손실보상 규모를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확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8] 5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세부적인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지출 계획의 제시 없이 예비비 형태로 전액 편성할 경우 예비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9]

따라서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기초 소요액은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외 변수에 의한 불가피한 초과 변동분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목적예비비로 대처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8)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3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장관 고시)을 제정하여 손실보전의 대략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음. 해당 고시에서는 석유정제업자가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석유정제업자별 원가 등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산정한 후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법률·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석유정제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이를 검증하여 적정 손실액 및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시 제정에도 불구하고, 5조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산정 기준을 부처 간 내부 협의로 결정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전액 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9) 향후 타 부처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신규 재정 지출소요가 발생할 때에도 세부적인 산출내역 작성을 생략하고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려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둘째, 정부는 목적예비비의 지출대상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포함시켜 현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추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보강,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음.[10)]

중동 상황 고조화로 인해 원유·나프타 등의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예비비 지출의 대상이되는 공급 위기 대응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 위험 또는 위기상황에서의 조치에 해당함.[11)]

예컨대 정부는 중동 상황이 고조화되어 나프타 등 주요 석유류 원자재의 수급이 문제되자, 나프타를 위기품목으로 지정(3.23.)하여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수출통제)(3.27.), 나프타 취급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10)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2026.3.

11)「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안보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7. “공급망 위기상황”이란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2025~2026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12)]

예비비는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안보품목의 확보, 도입 및 공급을 위한 구매자금 융·출자 등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예비비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현황]

| |
|---|
| ㅇ (지원대상) 핵심품목 · 서비스의 ① 확보 · 도입, ② 국내외 시설투자 · 운영, ③ 기술도입 · 상용화 등 안정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 (법 38조) |
| ㅇ (지원부문) 공급망안정화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 부문* 중점 지원<br>* 중점지원 4대 부문 : ①첨단전략사업, ②자원안보, ③경제필수재, ④물류·인프라 |
| ㅇ (기금 재원)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br>- 2026년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10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2025.12.9.)<br>* 국가채무보증한도 : 2025년도 10조원, 2026년도 10조원 |
| ㅇ (지원실적) 2025년 총 70건 사업 앞 7조 1,329억원 지원 승인<br>- 2024년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 공식 출범 이후 총 92건의 사업에 대해 9조 2,448억원 승인<br>-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망안정화펀드 조성 지원 |
| ㅇ (부문별 실적)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자원안보(40.5%), 첨단전략산업(33.5%), 경제필수재(22.9%) 중점 지원 |
| ㅇ (중소·중견기업) 대외 여건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 총 34건, 1조 8억원 지원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참고로 지금까지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부문별 지원실적은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면경제필수재, 물류인프라·서비스 순으로 나타나는데, 중동 상황으로 인한 자원안보 및 물류인프라 등의 수급 교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원안보용 원자재 수급 및 물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원실적이 부진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있음.

12)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6월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기금임.
구체적으로는 ①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 정부·한국은행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③ 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 출연금, ④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⑤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을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20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부문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첨단전략산업과 자원안보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고, 운송·비축·항만 등 물류인프라·서비스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 부문별로는 ① 첨단전략산업 부문 19건 2조 3,921억원, ② 자원안보 부문 15건 2조 8,909억원, ③ 국민경제 필수재 부문 29건 1조 6,300억원, ④ 물류인프라·서비스 부문 7건 2,200억원이 지원되었음.

[2024~20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 부문별·유형별 지원내역(승인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 2024년 | | | 2025년 | | |
|---|---|---|---|---|---|---|---|
| | | 대출 | 투자 | 소계 | 대출 | 투자 | 소계 |
| 첨단전략산업 | | 12,200 (8건) | 1,000 (1건) | 13,200 (9건) | 23,771 (18건) | 150 (1건) | 23,921 (19건) |
| | 이차전지 | 8,700 (6건) | 1,000 (1건) | 9,700 (7건) | 16,721 (14건) | 150 (1건) | 16,871 (15건) |
| | 반도체 | 3,500 (2건) | - | 3,500 (2건) | 7,050 (4건) | - | 7,050 (4건) |
| | 디스플레이 | - | - | - | - | - | - |
| | 바이오 | - | - | - | - | - | - |
| 자원안보 | | 3,990 (4건) | - | 3,990 (4건) | 28,909 (15건) | - | 28,909 (15건) |
| | 핵심광물 | 3,990 (4건) | - | 3,990 (4건) | 6,320 (8건) | - | 6,320 (8건) |
| | 에너지 | - | - | - | 22,589 (7건) | - | 22,589 (7건) |
| 국민경제 필수재 | | 3,929 (9건) | - | 3,929 (9건) | 16,300 (29건) | - | 16,300 (29건) |
| | 식량 | 810 (4건) | - | 810 (4건) | 8,110 (14건) | - | 8,110 (14건) |
| | 산업원료 | 3,114 (4건) | - | 3,114 (4건) | 4,876 (10건) | - | 4,876 (10건) |
| | 기계장비 | 5 (1건) | - | 5 (1건) | 3,314 (5건) | - | 3,314 (5건) |
| 물류인프라·서비스 | | - | - | - | 2,000 (6건) | 200 (1건) | 2,200 (7건) |
| | 운송 | - | - | - | 2,000 (6건) | 200 (1건) | 2,200 (7건) |
| | 비축 | - | - | - | - | - | - |
| | 항만 | - | - | - | - | - | - |
| 합계 | | 20,119 (21건) | 1,000 (1건) | 21,119 (22건) | 70,979 (68건) | 350 (2건) | 71,329 (70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국 세 청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3,11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964 | 2,964 | 3,110 | 3,110 | - | - |
| 합 계 | 2,964 | 2,964 | 3,110 | 3,110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조 3,11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134억원(10.2%) 증가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0,040 | 20,040 | 20,978 | 23,112 | 2,134 | 10.2 |
| 합 계 | 20,040 | 20,040 | 20,978 | 23,112 | 2,134 | 10.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964 | 2,964 | 3,110 | 3,110 | - | - |
| 합 계 | 2,964 | 2,964 | 3,110 | 3,110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추경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조 3,11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134억원(10.2%) 증가함.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0,040 | 20,040 | 20,978 | 23,112 | 2,134 | 10.2 |
| 합 계 | 20,040 | 20,040 | 20,978 | 23,112 | 2,134 | 10.2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추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133억 6,400만원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위한 것으로, ‘압류재산공매 사업’에 체납관리단 내역사업 2,13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2,040,000 | 2,040,000 | 2,097,794 | 2,311,158 | 213,364 | 10.2 |
| 1 | 압류재산공매 | 4,254 | 4,254 | 14,868 | 228,232 | 213,364 | 1,435.1 |
| | (국세 체납관리단) | - | - | 10,054 | 73,456 | 63,402 | 630.6 |
|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 | - | - | 149,962 | 149,962 | 순증 |
| 합계 | | 2,040,000 | 2,040,000 | 2,097,794 | 2,311,158 | 213,364 | 10.2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국세 체납자 실태확인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2026년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500명 추가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단 운영비 등 총 63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7,000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단 운영비 등 총 1,499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시범사업 및 본청·지방청의 체납관리단의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점검 반영하여 일선 세무서의 체납관리단 운영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에 적합한 기간제근로자를 적기에 신속히 채용하고 적합한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세외 체납관리단 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국세청장의 국세외수입 채권에 대한 실태확인 및 체납관리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634억 200만원(630.6%) 증액된 73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6년도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압류재산 공매 | 4,254 | 4,254 | 14,868 | 228,232 | 213,364 | 1,435.1 |
| 국세 체납관리단 | - | - | 10,054 | 73,456 | 63,402 | 630.6 |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 | - | - | 149,962 | 149,962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국세 체납관리단은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2026.1.1. 시행)을 통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3)] 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 일반회계-압류재산공매(2232-301)(징세법무국)

3)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며, 총 3년간(2026~2028년)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임.

유형 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임.

[실태확인을 통한 체납자 분류 유형]

| 구 분 | 유 형 | 조치사항 |
|---|---|---|
| **생계 곤란형 체납자** |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시 |
| **일시적 납부곤란자** |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경우 |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납부유도 |
| **고의적 납부기피자** |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자료: 국세청

한편 2026년 1월 12일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대한 채용공고 후 2026년 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였고, 합격 인원은 4일간의 교육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중에 있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 · 절차 ·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 연초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및 운용 계획]

| 구 분 | 내 용 |
|---|---|
| 채용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 근무지 |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
| 근무기간 | 2026. 2. 26.(목) ~ 10. 8.(목) ※ 교육기간 : 2026. 2. 26. ~ 3. 4.(4일) |
| 근무조건 |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
| 급여/복지후생 |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주요업무 |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br>(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을 추가 채용한 후 올해 남은 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여 체납관리단의 규모를 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추가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시급을 시간당 12,250원으로 정하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시간당 1,930원을 추가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시간당 12,250원을 받도록 할 계획임.[4)]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보수 등 세부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예산액 | 산출내역 |
|---|---|---|---|
| 기간제보수등 | 인건비 | 29,360 | 1)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 2,500명×156일×6시간/일×12,250원=28,665<br>2) 기존 채용인력 생활임금 : 500명×120일×6시간/일×1,930원=695 |
| | 초과근무수당 | 2,829 | 1) 2,500명×18,375원×10시간×6월=2,756<br>2) 500명×2,895원×10시간×5월=72 |
| | 고용부담금 | 3,692 | [일용임금(29,360)+초과근무수당(2,829)]×11.47%=3,692 |
| | 정액급식비 | 2,500 | 1) 2,500명×160천원×6개월=2,400<br>2) 500명×40천원×5개월=100 |
| | 소계 | 38,381 | - |

주)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는 유급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자료: 국세청

4) 2026년 3월부터 근무 중인 기존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5월 전에는 시간당 10,320원을 수령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당 12,250원을 받게 됨.

이번 추경안은 이와 같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383억 8,100만원, 임차료 91억 5,800만원, 운영비 158억 6,3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63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안 | 세부내역 |
|---|---|---|
| 인건비 | 38,381 | 2,500명, 주5일, 1일 6시간, 2026년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12,250원), 4대보험 등 |
| 임차료 | 9,158 | 차량, 사무실, 사무기기 임차료 |
| 운영비 | 15,863 | 문자발송비용, 홍보비, 소모품비, 근무복, 공과금 등 |
| 합계 | 63,40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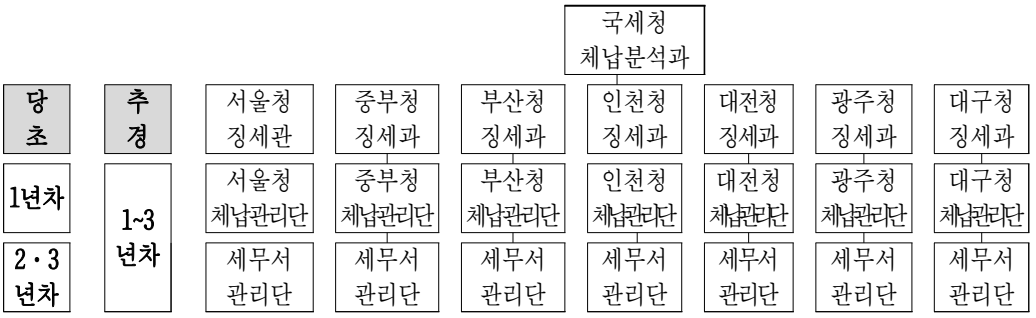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 나. 검토의견

**첫째,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500명(본청·지방청)에서 3,000명(50개 주요지역 확대)으로 연내 확대 운영함에 있어 시범사업 및 본청·지방청의 체납관리단의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점검 반영하여 일선 세무서의 체납관리단 운영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전국(50개 주요 지역)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 구성(단계적 확대)]




자료: 국세청 자료를 재가공

국세청이 당초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을 당해연도에 6배 규모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5] 연도별 사업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세청은 2025년 9월「국세 체납관리단」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원이 국세체납관리단 문구가 선명한 조끼를 착용하고 방문하여 체납사실이 이웃에게 노출되는 등 납세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 현장 방문 시 발생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 등을 조사원이 사비로 부담하는 사례, 다가구 주택의 상세 주소 부재 등으로 체납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성공률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 바 있음.[6]

[2025년「국세 체납관리단」시범운영]

■ (운영지역)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7개 지역)
■ (운영기간) 2025.9.3. ~ 2025.9.16. (10일)
■ (실태확인 대상인원) 약 4,000여명
■ (활동시간) 전화상담·실태확인 활동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자료: 국세청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채용·교육절차를 거쳐 7월에서야 국세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시범사업 및 2026년 3월부터의 본청·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에 적합한 기간제근로자를 적기에 신속히 채용하고 체납관리 및 복지연계 업무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연내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5) 참고로 2025년도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때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실태확인)을 일부 집단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4735)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세정일보, "내년 시행 국세체납관리단... 시범운영 해보니 '만만찮다'", 2025.11.11.

2026년 초 국세청은 본청·지방청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500명 채용공고를 낸 이후 총 8,377명이 접수해 높은 경쟁률(16.8:1)을 기록한 바 있으며,[7] 최종 합격자에 대해 4일간의 교육을 거쳐 일선 현장에 투입하고 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2,500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데,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7,000명 채용까지 감안한다면 체납관리단 업무에 적합한 인원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바,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업무에 적합한 기간제 근로자를 적기에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 홍보 및 적합 인원 선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체납관리단은 체납 관련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복지 사각지대 발견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채용 직후 교육기간(현행 4일)을 확대하는 등 세법 기초, 상담 기법, 복지 제도 연계 방법 등에 대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현장 투입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8]

**셋째,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음.[9]

---

7) 조세일보, “체납관리단 500명 모집에 8,377명 지원... ‘맞춤 징수’ 나선다”, 2026.1.26.

8) 추가적으로 체납사실 및 체납액 등에 대한 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에도 철저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약 28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겠다고 설명함.[10)]

[납부의무 소멸특례 처리 절차]

| 납세자 신청 | ⇒ | 실태조사 | ⇒ | 심의 | ⇒ | 결정 |
|---|---|---|---|---|---|---|
| 2025.1.1. 이전 발생 체납, 납부 곤란 등 요건 충족 | |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 | |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결정·통지 |

자료: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6.3.12.

국세 체납관리단의 업무 중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실태확인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에 대한 실태확인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11)] 나아가 체납관리단이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요건 대상자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연계하는 방식으로 복지위기 가구 발굴·신고를 추진하고 있음.[12)]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임.[13)]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10)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6.3.12.

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735호)」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 뉴시스, 국세 체납관리단, 복지위기 가구 발굴·신고 나선다”, 2026.3.4.

13) 보건복지부, “우리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 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 확대”, 2026.3.4.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처리 절차]

| ❶ 위기 상황 발견 · 도움요청 | ❷ 접수 · 지자체 배정 | ❸ 대상자 확인 ·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
| ▸ 본인·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br><br>▸ 모바일 위기알림 앱 ·포털(복지로)을 통한 도움요청 | ▸ 도움요청 접수(행복이음)<br>▸ 대상자 정보* 매칭 (행복이음-사각지대발굴시스템)<br>*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해당 여부, 위기정보 입수, 수급·상담 이력 등<br>▸ 지자체 배정(읍면동) | ▸ 대상자 확인(읍면동)<br>* 수급·상담 이력 등 조회<br>▸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읍면동)<br>- 유선 또는 방문 상담<br>- 필요시 공공·민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 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 확대”, 2026.3.4.

이처럼 국세 체납관리단의 확대 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의무를 소멸시키고 복지연계를 제공하여 조속한 재기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신규): 사업수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 제·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국세청에 국세외 체납관리단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1,499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압류재산 공매 | 4,254 | 4,254 | 14,868 | 228,232 | 213,364 | 1,435.1 |
| 국세 체납관리단 | - | - | 10,054 | 73,456 | 63,402 | 630.6 |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 | - | - | 149,962 | 149,962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non-tax revenue)으로,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 원이며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임.

국가채권 중 국세채권을 제외한 국세외수입채권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84.3조원 중 미수납액이 25.1조원(8.8%)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16.2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20~2024년 국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조원)

| 연도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2020 | 213.7 | 193.2 | 1.4 | 19.1 |
| 2021 | 248.6 | 226.3 | 1.3 | 21.0 |
| 2022 | 245.5 | 215.5 | 1.2 | 22.8 |
| 2023 | 254.7 | 229.6 | 1.1 | 24.0 |
| 2024 | 284.3 | 257.8 | 1.4 | 25.1 |

자료: 재정경제부

14) 일반회계-압류재산공매(2232-301)(징세법무국)

[2020~2024년 국세외수입 체납액 잔액]

(단위: 조원)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누적 체납액 | 13.3 | 14.1 | 14.5 | 15.9 | 1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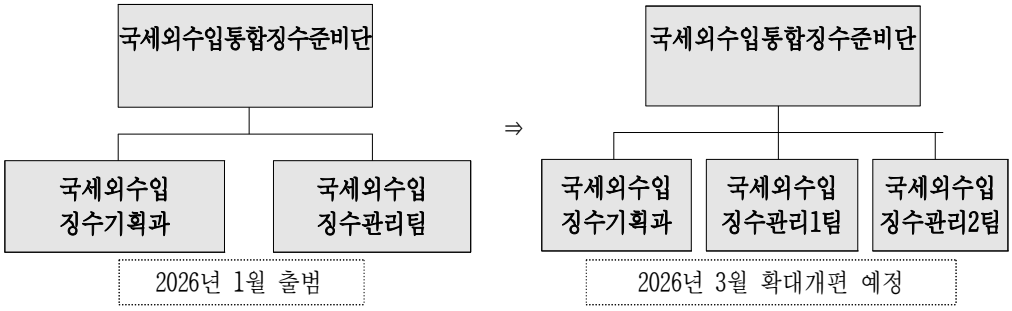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세수입과 마찬가지로 국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관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납관리단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음.[15)]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하여 재정수입 징수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고,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임.[16)]

국세청은 2026년 1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고,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조직도]




자료: 국세청,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2026.1.12.

15) 머니투데이, “못 걷는 세외수입 매년 '25조원'…“국세청이 나서라“ 이 대통령 특명”

16)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2026.1.12.

국세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세외 체납관리단을 1차와 2차에 걸쳐 나누어 채용할 계획임. 1차로는 3,000명을 신규 채용한 후 7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2차로는 4,000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3개월간 근무할 예정으로,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시급을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1만 2,250원으로 정하였음.

[국세외 체납관리단 기간제 보수 등 세부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예산액 | 산출내역 |
|---|---|---|---|
| 기간제 보수 등 | 인건비 | 74,872 | (1차) 3,000명×156일 × 8시간 × 12,250원<br>(2차) 4,000명×74일× 8시간 × 12,250원 |
| | 초과근무수당 | 5,513 | (1차) 3,000명×18,375원×10시간×6개월<br>(2차) 4,000명×18,375원×10시간×3개월 |
| | 고용부담금 | 9,220 | [ 일용임금(74,872)+초과근무수당(5,513) ]×11.47% |
| | 정액급식비 | 4,800 | (1차) 3,000명×160천원×6개월<br>(2차) 4,000명×160천원×3개월 |
| | 소계 | 94,405 | - |

주) 인건비는 유급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자료: 국세청

이번 추경안은 이와 같은 국세외 체납관리단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944억 500만원, 임차료 159억 8,600만원, 운영비 395억 7,1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1,49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국세외 체납관리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안 | 세부내역 |
|---|---|---|
| 인건비 | 94,405 | 7,000명(1차 3,000명, 2차 4,000명) 주5일, 1일 8시간,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12,250원), 4대보험 등 |
| 임차료 | 15,986 | 차량, 사무실, 사무기기 임차료 |
| 운영비 | 39,571 | 문자발송비용, 홍보비, 소모품비, 근무복, 공과금 등 |
| 합계 | 149,962 | - |

자료: 국세청

## 나. 검토의견

**국세외 체납관리단 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국세청장의 국세외수입 채권에 대한 실태확인 및 체납관리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가채권 중 국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장)·관세청(세관장)이 체납처분 및 강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7][18] 또한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2026.1.1. 시행)을 통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19] 2026년부터 국세체납관리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17) 「국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18)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 및 강제징수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19)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달리 국가채권 중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등과 국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채권관리관)에게 채권관리사무가 규정되어 있음.[20]

만일 이러한 국가채권의 납입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거나, 담보물 처분,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 소 제기 등을 통해 채권의 강제이행을 도모하고 있음.[21]

---

20) 「국가채권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21)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이하 각 호 생략)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각 호 생략)

정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기간제근로자 7,000명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고자 이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다만, 이 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125)과 국세청장의 국세외수입 채권에 대한 실태확인 위탁업무 수행 및 체납관리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6464)이 의결됨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련 법률안 회의경과 및 주요내용]

| 의안명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회의 경과 | 주요내용 |
|---|---|---|---|---|
|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 2217125 | 2026.2.26. | 2026.2.27. 재경위 회부 (미상정) | ·국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함<br>·국세청장이 실태조사,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외수입 체납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br>·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 2216464 | 2026.1.30. | 2026.3.17. 재경위 상정, 소위회부 |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6.4.2.)

# 조 달 청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3,97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예 산 | 3,664 | 3,664 | 3,976 | 3,976 | - | - |
| 합 계 | 3,664 | 3,664 | 3,976 | 3,976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문의 : 백호열 예산결산조사관 bhy@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98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원(0.9%) 증가함.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452 | 2,452 | 2,961 | 2,987 | 26 | 0.9 |
| 합 계 | 2,452 | 2,452 | 2,961 | 2,987 | 26 | 0.9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조달특별회계) 7,85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원(△0.3%) 감소함.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조달특별회계 | 7,377 | 7,377 | 7,882 | 7,856 | △26 | △0.3 |
| 합 계 | 7,377 | 7,377 | 7,882 | 7,856 | △26 | △0.3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추경안은 1개 회계(조달특별회계) 7,85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원(△0.3%) 감소함.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조달특별회계 | 7,377 | 7,377 | 7,882 | 7,856 | △26 | △0.3 |
| 합 계 | 7,377 | 7,377 | 7,882 | 7,856 | △26 | △0.3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26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6억 3,900만원이며,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계약체결 전 페이퍼컴퍼니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세부사업에 26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액분 (B-A) | (B-A)/A |
| 조달특별회계 | 3,007 | 3,007 | 3,359 | 5,998 | 2,639 | 78.6 |
| 1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 3,007 | 3,007 | 3,359 | 5,998 | 2,639 | 78.6 |
| 합 계 | 3,007 | 3,007 | 3,359 | 5,998 | 2,639 | 78.6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은 페이퍼컴퍼니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안전사고·부실공사 위험을 감소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52억 7,800만원으로 모두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사업임.

이들 감액 사업은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증액 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내부거래 예산 변동으로, 조달특별회계는 추경 등으로 인한 예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본계정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내부거래 조정 등을 통해 세입·세출을 일치[2]시켜야 함.

2) 내부거래: 계정간전입금, 자본계정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은 주요사업비 예산 변동시 연동되어 증·감액 됨.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세출예산(‘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세부사업)이 26억 3,900만원 증가한 만큼 손익계정의 세출예산인 ‘자본계정 전출금’을 △26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본계정 잉여금 감소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26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감액분 (B-A) | (B-A)/A |
| *내부거래(비중 100.0%)* | | *401,712* | *401,712* | *401,624* | *396,346* | *△5,278* | *△1.3* |
| *조달특별회계(세출)* | | *401,712* | *401,712* | *401,624* | *396,346* | *△5,278* | *△1.3* |
| *1* | *자본계정 전출금* | *263,996* | *263,996* | *287,350* | *284,711* | *△2,639* | *△0.9* |
| *2* | *일반회계 전출금* | *137,716* | *137,716* | *114,274* | *111,635* | *△2,639* | *△2.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감액이 포함된 세입은 1개 세입으로 총 감액규모는 26억 3,900만원(총계 기준)으로, 그 구성내역은 내부 거래 예산 감액 26억 3,900만원으로 총수입에 제외되는 사업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세출예산(‘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세부사업)이 26억 3,900만원 증가하면서 자본계정 전출금을 감액한 만큼 세입예산의 자본계정의 내부거래인 ‘계정간 전입금’을 26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임.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 감액 세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감액분 (B-A) | (B-A)/A |
| *내부거래(비중 100.0%)* | | *263,996* | *263,996* | *287,350* | *284,711* | *△2,639* | *△0.9* |
| *조달특별회계(세입)* | | *263,996* | *263,996* | *287,350* | *284,711* | *△2,639* | *△0.9* |
| *1* | *계정간전입금* | *263,996* | *263,996* | *287,350* | *284,711* | *△2,639* | *△0.9*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달청은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부적격 업체의 낙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입찰 단계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바,

해당 업무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채용 및 인력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조사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여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Ⅱ. 사업별 검토

##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 <세출증액>

## 1.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신규):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은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조사를 통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및 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26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6년도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 3,007 | 3,007 | 3,359 | 5,998 | 2,639 | 78.6 |
|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 - | - | - | 2,639 | 2,639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입찰 경쟁 심화로 인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4)]를 활용한 부당 입찰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 건설 시장

3) 조달특별회계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1236-345)(시설사업국)

4) 개념: 공사수행을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실제 시공·관리능력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로 영업활동을 하는 건설업체
조건: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장비로 이루어지며, 위 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

내 부적격 업체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공 조달 과정에서 이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 이후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는데,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기본 등록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위험이 커져 발주기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조달청은 공공 조달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부적격 업체의 낙찰을 차단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경비 26억 3,900만원을 이번 추경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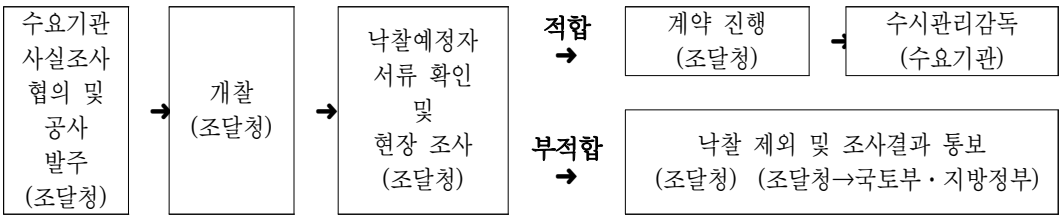
[2026년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추경안: 26억 3,900만원(순증)**

❶ 인건비 +867백만원
: 일용임금 729백만원, 고용부담금 138백만원
❷ 기본 운영비 +192백만원
: 일반수용비 54백만원, 운전자보험료 3백만원, 피복비 11백만원, 유류비 15백만원, 특근매식비 6백만원, 복리후생비 8백만원, 사무실 수리비용 95백만원
❸ 용역비 +1,200백만원
: 자본금 심사 용역 1,200백만원
❹ 임차료 +320백만원
: 사무실 임차 188백만원, 조사차량 임차 132백만원
❺ 여비 +41백만원
: 일비 27백만원, 식비 4백만원, 숙박비 10백만원
❻ 직무수행경비 +19백만원
: 사업추진비 19백만원

자료: 조달청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체계]




자료: 조달청

## 나. 검토의견

**첫째,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는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나,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조사 인력의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의 특성과 업무 수행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인력 채용 방식 및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달청은 이번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해 공무원 22명 증원, 기간제 근로자 42명 채용 등 총 64명의 조사 인력을 구성할 계획임.[5] 이 중 20명은 서류 확인 업무에, 44명(공무원 22명, 기간제 근로자 22명)은 현장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실시하게 됨.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서류 검증, 위반사항 판단 등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임.

특히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는 형식적 요건 확인을 넘어 실질적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업무 경험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함.

그러나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을 보면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활용할 경우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조사 기준 및 판단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신규 인력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훈련 수요로 행정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실조사 품질 저하 및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5)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관련 직제 추진 현황]
현황: 조달청은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22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2026년 상반기 수시직제 반영을 협의 중임.
계획: 수시직제 요구(안) 제출(3.31.) → 직제령 및 시행규칙 개정(5~6월)→ 시행(7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 인력 운영 계획]

| |
|---|
| ► 관리인원 1명(공무원), 조사인원 64명 필요(공무원22명, 기간제근로자42명)<br>► (예산·인력 충원 전)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br>► (예산·인력 충원 후) 사실조사 전수조사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42명)<br>· 조사인원(64명)은 서류확인(20명, 기간제근로자), 현장조사(44명, 공무원+기간제근로자)인원으로 구성<br>· 현장조사를 2인1조(공무원+기간제근로자)로 실시, 22팀 필요 |

자료: 조달청

참고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자체발주 공사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이는 조사 결과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특히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사례 축적이 가능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른 기관의 공사 사실조사 인력 운영 사례]

| |
|---|
| - (경기도) 9명*으로 구성, 연평균('19년~'25년) 338건(월 28건) 실시, 단속률 33.1%<br>* 시설5급 1인, 시설6급 1인, 행정6급 1인, 시설7급 2인, 임기제 4인<br><br>- (충청남도) 4인*으로 구성, 연평균('22년~'24년) 45건(월 3.8건) 실시, 단속률 24.4%<br>* 시설5급 1인, 시설6급 이하 3인<br>※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자체 공사발주건에 한하여 사실조사 실시 |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단기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업무를 공무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건설공사 사실조사 대상 건수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절차가 미비할 경우 계약 체결 지연 및 사업 추진 차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조사 절차의 표준화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보완하여 부적격 업체의 낙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는 주기적·선별적 조사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현장 확인 → 행정처분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 기간 동안 등록기준 미달 업체라도 형식적 요건만 유지하면 입찰 참여 및 낙찰이 가능함.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법적 근거, 목적, 조치수단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전문성이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사실조사 방식에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와 조달청 사실조사 사업 비교]

| 구 분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 조달청 사실조사 |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
| 지 위 | 건설업 면허 관리 주체 | 국가계약법 상 발주청 |
| 주요 목적 | 시장질서 확립 및 면허 관리 | 부적격 업체의 낙찰 방지 |
| 법적 성격 | 행정조사 및 감독 | 계약절차상 사실확인 |
| 핵심 권한 | 면허 자체에 대한 제재(말소/정지) | 낙찰자 결정 권한(배제/선정) |
| 점검 대상 | 건설업 등록업체 전반 | 특정 입찰 참여 업체 |
| 결과 조치 | 사업자 존립(면허 유지) 결정 | 당해 입찰의 낙찰 가능 여부 결정 |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조달청이 수행할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6]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지연 및 사업 추진 차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장 조사 확대가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나 업체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6) 조달청의 사실조사는 적격심사 공사(「국가계약법」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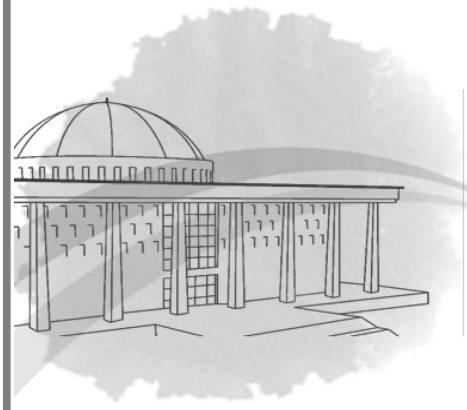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이에 조달청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26년 3월 현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7]이며, 늦어도 2026년 5월에는 입찰자격 사실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 사업은 실질적인 조사와 확인을 위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과 인력으로 부적격 업체를 효과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조사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여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정명 | 규정유형 | 정비내용(안) | 추진시기 |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침 | 기술자보유점검(서류심사) → 자본금, 사무실 점검 추가(현장조사) | 추진 중(행정예고 중) |

# 교육위원회



# 교 육 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5,414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4,923 | 4,923 | 5,414 | 5,414 | - | - |
| 합 계 | 4,923 | 4,923 | 5,414 | 5,414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04조 2,0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조 8,109억원(4.8%) 증가함.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예 산 | 980,896 | 958,458 | 993,898 | 1,042,008 | 48,109 | 4.8 |
| 합 계 | 980,896 | 958,458 | 993,898 | 1,042,008 | 48,109 | 4.8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403억원(0.2%) 증가함.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66,636 | 163,068 | 173,399 | 173,802 | 403 | 0.2 |
| 합 계 | 166,636 | 163,068 | 173,399 | 173,802 | 403 | 0.2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21조 9,43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조 8,512억원(4.1%) 증가함.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993,221 | 970,784 | 1,004,450 | 1,052,559 | 48,109 | 4.8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61,273 | 157,705 | 166,477 | 166,880 | 403 | 0.2 |
| 합 계 | 1,154,494 | 1,128,489 | 1,170,927 | 1,219,439 | 48,512 | 4.1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4조 8,512억 3,700만원임.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5조 3,591억 2,1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9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2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내국세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금 사업에 4조 7,693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120억원,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에 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음.

그리고 청년층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에 283억원, 직업계고 졸업자 대상 진로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에 3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86,547,567 | 84,324,437 | 93,196,016 | 98,514,837 | 5,318,821 | 5.7 |
| 1 | 보통교부금 | 69,659,572 | 67,732,259 | 69,004,889 | 73,582,087 | 4,577,198 | 6.6 |
| 2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743,713 | 726,916 | 630,914 | 676,421 | 45,507 | 7.2 |
| 3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247,905 | 242,306 | 210,304 | 225,473 | 15,169 | 7.2 |
| 4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1,067,409 | 1,033,814 | 1,261,828 | 1,352,842 | 91,014 | 7.2 |
| 5 |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60,839 | 545,908 | 560,813 | 601,263 | 40,450 | 7.2 |
| 6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57,435 | 57,435 | 61,329 | 62,328 | 999 | 1.6 |
| 7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 2,450 | 2,450 | 2,750 | 3,050 | 300 | 10.9 |
| *8*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 | | *6,629,072* | *7,059,552* | *430,480* | *6.5* |
| *9* |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 전출* | *14,208,244* | *13,983,349* | *14,834,117* | *14,951,821* | *117,704* | *0.8* |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액분 (B-A) | (B-A)/A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1,275,609 | 1,300,174 | 1,173,359 | 1,213,659 | 40,300 | 3.4 |
| 10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182,700 | 184,950 | 262,461 | 290,761 | 28,300 | 10.8 |
| 11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92,909 | 1,115,224 | 910,898 | 922,898 | 12,000 | 1.3 |
| 합계 | | 87,823,176 | 85,624,611 | 94,369,375 | 99,728,496 | 5,359,121 | 5.7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5,078억 8,400만원이며, 모두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사업임.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에서 △4,304억 8,0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에서 △774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음.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감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2,169,013* | *2,037,159* | *4,684,598* | *4,176,714* | *△507,884* | *△10.8* |
| *1*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 - | - | *2,638,044* | *2,207,564* | *△430,480* | *△16.3* |
| *2*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2,169,013* | *2,037,159* | *2,046,554* | *1,969,150* | *△77,404* | *△3.8* |
| *합계* | | *2,169,013* | *2,037,159* | *4,684,598* | *4,176,714* | *△507,884* | *△10.8*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 태양광설비 보급과 관련하여, 기보급 학교 증설 지원 여부, 학교 입지 및 규모 등에 따른 적정 설비용량, 학교별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각 학교별 수요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에 적정 용량의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트캠프 신규선정 분야 및 구체적 운영 방식 등을 조속히 구체화함으로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 부트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태양광설비를 보급하는 한편, 태양광설비로 인한 각 대학 전기요금 절감분 중 적정한 비율은 각 대학별 지원예산 배분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합리적인 지원기준 설정 및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대상(용량) 확정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부설학교 및 국립특수학교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억 9,900만원(3.2%) 증액된 317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6년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57,435 | 57,435 | 61,329 | 62,328 | 999 | 1.6 |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 26,819 | 26,819 | 30,764 | 31,763 | 999 | 3.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국립부설학교 36개교(어린이집 3개소 포함) 및 국립특수학교 6개교에 대한 시설예산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3개 학교에 학교당 100㎾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예산 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 30,764백만원 → 31,763백만원 (999백만원 증)
- 실시설계비(420-02) : 896백만원 → 960백만원 (64백만원 증)
  * 태양광발전 설비 설계비 : 21.33백만원 × 3개교 = 64백만원
- 공사비(420-03) : 23,809백만원 → 24,744백만원 (935백만원 증)
  * 태양광발전 설비 공사비 : 311.66백만원 × 3개교 = 935백만원

자료: 교육부

2) 일반회계-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교원교육자치지원관)

##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 태양광설비 보급과 관련하여, 기보급 학교 증설 지원 여부, 학교 입지 및 규모 등에 따른 적정 설비용량, 학교별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각 학교별 수요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에 적정 용량의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6년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서 현재 태양광설비가 보급되지 않은 국공립 초중등학교 6,749개교 중 소규모·노후학교를 제외한 4,378개교에 2030년까지 태양광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특별교부금 433억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비 등을 통해 총 400개교에 태양광설비를 신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햇빛이음학교 사업개요]

| |
|---|
| ○ 사업내용 : 국공립학교 태양광설비 보급 확대 및 생태전환교육 기반 구축 |
| - 2030년까지 (현재) 태양광설비 미보급 학교 중 4,378개교에 신규 보급 추진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
| * 현재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설비 보급률 : 약 34.6% (총 10,315개교 중 3,566개교 태양광 보유) |
| * 현재 미보급 학교 6,748개교 중 2,371개교는 소규모·노후로 설치 곤란 |
| - 2026년 400개교 신규보급(시범사업) |
| * 특별교부금 433억원으로 260개교 신규보급 : 학교당 166백만원 지원(50kW 내외 자가소비형 설비 보급) |
| *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으로 140개교 보급 |
| - 태양광설비 연계교육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 개발 |
| ○ 기대효과 |
| - (전기료 절감) 학교별 태양광 50kW 설치 시 연간 약 68MWh 전력생산 (전기요금 1천만원 상당 절감) |
| - (온실가스 감축) 학교별 태양광 50kW 설치 시 연간 31.49톤 온실가스 감축 (소나무 4,771 그루 식재 효과)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2.25.), "학교 태양광,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잇다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 사업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학교 3개교에 태양광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9억 9,9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0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19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함. 또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으로서 에너지원 다변화에도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함.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통해 적어도 3개 학교가 태양광 설비 보급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나, 예산이 통과될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 학교와 설비용량을 확정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실제, 교육부가 파악한 희망학교 중에는 이미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증설을 희망하는 학교가 1개교 있는데,[3] 2026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서는 아직 태양광설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설비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증설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실제 수요 대비 신청이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국립학교(유치원 3개소 포함) 42개교 중 31개교에 태양광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며 그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전까지는 발전용량 50㎾ 미만인 설비가 주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학교당 보급되는 설비의 용량이 커지면서 2023년 이후에는 각 학교에 100㎾ 이상의 설비가 보급되고 있음.

[국립학교 태양광설비 설치 현황]

(단위: 개교)

| 연도 / 설비용량 | 2013~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계 | 학교 건축면적주) (평균) |
|---|---|---|---|---|---|---|---|---|---|---|---|
| 50㎾ 미만 | 10 | - | 1 | - | 1 | - | - | - | - | 12 | 3,958 ㎡ |
| 50㎾ 이상 100㎾ 미만 | 1 | 2 | - | 2 | 2 | - | - | - | - | 7 | 3,092 ㎡ |
| 100㎾ 이상 200㎾ 미만 | - | - | - | 1 | 6 | - | 1 | 1 | - | 9 | 2,993 ㎡ |
| 200㎾ 이상 | - | - | - | - | 1 | - | 1 | | 1 | 3 | 6,357 ㎡ |
| 계 | 11 | 2 | 1 | 3 | 10 | - | 2 | 1 | 1 | 31 | - |

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태양광설비가 주로 학교 옥상에 설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면적이 클수록 대용량 설비 가동여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50㎾ 미만 설비가 설치된 학교 건축면적이 평균 3,958㎡로 100~200㎾ 설비가 설치된 학교(평균 2,993㎡)보다 오히려 더 큰 점을 감안하면, 종전부터 50㎾ 미만 설비를 설치·운영해온 학교 중에도 증설 여력이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음.

3) 추경편성 단계에서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태양광설비 미보급 학교 중 2개교가 보급을 희망하였고, 2020년에 발전용량 71㎾ 설비가 보급된 1개교가 추가 보급을 희망하였음.

따라서 교육부는 태양광설비 기보급 학교에 대한 증설 지원 여부, 학교 입지 및 규모 등에 따른 적정 설비용량, 학교별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각 학교 수요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에 적정 용량의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출증액>

## 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신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단기 집중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대학생이 아닌 청년도 이를 통해 취업·창업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28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182,700 | 184,950 | 262,461 | 290,761 | 28,300 | 10.8 |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 - | - | 28,300 | 28,300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사업으로서,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운영중인 AI·반도체 분야 등의 부트캠프 사업단 88개(운영대학 66개교) 중에서 20개를 선정하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하, “청년(비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7억원씩 추가 지원하는 유형(유형1, 첨단인재형)과,

인문·사회·예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AX 실전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부트캠프 20개를 신규 선정하여 각 7억원씩 지원하는 유형(유형2, 실전인재형)으로 이루어져 있음.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인공지능인재지원국)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개요]

| 구 분 | (유형1) 첨단인재형 | (유형2) 실전인재형 |
|---|---|---|
| 지원대상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br>운영대학 66개교 (88개 사업단*)<br>* 인공지능 40개, 반도체 28개, 이차전지 4개, 바이오 4개, 미래차 4개, 디스플레이 3개, 항공우주 3개, 로봇 2개 | 대학·전문대학 |
| 지원규모 | 20개 | 20개 |
| 지원단가 | 7억원<br>(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지원) | 7억원<br>(신규지원) |
| 주요내용 | 청년(비재학생)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활동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청년(비재학생)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X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인재형)를 통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실습 및 경력설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첨단인재형(유형1)은 청년(비재학생)도 부트캠프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실습과 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분야 직무역량 함양기회가 제한적인 청년(비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음.

교육부 사업 중에 대학(교육기관)이 기업과 협업하여 대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매치업(Match業) 사업이 있는데, 매치업은 처음부터 재직자, 구직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인 반면, 첨단인재형 부트캠프는 대학의 전공과정 교육프로그램을 기초로 그 대상을 청년(비재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5)]

5) 참고로, 매치업 사업예산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집행되고, 부트캠프 사업예산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매치업(Match業) 사업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인재형) 사업 비교]

| 구 분 | 매치업(Match業)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인재형(유형1)) |
|---|---|---|
| 지원대상 | 구직자, 재직자, 대학생 등 | 일자리 밖 청년 |
| 운영방식 | 온·오프라인 비중 유사<br>* '18년 온라인과정으로 시작하였으며, '22년부터 일부 과정(심화과정) 오프라인 실습 병행 | 오프라인 실습 교육과정 중심<br>(대학 인프라 활용) |
| 운영분야주) |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
| 2025년 운영실적주) | 13개 분야 96개 과정 | 629개 단기 집중교육과정<br>(47개 대학, 1,586개 기업 협업) |
| 지원예산 | 4,128백만원<br>- 매치업 강좌 개발 : 960백만원<br>- 심화강좌 운영 : 3,168백만원 | 14,000백만원<br>(20개교 × 700백만원) |

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의 운영분야 및 2025년 운영실적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현황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따라서 첨단인재형 부트캠프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전공과정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심층적 교육·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청년(비재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각 부트캠프는 참여 예상 청년(비재학생) 현황이나 구체적인 지원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6] 그 수요에 맞는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교육부는 첨단인재형(유형1)이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청년(비재학생)의 유의미한 참여 없이 단순히 기존 부트캠프 일부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실전인재형)의 신규 선정 분야와 학사과정 연계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 부트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예를 들어, 최근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 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이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그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 부트캠프 사업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 사업 실전인재형(유형2)은 첨단인재형(유형1)과 달리, 현재 부트캠프가 없는 분야에 부트캠프 20개를 신규 선정하여 각 7억원씩 지원하려는 것임.

다만, 신규선정 분야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인문·사회·예술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각 대학이나 산업현장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구체화하고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래 대학생을 지원하는 부트캠프가 청년(비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인재형(유형1)과 달리, 실전인재형(유형2)은 주요 지원대상을 청년(비재학생)으로 설정하고, 대학생 지원 여부는 불분명하나, 대학생도 해당 부트캠프 참여를 희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학사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대학생 지원 여부, 학사과정 연계 및 수강료 산정 등의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번 추경에서 이 사업예산이 통과될 경우, 추경 취지상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 부트캠프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부는 현장 수요조사, 신규선정 분야 확정, 운영방식 설계 및 모집공고, 심의, 선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3. 국립대학 시설확충: 태양광설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의 적절한 배분방안 검토 필요

## 가. 개 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대학 36개교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20억원(1.3%) 증액된 9,22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92,909 | 1,115,224 | 910,898 | 922,898 | 12,000 | 1.3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국립대학에 총 3,600㎾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예산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국립대학 시설확충 : 910,898백만원 → 922,898백만원 (12,000백만원 증)
- 실시설계비(420-02) : 22,664백만원 → 23,264백만원 (600백만원 증)
- 공사비(420-03) : 688,043백만원 → 699,443백만원 (11,400백만원 증)
* 태양광설비 보급분 증액 : 12,000백만원 (35개교 × 340백만원)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태양광설비를 보급하는 한편, 태양광설비로 인한 각 대학의 전기요금 절감분 중 적정한 비율은 각 대학별 지원 예산 배분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이 사업은 2026년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중 태양광설비 지원분을 종래 9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12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8]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각 대학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9]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함과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2025년 국립대학 36개교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총 8억 572만kWh이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5,760만kWh으로 에너지자립률은 7.1%[10]이었는바,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국립대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연간 약 82억원어치의 전기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국립대학 연간 전력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25년)]

(단위: kWh, %)

| 연간 전력사용량 (A) |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 | | | | | |
|---|---|---|---|---|---|---|---|---|
| | 합계 (B) | B/A | 옥상 (C) | C/A | 주차장 (D) | D/A | 기타 (E) | E/A |
| 805,716,934 | 57,597,851 | 7.1 | 53,683,408 | 6.7 | 2,734,024 | 0.3 | 1,180,419 | 0.1 |

자료: 교육부

각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24개 대학이 전기요금 환산 시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이 중 2개 대학은 2025년 5억원 이상의 전기를 자체 생산하였음.

[국립대학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전기요금 환산치(2025년)]

(단위: 개교)

| 신재생에너지 생산 | 연간 발전량 | 70만 kWh 미만 | 70만 kWh ~ 140만 kWh | 140만 kWh ~ 210만 kWh | 210만 kWh ~ 280만 kWh | 280만 kWh ~ 350만 kWh | 350만 kWh 이상 |
|---|---|---|---|---|---|---|---|
| | 전기요금 환산치 | 1억원 미만 | 1억 ~ 2억원 | 2억 ~ 3억원 | 3억 ~ 4억원 | 4억 ~ 5억원 | 5억원 이상 |
| 해당 국립대학 수 | | 12 | 9 | 5 | 5 | 3 | 2 |

주) 전기요금 환산치는 연간발전량에 교육용전기 기준단가(2024년)인 143원/kWh를 곱하여 산출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8) 참고로 각 국립대학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28개 대학이 2026년 태양광설비 보급을 희망하였으며, 신청한 발전용량은 총 11,322kW (설비보급예산 377억원 상당)이었음.

9) 120억원을 증액할 경우 총 3,600kW 용량의 설비를 추가 보급할 수 있어 연간 약 7억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10)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국립대학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총 7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2026년 본예산 지원분 90억원 포함), 2018년 3.1%였던 국립대학 에너지자립률(평균)은 2025년 7.1%로 증가하였음.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비대상)[11] 등을 통해 각 대학의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 배분되는 기본경비 예산은 각 대학의 재학생 수, 교직원 수, 교사(校舍)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의 태양광설비 전기생산량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즉, 태양광설비 전기생산량과 무관하게 대학별 전기요금 지원예산이 정해지는데,[12]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대학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일 수 있으므로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의 효과적 배분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보임.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태양광설비 투자에 따른 수익이라고 본다면, 국고지원 설비의 경우 그 수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국가에 귀속하되,[13] 대학의 설비 관리 노력이나 태양광설비 확충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각 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태양광설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 중 적정 금액은 각 대학별 지원예산 배분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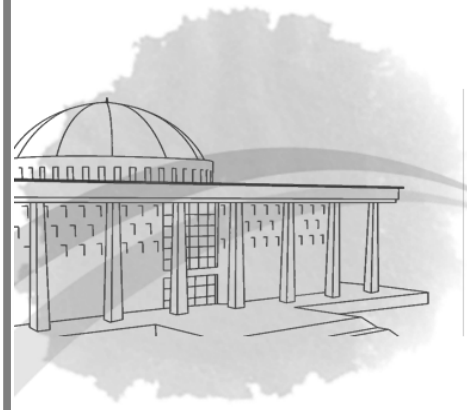
---

11) 참고로,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2703-250) 사업의 2026년 예산은 1,461억 7,100만원이며, 이 중 공공요금및제세(210-02) 예산은 867억 3,400만원임.

12) 각 대학에서는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비대상)(2703-250) 지원분 외에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을 비롯한 타 사업예산 지원분으로도 전기요금을 충당하나, 각 사업예산의 대학별 지원분을 정할 때 해당 대학의 태양광설비 전기생산량을 고려하는 경우는 없음.

13) 대학측에서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부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애초에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이므로 그 임대수익도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며, 국가에서 국립대학에 제공한 시설을 대학 목적사업(교육・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이중지원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0조 55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81,736 | 81,736 | 80,135 | 80,135 | - | - |
| 기 금 | 14,758 | 14,758 | 20,421 | 20,421 | - | - |
| 합 계 | 96,494 | 96,494 | 100,556 | 100,556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 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3조 8,57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4억원(0.5%) 증가함.

예산은 22조 8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억원(0.3%) 증가하고, 기금은 1조 8,48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24억원(2.3%) 증가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69,298 | 189,168 | 219,354 | 220,084 | 730 | 0.3 |
| 기 금 | 19,669 | 20,658 | 18,063 | 18,487 | 424 | 2.3 |
| 합 계 | 188,967 | 209,826 | 237,417 | 238,571 | 1,154 | 0.5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7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923 | 3,923 | 4,015 | 4,015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0 | 120 | 127 | 127 | - | - |
| 책임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 401 | 401 | 444 | 444 | - | - |
| 책임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 407 | 407 | 430 | 430 | - | - |
| 우편사업특별회계 | 53,784 | 53,784 | 54,107 | 54,107 | - | -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57,868 | 57,868 | 55,567 | 55,567 | - |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11,059 | 11,059 | 9,994 | 9,994 | - | - |
| 합 계 | 127,562 | 127,562 | 124,684 | 124,684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10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책임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7조 4,79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억원(0.3%) 증가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85,931 | 105,561 | 128,364 | 129,007 | 643 | 0.5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207 | 4,207 | 4,708 | 4,708 | - | - |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4,258 | 4,258 | 4,699 | 4,69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204 | 9,443 | 13,142 | 13,229 | 87 | 0.7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092 | 1,092 | 2,605 | 2,605 | - | - |
| 책임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 401 | 401 | 444 | 444 | - | - |
| 책임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 407 | 407 | 430 | 430 | - | - |
| 우편사업특별회계 | 53,784 | 53,784 | 54,107 | 54,107 | - | -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57,868 | 57,868 | 55,567 | 55,567 | - |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11,059 | 11,059 | 9,994 | 9,994 | - | - |
| 합 계 | 228,211 | 248,080 | 274,060 | 274,790 | 730 | 0.3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개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조 1,40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00억원(1.8%) 증가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10 | 10,893 | 11,207 | 11,207 | 11,407 | 200 | 1.8 |
| 합계 | 10,010 | 10,893 | 11,207 | 11,207 | 11,407 | 200 | 1.8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15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음.[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156억 7,3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8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1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위한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 637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딥테크 분야 기술 발굴부터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 사업에 8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 제조업 등 분야 기업이 AI 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솔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AI통합바우처’ 사업에 200억원 등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509,604 | 539,604 | 687,986 | 752,254 | 64,268 | 9.3 |
| 1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218,356 | 233,356 | 297,077 | 311,375 | 14,298 | 4.8 |
| 2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97,634 | 101,384 | 120,610 | 137,100 | 16,490 | 13.7 |
| 3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97,697 | 101,447 | 116,367 | 132,857 | 16,490 | 14.2 |
| 4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90,160 | 97,660 | 126,289 | 142,779 | 16,490 | 13.1 |
| 5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 5,757 | 5,757 | 27,643 | 28,143 | 500 | 1.8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106,104 | 116,104 | 167,343 | 176,043 | 8,700 | 5.2 |
| 6 | 연구개발특구육성 | 106,104 | 116,104 | 167,343 | 176,043 | 8,700 | 5.2 |
| 정보통신진흥기금 | | 86,907 | 88,231 | 172,564 | 192,864 | 20,300 | 11.8 |
| 7 | AI통합바우처 | - | - | 89,775 | 109,775 | 20,000 | 22.3 |
| *8*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86,907* | *88,231* | *82,789* | *83,089* | *300* | *0.4*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1개(정보통신진흥기금)임.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기후대응기금 | - | - | 20,000 | 42,405 | 22,405 | 112.0 |
| 9 CCU 메가프로젝트 | - | - | 20,000 | 42,405 | 22,405 | 112.0 |
| 합계 | 702,615 | 743,939 | 1,047,893 | 1,163,566 | 115,673 | 11.0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3억원이며,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주요 감액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액을 환급받아 △3억원을 감액하였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당초 | 수정 | 현계획(A) |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정보통신진흥기금 | 34,955 | 33,631 | 40,128 | 39,828 | △300 | △0.7 |
|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4,955* | *33,631* | *40,128* | *39,828* | *△300* | *△0.7* |
| 합계 | 34,955 | 33,631 | 40,128 | 39,828 | △300 | △0.7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4)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리그 수상팀에 대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시제품 제작 및 홍보까지의 단계적 지원을 7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진행할 계획이므로, 수상팀 선정 및 후속지원 일정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고 사업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의 목표대로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스케일업 지원이 시작되는 2단계 지원 전에 기술이전 관련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년창업기업의 역량이나 과제의 범위 등을 고려해 과제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조정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기관과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개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사업: 사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창업 및 사업화협력’** 사업은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630억원(711.8%) 증액된 71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6년도 창업 및 사업화협력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218,356 | 233,356 | 297,077 | 311,375 | 14,298 | 4.8 |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 3,558 | 3,558 | 2,891 | 17,141 | 14,250 | 492.9 |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97,634 | 101,384 | 120,610 | 137,100 | 16,490 | 13.7 |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 2,278 | 2,278 | 2,278 | 18,528 | 16,250 | 713.3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97,697 | 101,447 | 116,367 | 132,857 | 16,490 | 14.2 |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 2,000 | 2,000 | 1,682 | 17,932 | 16,250 | 966.1 |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90,160 | 97,660 | 126,289 | 142,779 | 16,490 | 13.1 |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 1,000 | 1,000 | 2,000 | 18,250 | 16,250 | 812.5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일반회계-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1)(미래인재정책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2)(미래인재정책국),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3)(미래인재정책국),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5)(미래인재정책국)

추경안을 통해 증액된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예산은 크게 다음의 4가지 내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첫째, 내내역사업인 **‘창업리그 운영’** 사업은 4대 과학기술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학생으로 구성된 예비 또는 초기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 리그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총 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창업리그 개최(안)]

| 구분 | | 주요내용 |
|---|---|---|
| 지원대상 | | 4대 과학기술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학생으로 구성된 예비 또는 초기창업팀<br>* 예비창업팀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팀을 의미하고 초기창업팀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의 창업팀을 의미함 |
| 진행방식 | | 학부생과 대학원생 리그를 구분하여 개별 과학기술원 내 예선을 치르고, 예선 통과팀은 4대 과학기술원 통합으로 진행하는 본선을 진행 |
| 지원 내용 | 예선 | 예선 참가 팀 창업활동비(제품 제작·개발,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24억원* 지원<br>* (학부생 리그)1,500만원 × 80팀 + (대학원생 리그)2,000만원 × 60팀 지원 |
| | 본선 | 본선 진출 팀 창업활동비(제품 제작·개발,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14억원* 지원<br>* (학부생 리그)3,000만원 × 20팀 + (대학원생 리그)4,000원 × 20팀 |
| | 포상 | 수상팀 대상 상금 12억 5,000만원* 지원<br>* (학부생 리그)1억원 × 5팀 + (대학원생 리그)1억 5,000만원 × 5팀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내내역사업인 **‘창업지원 자율프로그램’** 사업은 각 과학기술원이 속한 권역 내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총 2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각 과학기술원은 지역 내 (예비)창업가까지 활용가능한 개방형 창업 시설(제작·검증·공간 등) 구축(기관별 30억원)과 함께 지역별 산업·창업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형 창업지원(기관별 35억원)을 병행할 계획임.

[추진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AI 1인 창업 지원 | 권역 내 예비창업가 대상 AI 에이전트 교육·커스텀 설계-BM 고도화-사업화-네트워킹 등 지원 |
| Fast-Prototype 구축 | 창업기업-PCB/UI·UX 설계업체-제조업체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
| 기획형 창업 지원 | 지역 수요 및 우수 기술 중심 기획창업(문제정의·팀빌딩-기술검증·시제품 제작-사업화 등) 지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셋째, 내내역사업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전시회 개최’** 사업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입상팀 및 지역 내 (예비)창업가 대상으로 우수 창업 아이템과 AC·VC[4]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전시회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총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넷째, 내내역사업인 **‘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입상팀 등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총 2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각 과학기술원은 펀드에 대해 기관자금을 매칭하여 과학기술원 별로 1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펀드 운용은 각 과학기술원의 기술지주회사가 운용할 예정임.

[창업 및 사업화협력 사업 세부내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KAIST | GIST | DGIST | UNIST | 합계 |
|---|---|---|---|---|---|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 14,250 | 16,250 | 16,250 | 16,250 | 63,000 |
| 창업리그 운영 | 1,500 | 1,500 | 1,500 | 1,500 | 6,000 |
| 창업지원 자율프로그램 | 6,500 | 6,500 | 6,500 | 6,500 | 26,000 |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전시회 개최 | 1,250 | 1,250 | 1,250 | 1,250 | 5,000 |
| 창업펀드 조성 | 5,000 | 7,000 | 7,000 | 7,000 | 26,00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재가공

4) VC는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주로 자금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AC는 Accelerator의 약자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리그 수상팀에 대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시제품 제작 및 홍보까지의 단계적 지원을 7개월(6월~12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진행할 계획이므로, 수상팀 선정 및 후속지원 일정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고 사업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리그 수상팀에 대한 후속지원 방안으로 ①창업리그 운영 사업을 통한 수상팀에 대한 포상, ②창업지원 자율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창업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 ③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전시회 개최 사업을 통한 제품 홍보, ④창업펀드 조성 사업을 통한 투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리그 참가팀에 대하여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시제품 개발까지 지원할 계획이나 4개월(6월~9월)이라는 창업리그의 짧은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제품 제작이나 결과물 검증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수상팀 선정은 실물 성과보다는 아이디어의 완성도와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창업리그 운영 일정(안)]

| 연월 | 내용 |
|---|---|
| '25.4월 | 창업리그 계획안 수립 |
| '25.5월 | 각 과학기술원별 참가자 모집 |
| '25.6월 | 과학기술원별 자체리그(예선) 운영<br>※ 학부 80팀(20팀×4), 대학원 60팀(15팀×4) |
| '25.7월~9월 | 4대 과학기술원 통합리그(본선) 운영<br>※ 학부 20팀(5팀×4), 대학원 20팀(5팀 × 4) |
| '25.9월 | 수상팀 포상<br>※ 학부 5팀, 대학원 5팀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상팀에 대한 후속지원은 수상 이후 창업 컨설팅 등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준비를 시작으로,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시설·장비 또는 투자금 지원, 이후 제품 홍보 지원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리그 참가팀에 대하여 지원되는 창업활동비에는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수상팀의 경우에는 수상 후 바로 제품 홍보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임.

[창업리그 수상팀 수상 및 후속 지원 일정]

| 구분 | 일정 |
|---|---|
| 2025.6~9월 | 창업리그 평가・심사 (약 4개월)<br>※관련 사업: 창업리그 운영 |
| 2025.9월 | 창업리그 수상팀 선정 및 포상<br>※관련 사업: 창업리그 운영 |
| 2025.10~12월 | 창업리그 수상팀 대상 창업 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준비 지원<br>※관련 사업: 창업 자율프로그램 |
| 2025.10~12월 | 창업리그 수상팀 대상 시제품 제작・실증, 투자금 지원<br>※관련 사업: 창업 자율프로그램, 창업펀드 |
| 2025.10~12월 | 해외 파트너십・투자유치 연계 및 전시회 개최 지원<br>※관련 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전시회 개최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재가공

그러나 참가 대상에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예비 창업팀이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수상팀은 창업리그 진행 과정 및 이후의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시제품 제작 및 홍보까지의 단계적 지원이 7개월(6월~12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상팀 선정 및 후속지원 일정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고, 사업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5)]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펀드 조성 사업을 통해 각 과학기술원 별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운용규모가 상당 부분 확대될 예정이므로 기술지주회사의 인력・시스템・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창업 펀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업펀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는 50억원, 그 외 다른 과학기술원에는 각 70억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각 과학기술원이 자금을 매칭하여 과학기술원별로 1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그런데 각 과학기술원 별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운용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업을 통한 창업펀드 조성으로 각 과학기술원별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운용규모가 최소 43.1%에서 최대 50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임.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토대로 사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임.

[각 과학기술원의 기술지주회사 별 투자 운영규모]

(단위: 억원, %)

| 구분 | 現운영 규모(A) | 추경안 통과시 운영 규모(B) | 증가율(B-A/A) |
|---|---|---|---|
| KAIST | 165 | 265 | 60.6 |
| DGIST(예정)주) | 20 | 120 | 500.0 |
| GIST | 79 | 179 | 126.6 |
| UNIST | 232 | 332 | 43.1 |

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설립되었으나 최초 운용 펀드가 2026년 하반기 결성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재가공

이렇게 펀드 운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경우, 기존에 활용하던 투자 기회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확대된 규모에 맞는 운용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인력·시스템·리스크 관리체계가 운용규모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운용 능력 저하 및 투자 손실 발생 등 펀드 운용상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각 기술지주회사의 현재 역량이 확대되는 운용 규모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 운용 시스템 고도화,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최초 운용 펀드가 2026년 하반기에 결성될 예정으로, 당초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예정하고 결성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원이 추가되면 총 1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운용하게 될 예정인바, 펀드 결성 및 운용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초기계획 대비 펀드 운용 규모가 6배로 늘어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과학기술원의 기술지주회사의 인력·시스템·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향후 창업펀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6]

6)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원 기술지주의 우수한 펀드 운용 역량(GIST - 대학 기술지주 최초 모태펀드 출자사업 연속 선정, UNIST - TIPS 신규 운영사 선정 등)을 토대로 지역 내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인력·시스템 보완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세출증액>

## 2.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신규): 초기 스케일업 지원 전 기술이전 관련 논의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8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106,104 | 116,104 | 167,343 | 176,043 | 8,700 | 5.2 |
|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40,075 | 50,075 | 75,691 | 84,391 | 8,700 | 11.5 |
|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지원 | - | - | - | 8,700 | 8,700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예산을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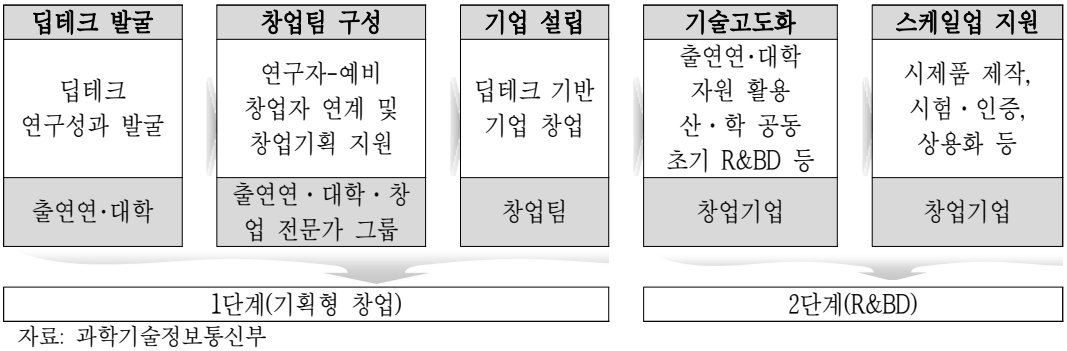
이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① 출연연·대학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딥테크 연구성과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는 기획형 창업 과제(1단계)와 ② 창업 후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초기 R&BD를 지원하는 초기 스케일업 과제(2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단계 기획형 창업 과제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2단계 초기 스케일업 과제로 연계·지원할 계획임.

---

7) 일반회계-연구개발특구육성(R&D)(4632-401)(연구성과혁신관)

[과제 추진 내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추경안은 딥테크 분야 기획형 창업 과제 지원 예산 14억 5,000만원 및 초기 스케일업 지원 과제 예산 7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기획형 창업: 14억 5,000만원<br>- 29개팀 × 1억원 × 6/12개월<br>○ 초기 스케일업: 72억 5,000만원<br>- 29개팀 × 5억원 × 6/12개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의 목표대로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스케일업 지원이 시작되는 2단계 지원 전에 기술이전 관련 사항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그 목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딥테크 기업 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창업자는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게 됨.

그런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기술료 규모 등 기술이전 조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업이 성과 없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8)]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이 시작되는 2단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1단계 기획형 창업 지원 단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의 기술이전 및 창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9)]

---

8)「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9)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단계 창업지원시 기술이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2단계 과제 선정평가시 기술이전에 대한 확약서 등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정보통신진흥기금】

## <지출증액>

# 3.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신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은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 분야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11]

[2026년도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AI통합바우처 | 80,098 | 23,493 | 89,775 | 89,775 | 109,775 | 20,000 | 22.3 |
| AI청년 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 - | - | - | - | 20,000 | 20,000 | 순증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출연방식으로 수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예산 전액을 교부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 중 20억원을 사업관리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180억원은 AX 솔루션 구매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전통기업)을 선정하여 AX 솔루션 구매 대금지급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임.

10) 정보통신진흥기금-AI통합바우처(2602-336)(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1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급기업(AI 분야 청년창업기업)과 수요기업(전통기업)을 각각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수요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AX 솔루션 등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매칭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을 지원할 예정임.

2026년도 변경안은 전통 제조기업 등이 AI분야 청년창업기업의 AX솔루션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200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사업출연비 : 200억원<br>- (사업관리비) 20억원<br>- (과제지원비) 9억원 × 20개 기업 = 180억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년창업기업의 역량이나 과제의 범위 등을 고려해 과제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조정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변경안을 통하여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속한 세부사업인 ‘AI통합바우처’ 사업 내에는 이미 여러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 중 AI 바우처 지원사업과 AX원스톱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 사업과 그 구조 및 목적이 유사하나, 이 사업은 동 사업들과 달리 공급기업을 청년창업기업으로 한정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또한 이 사업의 과제 지원 단가는 9억원으로, 자체 AI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으로부터 솔루션 구입을 지원하는 AI바우처 사업(2억원)에 비하여는 높고, 솔루션 구축부터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비용, 클라우드 임차비용 등 서비스 운영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AX원스톱바우처사업(26억원)에 비하여는 낮게 책정되어 있어 다른 사업들과 단가에도 차이가 있음.

이처럼 유사한 목적의 바우처 지원 사업 간의 과제 단가가 다른 이유는 바우처 별 지원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 사업의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는 바우처의 지원 범위 설정과 그에 따른 단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AI통합바우처 사업 내 AI 관련 바우처 사업 비교]

| 구분 | AI바우처 | AX원스톱바우처 |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
|---|---|---|---|
| 사업 개요 | •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AI도입으로 해결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사 제품·서비스에 필요한 AI 솔루션을 AI 공급기업에게 구매·활용하도록 바우처 지원 | • 수요기관의 전사적 AI·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인프라·데이터를 바우처로 통합 제공해, AX 성공사례 확보 | •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을 도모 |
| 수요 기업 | • (일반/AI반도체) 국내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동물병원, 지역소재 보건소<br>• (소상공인) 국내 소상공인<br>• (글로벌) 해외 수요처 | • AX 전환(버티컬 AI) 수요와 AI 역량이 있는 중견, 중소기업 | • 제조업 분야 등 전통기업 |
| 공급 기업 | • AI솔루션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 | • AI솔루션, 클라우드 및 데이터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 | • AX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br>*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 |
| 지원 규모 | • 과제별 최대 2억원 지원 | • 과제별 매년 최대 13억원 지원 | • 과제별 최대 9억원 지원 |
| 기간 | • 단년도 | • 다년도(2년) | • 단년도 |
| 지원 범위 | • AI솔루션 도입 또는 AI 솔루션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품질 테스트 등 지원<br><br>※ 데이터 관련 과업 불인정 | • AX 원스톱 바우처 필수 요소 패키지 지원<br>- 버티컬 AI솔루션 도입 및 모델 구축<br>- 버티컬 AI 학습용 데이터<br>- 클라우드 임차 지원 등 | •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한 AX 솔루션 제품·서비스 도입 지원(필요시 개발 지원도 검토) |

주)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의 지원 내용과 범위는 검토(안)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재가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하여 2026년도 AI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 1차 공모 결과 총 998개사 중 청년기업은 약 201개사로 파악되어 이의 10% 수준인 20개사를 지원목표로 설정하였고, 지원 단가는 솔루션 도입비용, 추가개발 소요,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감안하여 9억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산출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우선 이 사업의 과제 단가가 AI바우처 사업의 과제 단가 대비 4.5배인 점과, 추계 근거가 된 기업 수(201개)가 청년창업기업이 아닌 청년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I바우처 사업의 공모 결과를 토대로 지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12)]

12) 청년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의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바우처 사업 추진 시 청년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X 솔루션을 공급하는 청년창업기업 현황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 과제의 지원 내용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시장에 공급 역량을 갖춘 청년창업기업이 충분하지 않다면 서비스 개발비용이나 운영비용 등을 포함하여 과제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고, 반대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충분하다면 AX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만 지원하여 과제 단가를 낮추고 수혜기업 수를 최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바, 시장 현황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 내용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 단가는 최대 9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기업 수는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인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년창업기업의 역량이나 과제의 범위 등을 고려해 과제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조정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표자가 39세이하인 기업임.

## 【기후대응기금】

### <지출증액>

# 4. CCU 메가프로젝트(R&D): 민간자본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가. 개 요

**‘CCU 메가프로젝트(R&D)’** 사업은 대규모 실증을 통한 CCU 산업의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O_2$ 포집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224억 500만원(112.0%) 증액된 42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13)14)]

[2026년도 CCU메가프로젝트(R&D)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CCU 메가프로젝트 (R&D) | - | - | 20,000 | 20,000 | 42,405 | 22,405 | 112.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①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_2$를 전환하여 지속가능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과제(발전분야)와 ② 철강-석유화학 산업 연계 CCU 기술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대량 감축 및 플랫폼 화합물 생산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과제(철강분야)로 이루어짐.

이 사업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2025년 11월 28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으로 평가되었고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수정안 의결을 통해 2026년도 계획액 200억원이 반영되었음.

13) 기후대응기금-CCU메가프로젝트(R&D)(6431-326)(미래전략기술정책관)

14)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는 대기 중 $CO_2$를 포집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1차년도)에 국비 488억원을 투입하여 두 분야의 공정 연구 및 기초공사를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200억원만 반영됨에 따라 우선 공정 연구만 수행하기로 함. 이후 이번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기초공사 수행을 위해 224억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반영됨.[15)]

[CCU 메가프로젝트(R&D)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ㅇ 발전 분야: 56억 8,700만원<br>- e-SAF 생산공정 설계 · 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 48억 7,470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28억 4,350만원<br>- CO2 직 · 간접전환 공정 설계 · 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 48억 7,470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28억 4,350만원<br>ㅇ 철강 분야: 167억 1,800만원<br>- CO2 포집, CO 생산공정 설계 · 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 143억 2,970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83억 5,900만원<br>- 건식 개질, 메탄올 생산공정 설계 · 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 143억 2,970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83억 5,900만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기관과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개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가 2026년 1월 23일부터 진행되어 2026년 4월 14일부터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확보되는 국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이후의 사업추진위원회 심사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개발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국비 지원규모 확대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

15) 당초 계획대로라면 288억원 추가 편성이 필요하나, 이는 9개월간 과업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편성되는 금액이므로 이번 추경안에서 7개월분 금액만 반영함에 따라, 변경안에는 224억 500만원이 증액됨(288억원 × 7/9 = 224억원)

개발비 확대로 이어지게 됨.[16)]

이 사업의 경우 2026년 1월 신규과제 공고 시 1차년도 국비지원 금액은 과제별로 각각 50억 7,000만원, 149억 3,000만원으로 공고가 되었으나, 국비 지원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면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도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 · 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지원 비율 |
|---|---|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
|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
|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기관 및 2026년도 국비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총 연구기간 | 당해 연구기간 | 당해 국비지원 (기존) | 당해 국비지원 (변경 시) | 연구개발기관 부담비율 |
|---|---|---|---|---|---|
| 발전분야 온실가스 활용을 통한 e-SAF 생산 기술개발 | 2026.4.~2030.12. (4년 9개월) | 2026.4.~2026.12. (9개월) | 5,070 | 11,757 | 0~75% |
| 철강분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 실증화 | 2026.4.~2030.12. (4년 9개월) | 2026.4.~2026.12. (9개월) | 14,930 | 31,648 | 0~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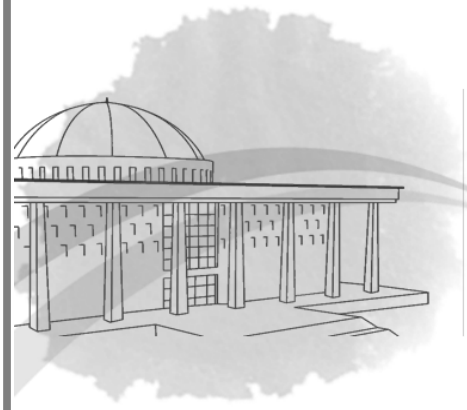
자료: 신규과제 공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경우 과제에 지원한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수립한 자금 계획과 연구개발비 부담 규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확대된 국비 규모에 따른 기관 부담금 조달 계획, 확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17]

17)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은 예타기획당시 1차년도 488억에 대해 기술개발 및 기초공사, 발주 계획이 세워져 있던 만큼 예산이 200억에서 424억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기존 기획대로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절차,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해당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개발 수행이 차질없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79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631 | 1,631 | 1,796 | 1,796 | - | - |
| 합 계 | 1,631 | 1,631 | 1,796 | 1,796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86조 4,2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조 5,240억원(12.4%) 증가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720,839 | 859,822 | 769,055 | 864,295 | 95,240 | 12.4 |
| 합 계 | 720,839 | 859,822 | 769,055 | 864,295 | 95,240 | 12.4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1,434 | 1,434 | 1,531 | 1,531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97 | 197 | 265 | 265 | - | - |
| 합 계 | 1,631 | 1,631 | 1,796 | 1,796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6조 4,2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조 5,240억원(12.4%) 증가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697,208 | 825,548 | 731,730 | 826,970 | 95,240 | 13.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3,631 | 34,274 | 37,325 | 37,325 | - | - |
| 합 계 | 720,839 | 859,822 | 769,055 | 864,295 | 95,240 | 12.4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6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9조 5,240억 4,900만원임.[2)]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 8,251억 8,5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95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추경안 |
|---|---|---|
| [일반회계] | | |
| 1 |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
| 2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19,515 |
| 합계 | | 4,844,700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부족분에 해당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업에 4조 5,389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사업에 561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지방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사업에 140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에 70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액분(B-A) | (B-A)/A |
| 일반회계 | | 62,048,147 | 62,048,147 | 63,606,468 | 68,285,817 | 4,679,349 | 7.4 |
| 1 | 보통교부세 | 60,401,769 | 60,401,769 | 61,698,352 | 66,237,321 | 4,538,969 | 7.4 |
| 2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658,551 | 658,551 | 763,247 | 819,399 | 56,152 | 7.4 |
| 3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164,638 | 164,638 | 190,811 | 204,849 | 14,038 | 7.4 |
| 4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823,189 | 823,189 | 954,058 | 1,024,248 | 70,190 | 7.4 |
| 합계 | | 62,048,147 | 62,048,147 | 63,606,468 | 68,285,817 | 4,679,349 | 7.4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지방비 매칭 형태로 추진되는 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활성화 등 추경안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3개 특별교부세 사업의 증액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신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에 4조 8,251억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6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 | - | 4,825,185 | 4,825,185 | 순증 |

2026년 추경안 상세내역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금 및 발행비용, 인건비·홍보비 등 4조 8,199억 1,0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편성되었음.

그 외 전담콜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210-15목) 9억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10억 5,600만원, 전산인프라 사용료 등의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29억 4,900만원, 성과분석 등 연구용역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목) 2억원 및 기타 경상비성 비용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3) 일반회계-고유가 피해지원금(1350-302)(지방재정경제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경안 상세내역]

| |
|---|
| ㅇ **피해지원금 등(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목): 4조 8,199억 1,000만원**<br>ㅇ TF팀 운영물품 구입 등(일반수용비, 210-01목): 1,000만원<br>ㅇ **전산 인프라 사용료 등(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29억 4,900만원**<br>ㅇ 전담 콜센터 운영 등(관리용역비, 210-15목): 9억원<br>ㅇ 새올시스템 AP 개발비 등(민간위탁사업비, 320-02목): 10억 5,600만원<br>ㅇ 현장점검 출동여비 등(국내여비, 220-01목): 1,000만원<br>ㅇ 범정부 TF 관련 협의회 운영·현장점검 간담회(사업추진비, 240-01목): 6,000만원<br>ㅇ 성과분석 연구용역(일반연구비, 260-01목): 2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 추경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기준 하위 70%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지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총사업비 역시 2025년(13.9조원)에 비해 적은 6.1조원(국비 4.8조원+지방비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비로 편성된 지원금 규모 역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편성된 12.2조원보다 적은 4.8조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회 추경안 심의를 거쳐 서울(75%)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국비보조율이 90%로 설정되었으나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서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자료 기준 서울(70%)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국비보조율이 80%로 설정되어 있음.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구체적으로, 소득기준 하위 70%~차상위계층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에 10만원, 비수도권 일반지역 거주자에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자에 20만원 및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거주자에 25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한부모가구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에게는 수도권 거주자에 4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거주자에 5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 6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임.

4) 다만, 2025년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추경안 편성시점(80%)에 비해 상향 조정되어 90%가 적용되었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2021년)·민생회복 소비쿠폰(2025년)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안)(2026년) 개요]

| 구분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2021년) |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년) | 고유가 피해지원금(안) (2026년) |
|---|---|---|---|
| 지원대상 | 소득기준 하위 80% | 1차: 전 국민(약 5,117만명)<br>2차: 소득기준 하위 90%<br>(약 4,567만명) | 소득기준 하위 70%<br>(약 3,577만명 추정) |
| 예산규모주) | 총사업비 11.0조원<br>(국비 8.6조원 + 지방비 2.4조원) | 총사업비 13.9조원<br>(국비 12.2조원 + 지방비 1.7조원) | 총사업비 6.1조원<br>(국비 4.8조원 + 지방비 1.3조원) |
| 국비보조율 | 서울 70%/나머지 80% | 서울 75%/나머지 90% | 서울 70%/나머지 80% |
| 지원단가 | **균등지급**<br>- 1인당 25만원 | **소득·지역별 차등지급**<br>- 상위 10% 15만원, 10% 이하 일반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br>※ 비수도권 3만원 추가지급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지급 | **소득·지역별 차등지급**<br>- 하위 70%: 10만원(수도권) / 15만원(비수도권 일반) / 20만원(인구감소 우대) / 25만원(인구감소 특별)<br>- 한부모·차상위: 45만원(수도권) / 50만원(비수도권)<br>- 기초수급자: 55만원(수도권) / 60만원(비수도권) |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br>→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br>→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br>**·지역사랑상품권**<br>→ 지자체 지역별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br>→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주) 발행비용 등 지원금 외 비용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1·2차로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1차 지급(7.21.~9.21.) 시에는 별도 소득기준 적용 없이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차상위·한부모 가정인 경우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경우 1인당 4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음.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음.[5] 2차 지급(9.22.~10.31.) 시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을 바탕으로 소득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음.

지급수단을 보면,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처는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될 예정임.[6]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2.5.),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가 함께 했다"

6)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외 선불카드 및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할

##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지방비 매칭 형태로 추진되는 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비와 매칭되는 형태로 지원되며, 국고보조율은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보조율을 7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차등지원될 예정이므로, 이들 계층이 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추가지급 수요로 가중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부담액이 재정력에 비례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음.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기준]

| 구분 | | 소득하위 70%<br>(3,256만명) | 차상위·한부모<br>(36만명) | 기초수급자<br>(285만명) |
|---|---|---|---|---|
| 수도권[1] | | 10만원 | 45만원(+35만원) | 55만원(+45만원) |
| 비수도권 | 일반 | 15만원(+5만원) | 50만원(+40만원) | 60만원(+50만원) |
| | 인구감소지역<br>(우대지원지역)[2] | 20만원(+10만원) | | |
| | 인구감소지역<br>(특별지원지역)[3] | 25만원(+15만원) | | |

주 1)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49개 지역
3)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 40개 지역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세종은 추가지급대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2.7% 수준이지만 재정자립도는 62.6%로 평균(56.0%)을 상회하며, 전북은 추가지급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9.0% 수준이나 재정자립도는 32.2%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에도 양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80%)이 적용됨.

수 있었으며, 지원수단별로 사용처에도 차이가 있었음.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하면 거주지가 속한 지역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지역이 속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음.

[시·도별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보조율-추가지급 수요 및 재정력 비교]

(단위: %, 명)

| 시도 | 국비 보조율 | 추가지급 수요[1] | | | 재정력[2] | |
|---|---|---|---|---|---|---|
| | | 인구수 (A) | 추가지급대상자수 (B) | 비중 (B/A) | 재정자립도[3] | 재정자주도[4] |
| 전국 | 78.6 | 51,217,221 | 2,966,810 | 5.8 | 41.6 | 63.4 |
| 서울 | 70.0 | 9,331,828 | 489,144 | 5.2 | 71.4 | 73.0 |
| 부산 | 80.0 | 3,266,598 | 267,745 | 8.2 | 43.5 | 56.7 |
| 대구 | 80.0 | 2,363,629 | 181,166 | 7.7 | 41.8 | 60.7 |
| 인천 | 80.0 | 3,021,010 | 202,561 | 6.7 | 48.4 | 60.3 |
| 광주 | 80.0 | 1,408,422 | 111,504 | 7.9 | 37.4 | 54.3 |
| 대전 | 80.0 | 1,439,157 | 90,087 | 6.3 | 40.1 | 58.4 |
| 울산 | 80.0 | 1,098,049 | 50,923 | 4.6 | 45.3 | 66.5 |
| 세종 | 80.0 | 390,685 | 10,398 | 2.7 | 55.2 | 63.8 |
| 경기 | 80.0 | 13,694,685 | 560,592 | 4.1 | 52.8 | 61.0 |
| 강원 | 80.0 | 1,517,766 | 99,720 | 6.6 | 24.9 | 67.1 |
| 충북 | 80.0 | 1,591,177 | 93,251 | 5.9 | 29.5 | 61.5 |
| 충남 | 80.0 | 2,136,574 | 105,872 | 5.0 | 31.2 | 62.1 |
| 전북 | 80.0 | 1,738,690 | 156,616 | 9.0 | 23.6 | 61.4 |
| 전남 | 80.0 | 1,788,819 | 126,820 | 7.1 | 22.9 | 62.7 |
| 경북 | 80.0 | 2,531,384 | 173,870 | 6.9 | 23.8 | 63.3 |
| 경남 | 80.0 | 3,228,380 | 204,417 | 6.3 | 32.7 | 64.5 |
| 제주 | 80.0 | 670,368 | 42,124 | 6.3 | 35.4 | 67.6 |

주 1) 인구 수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원 및 기초수급자 수 합계는 2024년 12월 기준
2) 2014년 세입과목 개편(잉여금·이월금·전입금·예탁금·예수금 세외수입에서 제외) 후 기준
3) 2024년 결산 기준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
4) 2024년 결산 기준 시·도별 평균 재정자주도

자료: KOSIS, 지방재정365

이처럼 재정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 외 모든 지역에 같은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될 경우 인구 수에 비해 추가지급대상자의 수가 많으면서 재정력은 약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지원수준을 다층화하여 재정부담이 재정력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소비진작·경영안정 등의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바, 정책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소득기준 산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6년 추경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서 소득기준 및 주거지역에 따라 차등지원을 실시할 예정임.[7] 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 등이 초래할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대규모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조기에 완료하여 예산확정과 실제 지급 사이의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예산확정일(추경안 본회의 의결일)과 2차 지급을 위한 최초 신청일[8] 사이에 상당한 시차(만80일)가 발생한바 있는데,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예산확정일과 최초 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시차(만44일)보다 지연된 것임.

[유사사업 예산확정일·최초 온라인 지급신청일 현황]

| 구분 | 지급방식 | 예산확정일 (A) | 최초 온라인 지급 신청일 (B) | 시차 (B-A) |
|---|---|---|---|---|
|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지원 | 2021.7.24. | 2021.9.6.주) | 만44일 |
|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 전국민 지원 (지역·계층별 추가지원 포함) | 2025.7.4. | (1차) 2025.7.21. | 만17일 |
| | 가구소득 기준 상위 10% 내/외 차등지원 | | (2차) 2025.9.22. | 만80일 |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 가구소득 기준 상위 30% 내/외 차등지원 | - | - | - |

주) 신용·체크카드 및 지류를 제외한 지역상품권의 온라인 지급 신청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7)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여 소득기준 하위 70% 범위 안에서 한부모 가정·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지자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음. 또한, 지급수단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면 활용하도록 하여 골목상권에서 보다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8)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 대상 15만원 외 별도 소득기준 산정이 불필요한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추가지원이 이루어졌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등 사전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불필요하게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재정투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집중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사업으로 인한 재정투입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6년 추경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서 소득기준 및 주거지역에 따라 차등지원을 실시할 예정임.[9] 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 등이 초래할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대규모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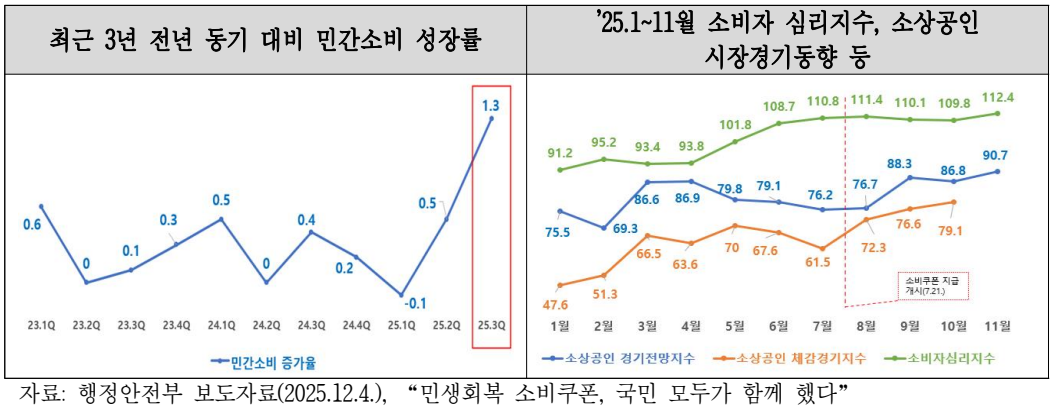
| 구분 | | 소득하위 70%<br>(3,256만명) | 차상위·한부모[4]<br>(36만명) | 기초수급자[5]<br>(285만명) |
|---|---|---|---|---|
| 수도권[1] | | 10만원 | 45만원(+35만원) | 55만원(+45만원) |
| 비수도권 | 일반 | 15만원(+5만원) | 50만원(+40만원) | 60만원(+50만원) |
| | 인구감소지역<br>(우대지원지역)[2] | 20만원(+10만원) | | |
| | 인구감소지역<br>(특별지원지역)[3] | 25만원(+15만원) | | |

주 1)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49개 지역
3)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 40개 지역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여 소득기준 하위 70% 범위 안에서 한부모 가정·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지자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음.

그런데 추경안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국가부채 규모 및 물가·환율 상승에 관한 우려 또한 있음.[10] 실제로 13.9조원이 투입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2.4.)[11]에서는 2025년 3분기 기준 민간소비 증가(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의 소비진작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일각에서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있었음.[12]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효과]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2.4.),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가 함께 했다"

이 사업의 추진 시에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13]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재정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지원금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소득산정·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를 신속히 이행하고 합리적인 사용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0) 동아일보(2026.3.27.),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고유가 충격 큰 취약층-지방 중심 지급"

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2.4.),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가 함께 했다"

12) 중앙일보(2025.12.4.),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했다는데…마트서 '플랙스' 했다"

13) 6.1조원(국비 4.8조원 + 지방비 1.3조원) 규모

**넷째, 민간클라우드 사용요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같은 용도로 집행된 금액(25억 4,6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인 29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축소 등을 고려할 때 과다계상의 우려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경안에서 민간클라우드 사용료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집행된 민간클라우드 사용료(25억 4,6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인 2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비해 계획상 지원대상이 축소(1차 기준 5,008만명 → 3,577만명 추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비교]

(단위: 백만원)

|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결산 | |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경안 | | |
|---|---|---|---|---|---|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집행액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예산액 |
| (1차)<br>2025.7.21.~9.12.<br><br>(2차)<br>2025.9.22.~10.31. | (1차)<br>전 국민<br>**(5,008만명 지급)**<br>(2차)<br>소득 상위 10% 제외 전국민<br>**(4,453만명 지급)** | 2,546 | 미정 | 소득 상위 30% 제외 전국민<br>**(3,577만명 추정)** | 2,949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간클라우드 사용요금은 통상적으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사용량에 비례하여 청구되는데, 예상되는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 하락을 예측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월별 클라우드 사용요금 지출액 및 사업시작 시점 등을 고려하여 8개월분(2026.5.~2026.12.)의 민간클라우드 사용요금을 계상하였다는 입장이나,[14] 이용자 수 감소 및 신청기간 종료 이후 기간의 네트워크 사용량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상된 민간클라우드 사용료에 대해 과다계상의 우려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는 6개월분(2025.7.~2025.12.)의 클라우드 사용요금이 지출되었음.

##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 추경 증액분의 신속교부 필요

### 가. 개 요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61억 5,200만원(7.4%) 증액된 8,19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15)]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지방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및 행정·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40억 3,800만원(7.4%) 증액된 2,048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16)]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부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01억 9,000만원(7.4%) 증액된 1조 24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17)]

이상 3개 특별교부세 사업의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403억 8,000만원(7.4%) 증액된 2조 484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특별교부세 3개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658,551 | 763,247 | 819,399 | 56,152 | 7.4 |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164,638 | 190,811 | 204,849 | 14,038 | 7.4 |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823,189 | 954,058 | 1,024,248 | 70,190 | 7.4 |
| 합계 | 1,646,378 | 1,908,116 | 2,048,496 | 140,380 | 7.4 |

15) 일반회계-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지방재정경제실)

16) 일반회계-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지방재정경제실)

17) 일반회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지방재정경제실)

18)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지방재정경제실),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지방재정경제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지방재정경제실) 등 3개 세부사업 합계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이하 목적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3개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일부[19]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음.[20]

[지방교부세의 유형 구분]

| 구분 | | 교부기준 |
|---|---|---|
| 보통교부세<br>(내국세 일부의 19.24% 중 97%) |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br>(「지방교부세법」 제6조) |
| 특별교부세<br>(내국세 일부의 19.24% 중 3%) | 국가지방 협력<br>(10%)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
| | 지역현안<br>(40%)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
| | 재난안전 관리<br>(50%)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
| 부동산교부세<br>(종합부동산세 100%) |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되, 재정여건을 감안·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br>(「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
| 소방안전교부세<br>(담배 개별소비세 45%) | | 소방인력 운용·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br>(「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 내국세 일부 = 내국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 + 특별회계 법정 재원에 해당하는 세목) × 19.24%

20)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증액된 내국세 추계액(343.9조원→368.1조원, 24.2조원 증액)을 반영하여, 이와 연동되는[21] 지방교부세 예산을 4조 6,793억 4,900만원(6.7%) 증액 편성하였음.[22]

[2026년 지방교부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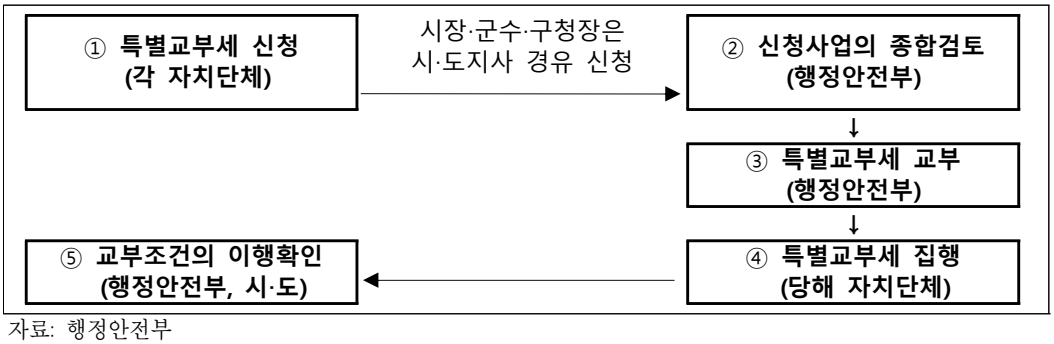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6년도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액 (B-A) | 증감률 (B-A)/A |
|---|---|---|---|---|---|
| 보통교부세 | | 61,698,352 | 66,237,321 | 4,538,969 | 7.4 |
| 특별교부세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763,247 | 819,399 | 56,152 | 7.4 |
|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190,811 | 204,849 | 14,038 | 7.4 |
|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954,058 | 1,024,248 | 70,190 | 7.4 |
| 부동산교부세 | | 4,698,208 | 4,698,208 | - | - |
| 소방안전교부세 | | 1,050,277 | 1,050,277 | - | - |
| **합계** | | **69,354,953** | **74,034,302** | **4,679,349** | **6.7** |

자료: 행정안전부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3개 특별교부세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사업을 검토하면서 교부될 금액을 산출하게 됨.

[특별교부세 3개 사업의 집행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21)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22) 이번 추경안에서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증액 편성되지 않았음

## 나.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활성화 등 추경안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3개 특별교부세 사업의 증액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증액된 내국세 추계액(343.9조원→368.1조원, 24.2조원 증액)을 반영하여,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예산을 4조 6,793억 4,900만원(6.7%) 증액 편성하였음.[23)]

이는 초과세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을 보강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2026년 지방교부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6년도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액 (B-A) | 증감률 (B-A)/A |
|---|---|---|---|---|---|
| 보통교부세 | | 61,698,352 | 66,237,321 | 4,538,969 | 7.4 |
| 특별교부세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763,247 | 819,399 | 56,152 | 7.4 |
|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190,811 | 204,849 | 14,038 | 7.4 |
|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954,058 | 1,024,248 | 70,190 | 7.4 |
| 부동산교부세 | | 4,698,208 | 4,698,208 | - | - |
| 소방안전교부세 | | 1,050,277 | 1,050,277 | - | - |
| 합계 | | 69,354,953 | 74,034,302 | 4,679,349 | 6.7 |

자료: 행정안전부

23) 이번 추경안에서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증액 편성되지 않았음.

그런데 직전 연도(2025년) 기준 3개 특별교부세 사업의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집행액의 79.5%가 하반기에 집행되었고, 특히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사업의 경우 집행액 전체(100.0%)가 하반기에 집행되었음.

[2025년 3개 특별교부세 사업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 | | | | |
|---|---|---|---|---|---|---|---|---|
| | | 계 | 상반기 | | 하반기 | | 하반기 집행률 | 4분기 집행률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 658,551 | 658,551 | - | - | 297,500 | 361,051 | 100.0 | 54.8 |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 164,638 | 164,638 | - | 40,275 | 7,500 | 116,863 | 75.5 | 71.0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 823,189 | 823,189 | 16,384 | 280,324 | 426,590 | 99,891 | 64.0 | 12.1 |
| 합계 | 1,646,378 | 1,646,378 | 16,384 | 320,599 | 731,590 | 577,805 | 79.5 | 35.1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3개 특별교부세 사업들의 집행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의 내용 및 교부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사업에는 당해 연도의 실적을 평가한 이후 교부되는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있어 4분기 집행률이 높게(71.0%)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2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에는 재난 발생 이후에야 교부가 가능한 피해복구 재원이 포함되어 있어 수시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3개 특별교부세 사업의 사업내용 및 교부방식 (2026년 기준)]

| 사업명 | 사업내용 | 교부방식 | |
|---|---|---|---|
| | | 정기교부 | 수시교부 |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지역 현안 재정수요 대응 | ◎ (반기 1-2회) | ○ |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국가-지방간 협력사업 및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 - | ◎ |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응급·항구피해복구비 | - | ◎ |
| | 재난안전관리사업비 | ◎ (반기 1-2회) | ○ |

주) ◎: 통상적으로 채택, ○: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채택, -: 미채택
자료: 행정안전부

24) 4분기 집행액은 전액 우수자치단체에 교부된 인센티브에 해당함.

그러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사업의 경우 집행시점이 하반기에 집중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실무상으로도 정기교부 방식에 따라 상반기 중에 재원 일부에 대해 사업신청 및 검토 절차가 운용됨.

또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의 경우 피해복구비 외 통상적인 재난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재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재원은 실무상 정기교부 방식에 따라 운용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증액분이 상반기 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3.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신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가. 개 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은 경제위기 시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195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본예산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 | - | 19,515 | 19,515 | 순증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2026년도 추경안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지원될 인건비(국비 163억 250만원, 국비보조율 50%) 및 교육비(국비 30억 6,250만원, 국비보조율 50%)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목): 193억 6,500만원**
- (인건비) 163억 250만원 = 260만 8,400원 × 2,500명 × 5개월 × 국비보조율 50%
- (멘토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 30억 6,250만원 = 49만원 × 2,500명 × 5개월 × 국비보조율 50%

○ 전문가 활용·홍보 등(일반수용비, 210-01목): 7,000만원
- 전문가 참석·자문수당 등 : 5명×20회×20만원 = 2,000만원
- 홍보물 제작·배포 등 : 20회×250만원 = 5,000만원

○ 공간 임차료(임차료, 210-07목): 1,000만원

○ 컨설팅 및 성과용역(일반용역비, 210-14목): 5,000만원

○ 현장점검 등(국내여비, 220-01목): 1,000만원

○ 간담회, 현장점검, 관계관 회의 운영비(사업추진비, 240-01목): 1,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25) 일반회계-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3131-306)(자치혁신실)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2,50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인건비 및 교육비는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국고보조율 50%)하여 지원될 계획임.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동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를 통해 연령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유관 주체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법률상 정의는 미정이며,[26] 사업계획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예시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 |
|---|
| ○ (지원근거) 「청년기본법」 제17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제2항 등<br>○ (사업내용)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br>**※ (대상 범위)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br>○ (대상/규모)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 총 2,500명<br>*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예시 : 신안군 등 19~49세)<br>○ (사업기간) 2026.5. ~ 2026.12.<br>○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자료: 행정안전부

26)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2025. 11. 13.)이 국회에서 계류 중

## 나. 검토의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사업비가 타 사업에 중복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지원근거 및 사업계획을 보면, 지원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범위에는 타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인 ‘마을기업’ 등이 포함되고 있고, 또다른 대상인 ‘협동조합’은 농협 중앙회 등 거대 조직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사업내용 중 지원대상 관련 내용]

| |
|---|
| □ **사업내용** |
| ○ 대상/규모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 총 2,500명 |
| *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예시: 신안군 등 19~49세) |
| **※ (사회연대경제 대상 범위)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마을기업의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 지원대상 유형 중에서도 ‘청년마을기업’은 지원요건상 ‘청년회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마을기업’이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이 사업과 주요 사업내용(소득·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조직(마을기업) 및 수혜자 특성(청년)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27)]

27) 행정안전부(2025.11.).「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마을기업육성사업-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비교]

| 구분 |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 '청년마을기업 지원'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
| 주요 사업목적 및 내용 | 마을기업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28] |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일경험 지원[29] |
| 지원대상 조직 | 청년마을기업<br>(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인 마을기업) | 사회연대경제 조직<br>(마을기업 포함) |
| 수혜자 특성 | 「청년기본법」상 청년<br>(타 법령·조례상 정의가 우선함) | 「청년기본법」상 청년<br>(타 법령·조례상 정의가 우선함) |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가 마을기업 등에 중복지원될 우려가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단계별 심사를 거쳐 일부 마을기업에 사업비를 집중지원하는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수 있음.[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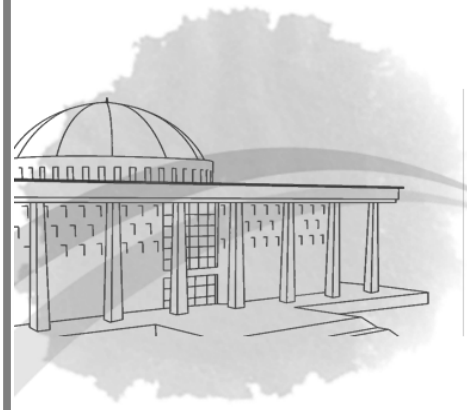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 전 지원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타 사업 운영주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의 중복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8) 원문: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발굴·육성"(「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2쪽)

29) 원문: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취약계층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돌봄·공동체 등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자료: 202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30) 참고로,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사업비 총액은 52억 5,000만원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4조 1,809억원이며, 예산은 1,702억원이고, 기금은 4조 107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 (A) | 추경안 (변경안) (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323 | 1,323 | 1,702 | 1,702 | - | - |
| 기 금 | 38,532 | 38,819 | 40,107 | 40,107 | - | - |
| 합 계 | 39,855 | 40,142 | 41,809 | 41,809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8조 4,39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843억원(7.4%) 증가함.

예산은 4조 3,44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85억원(1.6%) 증가하고, 기금은 4조 9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158억원(14.4%) 증가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37,718 | 38,961 | 42,763 | 43,448 | 685 | 1.6 |
| 기 금 | 32,954 | 33,580 | 35,792 | 40,950 | 5,158 | 14.4 |
| 합 계 | 70,672 | 72,541 | 78,555 | 84,398 | 5,843 | 7.4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1,074 | 1,074 | 1,349 | 1,34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3 | 213 | 288 | 288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 1,201 | 1,201 | 1,161 | 1,161 | - | - |
| 합 계 | 2,488 | 2,488 | 2,798 | 2,798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684억원(1.6%) 증가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2,932 | 34,175 | 38,036 | 38,584 | 548 | 1.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061 | 5,061 | 4,931 | 5,067 | 136 | 2.8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 1,201 | 1,211 | 1,161 | 1,161 | - | - |
| 합 계 | 39,194 | 40,447 | 44,128 | 44,812 | 684 | 1.6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6조 7,768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6,063억원(9.8%)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3조 5,89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304억원(3.8%) 증가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7,084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759억원(12.0%) 증가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조 1,854억원으로 3,455억원(18.8%) 증가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2,241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545억원(32.1%) 증가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국민체육진흥기금 | 30,372 | 30,382 | 34,590 | 34,590 | 35,894 | 1,304 | 3.8 |
| 문화예술진흥기금 | 5,777 | 5,812 | 6,325 | 6,325 | 7,084 | 759 | 12.0 |
| 지역신문발전기금 | 100 | 100 | 150 | 150 | 150 | - | - |
| 언론진흥기금 | 508 | 508 | 545 | 545 | 545 |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7,142 | 17,142 | 18,399 | 18,399 | 21,854 | 3,455 | 18.8 |
| 영화발전기금 | 937 | 1,189 | 1,696 | 1,696 | 2,241 | 545 | 32.1 |
| 합계 | 54,836 | 55,133 | 61,705 | 61,705 | 67,768 | 6,063 | 9.8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6,746억 7,100만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24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8,197억 4,1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20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4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 조성하여 청년 콘텐츠 기업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주도 콘텐츠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에 500억원을 증액하고, 중동사태로 유가·환율 인상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에 2,800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 창제작 지원’ 사업에 385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에 174억원을 증액하였음. 이외에도 공연·전시·영화 관람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에 51억원, ‘영화정책 지원’ 사업에 361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20개 사업에서 5,842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445,408 | 520,408 | 614,834 | 669,622 | 54,788 | 8.9 |
| 1 | K-콘텐츠 펀드 출자 | 295,000 | 370,000 | 430,000 | 480,000 | 50,000 | 11.6 |
| 2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44,278 | 44,278 | 63,214 | 65,806 | 2,592 | 4.1 |
| 3 | 예술창작활동 지원 | 23,360 | 23,360 | 32,598 | 34,094 | 1,496 | 4.6 |
| 4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82,770 | 82,770 | 89,022 | 89,722 | 700 | 0.8 |
| 지역발전특별회계 | | 91,051 | 91,051 | 75,696 | 89,379 | 13,683 | 18.1 |
| 5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 63,616 | 63,616 | 51,850 | 60,750 | 8,900 | 17.2 |
| 6 | 국민문화활동지원 | 27,435 | 27,435 | 23,846 | 28,629 | 4,783 | 20.1 |
| 국민체육진흥기금 | | 160,000 | 160,000 | 205,000 | 432,805 | 231,805 | 113.1 |
| 7 |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100,000* | *100,000* | *110,000* | *185,805* | *75,805* | 68.9 |
| 8 |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 | - | - | *101,410* | *101,410* | 순증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4개(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임.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9 | *영화발전기금 전출* | *60,000* | *60,000* | *95,000* | *145,590* | *54,590* | 57.5 |
| 문화예술진흥기금 | | 386,523 | 396,523 | 469,433 | 565,238 | 95,805 | 20.4 |
| 10 |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 - | - | 20,000 | 70,000 | 50,000 | 250 |
| 11 | 예술창작 지원 | 64,677 | 64,677 | 69,118 | 73,118 | 4,000 | 5.8 |
| 12 | 문화예술향유 지원 | 280,581 | 290,581 | 327,638 | 332,738 | 5,100 | 1.6 |
| 13 | 예술인력 육성 | 22,358 | 22,358 | 23,897 | 27,822 | 3,925 | 16.4 |
| 14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18,000 | 18,000 | 28,000 | 60,000 | 32,000 | 114.3 |
| 15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907 | 907 | 780 | 1,560 | 780 | 100 |
| 관광진흥개발기금 | | 836,339 | 898,998 | 939,993 | 1,289,063 | 349,070 | 37.1 |
| 16 | 국내관광 역량 강화 | 42,780 | 105,439 | 64,193 | 81,633 | 17,440 | 27.2 |
| 17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 591,863 | 591,863 | 644,066 | 924,066 | 280,000 | 43.5 |
| 18 |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57,370 | 57,370 | 48,348 | 78,948 | 30,600 | 63.3 |
| 19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13,124 | 13,124 | 14,269 | 19,939 | 5,670 | 39.7 |
| 20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63,694 | 63,694 | 104,474 | 114,474 | 10,000 | 9.6 |
| 21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 14,993 | 14,993 | 15,617 | 17,317 | 1,700 | 10.9 |
| 22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52,515* | *52,515* | *49,026* | *52,686* | *3,660* | 7.5 |
| 영화발전기금 | | 38,206 | 65,306 | 69,208 | 143,618 | 74,590 | 107.8 |
| 23 | 영화 창제작 지원 | 21,710 | 21,710 | 40,929 | 79,419 | 38,490 | 94.4 |
| 24 | 영화정책지원 | 16,496 | 43,596 | 28,099 | 64,199 | 36,100 | 128.5 |
| 합계 | | 1,957,527 | 2,132,286 | 2,374,164 | 3,189,725 | 819,741 | 34.5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또한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1,450억 7,0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없음.

총 감액규모는 1,450억 7,000만원(총계 기준)으로, 그 구성내역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감액 △1,450억 7,000만원(100.0%)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감액분 (B-A) | (B-A)/A |
| 사업비(비중 100.0%) | 938,028 | 829,450 | 1,515,983 | 1,370,913 | △145,070 | △9.6 |
| 국민체육진흥기금 | *375,530* | 341,942 | *885,644* | *784,234* | *△101,410* | *△11.5* |
|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75,530* | 341,942 | *885,644* | *784,234* | *△101,410* | *△11.5* |
| 문화예술진흥기금 | *98,073* | 88,073 | *70,625* | *50,625* | *△20,000* | *△28.3* |
|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98,073* | 88,073 | *70,625* | *50,625* | *△20,000* | *△28.3* |
| 관광진흥개발기금 | *442,305* | 379,646 | *492,674* | *489,014* | *△3,660* | *△0.7* |
|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442,305* | 379,646 | *492,674* | *489,014* | *△3,660* | *△0.7* |
| 영화발전기금 | *22,120* | 19,789 | *67,040* | *47,040* | *△20,000* | *△29.8* |
|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2,120* | 19,789 | *67,040* | *47,040* | *△20,000* | *△29.8* |
| 합계 | 938,028 | 829,450 | 1,515,983 | 1,370,913 | △145,070 | △9.6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설하여 추가 출자할 계획으로, 청년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투자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은 경영상 피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출 감소율 등 정량적 지표 마련,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실제 피해 사업체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은 매출액에 기반한 지원금 배분 구조로 인하여 영세한 비계열 영화관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전반의 회복 및 구조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청년콘텐츠 중심으로 투자비율 상향조정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00억원(19.2%) 증액된 3,100억원이 편성되었음.[3)]

[2026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K-콘텐츠 펀드 출자 | 295,000 | 370,000 | 430,000 | 480,000 | 50,000 | 11.6 |
|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 205,000 | 260,000 | 260,000 | 310,000 | 50,000 | 19.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2026년 본예산 기준 2,600억원에 재출자액 1,300억원을 더해 총 3,9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더하여 이번 추경안은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설하여 500억원을 신규로 추가 출자할 계획임.

3) 일반회계-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문화산업정책관)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600억원 | ❍ 일반출자금 : 2,600억원<br>(재출자 1,300억원 포함 총 3,900억원 출자로 6,500억원 자펀드 조성)<br>- IP: 1,200억원 출자<br>- 수출: 1,200억원 출자<br>- CT: 600억원 출자<br>- 콘텐츠 신성장: 450억원 출자<br>- M&A 세컨더리: 450억원 출자 | 3,100억원 | ❍ 일반출자금 : 3,100억원<br>(재출자 1,300억원 포함 총 4,400억원 출자로 7,340억원 자펀드 조성)<br>- IP: 1,200억원 출자[4]<br>- 수출: 1,200억원 출자<br>- CT: 600억원 출자<br>- 콘텐츠 신성장: 450억원 출자<br>- M&A 세컨더리: 450억원 출자<br>- **청년콘텐츠: 500억원 출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 사업에서 신설되는 ‘청년콘텐츠’ 분야는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주목적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되, 이 중 40% 이상을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외부 불확실성에 취약한 청년 창업 분야 등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여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4) IP(Intellectual Property): 영화・드라마・웹툰・게임 등 콘텐츠에서 활용되는 지식재산으로서, 저작권・상표권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창작물 및 그 권리를 의미함.
CT(Culture Technology): 문화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과정에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하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을 포괄함.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분야별 출자 사업 개요]

| 분야 | 투자대상 | 주목적 투자비율 | 기준 수익률 | 정부 출자액* (정부 출자비율) |
|---|---|---|---|---|
| IP |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 60% | 3% | 1,200 (60%) |
| 수출 |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 판매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 60% | 3% | 1,200 (60%) |
| CT |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 창작시설 등 | 60% | 3% | 600 (60%) |
| 콘텐츠 신성장 | 성장 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 창업초기기업 등 유망 콘텐츠기업 | 60% | 3% | 450 (60%) |
| M&A 세컨더리 | M&A 및 Buyout을 통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문화산업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식을 인수 | 60% | 5% | 450 (60%) |
| 청년 콘텐츠 |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br>**(단,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br>- 청년콘텐츠 기업: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창업지원법」상 창업자<br>①대표이사 만 39세 이하 ②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br>**- 청년 주도 프로젝트: 범위 관련하여 추가 검토 후 확정** | 60% | 미정 | 500 (60%) |
| 합 계 | | | | 4,400 |

주 1)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초과 수익의 20% 이내
2) 정부 출자액은 재출자액을 포함하여 작성
3) 청년콘텐츠 분야의 경우 추후 운용계획 협의 등 과정에서 주목적 투자범위 세부사항 등 일부 변동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추경안을 통해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따르면 청년 대상 투자는 전체 투자금의 40% 수준만 담보되는 데 그쳐 정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부사업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내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콘텐츠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등 K-콘텐츠 관련 4개 내역사업을 통해 K-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5)]

이에 더하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설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청년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민간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사업계획에 따르면 주목적 투자비율(60%)의 대상이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로 설정되어 콘텐츠 분야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약정총액의 40% 이상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청년 대상 투자는 전체 투자금의 40% 수준만 담보되는 구조임.

이와 같이 청년 대상 투자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펀드와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정책효과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K- 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내 내역사업]

| 내역사업 | 투자 대상 | 주목적 투자비율 | 정부 출자비율 |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
|---|---|---|---|---|
| 모태펀드 문화계정 | 중소·벤처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 60% | 60% | 3~5% |
| 모태펀드 영화계정 | 한국 영화 프로젝트 및 애니메이션 | 70% | 60% | 2% |
| 콘텐츠 전략펀드 |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운용제약 없이 방송·영상 분야 및 대작 콘텐츠 IP, AI콘텐츠 등 | 50~60% | 40~50% | 5%** |
| 글로벌 리그 펀드 |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중소·벤처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 40% | 40% | GP 제안 |

주 1) *성과보수 : 펀드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운용사에 성과보수 지급
- 기준수익률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민간 출자자와 운용사 간 협의를 통해 지급하며, 모태펀드는 성과보수가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제공
- 펀드가 청산되기 전에는 수익률이 산정되지 않음에 따라 성과보수도 청산 시점에 확정됨

2) **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청년콘텐츠’ 분야의 투자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 수요 또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민간자금이 해당 분야의 실질적 투자로 원활히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최근 결성규모 및 투자여력을 살펴보면, 결성총액은 5조 6,318억원, 투자액은 4조 6,371억원으로 콘텐츠 시장의 투자여력이 4,341억원 이상 잔존하고 있어, ‘청년콘텐츠’ 분야에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경우 민간자금이 청년 창작자 및 청년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적시에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K- 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결성규모 및 투자여력 현황]

(단위: 억원, %)

| 사업명 | 결성규모(목표) | | | 투자액 | 투자여력 |
|---|---|---|---|---|---|
| | 정부출자 | 민간 | 결성총액 | | |
| 모태펀드 문화계정 | 23,266 | 22,916 | 46,182 | 39,419 | 2,145 |
| 모태펀드 영화계정 | 3,476 | 2,810 | 6,286 | 6,519 | - |
| 콘텐츠 전략펀드 | 513 | 2,337 | 2,850 | 433 | 2,132 |
| 글로벌 리그 펀드 | 400 | 600 | 1,000 | - | - |
| 합계 | 27,655 | 28,663 | 56,318 | 46,371 | 4,341 |

주 1) (전략펀드) 2026년 2월 말 기준 (모태펀드) 2025년 12월 말 기준
* 양 운용기관 통계 집계 절차 차이로, 산출기준 상이
2) 투자여력: ‘(결성총액(A)×0.9) - 투자액(B)’, 결성총액의 10%를 기타 운용비용으로 가정
단, 글로벌 리그 펀드의 경우 자펀드 결성 전으로, 투자액 및 투자여력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3) 콘텐츠 전략펀드의 경우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호)를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① 기존 문화계정은 콘텐츠 원천 IP, 글로벌 콘텐츠, 콘텐츠 신성장 기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 ② 유사한 투자대상이 다수 존재함에도 투자 대상 중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범위 등 투자 대상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 ③ ‘청년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VC 수요조사 등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수요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용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청년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관련 투자 성공사례의 정보 제공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 <지출증액>

##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실효성 있는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하여 자생적 생활 기반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320억원(114.3%)이 증액된 600억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18,000 | 18,000 | 28,000 | 28,000 | 60,000 | 32,000 | 114.3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당초 생활안정자금 140억원과 전세자금 140억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민간경제 위축 및 열악한 예술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140억원 및 전세자금 180억원 총 32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융자지원 하려는 것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당초) 280억원 → **(변경안) 600억원, 320억원 증액** |
| - 생활안정자금 : 140억원 (최대 700만원×2,000명) → **280억원** (최대 700만원×4,000명), **140억원 증** |
| - 전세자금 : 140억원 (최대 1억 2,000만원×117명) → **320억원** (최대 1억 2,000만원×267명), **180억원 증**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1761-305)(예술정책관)

이 사업의 운영절차는 예술활동증명 보유자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7](기타공공기관)의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확정되며, 이후 재단이 직접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으로 구분되며, 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등 5개의 융자용도 중 긴급생활자금에 한하여 개인소득 2천만원 이하 요건을 두고 있으며, ② 전세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 및 무주택자 재산기준을 두고 있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 구 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
|---|---|---|
| | 생활안정자금 | 전세자금 |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8] 보유자 | |
| 융자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 전세자금 |
| 소득기준 |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 | 신청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26년 기준 3,692만원) |
| 재산기준 | -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전원 무주택자) |
| 대출한도 | 700만원 이내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500만원 이내) | 1억 2,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
| 융자기간 | 3년 (거치기간 최대 1년 포함) | 2년 (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 대출금리 | 2.5% | 1.9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이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서, 기금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타공공기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기타공공기관)에게 사업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구조를 가짐.

8)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 수입 및 분야별 활동 실적을 심사하여 발급함.

## 나. 검토의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최근 연체율 및 부실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수된 융자원금이 신규 융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효성 있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체율은 2021년 0.6%에서 2025년 3.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부실률도 2021년 1.3%에서 2025년 4.8%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추경이 통과되어 융자지원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연체액·부실액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음.

[2021~2025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신규 공급액 | 기말 대출잔액 (A) | 연체액 (B) | 연체율 (B/A) | 부실금액 (C) | 부실률 (C/A) | 누적 | | |
|---|---|---|---|---|---|---|---|---|---|
| | | | | | | | 누적 공급액 | 누적 회수액 | 누적 회수율 |
| 2021 | 19,810 | 39,524 | 130 | 0.6 | 516 | 1.3 | 45,322 | 5,803 | 12.8 |
| 2022 | 22,482 | 51,661 | 373 | 0.7 | 660 | 1.3 | 67,804 | 16,129 | 23.8 |
| 2023 | 21,000 | 59,704 | 1,013 | 1.7 | 1,746 | 2.9 | 88,804 | 29,058 | 32.7 |
| 2024 | 18,000 | 59,953 | 1,787 | 3.0 | 2,376 | 4.0 | 106,804 | 46,724 | 43.7 |
| 2025 | 18,000 | 61,091 | 2,293 | 3.8 | 2,922 | 4.8 | 124,804 | 63,453 | 50.8 |

주 1) 연도별 기말 기준
2) 연체액: 연체 1회차 이상(연체 31일 이상) 연체원금
3) 부실금액: 연체 3회차 이상(연체 90일 이상) 대출잔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고정' 이하 여신에 해당
4) 누적회수액: 누적 원금 회수액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히 ① 융자 방식의 지원 정책으로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 ② 회수된 융자원금이 신규 융자재원으로 활용되는 순환구조[9]를 갖고 있어 채권 회수가 추후 사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9) 이 사업 융자금의 재원은 융자원금 회수액과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전액 구성되며, 이번 변경안에 따른 증액분(320억원)은 국민체육기금전입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2021~2026년 융자금 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 | | | | | 당초 | 변경안증액분* |
| 융자원금회수 | - | 7,000 | 9,783 | 14,781 | 24,425 | - |
| 복권기금 전입금 | 23,000 | 14,000 | 8,217 | 3,219 | 3,575 | - |
| 합 계 | 23,000 | 21,000 | 18,000 | 18,000 | 28,000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 및 기존 채무현황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교육[10]을 내실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현재 대출 심사 시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의 예술인복지재단 기관 맞춤형 교육(총 8개 강의 중 1개 선택)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맞춤형 교육용 강의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신용관리’, ‘집 계약할 때 알아두면 좋은 비법’, ‘예술인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등 일반적인 금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제도의 이해 및 상환 관리 교육 목적으로는 한계가 있음.

# 3.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자금 사용기간의 단축을 고려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500억원(250.0%)이 증액된 700억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 - | - | 20,000 | 20,000 | 70,000 | 50,000 | 250.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당초 예술 분야 9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융자수요 2억 500만원을 반영하여 2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안은 추가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244개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총 7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예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작품제작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11)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1633-314)(예술정책관)

##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변경안 세부내역]

○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당초) 200억원 → **(변경안) 700억원, 500억원 증액**

- (당초) 200억원 (**98개 사업체**×205백만원*)
- (변경안 증가분) 500억원 (**244개 사업체**×205백만원)

*「2025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신청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 대출수요액
205백만원 = (100×0.415)+(200×0.458)+(400×0.084)+(750×0.022)+(1,000×0.022)

〈향후 운전자금 대출 신청계획 수요조사〉

| 금액 | 1억 미만 | 1~3억원 | 3~5억원 미만 | 5~10억원 | 10억원 이상 | 계 |
|---|---|---|---|---|---|---|
| 비율(%) | 41.5 | 45.8 | 8.4 | 2.2 | 2.2 | 100 |

주)「2025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신청기업 대상 조사에 참여한 기업(1,252개) 중 향후 1년간 운전자금 대출 신청계획이 있는 기업(465개)별 대출 신청 예정금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예술산업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융자분야) 시설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

○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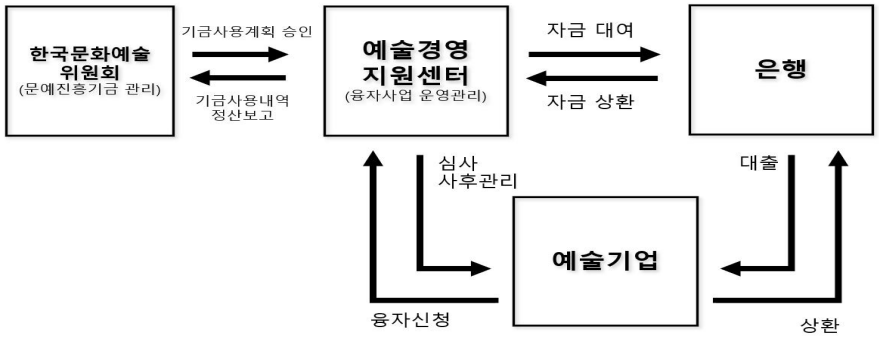
○ (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1분기 2.96%)를 기준으로 가산 및 우대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0.04%p (중소기업 등) -0.21%p (청년) 2.5% 고정금리

○ (융자조건(안))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 융자대상 | 분야 | 한도액 | 상환기간 |
|---|---|---|---|
| 민간 예술시설업체 | 시설자금 | 30억원 |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 2년) |
| 예술서비스업체 | 시설자금 | 10억원 | 7년(거치기간 3년 포함) |
| | 운전자금 | 5억원 | 5년(거치기간 2년) |

○ (사업 추진체계)




주)「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은 추가 공모 추진에 따라 융자 실행 이후 사업체의 자금 활용 기간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심사 시 사업계획의 연내 실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6년 신규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당초 융자지원은 2026.3.16.~4.7.의 기간 중 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4월에 융자 추천 심의 및 추천 결과가 사업체에게 개별 통보되면, 사업체는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의 담보 심사 후 최종 결정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① 운전자금의 경우 융자금을 실행하여 2026년 12월까지 자금을 집행하고 2027년 1월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금이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② 시설자금의 경우 기성금 방식으로 공사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분할하여 대여할 계획임.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 지원절차]

| 융자 공모 | 사전 대출 상담 및 융자접수 | 융자 추천 심의 및 융자 추천 | 융자 결정 및 실행 | 사업체의 융자금 집행 및 증빙자료 제출 |
|---|---|---|---|---|
| (당초)<br>1차:'26.3.16.~4.7.<br>(추가)<br>2차:'26.6.8.~6.23.<br>3차:'26.7.13.~7.28. | (당초)<br>1차:'26.3.16.~4.7.<br>(추가)<br>2차:'26.6.8.~6.23.<br>3차:'26.7.13.~7.28. | (당초)<br>1차:'26.4.2주 ~4.4주<br>(추가)<br>2차:'26.7.1주~7.3주<br>3차:'26.8.1주~8.3주 | (당초)<br>1차:'26.4.5주~7.3주<br>(추가)<br>2차:'26.7.4주~9.4주<br>3차:'26.8.4주~9.4주 | (당초)<br>1차:'26.5.1주<br>~'27.1.31.<br>(추가)<br>2차:'26.7.5주<br>~'27.1.31.<br>3차:'26.9.1주<br>~'27.1.31. |

주) 변경안에 따른 추가 물량 500억원은 2차 또는 3차 공모에 투입될 계획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안에 따른 추가 물량 500억원은 당초 사업과 동일한 절차 구조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나, 2026년 4월초 기준 당초 사업의 공모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 이에 따라 추가적인 융자 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2026년 12월말까지 자금 집행 및 사후 증빙 절차가 진행됨.

이와 관련하여 ① 추가 공모 및 심사 절차가 기존 일정과 병행됨에 따라 심사 일정 지연 및 사업 관리상의 혼선 등 운영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② 특히 사업이 융자금의 연내 집행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사용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계획된 용도에 맞는 적정한 자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 공모로 인한 집행 기간 단축이 실제 자금 집행의 적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선정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연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융자 실행 이후 자금 집행 및 사후 정산이 일정에 맞추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4.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신규): 사전홍보 강화 등 이용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의 관객 수 증대를 유도하여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5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문화예술향유지원 | 280,581 | 290,581 | 327,638 | 327,638 | 332,738 | 5,100 | 1.6 |
| 공연예술 관람료지원 | - | 5,100 | - | - | 5,100 | 5,100 | 순증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 분야 티켓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을 50만장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할인쿠폰 발행비 50억원 및 운영·홍보비 1억원을 예술경영지원센터(기타공공기관)에 경상보조할 계획임.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공연예술관람료지원: (당초) 0원 → (변경안) 51억원, 순증
- 공연할인쿠폰발행비 50억원(1만원 × 50만장) + 사업운영·홍보비 1억원
* ’25공연예술조사 결과 공연 평균티켓가격(69,928만원)의 14.3%
** ’25년 동기간 공연예술장르 티켓판매수 834만장의 4% 규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2)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예술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4~5월 5개 내외의 온라인 티켓예매처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 후 6월부터 11월까지 공연할인쿠폰을 발행할 계획으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10매(1인×2매×5개 내외 예매처) 한도로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 개요]

| |
|---|
| ○ 지원내용: 온라인 티켓예매처에서 공연 예약시 1만원(정액) 지원<br>○ 대상 공연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서커스/마술(대중음악, 대중무용 제외)<br>○ 발행 기간: 2026년 6월~11월<br>○ 지원 제한: 1인당 최대 10매 한도 (1인×2매×5개 내외 예매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은 과거 집행부진 사례를 고려할 때, 사전홍보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실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 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여가활동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공연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염 우려와 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총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된 쿠폰 물량이 목표 대비 약 10% 수준에 그쳤고, 실집행률 또한 19.2%로 저조하였음.

2025년도에도 내수 진작 및 공연시장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2025년 7월)을 통하여 공연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집행이 부진하였고, 이에 연중 보조사업 계획변경을 통해 2차 배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2025년 12월말 기준 사용된 쿠폰 물량은 목표 대비 74.5%로 실집행률은 70.7%에 그쳤음.

[과거 공연 할인쿠폰 지원 실적]

| 구분 | 발행기간 | 쿠폰 물량(장) | | | 예산(백만원) | | | |
|---|---|---|---|---|---|---|---|---|
| | | 목표 (A) | 집행 (B) | 집행률 (B/A) | 예산액 (a)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불용액 |
| 2020 | (1차) '20.10.22.~11.23.<br>(2차) '21.5.18.~12.5.<br>* 총 약 7.5개월 | 1,800,000 | 201,780 | 11.2% | 15,880 | 3,054 | 19.2% | 12,826 |
| 2025 | (1차) '25.8.8.~9.19.<br>(2차) '25.9.25.~12.31.<br>* 총 약 4.5개월 | 451,450 | 336,347 | 74.5% | 5,100 | 3,604 | 70.7% | -<br>(이월액 1,496) |

주) 2020년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시점 기준이며, 2025년 사업의 경우 2025년 12월말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변경안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4~5월 예매처 공고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11월(약 5개월) 동안 쿠폰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나, 과거 지원 실적을 고려할 때 발급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쿠폰이 실제 공연 관람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여 정책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매처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동 홍보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은 예매처 간 중복발급이 가능하여 정책 수혜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효과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5개 내외의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예매처별로 1인당 발급한도(2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이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예매처 간 발급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동일인이 여러 예매처를 통해 쿠폰을 중복 발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매까지 쿠폰 수령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예매에 익숙한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등 정책 수혜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매처 간 발급 이력의 통합관리, 1인당 지원 한도의 합리적 설정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이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영화발전진흥기금】

### <지출증액>

## 5.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신규): 지원 편중 완화를 위한 영화관별 지원금 배분기준 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은 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금을 통해 영화관람 수요를 확대하고, 영화 제작 활성화로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36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영화정책지원 | 16,496 | 43,680 | 28,099 | 28,099 | 64,199 | 36,100 | 128.5 |
| 영화정책지원 | 2,895 | 30,060 | 3,006 | 3,006 | 39,106 | 36,100 | 1200.9 |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 - | 27,100 | - | - | 36,100 | 36,100 | 순증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영화 티켓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의 할인쿠폰 600만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할인 지원금 360억원 및 사업운영 및 관리비 1억원을 사업 수행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기타공공기관)를 통해 집행할 계획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당초) 0원 → (변경안) 361억원(일반수용비) 순증
- 할인 지원금: 360억원 (6,000원 × 600만장)
- 사업운영 및 관리: 1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3) 영화발전진흥기금-영화정책지원(1261-302)(영화진흥위원회)

이 사업은 2026년 4월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참여 영화관 사업자를 모집하고, 5월 중 약정체결 및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5월부터 12월까지 영화 관람객에게 할인권을 배포·사용하도록 한 뒤, 추후 실제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할 계획임.

할인권의 발급 및 사용 방식은 ① 계열 영화관의 경우 1인 2매 한도로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며, ② 독립영화관 등 비계열 영화관은 별도의 발급 한도 없이 선착순으로 현장 발권 시 즉시 할인 적용되는 방식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영화 관람 수요 확대 및 제작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유도를 통한 영화산업 활력 제고

○ (지원내용) 전국 영화관별 관람료 할인 지원금(1매당 6,000원) 지급

- 계열 영화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할인쿠폰 발급받아 사용 (1인 2매 한도)
- 비계열 영화관: 현장발권 즉시 할인 적용 (발급 한도 없이 선착순 소진)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및 참여영화관 접수 | ▶ | 약정체결 및 지원금 선지급 | ▶ | 할인권 배포 및 사용 | ▶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
| '26년 4월 | | '26년 5월 | | '26년 5월~12월 | | '26년 12월 |

주) 계열 영화관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멀티 플렉스 체인 영화관으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의 직영·위탁관이 이에 해당하며, 비계열 영화관은 대형 체인에 속하지 않고 개인 등이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및 작은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은 매출액에 기반한 지원금 배분 구조로 인해 영세한 비계열 영화관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전반의 회복 및 구조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영화관 사업자에게 선지급되는 구조로,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배분 기준은 2025년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열영화관·비계열영화관 여부 및 전년도 매출액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14)]

2025년 사업 추진 당시 지원금의 배분 기준을 보면, 계열 영화관에 90%, 비계열 영화관에 10%를 각각 배정한 후, 계열 영화관은 과거 평균 매출액 점유율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비계열 영화관은 신청 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과거 매출액 점유율과 일부 균등 배분 방식을 병행하여 지원금을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270억원의 지원금 중 계열 영화관에 243억원과 비계열 영화관에 27억원이 지원되었음.

[20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 지원금 배분 기준]

| 구 분 | | 지원금 배분 |
|---|---|---|
| 계열 (90%) | | 전체 지원금 예산의 90%에 대해 2024~2025년 평균 매출액 점유율에 따라 지원금 배분 |
| 비계열 (10%) |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5%) | 신청접수한 영화관 대상으로 예산의 5%에 대해 총 지원금의 60%는 균등 배분, 40%는 2023~2024년 평균 매출액 기준 배분 |
| | 일반(개인)영화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5%) | 신청접수한 영화관 대상으로 예산의 5%에 대해 총지원금의 60%는 균등 배분, 40%는 2023~2024년 평균 매출액 기준 배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4)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미정이나, 전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20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 영화관별 지원금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

| 영화관 | | 지원금 | 비중 |
|---|---|---|---|
| 계열 (90%) | CGV | 12,750 | 47.2 |
| | 롯데시네마 | 6,790 | 25.1 |
| | 메가박스 | 4,627 | 17.1 |
| | 씨네큐 | 132 | 0.5 |
| | 합 계 | **24,300** | **90.0** |
| 비계열 (10%) | 비계열 영화관 (97개) | **2,700** | **10.0** |
| 합 계 | | 27,000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관람객 이용이 많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영화 관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계열 영화관 또는 각 계열 내에서 매출액이 적은 영화관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형·고매출 영화관을 중심으로 정책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2025년 사업은 제2회 추경(2025년 7월)을 통해 추진되어 할인권 사용 기간이 짧아 국민의 영화관 접근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반면,[15] 이번 변경안에 따른 사업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비교적 충분한 운영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영화관에 대해서도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15) 참고로 2025년 제2회 추경에 따른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은 쿠폰물량 450만장(계열·비계열)을 계획하여 실제 456만장을 사용하였고, 예산 271억원 중 270억 6,8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99.9%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원활하게 집행되었음.

[2025년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 집행내역]

| 구분 | 발행기간 | 쿠폰 물량(장) | | | 예산(백만원) | | | | |
|---|---|---|---|---|---|---|---|---|---|
| | | 목표 (A) | 사용 (B) | 사용률 (B/A) | 예산액 (a) | (실)집행액 (b) | 이월액 | (실)집행률 (b/a) | 불용액 |
| 2025년 | '25.7.25.~9.2., '25.9.8.~10.31., | 450만 | 456만* | 101.3% | 27,100 | 27,068 | - | 99.9% | 32 |

주) 6천원 미만 할인 존재로 목표 대비 사용매수 높음 (예: 실버영화관 2천원 티켓가에 1천원 할인 적용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금 배분 구조가 특정 유형의 영화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계열 영화관에 대한 배분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비계열 영화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규모·유형의 영화관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영화산업 전반의 회복 및 구조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6.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신규):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 효율성 증대,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 및 산업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8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영화 창제작 지원 | 21,710 | 21,710 | 40,929 | 40,929 | 79,419 | 38,490 | 94.0 |
| 영화 제작 지원 | 17,000 | 17,012 | 32,938 | 32,938 | 71,428 | 38,490 | 116.9 |
|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 - | - | - | - | 8,000 | 8,000 | 순증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문화체육관광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한국영화 10편에 대한 제작지원금 79억원과 사업 운영 및 관리비 1억원 등 총 80억원을 사업수행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기타공공기관)을 통해 운용할 계획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당초) 0원 → (변경안) 80억원, 순증
- 제작지원금(민간경상보조): 79억원 (10편×7억 9,000만원)
- 사업운영 및 관리비(일반수용비): 1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6) 영화발전진흥기금-영화 창제작 지원(1261-300)(콘텐츠미디어산업관)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버추얼 프로덕션, VFX/CG[17]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극장용 한국영화 10편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30~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사업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 4~5월 공고, 6월 접수, 7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을 거쳐 8월 약정 체결 및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비용지원 이후 12월 정산까지의 일정이 상당히 제한적인 구조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극장용 한국영화 10편

○(지원내용) 첨단기술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30~50% 범위 내 지원

- 버추얼 프로덕션: VP(Virtual Production) 스튜디오 임차료, 디지털 에셋 확보 비용 등
- VFX(Visual Effects)/CG 제작: 시각효과 전문인력 인건비, 제작비 등
- AI 기반 제작기술: 서버 렌더링 비용, 기술인력 인건비 등
- 클라우드 기반 프로덕션: 렌더링 비용, 스토리지 사용료, 워크 스테이션 임차료 등
- 스크린X 포맷 변환: 전문인력 인건비, 후반 작업비 등

○(사업일정)

| 사업공고 | 접수 | 심사 및 발표 | 약정/교부 | 보조금 정산 |
|---|---|---|---|---|
| '26년 4월~5월 | '26년 6월 | '26년 7월 | '26년 8월 | '26년 ~12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은 지원금 사용기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이미 제작이 진행 중인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제작사의 비용 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신규 또는 기존 영화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내외로 짧게 제한됨에 따라 신규 기획단계의 영화보다는 이미 제작이 진행 중인 작품을 중심으로 지원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큼.

17) VFX(Visual Effects)는 실제 촬영이 어려운 장면을 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에 시각적으로 구현·보완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CG(Computer Graphics)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장면을 생성하거나 기존 영상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함.

또한 첨단기술 소요 비용의 30~50%를 지원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극장용 영화 제작사의 고비용 첨단기술 활용에 따른 제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제작사보다는 이미 안정적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극장용 영화를 제작 중인 대형 제작자에 대한 비용 보전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은 지원대상 기술의 범위 및 세부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신청자의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지원규모가 결정되고, 사전 교부액과 실제 소요비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첨단기술의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내용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VFX/CG 등 첨단기술이 제시되어 있으나, 첨단기술의 세부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전에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사·확정한 후 자금을 교부하고, 사후에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이므로, 교부되는 자금은 사실상 공모 신청 단계에서 영화 제작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비용 산정 자료에 의존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첨단기술의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원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는 경우, 사전 교부액과 실제 소요비용 간 괴리가 확대되어 일부 사업에 재정이 과다 배분되거나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재정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준비 단계에서 첨단기술의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금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

### <지출증액>

## 7.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경영피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은 관광사업체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대출을 제공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2,800억원(43.9%)이 증액된 9,175억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 591,863 | 593,500 | 644,066 | 644,066 | 924,066 | 280,000 | 43.5 |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586,500 | 586,500 | 637,500 | 637,500 | 917,500 | 280,000 | 43.9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2026년 당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6,375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관광업종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운영자금 2,300억원과 스타트업 운영지원 500억원 등 총 2,800억원의 특별융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18)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관광정책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세부내역]

| |
|---|
|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당초) 6,375억원 → **(변경안) 9,175억원, 2,800억원 증가** |
| -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6,375억원 |
| **- (신규) 중동사태 피해 관광업종 운영자금 2,300억원 (2억원×1,150개 업체)** |
| **- (신규) 스타트업 운영지원 500억원 (2억원×250개 업체)**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업계 금융지원[19]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시설자금) 및 관련 협회(운영자금)를 통해 융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확정된 융자지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임. 변경안에 따른 추가 지원액은 당초 사업과 동일한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변경공고를 통해 2분기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투입할 계획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개요]

| | |
|---|---|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7개 업종 |
| 접수 기간 | (운영자금) 1분기: '25.12.31.~'26.1.30. 2분기: '26.3.30.~'26.4.30.<br>(시설자금) 1분기: '25.12.31.~'26.1.30. 2분기: '26.3.30.~'26.4.30. |
| 대출한도 | (시설자금) 건설 150억원 이내, 개보수 80억원 이내<br>(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건설 4~5년 거치 5~8년 분할상환, 개보수 3~4년 거치 4년 분할상환<br>(운영자금)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 |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1분기 2.96%)<br>* 중소기업 0.75%p 우대, 중저가 숙박시설 및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1.25%p 우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9)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융자·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세 가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26년 관광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신용보증 비교]

| 구 분 | 융자지원 | 이차보전 운영지원 | 신용보증기관 출연 |
|---|---|---|---|
| 지원방식 | 은행을 통해 융자금 전대 |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 보전 | 신용보증 |
| 적용이율 | 기준금리 또는 기준금리에서 0.75~1.25%p 차감 | 은행 규정에 따른 금리 중 3% 또는 2.5%p 보전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 융자분야 | 시설·운영자금 | 시설·운영자금 | 운영자금 |
|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13년(거치기간 5년 포함) | 3년(만기일시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6년(거치기간 3년 포함) |
| 대출한도 | 최대 150억원 이내 | 최대 150억원 이내 | 최대 2억원 이내 |
| 지원규모 (당초) | 6,375억원 | 62억원 | 10억원 |

주) 재정경제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은 경영상 피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출 감소율 등 정량적 지표 마련, 지원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융자지원이 실제 피해 사업체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관광수요 위축 및 예약 취소 증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융자지원에 더하여 특별융자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임.

이러한 금융지원은 관광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 계획상 중동사태 피해 관광업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정량적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최근의 융자수요 및 지원실적을 고려할 때[20] 국고채 수준의 저리대출 혜택을 활용하려는 관광사업체의 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출 감소율, 예약 취소 규모, 외래관광객 감소 영향 등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융자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최근 관광사업체 융자지원금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획액 | | 계획 현액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
| | 당초 | 수정 | | | |
| 2023 | 446,500 | 446,500 | 446,500 | 446,336 | 99.96 |
| 2024 | 536,500 | 536,500 | 536,500 | 536,500 | 100 |
| 2025 | 586,500 | 586,500 | 586,500 | 586,500 | 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이 사업에 포함된 스타트업 운영지원은 지원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재원이 분산되어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상황 피해 관광업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에 더하여 관광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운영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나, 현행 사업계획에는 '스타트업 운영지원' 이라는 항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관광 스타트업의 범위,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편성내역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지원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존 관광사업체 융자지원과의 차별성이 불명확해지고 한정된 재원이 분산되어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스타트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존 사업과의 정책적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재원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8.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당초 편성단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 등

## 가. 개 요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관광 수요의 균형적 분산과 국내여행 총량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여행가는 달 캠페인 및 숙박할인권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74억 4,000만원(27.2%) 증액된 81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 (A) | 변경안 (B) | 증감 (B-A) | (B-A)/A |
| 국내관광 역량 강화 | 42,780 | 106,879 | 64,193 | 64,193 | 81,633 | 17,440 | 27.2 |
| 국내관광 캠페인 | 8,194 | 55,893 | 13,607 | 13,607 | 24,847 | 11,240 | 82.6 |
| 숙박할인권 지원 | - | 47,699 | 3,963 | 3,963 | 15,203 | 11,240 | 283.6 |
| 국민관광지원 | 26,886 | 43,286 | 42,186 | 42,186 | 48,386 | 6,200 | 14.7 |
| 근로자 휴가 지원 | 7,000 | 15,900 | 10,700 | 10,700 | 16,900 | 6,200 | 57.9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① 내내역사업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지역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한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3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추가 배포하기 위해 1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숙박할인권 지원: (당초) 3,963백만원 → **(변경안) 15,203백만원, 11,240백만원 증가**
- 숙박할인권 (당초) 3,480백만원(20만장) → (변경) 14,520백만원(50만장)
(1.8만장×7만원+2만장×5만원+14.6만장×3만원+1.6만원×2만원)×50% (당초, 20만장)
+ (5.4만장×7만원+0.6만장×5만원+21.6만장×3만원+2.4만장×2만원)×100% (증가분, 30만장)
- 사업운영비 (당초) 483백만원 → (변경) 683백만원

주) 당초 계획 물량 20만장(비수도권 지역 대상)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분담하고, 증가분 30만장(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대상)은 국비 100%로 부담할 계획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1) 관광진흥개발기금-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관광정책국)

② 내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7만명에 대한 추가 혜택 지원 및 운영비 증액을 위해 62억원이 증액된 169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근로자 휴가 지원: (당초) 10,700백만원 → **(변경안) 16,900백만원, 6,200백만원 증가**<br>- 정부지원금: (중소기업)10만원×10만명(당초)<br>→ **(중소기업) 10만원×5만명 + (중견기업) 5만원×2만명** (변경안 증액분)<br>- 사업 운영·관리, 홍보: 700백만원(당초)<br>→ **(프로모션 및 사업 운영·관리) 2억원** (변경안 증액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자부담 20만원에 기업분담금과 정부 분담금을 합하여 적립금 포인트로 부여하고,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됨.[22)]

당초 중소기업 등[23)](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변경안에서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있으며,[24)] 구체적으로 변경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중견기업 근로자 2만명에 대해서 5만원 수준의 분담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계획함.

22) 참여절차: 참여신청(기업) → 참여근로자 확정(관광공사) → 분담금 적립(근로자·기업·정부) → 국내여행 경비 적립금 포인트로 사용(근로자)

23) 당초 참여대상 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속 근로자 및 소상공인

24)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평균 매출액 400억원~1,5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계열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2026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 | 2026 당초 | 2026 변경안 |
|---|---|---|---|
| 휴가샵 이용대상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예산 | 정부 지원금 | 중소기업 10만원 × 10만명<br>(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 | 중소기업 10만원 **× 15만명**<br>(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br>**중견기업 5만원 × 2만명**<br>**(근로자 20만원+기업 15만원)** |
| | 사업운영·관리<br>홍보 | 7억원 | 7억원 + 2억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및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편성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우선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24년 당초 계획은 여행가는 달 관련 61,000명에 대한 숙박할인 3만원 지원을 위하여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차례의 기금변경을 통해 총 254억 9,500만원을 계획변경하여 숙박할인권 총 95만장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총 4차례에 걸친 기금변경으로 총 477억원을 계획변경하여 총 152만장을 지원하였음.

[2024년~2026년 숙박할인권 기금변경 현황]

| 구 분 | |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변경액 | 쿠폰수량 (증가분) |
|---|---|---|---|---|---|
| 2024 | 1차 변경 (2.2.) | 설 민생 안정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34억원 | 11만장 |
| | 2차 변경 (4.24.) | 2024 경제정책방향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72억원 | 25만장 |
| | 3차 변경 (8.23.)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60억원 | 20만장 |
| | 4차 변경 (9.23.) | 추석 민생안정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89억원 | 30만장 |
| 2025 | 1차 변경 (1.23.) | 2025년 경제정책방향, 설 민생안정대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298억원 | 100만장 |
| | 2차 변경 (5.20.) | 산불 피해 및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지원 | 산불 피해 및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18억원 | - (10만장 단가상향) |
| | 3차 변경 (7.4.) | 지역 관광 확대 및 내수활성화 (추경)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147억원 | 50만장 |
| | 4차 변경 (10.20.) | 추석 민생안정대책 | 산불 피해 및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14억원 | - (8만장 단가상향) |
| 2026 | 변경안 |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 등 대응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내수진작 | 112억원 | 30만장 |

주) 쿠폰 수량(증가분)은 계획상 물량으로서, 실제 지원된 쿠폰 수량과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에는 당초 39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숙박할인권 2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안에 3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추가로 배포하기 위한 예산 11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음.

② 다음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기금 변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당초 107억원을 편성하여 10만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변경안에 7만명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 6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2023년~2026년 근로자 휴가지원 기금변경 현황]

| 구 분 | |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변경액 | 목표 지원인원 |
|---|---|---|---|---|---|
| 2023 | 1차 변경 (4.13.) | 내수활성화 | 내수진작 | 20억원 | 추가 2만명×10만원 |
| | 2차 변경 (7.24.) | 내수활성화 | 내수진작 | 30억원 | 추가 3만명×10만원 |
| 2024 | 1차 변경 (4.24.) | 경제정책방향 | 내수진작 | 60억원 | 추가 6만명×10만원 |
| 2025 | 1차 변경 (7.4.) | 민생안정대책 | 내수진작 | 89억원 | 추가 8.5만명 ×10만원 |
| 2026 | 변경안 | 중동 상황, 고유가 | 소비진작 | 62억원 | 추가 7만명 (중소기업 5만명 ×10만원 중견기업 2만명 ×5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수활성화 및 지역관광 확대를 위하여 두 사업의 증액 소요분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대규모의 기금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당초 편성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당초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고 휴가 사용 여건이 제약된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으로, 이번 변경안은 중견기업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당초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변경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 근로자(2만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휴가 사용 여건 및 복지 수준이 열악한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려는 정책 목적에 따른 것임.[25)]

실제 기업 규모별 근로여건 격차를 살펴보면, 기업규모별 월평균 소득의 경우 대기업은 613만원으로 중소기업(307만원)에 비하여 약 2.0배 수준이며,[26)] 법정 외 복지비용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평균 약 45만 9,000원, 300인 미만 사업체는 약 15만 9,000원 수준으로 약 2.9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등[27)] 기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 및 복지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중견기업은 사내 복지제도 등을 통한 휴가비 지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고 휴가 사용 여건이 제약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수준 격차(34.4%,'23년 고용부조사) 및 휴가·문화비용 격차(24.3% '23년 고용부조사)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26)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6.2.
기업규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통계는 제시되지 않음.

27) 고용노동부, 「2024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 2025.9.

# 9.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신규): 장기성과 및 고용 효과 반영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은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청년 관광사업체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56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8)29)]

[2026년도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13,124 | 13,124 | 14,269 | 14,269 | 19,939 | 5,670 | 39.7 |
| 관광두레 조성[30)] | 10,383 | 10,383 | 9,383 | 9,383 | 15,053 | 5,670 | 60.4 |
|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 - | - | - | - | 5,670 | 5,670 | 순증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28)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활성화 기반구축(4462-300)(관광정책관)

29) 관광두레는 ‘힘을 모아 함께한다’는 순우리말 ‘두레’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주민 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을 의미함.

30) 내역사업인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당초 ① 주민사업체 발굴·육성 및 판로지원 등 지원하는 ‘관광두레 조성지원’ 사업, ② 지자체 대상으로 종료지역 사후관리 등 지원하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총 2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을 통해 ③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확대 편성되었음.

[관광두레 조성 사업(내역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관광두레 조성: (당초) 93억 8,300만원 → **(변경안) 150억 5,300만원, 56억 7,000만원 증액**
- 관광두레 조성지원: 250개 내외 주민사업체×3,600만원 = 89억 8,300만원
-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2개 지자체×2억원 = 4억원 (민간경상보조, 정액)
**-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56억 7,000만원**

주)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내내역 사업)은 한국관광공사(보조사업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후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재원을 분담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 사업은 신규 청년관광두레 200개소 발굴을 위한 52억원과 기존 청년관광두레 65개소에 대한 지원 강화[31]를 위한 4억 7,000만원 등 총 5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 고용 확대 및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당초) 0원 → **(변경안) 56억 7,000만원, 순증** |
| - 신규 청년관광두레 발굴: 2,600만원×200개소 = 52억원 |
| - 기존 청년관광두레 지원 강화: 720만원×65개소 = 4억 7,000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숙박 및 체험 등 관광사업의 신규 창업을 계획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청년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서류평가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 역량강화, 컨설팅, 시장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

31) 이 사업은 청년층 관광두레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주민사업체의 신규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관광두레 조성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사업체 중 청년 주민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존 관광두레 조성사업의 2026년도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관광두레 조성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상 지역*에서 주민여행사·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의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운영중인 관광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청년 주민사업체

※주민사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체 중 구성원 2/3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 주민사업체로 지정 (공고 마감일 기준 주민사업체의 구성원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기간) 최장 5년

○ (지원내용) 지원기간동안 최대 1억 1,000만원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한도 내)

| step 1. 예비(창업준비) | ⇒ | step 3. 초기(성장준비) | ⇒ | step 3. 성장(성공준비) |
|---|---|---|---|---|
| 연 최대 1,500만원 | | 연 최대 2,000만원 | | 연 최대 3,000만원 |

| 지원내용 |
|---|
| 역량강화(전문교육, 견학), 컨설팅(창업, 상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IT), 시장테스트, 법률·세무 |

주 1) 대상 지역은 매년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 ('23) 27개, ('24) 33개, ('25) 27개

2) 예비: 초기단계 미충족 주민 사업체

초기: 매출액 연 3,000만원 이상, 두레 상품화* 및 파일럿 사업 각 1회 이상

성장 : 매출액 연 6,000백만원 이상, 두레 상품화 및 파일럿 사업 각 1회 이상, 평가지표 70점 이상

* 관광두레 컨설팅/교육을 통해 관광두레 사업 참여기간 동안 상품·메뉴개발 실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주민여행사・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 관광사업의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운영 중인 관광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청년 주민사업체

○ (지원내용)

- (신규발굴) 신규 청년 관광두레: 최대 2,600만원 지원 (200개소 내외)
- (지원강화) 기존 청년 관광두레: 최대 720만원 추가 지원 (65개소 내외)

| 지원내용 |
| --- |
| 역량강화(전문교육, 견학), 컨설팅(창업, 상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IT), 시장테스트, 법률・세무 |

주 1) 지원대상의 '청년 주민사업체' 범위는 지역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화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청년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은 청년 고용 및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나, 현행 성과관리 지표가 지원 종료된 사업체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성과와 고용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청년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여 지역 내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고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체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청년 창업・고용 창출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될 필요가 있음.

현행 관광두레 조성사업(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주민사업체의 초기・성장단계진입 비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① 지원 중인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표구성에 그쳐 지원 종료된 사업체의 생존 여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② 정책목표인 고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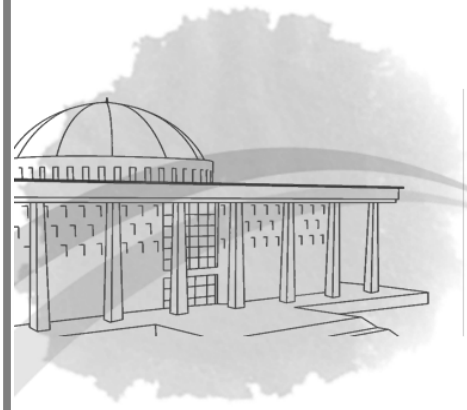
[성과 지표 현황]

| 성과지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주민사업체 초기·성장단계 진입비율 (단위: %) | 목표 | 신규 | 28.9 | 30.3 | 31.8 | 33.4 | 2~4년차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성장단계로 진입한 사업체 수의 비율 산출 |
| | 실적 | 신규 | 57.9 | 46.1 | - | - | |
| | 달성도 | 신규 | 200.3 | 152.1 |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종료 사업체의 생존율, 고용 유지율 등 장기적 성과 및 고용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 선정·평가 및 지원 수준과 연계하는 등 사업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체의 자립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
# 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9조 7,77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조 1,223억원(35.0%) 증가함.

예산은 14조 6,2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조 1,223억원(53.9%) 증가하고, 기금은 5조 1,578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2)]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81,592 | 81,592 | 94,977 | 146,200 | 51,223 | 53.9 |
| 기 금 | 48,932 | 48,932 | 51,578 | 51,578 | - | - |
| 합 계 | 130,524 | 130,524 | 146,555 | 197,778 | 51,223 | 35.0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0조 4,1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658억원(1.3%) 증가함.

예산은 10조 8,2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20억원(0.9%) 증가하고, 기금은 9조 5,9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738억원(1.8%)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04,818 | 108,396 | 107,280 | 108,200 | 920 | 0.9 |
| 기 금 | 82,598 | 86,125 | 94,170 | 95,908 | 1,738 | 1.8 |
| 합 계 | 187,416 | 194,521 | 201,450 | 204,108 | 2,658 | 1.3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6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0조 1,900억원(53.7%)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13 | 213 | 223 | 223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40,055 | 144,213 | 162,739 | 264,639 | 101,900 | 62.6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30 | 430 | 430 | 430 | -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0.34 | 0.34 | 0.45 | 0.45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5 | 35 | 110 | 110 | -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 27,925 | 27,925 | 26,117 | 26,117 | - | - |
| 합 계 | 168,660 | 172,817 | 189,620 | 291,520 | 101,900 | 53.7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6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35조 9,49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조 2,122억원(39.7%)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72,594 | 77,102 | 65,250 | 65,250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2,813 | 126,040 | 146,514 | 247,930 | 101,416 | 69.2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65 | 165 | 168 | 168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624 | 13,898 | 19,162 | 19,868 | 706 | 3.7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7 | 157 | 159 | 159 | -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 27,925 | 27,925 | 26,117 | 26,117 | - | - |
| 합 계 | 237,279 | 245,287 | 257,370 | 359,492 | 102,122 | 39.7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1조 6,686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738억원(1.5%)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조 8,39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588억원(2.1%) 증가하고,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조 1,86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650억원(5.8%) 증가하고,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3조 981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500억원(1.6%)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5,978 | 27,255 | 30,481 | 30,481 | 30,981 | 500 | 1.6 |
| 농지관리기금 | 23,289 | 23,289 | 27,802 | 27,802 | 28,390 | 588 | 2.1 |
| 축산발전기금 | 10,254 | 10,254 | 11,215 | 11,215 | 11,865 | 650 | 5.8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4,826 | 5,053 | 5,298 | 5,298 | 5,298 | - | - |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 31,045 | 31,045 | 31,124 | 31,124 | 31,124 | - | -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4,059 | 4,059 | 5,139 | 5,139 | 5,139 | - | - |
| 양곡증권정리기금 | 5,509 | 5,509 | 3,890 | 3,890 | 3,890 | - | - |
| 합 계 | 104,960 | 106,463 | 114,949 | 114,949 | 116,686 | 1,738 | 1.5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0조 3,860억 1,200만 원임.[3)]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 지원('26년)으로 7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추경안(계획안)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 1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6년) | 7,824 |
| 합 계 | | 7,824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 조사에 필요한 지방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인력 채용, 시스템 기능개선, 드론 활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 588억원 증액하였고, ‘농축산물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구매시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소비기반조성’ 사업에 500억원을 증액하였고, ‘농가사료구매자금’ 사업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사업에 650억원을 증액하였음.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4,049,607 | 4,068,062 | 6,319,506 | 16,453,293 | 10,133,787 | 160.4 |
| 1 | 농업자금이차보전 | 681,878 | 682,500 | 729,661 | 731,816 | 2,155 | 0.3 |
| 2 |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 수급안정지원 | - | 25,500 | 15,600 | 19,800 | 4,200 | 26.9 |
| 3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92,729 | 92,729 | 115,751 | 122,951 | 7,200 | 6.2 |
| 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 627,568 | 654,965 | 686,805 | 5,535,578 | 4,848,773 | 706.0 |
| 5 | *축산발전기금 전출* | 145,500 | 145,500 | 145,500 | 210,500 | 65,000 | 44.7 |
| 6 | *농산물안정기금 전출* | - | - | 204,030 | 254,030 | 50,000 | 24.5 |
| 7 | *농지관리기금 전출* | - | - | 500,000 | 558,771 | 58,771 | 11.8 |
| 8 | *수산발전기금 전출* | - | - | 128,792 | 158,792 | 30,000 | 23.3 |
| 9 | *구조개선사업사업계정전출* | 2,501,932 | 2,466,868 | 3,793,367 | 8,861,055 | 5,067,688 | 133.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234,075 | 304,705 | 70,630 | 30.2 |
| 10 |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 - | - | 234,075 | 304,705 | 70,630 | 30.2 |
| 농지관리기금 | | 13,540 | 13,540 | 13,944 | 72,715 | 58,771 | 421.5 |
| 11 | 농지이용관리지원 | 13,540 | 13,540 | 13,944 | 72,715 | 58,771 | 421.5 |
| 축산발전기금 | | 300,000 | 300,000 | 250,000 | 315,000 | 65,000 | 26.0 |
| 12 | 농가시료작가대 활성화 지원(융자) | 300,000 | 300,000 | 250,000 | 315,000 | 65,000 | 26.0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 | - | 122,716 | 172,716 | 50,000 | 40.7 |
| 13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 | - | 122,716 | 172,716 | 50,000 | 40.7 |
| 합계 | | 4,363,147 | 4,381,602 | 6,940,241 | 17,318,429 | 10,378,188 | 149.5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시설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미 개발된 고효율 기술의 농가 현장 보급을 병행함으로써 시설원예 분야의 근본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최근 3년간 舊수출물류비('23년) 및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수출바우처, '24~'25년) 사업의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업체가 193개에 달하고 이들의 예산 점유율이 2025년 기준 78.1%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수출 증가율이나 신규 시장 개척 성과가 미흡함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료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 지원 하려는 방안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나, 기존 대출분('22년~'23년)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다수 축산농가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신규 대출 집행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세출증액>

##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사업: 농어촌 특별세 재원의 농어촌 관련 사업 활용 확대 필요

### 가. 개 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조 8,487억 7,300만원(706.0%) 증가한 5조 5,35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 627,568 | 654,965 | 686,805 | 5,535,578 | 4,848,773 | 706.0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8010-804)(운영지원과)

##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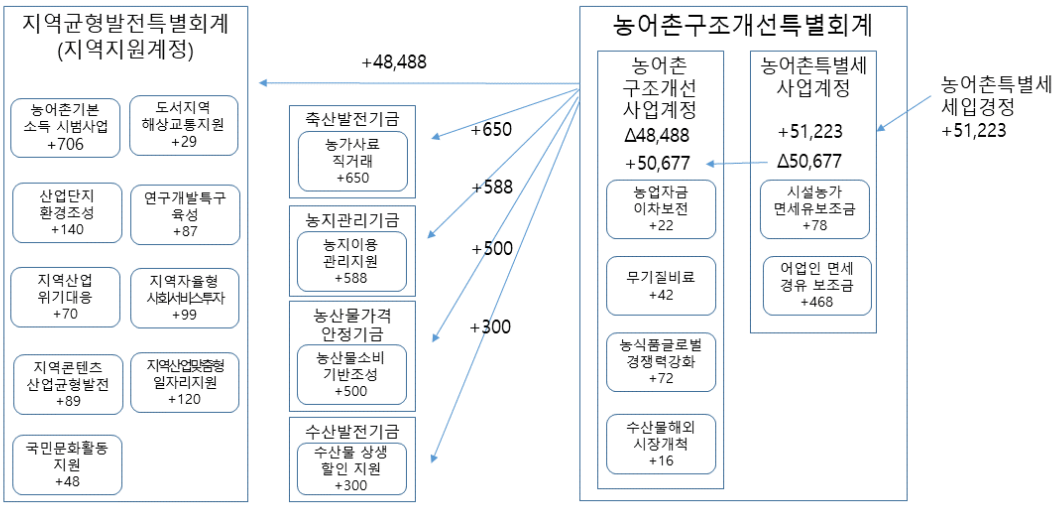
**이번 추경안에서 5조 1,223억원 증액경정한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인만큼 농어촌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라 유가증권시장(KOSPI)의 거래대금이 호조세가 지속되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거래액의 0.15%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본예산 8조 4,988억원 대비 5조 1,223억원(60.3%) 증액한 13조 6,212억원으로 편성하였음.[5)]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과목 중 하나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활용되거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다른 계정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출되어 활용될 수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회계-기금간 거래 등 개요도]

(단위: 억원)




주) 사업명 아래의 숫자는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내역을 의미함
자료: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5)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거래액 | 1만분의 15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어촌특별세 증액경정에 따른 세출사업 확대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관련 회계-기금 간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중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는 농어촌특별세 5조 1,223억원을 증액 경정하고, 증액된 세입 중 시설농가면세유보조금 78억원과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468억원을 합하여 총 546억원을 계정 내 사업에 활용하고, 나머지 5조 677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출하였음.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전입 받은 5조 677억원 중 농업자금이차보전 22억원, 무기질비료 42억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억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16억원을 합하여 총 152억원을 계정 내 사업에 활용하였음. 나머지 5조 525억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에 4조 8,488억원 전출하고, 축산발전기금에 650억원, 농지관리기금에 588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500억원, 수산발전기금에 300억원을 각각 전출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서는 이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 29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140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 87억원, 지역산업위기대응 70억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99억원, 지역콘텐츠 산업균형발전 89억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120억원, 국민문화활동지원 48억원에 각각 활용하였음.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수산발전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가사료 직거래,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산물소비기반조성,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에 활용하였음.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목적세(Earmarked Tax)로,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는 해당 조세의 부과 목적을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6)]

목적세는 특정한 정책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징수된 재원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재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수의 초과분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직접 활용되거나, 향후 목적 사업을 위해 보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6)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회계-기금 간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 증액 재원 5조 1,233억 원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사업(내부거래 제외)에 활용된 것은 2,736억원(5.3%)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 8,488억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전출되었음.

또한「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4조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은 허용하나 '지역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은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7] 정부는 이를 지역자율계정이 아니라 지역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에 편성하였음.

설령「국가재정법」제13조의 여유재원 전입·전출 통합규정을 준용하더라도[8]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전출 후 다시 계정 간 전입·전출을 통해 지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회계처리 없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임.

---

7)「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 출자 · 보조 · 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8)「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 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 2.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신규): 시설농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고효율 에너지 신기술 보급확대 노력 필요

### 가. 개 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농가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78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 - | - | - | 7,824 | 7,824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추경안은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3월·4월·9월(3개월분) 기간 동안 등유, 중유, 난방용LPG 및 부생연료(1·2호)를 사용하는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7,824백만원
- 등유(6,663백만원) 55,568kℓ × 단가한도 120원/ℓ
- 중유(223백만원) 1,855kℓ × 단가한도 120원/ℓ
- 난방용LPG(495백만원) 3,842kℓ × 단가한도 129원/ℓ
- 부생1호(179백만원) 1,636kℓ × 단가한도 109원/ℓ
- 부생2호(264백만원) 2,321kℓ × 단가한도 114원/ℓ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1041-302)(유통소비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시설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미 개발된 고효율 기술의 농가 현장 보급을 병행함으로써 시설원예 분야의 근본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0]**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연혁('23년・'25년・'26년은 본예산에 미편성)을 보면, 올해와 같이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에는 예비비를 통해 총 151억 1,800만원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배정되어 95억 6,000만원이 시설농가 지원에 집행되었음.

2024년에는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기준가격[11] 대비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 되었으나 당시 유가 안정세로 인해 2024년 면세유 판매가격[12]이 기준가격을 하회하게 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불용조치 되었음.

이번 추경안은 2024년 사업과 달리 지원 유종을 확대하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한편, 야간 난방 수요가 높은 3・4・9월 구매분에 집중 지원하되, 예측 불가능한 하반기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0~12월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2024년·2026년 추경안 비교]

| 구분 | 2024년 사업 (본예산) | 2026년 사업 (추경) | 주요 차이점 |
|---|---|---|---|
| 지원기간 | 1월 ~ 3월 (3개월분) | 3, 4, 9월 (추정 물량 기준) | 지원시기 |
| 대상유종 | 등유, 중유 | 등유, 중유 + **난방 LPG, 부생1・2호** | 지원 유종 확대 |
| 보조율 | **50%** | **70%** | 지원 비율 상향(+20%p) |
| 예산규모 | 69억 7,200만원 | 78억 2,400만원 | |
| 기준가격 | '22.5월 평균가의 88.5% | 좌동 | 산정 방식 동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0)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2231-410, 에특회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168억 3,700만원임.
- 농촌진흥청: 농업신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신기술보급사업(보조)(2131-301,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388억 5,300만원임.

11) 기준가격: 2022년 5월 면세유 가격의 88.5%인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

12) 판매가격: 2024년 12월의 경우 등유 1,078원, 중유 998원

다만, 직접적인 유가 보조 외에도 농업분야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하여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26년 168억 3,700만원) 및 관련 R&D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은 개발된 에너지 절감 신기술[13]이 현장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사업('26년 388억 5,300만원)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농촌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농업 에너지 이용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가 단위의 에너지 소비 현황[14]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13)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발·보급하고 있는 기술에는 7개(부분 냉난방 시스템, 양액 냉각 시스템, 열회수형 환기장치,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온실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무창 육계사 냉·난방 부하 자가진단 기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 R&D 과제로는 '26년에 겨울철 온실 커튼 상하부 환경기반 커튼 최적 제어 기술 개발 등 12개 과제(28억 5,600만원)를 수행 중임.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농림업 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에 따르면 석유류 소비 비중은 1990년 89.3% → 2020년 37.1%로 감소 추세인 반면, 전력 소비 비중은 1990년 10.7%에서 → 2020년 62.8%로 증가되고 있음.

## 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지속 지원업체 중 성과 미흡업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 상향 검토 등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업(품질개선·관리, 물류 효율화, 보험,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2억원(10.0%) 증액된 792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 92,729 | 92,729 | 115,751 | 122,951 | 7,200 | 6.2 |
| 농식품우수기업육성 | 56,223 | 56,223 | 79,795 | 86,995 | 7,200 | 9.1 |
|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 36,002 | 36,002 | 72,004 | 79,204 | 7,200 | 10.0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추경안은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K-푸드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하려는 것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72,004 | ○ 민간경상보조(320-01)<br>- 720개소×**126백만원**×80% | 79,204 | ○ 민간경상보조(320-01)<br>- 720개소×**138백만원**×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2835-406)(식품산업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첫째, 최근 3년간 舊 수출물류비('23년) 및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수출바우처, '24~'25년) 사업의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업체가 193개에 달하고 이들의 예산 점유율이 2025년 기준 78.1%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수출 증가율이나 신규 시장 개척 성과가 미흡함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상기 각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24년부터 사업방식이 수출물류비 직접 보조 방식에서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 체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3년간 특정 193개 업체가 매년 220억~2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전체 집행액 대비 3년 연속 지원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23년 82.1%, 2024년 83.7%, 2025년 78.1%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농식품 기업의 영세성과 수출 동력 발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수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舊 수출물류비 및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3년 연속 지원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년 지원액 (舊 수출물류비) | 2024년 지원액 | 2025년 지원액 | 업체수 (자부담) |
|---|---|---|---|---|
| 집행액 | 31,800 | 27,141 | 31,908 | - |
| 3년 연속 지원기업 집행액 | 26,018 | 22,696 | 24,892 | 193개 (중소 10%, 중견 20%) |
| (비중) | (82.1%) | (83.7%) | (78.1%)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이러한 관행적인 장기 연속 지원은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정책목적을 반감시키고,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 반복적인 연속 지원을 지양하고 신규 업체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 실적 향상이나 신규 시장 개척 성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연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자부담 비율(중소 10%, 중견 20%)을 연차별로 점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수출바우처)은 23개 지원대상 메뉴 중 기업이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한도(최소 1,500만원~15억원)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추경증액분이 홍보 등 추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가급적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지원대상 메뉴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수출공동브랜드(27.7%)와 항만·공항 부대비용(22.0%) 등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물류 인프라 지원이 전체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음.

특히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비중이 2024년 0.1%에서 2025년 5.8%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보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지원대상 메뉴별 지원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2024년 | | | 2025년 | | |
|---|---|---|---|---|---|---|
| | 기업수주) | 금액 | 비중 | 기업수주) | 금액 | 비중 |
| 1. 수출공동브랜드 | 103 | 7,063 | 26.0% | 117 | 8,852 | 27.7% |
| 2. 항만, 공항 부대비용 | 152 | 5,499 | 20.3% | 159 | 7,024 | 22.0% |
| 3. 글로벌홍보 | 119 | 4,868 | 17.9% | 116 | 3,952 | 12.4% |
| 4.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 91 | 4,416 | 16.3% | 68 | 3,466 | 10.9% |
| 5.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 10 | 38 | 0.1% | 82 | 1,859 | 5.8% |
| 6.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 39 | 1,652 | 6.1% | 31 | 1,750 | 5.5% |
| 7. 물류 효율화 | 40 | 781 | 2.9% | 45 | 1,351 | 4.2% |
| 기타 16개 메뉴 | 336 | 2,823 | 10.4% | 314 | 3,654 | 11.5% |
| 합계 | 890 | 27,140 | 100.0% | 932 | 31,908 | 100.0% |

주) 기업별 복수 메뉴 이용실적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바우처 방식의 특성상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선택하는 글로벌 홍보(12.4%)나 판촉 지원(10.9%) 등 일반 마케팅 성격의 사업에 추경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추경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동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뿐만 아니라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수입 등록 지원 등 수출 공급망 안정 및 비관세 장벽 대응과 직결된 항목에 추경 예산이 우선 투입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세출증액>

##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 및 재정 보강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가. 개 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국토 관리와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06억 3,000만원(30.2%) 증액된 3,04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 - | 234,075 | 304,705 | 70,630 | 30.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추경안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69개[17)] 중 지난해 선정된 10개 군[18)] 외에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토대로 5개 군(19.6만명)을 공모로 추가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임.

2026년 3월 현재 10개 군의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음.

---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135-300)(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17)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고령·유소년·생산가능인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며, 2021년 10월 최초로 89개 시·군·구가 지정됨. 이 중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군 단위는 69개임.

18)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예산 | | 2026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34,075<br>백만원 | ○ 민간경상보조(320-01) : 337백만원<br>- 운영비 | 304,705<br>백만원 | 좌동 |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br>-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비:<br>·10개 군(32.5만명)×15만원×12개월<br>×40% = 233,738백만원 | | 좌동 |
| | - | | **- 추가 선정 :**<br>**·5개 군(19.6만명)×15만원×6개월**<br>**×40% = 70,630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확대(5개 군)를 위한 이번 추경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관건인바, 정량적 지표 등의 반영 확대로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상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5월 중 지역 선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개시할 예정인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19)]

이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현재 10개 군(郡)에서 인구 유입, 신규 가맹점 증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임.

다만 시범지역의 성과가 특정 산업 구조나 재정 여건, 사회적 수용성 등 해당 지역만의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의 전국적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9)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28) 과정 등에서 정량적인 지표(인구 감소율, 재정자립도 등)보다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음.

특히 향후 본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출 억제, 지역 경제 선순환, 고용 창출 및 공동체 유지 등 정책 성과를 다각도에서 진단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지표 체계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군 추진경과]

| 구 분 | 추진경과 |
|---|---|
| 인 구 | ('25.9월말) 318,841명 → ('26.2월말) 332,615명 (+13,744명, +4.3%) |
| 가맹점수 | ('26.1월말) 14,581개소 → ('26.3.17.) 15,714개소 (+1,133개소, +7.8%) |
| 상품권 사용률 | ('26.3.17.기준) 66.6% = 271억 8,540만원 / 407억 9,470만원 |
| - (지원내용)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br>- (지급절차) 신청(상시, 최초 1회 신청) → 자격 확인(매월 1일~20일경, 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매월 20일경, 읍·면위원회) → 지급(매월 말, 군)<br>- (신청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br>- (지급) 신청자 자격 확인을 거쳐 매월 말 지급. 단,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지급(3개월 분)<br>-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br>-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br>- (사용기한)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5개 군의 추가 선정과정에서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매칭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보강 등의 보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0]

[평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도시 5개구 제외) | 도농복합시 15개 | 농어촌 지역 69개군 |
|---|---|---|
| 15.8% | 16.9% | 15.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 농어촌 기본소득 매칭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순창군(기존 복지수당 조정)과 일부 단체(기존 복지수당 삭감 반대)간에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전라일보(2025.12.04.),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두고 군민단체·군청 갈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출증액>

## 5.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발행 후 단시간 내 소진되고 있는 농할상품권의 할인율 하향 조정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형유통경로(대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및 중소유통경로(중소마트 및 전통시장)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시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품목당 20% 할인지원(전통시장(현장/온라인) 2만원 한도, 30%)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500억원(46.3%) 증액된 1,580억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123,424 | 243,424 | 122,716 | 122,716 | 172,716 | 50,000 | 40.7 |
| 농축산물 할인지원 | 108,000 | 228,000 | 108,000 | 108,000 | 158,000 | 50,000 | 46.3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추경안은 환율·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500억원(500만명×1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추석행사에 100억원, 김장행사 및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에 300억원, 축산물 등 할인에 10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임.

2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00)(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현계획 | | 2026년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080억원 | ○ 농축산물 할인지원<br>- 1,060만명×1만원×국비 100%<br>+ 운영비 20억원 | 1,580억원 | ○ 농축산물 할인지원<br>- 1,560만명×1만원×국비 100%<br>+ 운영비 20억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첫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중 농할상품권은 할인율이 30%로, 해양수산부의 수산대전상품권(20%)이나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10% 내외) 등 타 유사 사업의 할인율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상품권 발행 직후 단시간 내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보다 많은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통시장을 통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농축산물 구매 전용 농할상품권을 30% 선할인[22]하여 판매하는 농할상품권 발행 지원('25년 108억원[23])과 국산 농축산물 구입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사후 환급 지원('25년 362억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유통경로별 집행내역 및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 | | 할인내용 | |
|---|---|---|---|---|
| | 2025년 집행액 (추경포함) | 2026년 현계획 | | |
| 유통경로 (마트·온라인몰·앱) | 175,909 | 66,000 | 오프라인 매장 | 대형·중소형 유통매장 할인품목 결제 시 할인 적용 |
| | | | 온라인몰·앱 | 할인쿠폰 내려받기 후 결제 시 할인 적용 |
| **전통시장 (오프라인)** | **47,013** | **40,000** | **농할상품권** | **제로페이 앱에서 농할상품권 30% 할인 판매 및 농할가맹점에서 사용** |
| | |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사후 환급 |
| 운영비 | 2,953 | 2,000 | | |
| 계 | 225,875 | 108,000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2) 액면가의 30% 선할인(10만원권 구매 시 7만원 결제),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최대 3만원 할인 혜택)

23) 농할상품권 총 판매규모는 360억원 = 소비자 실구매금(70%) 252억원 + 정부 지원금(30%) 108억원

이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농할상품권 발행 실적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에 따른 조기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최근 실시된 '2026년 설맞이 농할상품권' 발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총 발행액 중 일반층[24]에 해당하는 70억원(국비 지원액 21억원) 중 63.7%에 해당하는 44억 5,670만원이 발행 개시 단 3시간 만에 전액 소진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타 상품권[25] 대비 높은 할인율(30%)에 따른 과도한 수요집중이 조기 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바,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할인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약 현행 30%인 할인율을 20%로 10%p 하향 조정할 경우, 동일 예산 규모 내에서도 수혜 인원을 기존 대비 약 1.5배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중 설맞이 농할상품권(일반층)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행액 | 발행일시(A) | 소진일시(B) | 소진 시간(B-A) |
|---|---|---|---|---|
| 서울특별시 | 1,400 | 2.11(수) 16:00 | 2.11(수) 16:20 | **20분** |
| 경기도 | 1,400 | 2.11(수) 16:00 | 2.11(수) 18:01 | **2시간 1분** |
| 경상남도 | 746.7 | 2.10(화) 16:00 | 2.10(화) 16:10 | **10분** |
| 부산광역시 | 490 | 2.10(화) 14:00 | 2.10(화) 16:24 | **2시간 24분** |
| 인천광역시 | 396.7 | 2.11(수) 16:00 | 2.12(목) 21:20 | 1일 5시간 20분 |
| 경상북도 | 396.7 | 2.10(화) 16:00 | 2.12(목) 15:16 | 1일 23시간 16분 |
| 대구광역시 | 350 | 2.11(수) 14:00 | 2.11(수) 19:49 | 5시간 49분 |
| 충청남도 | 256.65 | 2.9(월) 16:00 | 미소진 | |
| 충청북도 | 256.65 | 2.9(월) 16:00 | | |
| 강원특별자치도 | 233.3 | 2.11(수) 14:00 | 2.11(수) 14:34 | **34분** |
| 대전광역시 | 233.3 | 2.9(월) 16:00 | 2.10(화) 10:03 | 18시간 3분 |
| 전라남도 | 233.3 | 2.9(월) 14:00 | 2.11(수) 02:58 | 1일 12시간 58분 |
| 전북특별자치도 | 210 | 2.9(월) 14:00 | 미소진 | |
| 광주광역시 | 163.3 | 2.10(화) 14:00 | 2.12(목) 10:25 | 1일 20시간 25분 |
| 울산광역시 | 140 | 2.10(화) 14:00 | 2.10(화) 16:24 | **2시간 24분** |
| 세종특별자치시 | 46.7 | 2.11(수) 14:00 | 2.11(수) 16:45 | **2시간 45분** |
| 제주특별자치도 | 46.7 | 2.9(월) 14:00 | 2.10(화) 09:31 | 19시간 31분 |
| 합계 | 7,000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4) '26년 농할상품권 총 발행액은 100억원으로, 고령층 30억, 일반층 70억으로 구분 발행되었음.

25) 할인율 비교: 농할상품권 30%, 수산대전상품권 20%, 고령사랑상품권 12%, 거제사랑상품권 10% 등

한편, 최근 3년간(2023~2025년) 농할상품권 결제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남[26] 지역의 결제 비중이 전체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별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맹점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27]

특히 2025년 기준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12.9%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체 결제액의 45.7%를 차지하여 가맹점당 결제 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체 가맹점의 43.7%를 점유하고 있으나 실제 결제액 비중은 12.2%에 불과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결제 실적과 가맹점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2025년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결제액 추이]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
| | 결제액 | | 가맹점수 (비중) | 결제액 | | 가맹점수 (비중) | 결제액 | | 가맹점수 (비중) |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서울특별시 | 13,039 | 59.6% | 1,647 (33.1%) | 28,937 | 48.7% | 2,469 (31.8%) | 12,959 | 38.0% | 2,728 (30.4%) |
| 경기도 | 640 | 2.9% | 506 (10.2%) | 2,341 | 3.9% | 945 (12.2%) | 1,410 | 4.1% | 1,164 (13.0%) |
| 경상남도 | 5,917 | 27.1% | 451 (9.1%) | 22,106 | 37.2% | 1,031 (13.3%) | 15,581 | 45.7% | 1,163 (12.9%) |
| 기타 (14개 시도) | 2,264 | 10.4% | 2,378 (47.7%) | 6,063 | 10.2% | 3,324 (42.8%) | 4,152 | 12.2% | 3,929 (43.7%) |
| 합계 | 21,860 | 100% | 4,982 (100%) | 59,447 | 100% | 7,769 (100%) | 34,102 | 100% | 8,984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6) 농할상품권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경남은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하고 있어 농할상품권의 구매·사용이 편리함.

27)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 배분 및 상품권 구분 발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 '23년: 4,982개 → '24년 7,769개 → '25년 8,984개

**둘째, 이번 500억원 규모의 추경 증액분 배정 시에는 유통 경로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경로(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전통시장몰)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근 유통경로별 예산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대형유통망(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비중은 2024년 48.5%, 2025년 47.3%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은 2024년 26.5%, 2025년 24.7%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예산 집행이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전통시장·중소유통경로 상인들과 고령층 소비자들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추경 증액분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경로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유통경로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2024년-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유통경로별 예산 집행액]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 지원시기 | 2024 | | 2025 | |
|---|---|---|---|---|---|
| | | 집행액 | 비중(%) | 집행액 | 비중(%) |
| 대형유통경로<br>(마트, 온라인몰) | 상시 | 80,543 | 48.5% | 106,800 | 47.3% |
| 중소유통경로<br>(지역농협, 중소마트 등) | 상시 | 29,747 | 17.9% | 60,236 | 26.7% |
| **전통시장(설·추석 등)<br>* 몰 포함** | **설·추석 등** | **43,958** | **26.5%** | **55,885** | **24.7%** |
| 운영비 | | 2,227 | 1.3% | 2,953 | 1.3% |
| 총계 | | 166,103 | 100.0% | 225,875 |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셋째, 매년 추경 및 예비비를 통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의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물가 안정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바,[28]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하여 할인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임.**

정부 통계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한 할인가격 적용에 따라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유통업체가 행사 직전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경우 실질적인 물가 안정

28)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할인행사 실시 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할인 예정 품목의 전주 가격 및 할인 예정 가격 정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가격을 전주 대비 인상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가격 인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소비자원(참가격[29]) 등 전문기관의 가격 데이터와 연계하여 유통업체의 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격 부당 인상 및 부당 편취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참여업체 현황]

| 유통업체 (총 60개, 2026년 3월 기준) | | 전년대비 증감 |
|---|---|---|
| 대형유통 (9개업체) | 대형마트(6개)-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 △1 |
| | 온라인몰(3개)-네이버, 카카오, 현대홈쇼핑 등 | △2 |
| 중소형 유통 (51개업체) | 지역농협(1개)-전국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 | - |
| | 중소형마트(21개), 중소형마트 협·단체(1개) | △2 |
| | 친환경매장(4개) | △2 |
| | 로컬푸드직매장(10개) | △6 |
| | 온라인몰(민간7개,공공지자체3개)-(주)오아시스, ㈜컬리, 우체국쇼핑 등 | △1 |
| | 전통시장-전통시장온라인몰(4개) / 제로페이 | △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9)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임.

## 【농지관리기금】

### <지출증액>

## 6.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조사결과의 집행력 제고와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농지대장 현행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보조인력 채용 경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587억 7,100만원(421.5%) 증액된 72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30]

[2026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농지이용관리지원 | 13,540 | 13,540 | 13,944 | 13,944 | 72,715 | 58,771 | 421.5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추경안은 930만 필지에 대한 농지특별조사를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인력 채용,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스템 기능개선, 드론 활용 비용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30) 농지관리기금-농지이용관리지원(4130-412)(농업정책관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6년 현계획 | 2026년 변경안 | |
|---|---|---|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3,944백만원<br>- 조사원 채용 (**13,344백만원**)<br>· 이용실태조사 :<br>**190만 필지×0.5시간/필지×10,320원**<br>×1.1147(보험료)×70% = 7,650백만원<br>· 농지대장현행화조사 :<br>300만 필지×0.33시간/필지×10,320원<br>×1.1147(보험료)×50% = 5,694백만원<br>- 운영비 지원(**600백만원**) | 59,842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59,842백만원<br>- 조사원 채용 등 (**58,037백만원**)<br>· 특별조사 :<br>**930만 필지×0.55시간/필지×12,235원**<br>×1.1147(보험료)×70% = 47,898백만원<br>· 농지대장현행화조사 :<br>300만 필지×0.33시간/필지×10,320원<br>×1.1147(보험료)×50% = 5,694백만원<br>**· 출장여비, 피복비, 태블릿 등 4,445백만원**<br>- 운영비 지원(**1,805백만원**) |
| - | 6,547 | 〈한국농어촌공사〉<br>○ 민간경상보조(320-01) : 6,547백만원<br>- 드론 구매, 용역 및 영상 저장·편집 장비 등 (6,255백만원)<br>- 농지 조사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발 및 라이센스 구입 등 (192백만원)<br>- 농지 조사를 위한 교육·홍보비 (100백만원) |
| | 6,32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br>○ 일용임금(210-01) : 5,018백만원<br>- 392명×256만원×5개월×100% = 5,018백만원<br>○ 고용부담금(320-09) : 575백만원<br>- 일용임금×11.47%×100% = 575백만원<br>○ 피복비(210-03) : 59백만원<br>- 392명×15만원×100% = 59백만원<br>○ 국내여비(220-01) : 333백만원<br>- 392명×10,625원×16일×5개월×100% = 333백만원<br>○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41백만원 |
| 계: 13,944 | 계: 72,715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검토의견

**농지이용지원사업의 기존 조사방식은 실경작 여부, 임대차 관계, 부재지주 확인 등 핵심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조사 집행력 제고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첨단기술 및 농업경영체 DB 연계 등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이 사업으로 추진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대장 현행화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정보를 파악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조사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 위성·항공사진 위주의 비대면 조사 방식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2022년-2025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집행 및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조사기간</th><th>조사실적</th></tr>
<tr><td>2022</td><td>13,535</td><td>13,535</td><td>’22.9~<br>’22.12</td><td rowspan="4"><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22</th><th>’23</th><th>’24</th><th>’25</th></tr>
<tr><td rowspan="2">조사 대상</td><td colspan="2">건수(천건)</td><td>1,905</td><td>1,874</td><td rowspan="7">조사 결과 분석중</td><td rowspan="7">청문 절차 진행중</td></tr>
<tr><td colspan="2">면적(천ha)</td><td>298</td><td>233</td></tr>
<tr><td rowspan="5">농지 처분 의무 통지</td><td colspan="2">건수(건)</td><td>12,715</td><td>5,855</td></tr>
<tr><td rowspan="4">사유별 면적 (ha)</td><td>합 계</td><td>1,394</td><td>576</td></tr>
<tr><td>불법임대 등</td><td>240</td><td>32</td></tr>
<tr><td>무단 휴경</td><td>1,143</td><td>480</td></tr>
<tr><td>기타</td><td>11</td><td>65</td></tr>
<tr><td>이행 강제금</td><td colspan="2">해당연도 부과실적 (백만원)</td><td>485</td><td>502</td></tr>
</table></td></tr>
<tr><td>2023</td><td>17,238</td><td>17,238</td><td>’23.8~<br>’23.11</td></tr>
<tr><td>2024</td><td>15,091</td><td>15,091</td><td>’24.7~<br>’24.11</td></tr>
<tr><td>2025</td><td>13,540</td><td>13,540</td><td>’25.6~<br>’25.11</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상속·이농 등 소유 예외조항에 따른 부재지주 증가로 농지 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 실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임대차 관계 및 부재지주 현황 등 핵심 정보는 여전히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전체 농지 대비 조사 비율이 낮다는 한계도 존재하였음.

이에 따라 이번 전국 약 93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수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공익직불금, 농업보조, 조세감면 등과 연계된 부정 가능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31]

다만 농업·농촌 환경 및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단기 고용 인력 위주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될 경우, 서면 조사에 의존하거나 현장 확인이 미흡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조사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32]을 명확히 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33]

아울러 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병행하고,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DB, 직불금 수급 이력 등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1) 「농지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우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2)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조사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되, 일부 물량은 현장 노하우를 지닌 소속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고, 농어촌공사는 조사 시스템 구축, 드론,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조사 지원, 상시조사를 통한 불법 의심 필지 제공 등으로 분담하겠다는 의견임.

33) 조사 과정에서 사유지 출입에 따른 갈등 발생 가능성과 조사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표준화된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과 조사원 보호 대책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축산발전기금】

### <지출증액>

## 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기존 대출액의 상환 부담 집중 및 연체율 상승 추세를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가. 개 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축산농가가 외상구매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650억원(26.0%) 증액된 3,150억원이 편성되었음.[34]

[2026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300,000 | 300,000 | 250,000 | 250,000 | 315,000 | 65,000 | 26.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추경안은 국제유가 및 해상운임 상승 등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예산을 650억원 증액하려는 것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현계획 | | 2026년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500억원 | ○ 기타 민간융자금(450-04)<br>- **5,000농가** × 50백만원 × 융자 100% | 3,150억원 | ○ 기타 민간융자금(450-04)<br>- **6,300농가** × 50백만원 × 융자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3733-329)(축산정책관실)

## 나. 검토의견

**사료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 지원하려는 방안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나, 기존 대출분('22년~'23년)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다수 축산농가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신규 대출 집행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그간 축산농가의 경영 악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업을 통한 융자 대출 및 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된 사료구매대출자금의 상환기일이 일제히 도래할 예정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추산하여 제출한 축산농가[35]의 상환 예정액은 2026년에만 1.61조원으로, 이는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유예 되었던 2022년 융자와 2023년 융자의 상환 시점이 2026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융자조건 및 상환시기]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고 |
|---|---|---|---|---|---|---|---|
| 2022년 융자 | 거치 | 거치 | 거치 | 유예 | 1/2상환 | 1/2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2023년 융자 | | 거치 | 거치 | 유예 | 상환 | | 2년거치 일시상환 |
| 2024년 융자 | | | 거치 | 거치 | 상환 | | 2년거치 일시상환 |
| 2025년 융자 | | | | 거치 | 거치 | 상환 | 2년거치 일시상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한 정부대출 및 농협 대출분의 상환 유예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누적대출잔액 규모가 '22년말 기준 1.68조원에서 '25년말 기준 2.97조원[36]으로 증가하였음.

이처럼 원금 상환 부담이 2026년에 집중됨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융자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실제 집행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수 축산농가가

3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2025년까지 총 49,624개 축산농가를 지원함. 2025년말 기준 담보여력에 따른 최대 대출가능액은 9억원 수준임.

36) '25년말 기준 누적대출잔액 2.97조원 = 농가사료직거래지원사업(축산발전기금, 융자) 7,489억원 + 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 중 사료구매자금 1조 1,839억원(농협자금으로 정부는 이차만 보전) +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397억원(농협자금, 정부 이차보전)

기존 대출 미상환으로 담보 여력이 저하되어 있어, 기존 융자금의 상환 없이는 신규 대출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임.

실제로 최근 3년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농가의 담보 부족 등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로 인해 융자예산 집행률이 감소 추세('22년 90.7% → '25년 74.5%)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등 사료관련 지원사업 대출액 및 상환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 | | | | | | 당초 | 추경 |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 | 예산액(A) | 355,000 | 355,000 | 300,000 | 300,000 | 250,000 | 315,000 |
| | 대출액(B) | 321,945 | 310,459 | 259,826 | 223,496 | - | |
| | **집행률(B/A)** | **90.7** | **87.5** | **86.6** | **74.5** | | |
| | 상환액 | 467,012 | 236,175 | 67,723 | 91,135 | | |
| | **누적 대출잔액** | **573,464** | **647,748** | **839,851** | **748,939** | | |
| | 연체율 | 0.13 | 0.19 | 0.13 | 0.27 | | |
| 사료구매자금[1] (농특, 농업자금 이차보전) | 이차보전 예산액 | - | 14,384 | 20,834 | 31,335 | 28,782 | 미편성 |
| | 대출액 | - | 631,760 | 651,544 | 563,921 | - | |
| | 상환액[2] | - | 5,154 | 29,046 | 629,140 | | |
| | **누적 대출잔액[3]** | **-** | **625,909** | **1,249,104** | **1,183,885** | | |
| | 이차보전 집행[4] | - | 10,333 | 27,139 | 28,873 | | |
| | 연체율 | - | 0.00 | 0.01 | 0.09 | | |
| 특별사료 구매자금[1] (농특, 농업자금 이차보전) | 이차보전 예산액 | 10,878 | 34,694 | 31,730 | 34,163 | 24,901 | 미편성 |
| | 대출액 | 1,122,549 | - | - | - | - | |
| | 상환액[2] | 8,289 | 9,367 | 33,104 | 33,898 | | |
| | **누적 대출잔액[3]** | **1,114,260** | **1,105,590** | **1,071,789** | **1,039,678** | | |
| | 이차보전 집행[4] | 7,979 | 41,100 | 39,048 | 33,898 | | |
| | 연체율 | 0.00 | 0.04 | 0.06 | 0.14 | | |

주 1) 사료구매자금('23년~): 연리 1.8%, 2년 일시상환,
특별사료구매자금('22년 추경): 연리 1.0%, 3년거치 2년균분상환
2) 상환액은 (전년도 대출잔액 + 대출액 - 해당연도말 대출잔액)으로 산출
3) 누적 대출잔액은 12월말 기준
4)) 이차보전 집행액은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25년은 가정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에 집중된 상환 부담과 농가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최근의 연체율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의 담보 한계에 부딪혀 불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집행 관리 및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조 1,51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원(2.7%) 증가함.

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하고, 기금은 7,3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원(4.3%) 증가함.[1)]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6,560 | 6,560 | 4,215 | 4,215 | - | - |
| 기 금 | 6,890 | 6,890 | 7,004 | 7,304 | 300 | 4.3 |
| 합 계 | 13,449 | 13,449 | 11,219 | 11,519 | 300 | 2.7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7조 4,4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19억원(1.2%) 증가함.

예산은 6조 2,71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19억원(1.0%) 증가하고, 기금은 1조 1,77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원(2.6%) 증가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59,859 | 61,297 | 62,091 | 62,710 | 619 | 1.0 |
| 기 금 | 7,956 | 7,956 | 11,475 | 11,775 | 300 | 2.6 |
| 합 계 | 67,816 | 69,254 | 73,566 | 74,485 | 919 | 1.2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4,231 | 4,231 | 892 | 892 | - |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322 | 322 | 531 | 531 | -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918 | 1,918 | 2,732 | 2,732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38 | 38 | 27 | 27 |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50 | 50 | 33 | 33 | | |
| 합 계 | 6,560 | 6,560 | 4,215 | 4,215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조 2,71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19억원(1.0%) 증가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18,424 | 18,505 | 20,496 | 20,496 | - |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16,710 | 17,641 | 15,374 | 15,858 | 484 | 3.1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715 | 18,141 | 17,498 | 17,498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618 | 618 | 577 | 683 | 106 | 18.3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6,392 | 6,392 | 8,146 | 8,175 | 29 | 0.4 |
| 합 계 | 59,859 | 61,297 | 62,091 | 62,710 | 619 | 1.0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조 1,90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300억원(2.6%) 증가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수산발전기금 | 8,204 | 8,204 | 11,600 | 11,600 | 11,900 | 300 | 2.6 |
| 합 계 | 8,204 | 8,204 | 11,600 | 11,600 | 11,900 | 300 | 2.6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919억 300만원임.[2)]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46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추경안(계획안)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 1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46,819 |
| 합 계 | | 46,819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6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항로 운영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에 21억원,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에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또한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에서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 | | | |
| 1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54,563 | 54,563 | 79,098 | 80,687 | 1,589 | 2.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2 |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 16,873 | 16,873 | 18,661 | 29,212 | 10,551 | 56.5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3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24,390 | 24,390 | 25,668 | 28,612 | 2,944 | 11.5 |
| 수산발전기금 | | | | | | | |
| 4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101,748 | 151,748 | 101,748 | 131,748 | 30,000 | 29.5 |
| 합계 | | 197,574 | 247,574 | 225,175 | 270,259 | 45,084 | 20.0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4)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5)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면세유와 일반유 간 실질적인 가격 격차가 확대되어 부정수급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류세보조금은 유류세 인하율 확대(2026.3.27.)에 따른 보조단가 하락으로 추경안 대비 예산 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한 예산 규모 조정이 필요하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유가 급등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급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유통경로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비 증가를 관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세출증액>

## 1. 수출바우처 사업: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산식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8,900만원(9.5%) 증액된 18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6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54,563 | 54,563 | 79,098 | 80,687 | 1,589 | 2.0 |
| 경쟁력강화 | 18,674 | 18,674 | 29,075 | 30,664 | 1,589 | 5.5 |
| 수출바우처 | 11,625 | 11,625 | 16,764 | 18,353 | 1,589 | 9.5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수산식품기업을 내수·초보·성장·고도화 4단계로 구분하고, 기업이 지원대상 메뉴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정부는 사업비의 일부(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를 지원하는 방식임.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수산정책실)

[수출바우처 사업내용]

| 단계 | 지원업체 수 | 지원자격 | 지원한도 | 지원 대상 메뉴 | 비고 |
|---|---|---|---|---|---|
| 내수 | 9개 내외 | 전년도 수출실적 1만불 미만 | 3,000 만원 | 해외시장조사, 무역애로 해소, 유통업체 판촉 등 | - 특정 1개 메뉴에서 전체 예산의 50%초과 집행 불가<br>-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br>- 고도화바우처의 경우 최대 5년간 연속지원 |
| 초보 | 60개 내외 |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이상 50만불 미만 | 5,000 만원 | | |
| 성장 | 58개 내외 |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1억원 | | |
| 고도화 | 31개 내외 | 최근 2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2억 2,000만원 | | |

자료: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개요(2026)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안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중동 노선 취소에 따른 제3국가 항만 계류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수출바우처의 지원한도를 10%씩 증액하고, 바우처 메뉴 중 무역애로해소(수출 운임비 지원) 항목의 한도도 상향하려는 것임.

[단계별 지원한도 및 무역애로해소 항목 지원한도 변경(안)]

(단위: 백만원)

| 단계 | 단계별 지원한도 | | 무역애로해소 항목 지원한도 | |
|---|---|---|---|---|
| | 기존 | 변경(안) | 기존 | 변경(안) |
| 내수 | 30 | 33(+3) | 6(지원한도의 20%) | 10(+4) |
| 초보 | 50 | 55(+5) | 7.5(지원한도의 15%) | 14(+6.5) |
| 성장 | 100 | 110(+10) | 10(지원한도의 10%) | 22(+12) |
| 고도화 | 220 | 242(+22) | 22(지원한도의 10%) | 48(+26) |

자료: 해양수산부

## 나. 검토의견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 구조로 인해 홍보·판촉 등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추경 증액 재원이 물류비 절감에 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추경안 내용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바우처 메뉴 중 수출 해상·항공 운임을 지원하는 무역애로 해소 항목의 한도를 증액시키고, 내수·초보·성장·고도화 단계별 지원 한도도 각 10%씩 상향하는 것임.

그런데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바우처 메뉴 및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인바, 지원 메뉴는 물류 관련 항목에 한정되지 않고,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조사, 국제인증, 통·번역, 포장디자인,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미디어 홍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음.

2024~2025년 메뉴별 지원액 비중을 보면 무역애로 해소 항목은 5% 가량인 반면 포장디자인 개발, 유통업체 판촉, 홍보물 제작은 각각 1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기업들이 물류비 지원보다는 제품개발, 홍보, 판촉 등 비물류 분야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구조에서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해당 재원이 물류비 부담 완화에 집중되어 사용되기보다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물류 사업 중심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편성 취지에 부합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통관·운송 등 물류비성 경비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동지역 수출업체들은 물류비뿐 아니라 전쟁위험 할증료, 선적 지연으로 인한 보관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부 사례를 참고하여 중동전쟁 피해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수출바우처 메뉴 및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 구분 | 사업메뉴 | 2024 | | | 2025 | | |
|---|---|---|---|---|---|---|---|
| | | 지원업체 수 | 지원액 | 비중 | 지원업체 수 | 지원액 | 비중 |
| 수출 준비 | 해외시장조사 | 28 | 205 | 3.4 | 58 | 368 | 4.1 |
| | 수출실무 교육 | 23 | 11 | 0.2 | 48 | 24 | 0.3 |
| | 포장디자인 개발 | 51 | 816 | 13.3 | 78 | 1,080 | 12.0 |
| | 수출관련 검사비 | 28 | 219 | 3.6 | 52 | 348 | 3.9 |
| | 지적재산권 출원 | 14 | 100 | 1.6 | 14 | 107 | 1.2 |
| | 국제인증 취득 | 22 | 250 | 4.1 | 45 | 529 | 5.9 |
| | 통번역 및 서류대행 | 6 | 28 | 0.5 | 12 | 60 | 0.7 |
| | 샘플통관운송비 | 12 | 27 | 0.4 | 10 | 53 | 0.6 |
| | **무역애로 해소 (수출 해상·항공 운임비 지원)** | **28** | **321** | **5.2** | **62** | **467** | **5.2** |
| | 수출 포장재 제작 | 47 | 431 | 7.1 | 71 | 622 | 6.9 |
| 해외 진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 18 | 339 | 5.6 | 28 | 512 | 5.7 |
| | 유통업체 판촉 | 23 | 685 | 11.2 | 36 | 949 | 10.6 |
| | 온라인 판촉 | 8 | 186 | 3.0 | 19 | 400 | 4.5 |
| | 해외 마켓테스트 | 17 | 507 | 8.3 | 26 | 699 | 7.8 |
| |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 23 | 451 | 7.4 | 45 | 659 | 7.3 |
| 경쟁력 강화 | 유망상품화 | 43 | 531 | 8.7 | 32 | 532 | 5.9 |
| | 홍보물 제작 | 45 | 640 | 10.5 | 80 | 1,112 | 12.4 |
| | 미디어 홍보 | 18 | 327 | 5.3 | 28 | 407 | 4.5 |
| | 자율공모사업 | 2 | 40 | 0.7 | 3 | 40 | 0.4 |
| 합계 | | 456 | 6,114 | 100.0 | 747 | 8,968 | 100.0 |

주 1) 1개 업체가 여러 항목 선택 가능
2) 자율공모사업은 고도화 단계 전용 항목
자료: 해양수산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세출증액>

## 2.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신규): 면세경유 지원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중동상황 위기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출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468억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 | - | - | 46,819 | 46,819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경유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며,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임.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며, 2026년 4~9월에 사용한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구체적인 지급단가는 면세경유 공급가격[5)]에서 기준가격인 1,070원/ℓ을 차감한 후 보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3440-373)(수산정책실)

조율 70%를 곱하여 산정하며, 리터당 115.3원을 초과하지 못함.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
|---|
|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면세경유 공급가격(원/ℓ) - 기준가격(1,070원/ℓ)] × 70%<br>※ 지급단가 상한액: 115.3원/ℓ |

자료: 해양수산부

총 지급규모는 지급단가에 어업인이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경유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급량은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급절차는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별 지원금액을 산출한 후 단위수협을 통해 지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월별 보조금 확정 및 교부신청을 거쳐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최종적으로 수협은행을 통해 어업인의 등록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추경편성액: 115.3원/ℓ(지급단가 상한액) × 406,065kℓ(2025. 4.~9. 면세유공급량)<br>= 468억 1,900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이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에는 제2회 추경으로, 2024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으며 당시의 기준단가는 1,070원/ℓ, 보조율은 50%였음.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안의 기준단가는 예전의 사업과 동일하게 1,070원/ℓ으로 책정하였고, 보조율은 어업인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70%로 상향하였다는 설명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구분 | 2022년 제2회 추경 | 2024년 본예산 | 2026년 추경안 |
|---|---|---|---|
| 기준단가 | 1,100원/ℓ | 1,070원/ℓ | 1,070원/ℓ |
| 보조율 | 50% | 50% | 70% |
| 지급기간 | 2022. 6.~10.(5개월) | 2024. 1.~6.(6개월) | 2026. 4~9.(6개월) |

주) 2022년 제2회 추경 사업의 기준단가는 당초 1,100원/ℓ이었으나 2022. 7.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1,070원/ℓ으로 인하되었고, 지급기간은 당초 6~10월(5개월)이었으나 6~12월(7개월)로 연장

자료: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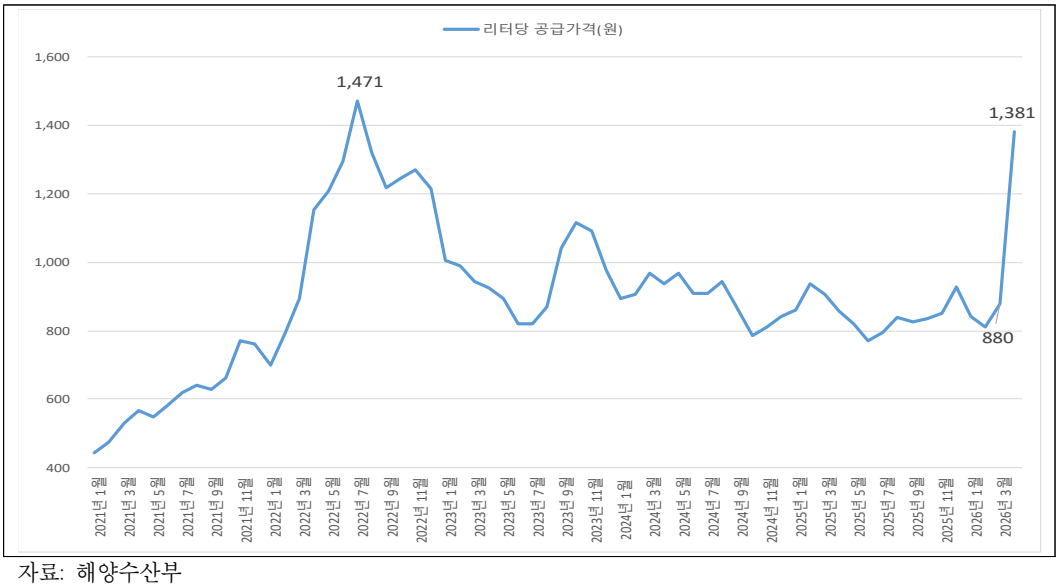
5) 어업용 면세경유는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한 제품을 수협중앙회가 구매하여 전국 회원조합 급유소를 통해 어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면세유가격을 결정하고, 수협중앙회는 정유사 구매가격에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함.

## 나. 검토의견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으로 인해 면세유와 일반유 간 실질적인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 부정수급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면세경유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2022년 7월 1,471원/ℓ까지 상승하였다가 2024년부터는 800~900원/ℓ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으로 면세경유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바,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2026년 4월 가격이 1,381원/ℓ으로 전월 가격 880원/ℓ에 비해 63.7% 상승하였음.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어가경영비에서 어선 운항 등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은 예측하지 못한 유가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면세유는 일반유 대비 가격이 낮아 사용량 부풀리기, 용도외 사용, 재판매 등과 같은 부정수급·사용·유통 등의 유인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될 경우 면세유와 일반유의 실질적인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부정수급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일반경유(자동차용)와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차]

(단위: 원/ℓ)

| 구분 | 2025년 | | | | | | | | | | 2026년 |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 자동차 경유(A) | 1,555 | 1,513 | 1,502 | 1,505 | 1,531 | 1,535 | 1,530 | 1,536 | 1,619 | 1,650 | 1,600 | 1,587 | 1,829 |
| 어업용 면세경유(B) | 908 | 856 | 820 | 771 | 797 | 840 | 827 | 837 | 851 | 927 | 843 | 810 | 880 |
| 가격차 (A-B) | 647 | 657 | 682 | 734 | 734 | 695 | 703 | 699 | 768 | 723 | 757 | 777 | 947 |

자료: 해양수산부, 오피넷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간 해양수산부는 면세유에 착색제 혼합, 면세유 구입 전용카드 도입, 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 등은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에도 적발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6)]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에 대해서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26조에 따라 매년 표본현황조사를 실시하는데,[7)] 최근 해양수산부는 표본현황조사를 담당하는 어업관리단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 대상 비율을 기존 10~20%에서 3~5%로 축소하였는바,[8)] 이로 인해 현장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등의 방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표본현황조사 축소에 따른 관리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정책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6) 포항해양경찰서 보도자료, 「포항해양경찰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사용한 일당 검거」, 2025.2.20.

7)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6조(표본현황조사) ① 동·서·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어업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과 시설의 3~5%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같은 표본에 대하여 관내 조합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8) 훈령 제773호, 2024.10.10. 일부개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출증액>

## 3.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반영한 유류세보조금 재산정 필요 등

### 가. 개 요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연안화물선에 대해 경유 유류세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5억 5,100만원(56.5%) 증액된 29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 16,873 | 16,873 | 18,661 | 29,212 | 10,551 | 56.5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한 유류세의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시점의 경유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의 유류세액(183.21원/ℓ)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임.

유가연동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의 가격 일부를 지원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임.

2026년도 본예산에는 유류세보조금으로 186억 6,100만원만 편성되었으나, 추경안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62억 2,400만원이 신

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6159-300)(해운물류국)

규 편성되었고,[10] 유류세보조금은 기존 예산액 대비 43억 2,700만원 증액된 22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86억 6,100만원 | ○ 유류세보조금 186억 6,100만원<br>- 보조단가 266.58원/ℓ×경유사용량 70,000kℓ) | 292억 1,200만원 | ○ 유류세보조금 229억 8,800만원(증액)<br>- 기존 편성 186억 6,100만원<br>- 부족 예상 43억 2,700만원<br>(292.665원/ℓ×78,547kℓ)<br>- (266.58원/ℓ×70,000kℓ) |
| | ○ 유가연동보조금<br>- 미편성(예측 불가) | | ○ 유가연동보조금 62억 2,400만원(신규)<br>- 135.83원/ℓ×6,546kℓ(월 평균 사용량)×7개월 |

자료: 해양수산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유류세보조금은 유류세 인하율 확대(2026.3.27.)에 따른 보조단가 하락으로 추경안 대비 예산 소요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유류세보조금의 보조단가는 현행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의 유류세액(183.21원)를 차감하여 산정되며, 2026년 3월 27일 기준 보조단가는 213원/ℓ임.[11]

10)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2022년 2분기~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 지급되지 않다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기준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62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11) 경유 유류세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281원/ℓ), 교육세(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5%), 주행세(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26%)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보조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단가 산출내역(2026. 3. 27. 기준)]

(단위: 원/ℓ)

| 구분 | 금액 |
|---|---|
| 교통・에너지・환경세(a) | 281 |
| 교육세(a×15%) | 42.15 |
| 자동차세(a×26%) | 73.06 |
| 유류세 합계(A) | 396.21 |
| 2001년 유류세(B) | 183.21 |
| 유류세 보조단가(C=A-B) | 213 |

자료: 해양수산부

보조단가는 유류세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유류세 인하율이 15%→10%→25%로 조정됨에 따라 보조단가도 266.58원/ℓ→292.665원/ℓ→213원/ℓ으로 변동하였음. 즉,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될 경우 과세액이 감소하면서 보조단가도 함께 하락하는 구조임.

[유류세 인하율 변동에 따른 유류세 보조단가 변동]

(단위: %, 원/ℓ)

| 구분 | 2025.5.1.~2025.10.31. | 2025.11.1.~2026.3.26. | 2026.3.27.~2026.5.31. |
|---|---|---|---|
| 유류세 인하율 | 15 | 10 | 25 |
| 유류세(A) | 449.79 | 475.875 | 396.21 |
| 2001년 유류세(B) | 183.21 | 183.21 | 183.21 |
| 유류세 보조단가(C=A-B) | 266.58 | 292.665 | 213 |

자료: 해양수산부

이번 추경안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지 못한 채 인하율 10%를 기준으로 본예산(인하율 15% 기준)과의 보조단가 차이(266.58원/ℓ→292.665원/ℓ) 및 예상 사용량 증가(70,000kℓ→78,553kℓ)를 반영하여, 43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유류세보조금 추경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원/ℓ, kℓ, 백만원)

| 구분 | 2026년도 소요예상액(A) | 2026년 본예산(B) | 추경안(A-B) |
|---|---|---|---|
| 보조단가 | 292.665 | 266.58 | 26.085 |
| 경유 사용량 | 78,547 | 70,000 | 8,547 |
| 소요액 | 22,988 | 18,661 | **4,327**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2026년 3월 27일 유류세 인하율이 25%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단가가 213원/ℓ으로 추경안 편성 단가인 292.665원/ℓ에 비해 79.665원/ℓ 하락하였는바, 이번 추경안에는 이러한 변동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임.

변경된 보조단가를 적용하여 2026년도 유류세보조금 소요를 재산정할 경우 총 소요액은 219억 4,500만원으로 추산됨. 여기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차감하면 추가소요액은 32억 8,400만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추경안 대비 10억 4,300만원 감소한 수준임.

[유류세율 인하 확대(2026.3.27.)를 반영한 유류세보조금 추가 소요액]

(단위: 원/ℓ, kℓ, 백만원)

| 구분 | 유류세율 추가 인하를 반영한 2026년도 소요예상액(A) | | | | 2026년 본예산(B) | 추가소요액 (A-B) |
|---|---|---|---|---|---|---|
| | 1~3월 | 4~5월 | 6~12월 | 합계 | | |
| 보조단가 | 292.665 | 213 | 292.665 | - | 266.58 | |
| 경유 사용량 | 19,637 | 13,091 | 45,819 | - | 70,000 | |
| 소요액 | 5,747 | 2,788 | 13,410 | 21,945 | 18,661 | **3,284** |

주 1) 유류세율 인하 확대 기간은 2026.3.27.~2026.5.31.이나 계산편의상 2026.4.1.~2026.5.31.로 적용
2) 경유 사용량은 2026년 예상 사용량 78,547kℓ를 월할 계산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따른 보조단가 변동을 반영하여 유류세보조금 예산 규모를 재조정함으로써 실제 제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유가 급등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분기별 지급 구조로 인한 시차를 고려하여 지급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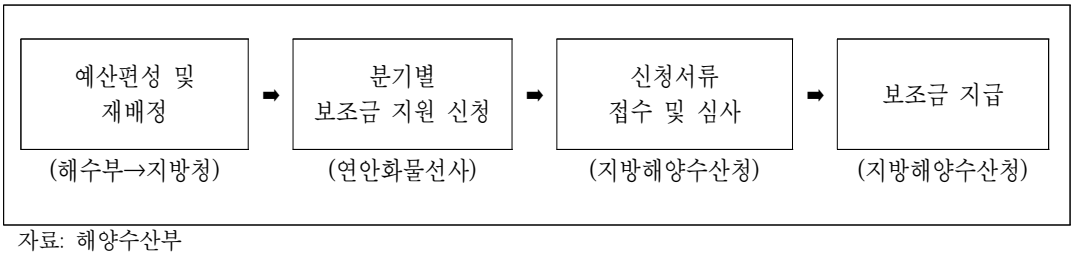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선박용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이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특히 내항운송은 유류, 시멘트, 철강 등 산업에 필수적인 대량 화물의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국가 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만큼,[12]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하고, 사업자가 분기별로 유류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방해양수산청이 이를 접수·심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12) 한국해운조합의 「연안해운 통계연보(2025)」에 따르면, 내항운송은 2022년 기준 국내 화물량 1,931,446천톤 중 6.3%에 해당하는 122,032천톤을 수송하고 있으며 모래, 시멘트, 철강, 가스, 석유 등과 같은 대용량 산물의 운송을 주로 담당함.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집행 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집행 구조를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예산 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유가 변동 상황과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와 같은 분기별 지급 방식은 유가 급등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실제로 부담을 체감하는 시점과 보조금 지급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효과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유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거나 선지급·정산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산발전기금】

### <지출증액>

## 4.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전통시장 지원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비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의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300억원(30.0%) 증액된 1,300억원이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101,748 | 151,748 | 101,748 | 131,748 | 30,000 | 29.5 |
|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 100,000 | 150,000 | 100,000 | 130,000 | 30,000 | 30.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할인행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대한민국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임.

13) 수산발전기금-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11)(수산정책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온·오프라인 유통사 | · 대상 업체: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오프라인 판매처(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생활협동조합 등), 온라인 쇼핑몰<br>· 할인방식: 수산물 구매시 20% 할인(1인 최대 1만원 한도). 명절 물가 관리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한도(1→2만원) 및 할인율 상향(20→30%) |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대상 전통시장: 지방자치단체 추천 및 상인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전통시장<br>· 할인방식: 전통시장에서 행사기간 내에 구매한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구매금액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시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시 2만원 환급) |
| 수산대전 전용상품권 | · 할인방식: 국산수산물 구입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20% 先할인 판매<br>· 사용처: 수산대전상품권 가맹점<br>· 구매한도: 월 10만원(보유한도 60만원)<br>· 상품권 사용기한: 구매연도의 12월 15일까지 |
| 지자체 상생할인 |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직거래 장터,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수산물 할인 지원(국비 50:지방비 50) |

자료: 해양수산부

변경안은 고등어·오징어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감소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285억원과 홍보·운영비 15억원 등 총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현계획 | | 2026년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000억원 | ○ **온·오프라인 유통사 500억원**<br>○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20억원**<br>○ 수산대전 전용상품권 800억원<br>○ 지방자치단체 10억원<br>○ **홍보·운영비 등 90억원** | 1,300억원 | ○ **온·오프라인 유통사 700억원**<br>○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405억원**<br>○ 수산대전 전용상품권 800억원<br>○ 지방자치단체 10억원<br>○ **홍보·운영비 등 105억원** |

자료: 해양수산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유통경로 간 균형을 강화하고, 지역·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3~2025년 유통경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온·오프라인 유통사의 비중이 2023년 53.6%에서 2025년 64.5%로 높아진 반면, 전통시장과 연계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비중은 같은 기간 46.4%에서 35.5%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번 변경안에서도 온·오프라인 유통사에 대한 지원은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40% 증액된 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320억원에서 405억원으로 26.5% 증가에 그쳐 유통경로별 지원 확대 폭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 유통경로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3 | | 2024 | | 2025 | |
|---|---|---|---|---|---|---|---|
| | | 집행액 | 비중 | 집행액 | 비중 | 집행액 | 비중 |
| 온·오프라인 유통사 | 대형마트 | 33,246 | 24.8 | 37,549 | 35.3 | 40,064 | 31.1 |
| | 중소유통 | 16,143 | 12.1 | 13,605 | 12.8 | 21,565 | 16.8 |
| | 온라인 쇼핑몰 | 22,355 | 16.7 | 20,771 | 19.5 | 21,447 | 16.7 |
| **소계** | | **71,744** | **53.6** | **71,925** | **67.6** | **83,076** | **64.5** |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62,113** | **46.4** | **34,452** | **32.4** | **45,640** | **35.5** |
| 합계 | | 133,857 | 100.0 | 106,377 | 100.0 | 128,716 | 100.0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편중된 예산 증액은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이 대형 유통채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또한 유통업체 중심의 예산 집행이 지속될 경우 인프라가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과 고령층 소비자들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안을 비롯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유통경로 간 균형을 강화하고, 지역·서민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은 환급액이 감소하는 반면 환급행사 운영비는 크게 증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운영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설·추석 등 명절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일부(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예산과 환급행사 진행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소요됨.

그런데 최근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환급액은 2023년 621억 1,300만원에서 2025년 456억 4,0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환급행사 운영비는 2023년 54억 3,000만원에서 2024년 99억 3,3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환급행사 운영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 | | 2024 | | 2025 | |
|---|---|---|---|---|---|---|
| | 집행액 | 비중 | 집행액 | 비중 | 집행액 | 비중 |
| 온누리상품권 환급 | 62,113 | 92.0 | 34,452 | 77.6 | 45,640 | 82.3 |
| **환급행사 운영** | **5,430** | **8.0** | **9,933** | **22.4** | **9,842** | **17.7** |
| 합계 | 67,543 | 100.0 | 44,385 | 100.0 | 55,482 | 100.0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급행사 운영비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전체 환급액 규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빨라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환급행사 운영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행사 방식별 효과를 점검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절감이 가능한 운영비는 환급액 등 직접 지원으로 환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 림 청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4,368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4,275 | 4,275 | 4,368 | 4,368 | - | - |
| 합 계 | 4,275 | 4,275 | 4,368 | 4,368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3조 28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0.1%) 증가함.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6,169 | 30,840 | 30,260 | 30,280 | 20 | 0.1 |
| 합계 | 26,169 | 30,840 | 30,260 | 30,280 | 20 | 0.1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985 | 985 | 1,020 | 1,020 | - |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9,756 | 10,937 | 10,649 | 10,649 | - | -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719 | 719 | 725 | 725 | - | - |
| 합 계 | 11,460 | 12,641 | 12,394 | 12,394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추경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조 5,17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0.04%) 증가함.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1,881 | 26,551 | 24,950 | 24,970 | 20 | 0.08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9,756 | 10,937 | 10,649 | 10,649 | - |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3,973 | 4,982 | 8,830 | 8,830 | - | -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719 | 719 | 725 | 725 | - | - |
| 합 계 | 36,329 | 43,189 | 45,154 | 45,174 | 20 | 0.04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0억원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산림헬기 운영에 필요한 항공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산림헬기 도입·운영’에 2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93,858 | 213,448 | 193,826 | 195,826 | 2,000 | 1.0 |
| 1 | 산림헬기 도입·운영 | 93,858 | 213,448 | 193,826 | 195,826 | 2,000 | 1.0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공유 구입비 증액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유가 상승 및 헬기 가동 확대에 따른 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산림청은 과거 산불진화 등에 활용되는 민·관 헬기에 대한 항공유 급유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지원 요건 미준수 및 현물상환 관리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항공유 구입 사업: 민·관 헬기에 대한 항공유 급유지원 시 지원 요건 준수 및 환수관리 철저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항공유 구입'** 사업은 산림재해(산불, 산림병해충 등)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의 항공유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억원(43.1%) 증액된 4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6년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산림헬기 도입·운영 | 93,858 | 213,448 | 193,826 | 195,826 | 2,000 | 1.0 |
| 항공유 구입 | 3,517 | 3,517 | 2,638 | 4,638 | 2,000 | 43.1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본예산은 산림헬기 36대에 대한 항공유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 증액 사유는 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항공유 단가 상승, ② 정비 완료 등에 따른 불가동 헬기 감소(14대→7대)로 인한 실질 가동 대수 증가, ③ 산불 조기 대응을 위한 해외 임차헬기(5대, 3개월) 도입에 따른 추가 항공유 수요 증가임.

2)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구입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638<br>백만원 | ○ 항공유<br>- 36대주)×73백만원 | 4,638<br>백만원 | 좌동 |
| | - | | (증액) 2,000백만원<br>- 기존 36대 유가 인상분 : 1,135백만원<br>- 불가동 헬기 감소 7대 : 734백만원<br>- 국외임차헬기 5대(3개월) : 131백만원 |

주) 2025년말 기준 헬기 보유수는 50대이나, 14대를 불가동으로 분류하여 36대 예산을 편성함
자료: 산림청

## 나. 검토의견

**항공유 구입비 증액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유가 상승 및 헬기 가동 확대에 따른 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산림청은 과거 산불진화 등에 활용되는 민·관 헬기에 대한 항공유 급유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지원 요건 미준수 및 현물상환 관리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항공유 가격 급등[3] 및 산림헬기 실질 가동 대수 증가[4] 등을 고려한 항공유 구입비 20억원의 증액 편성안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산불 진화 시 민·관 헬기 활용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항공유 급유 지원 요건 준수 및 사후 정산 등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5]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헬기 운용 기관 및 항공유 급유지원협정을 체결한 민간업체 헬기에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과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급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한 항공유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물상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6]

3) 1,048.04원(2월) → 1,606.12원(3.11.) → 1,743.60원(3.18.)

4) 불가동으로 예상했던 KA-32 14대 중 7대를 올해 1월 공군헬기 부품 관리전환 활용 등을 통해 추가 가동

5) 민·관헬기 사용료(항공유 포함)는 임차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산림청이 민·관헬기에 급유 지원한 항공유는 현물상환이 원칙임.

6)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산림항공본부훈령 제361호)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항공유"란 산림항공본부 및 민간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JET A-1을 말한다.
② "민간헬기"라 함은 산림항공본부와 항공유 급유지원협정 체결을 한 공기업과 민간업체 등에서 운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산림청 자체 감사결과(2024. 4.)에 따르면, ① 협정체결을 체결하지 않은 11개 민간업체에도 급유 지원을 하고, 급유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단순 계류장 이용 및 교육 등)에도 항공유를 지원한 문제 및 ② 현물상환의 대상여부・시기・방법 등 급유지원에 따른 위험부담 및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항공유 26만리터를 상환받지 못한 문제 등이 발견되어, 관련 규정 개정 및 현물상환(2026.3월 현재 1.4만리터 미상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현재까지도 일부 민간헬기업체(3개사)와의 소송 등으로 일부 항공유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상환 시 차기 급유 지원 제한 또는 가산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항공유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에 따른 항공유 제공 및 환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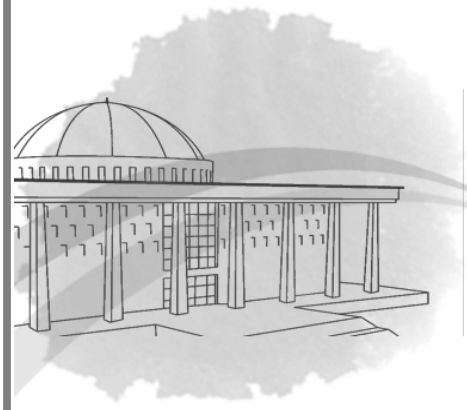
(단위: 리터)

| 연도 | 항공유 제공 | 항공유 환수 | 환수여부 |
|---|---|---|---|
| 2021 | 24,022 | 24,022 | 환수 완료 |
| 2022 | 520,391 | 506,007 | 14,384 |
| 2023 | 42,892 | 42,892 | 환수 완료 |
| 2024 | 19,294 | 19,294 | 환수 완료 |
| 2025 | 128,673 | 98,308 | 30,365 |

자료: 산림청

③ “관용헬기”라 함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④ “급유지원기관”이라함은 산림항공본부와 헬기 운용 기관, 민간업체(공기업 포함)를 말한다.
제4조(항공유 급유지원 범위) ① 급유지원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급유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 중 급유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조차만으로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 급유요청을 하는 경우
2. 기상악화, 기관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하여 추가 급유지원 없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상환절차) ① 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
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
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
② 현물 상환할 항공유는 품질보증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유 공급업체의 유류성분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현물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급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⑤ 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
⑥ 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
#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2조 2,665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예산은 2조 1,81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고, 기금은 849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1)]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6,970 | 26,970 | 21,816 | 21,816 | - | - |
| 기 금 | 616 | 616 | 849 | 849 | - | - |
| 합 계 | 27,586 | 27,586 | 22,665 | 22,665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0조 3,58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241억원(9.8%) 증가함.

예산은 10조 2,38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241억원(9.9%) 증가하고, 기금은 1,201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90,841 | 100,992 | 93,142 | 102,383 | 9,241 | 9.9% |
| 기 금 | 1,421 | 1,421 | 1,201 | 1,201 | - | - |
| 합 계 | 92,262 | 102,413 | 94,343 | 103,584 | 9,241 | 9.8%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1,888 | 1,888 | 1,751 | 1,751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60,702 | 59,103 | 18,582 | 18,582 | - | - |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22,843 | 22,843 | 24,354 | 24,354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30 | 530 | 663 | 663 | - | - |
| 합 계 | 85,963 | 84,364 | 45,350 | 45,350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2조 5,46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241억원(7.9%) 증가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60,843 | 67,828 | 74,435 | 81,558 | 7,123 | 9.6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4,836 | 27,039 | 8,139 | 10,047 | 1,908 | 23.4 |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18,228 | 18,228 | 19,549 | 19,549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879 | 12,887 | 14,039 | 14,249 | 210 | 1.5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57 | 57 | 65 | 65 | - | - |
| 합 계 | 115,843 | 126,039 | 116,226 | 125,468 | 9,241 | 7.9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2개 기금(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6조 701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000억원(1.7%)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71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무역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조 8,73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000억원(1.7%) 증가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2,352 | 2,352 | 1,971 | 1,971 | 1,971 | - | - |
| 무역보험기금 | 57,807 | 60,807 | 57,730 | 57,730 | 58,730 | 1,000 | 1.7 |
| 합계 | 60,159 | 63,159 | 59,701 | 59,701 | 60,701 | 1,000 | 1.7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 규모(총계 기준)는 1조 241억 3,300만원임.[2)]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은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여 AI·로봇 등에 활용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촉진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8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추경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 80,000 |
| 합 계 | | 80,000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은 국내 석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 1,584억원을 증액하였음.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은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4,734억원을 증액하였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562,647 | 1,042,768 | 784,777 | 1,497,077 | 632,300 | 80.6 |
| 1 | 무역보험기금출연 | 80,000 | 380,000 | 70,500 | 170,500 | 100,000 | 141.8 |
| 2 | 수출지원기반활용 | 91,364 | 180,171 | 181,074 | 214,074 | 33,000 | 18.2 |
| 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329,290 | 334,606 | 341,429 | 347,334 | 5,905 | 1.7 |
| 4 |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 57,446 | 57,446 | 56,738 | 76,738 | 20,000 | 35.2 |
| 5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4,547 | 90,545 | 135,036 | 608,431 | 473,395 | 350.6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297,298 | 512,018 | 153,081 | 343,914 | 190,833 | 124.7 |
| 6 | 석유비축사업출자 | 79,901 | 79,901 | 55,300 | 213,733 | 158,433 | 286.5 |
| 7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 15,859 | 15,859 | 16,314 | 38,654 | 22,340 | 136.9 |
| 8 | 석유유통구조개선 | 811 | 811 | 761 | 2,741 | 1,980 | 260.2 |
| 9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200,727 | 415,447 | 76,929 | 82,929 | 6,000 | 7.8 |
| 10 |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 - | - | 3,777 | 5,857 | 2,080 | 55.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331,378 | 392,643 | 434,587 | 455,587 | 21,000 | 4.8 |
| 11 | 산업단지환경조성 | 331,378 | 387,478 | 409,920 | 423,920 | 14,000 | 3.4 |
| 12 | 지역산업위기대응 | - | 5,165 | 24,667 | 31,667 | 7,000 | 28.4 |
| 무역보험기금 | | 2,920,860 | 3,158,727 | 1,895,187 | 1,995,187 | 100,000 | 5.3 |
| *13* | *통화금융기관예치* | *2,920,860* | *3,158,727* | *1,895,187* | *1,995,187* | *100,000* | *5.3* |
| 합계 | | 4,112,183 | 5,106,156 | 3,267,632 | 4,291,765 | 944,133 | 28.9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나프타 국내 재고 고갈 후 대체 공급선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로 인해 수급 격차가 심화되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대체수입 물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프타 재고 부족 시 배분 우선순위 설정 및 수요 분산 등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바우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수요기업이 대폭 증가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의 경우 특례지원은 재무건전성이 낮아 지원할 수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나 특례지원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역선택을 방지하고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심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신규): 적시 수입을 위한 노력 및 재고 부족 대응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석유화학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나프타의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4,694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6년도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4,547 | 90,545 | 135,036 | 608,431 | 473,395 | 350.6 |
|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 - | - | - | 469,452 | 469,452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이 사업은 NCC[4)]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들이 2026년 4~6월 중 나프타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매금액 차액의 일정 비율(보조율 50%)을 보조하는 것으로, 대체수입 물량 213만톤에 지원단가를 톤당 22만원으로 추계하여 위탁정산운영비 3억원 등과 함께 4,69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3574-306)(산업공급망정책관)

4) Naptha Cracking Center로, 나프타를 분해하여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펠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를 의미함.

대체수입 물량으로 예상되는 213만톤은 NCC설비를 최저 가동률로 운영할 때 3개월간 필요한 나프타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물량의 대체 수입 가능 추정 물량이고, 지원단가 22만원은 중동상황 발생 이후 기간(2.27.~3.13.)의 일별 나프타 수입단가($/톤) 중 극단값(상·하위 10%)을 제외한 수치 중 가장 높은 단가인 1,087$/톤과 중동상황 발생 직전 5년(21년 3월~26년 2월)간의 월별 나프타 수입 단가($/톤) 중 극단값(상·하위 10%)을 제외한 수치 중 가장 높은 단가인 783$/톤간의 차액인 304$에 환율 1,450원 및 보조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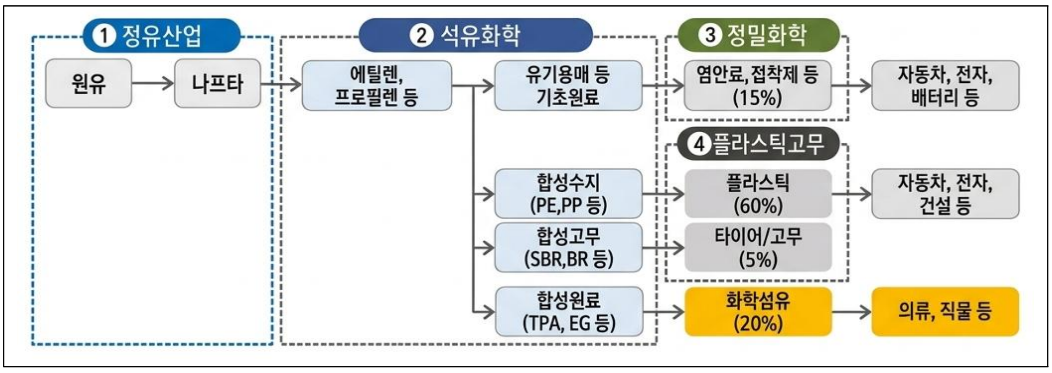
[나프타 수급안정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나프타 수급안정지원(차액지원 보조금): 4,694억 5,200만원 (4,694억 5,200만원 신규 편성)**<br>**- 대체수입 물량(213만톤) × 지원단가(22만원)***<br>*** 수입단가 상승분(1,087$/톤-783$/톤) × 50% × 1,450원/$**<br>**- 위탁정산운영비 : 3억원**<br>* 지원물량·단가 등은 글로벌 나프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료: 산업통상부

'나프타(Naphtha)'는 원유 정제 과정 중 증류탑의 75~150℃ 구간에서 기화되어 분리되는 유분들로 만든 탄소화합물임. 나프타를 분해하면 석유화학 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초 유분들을 얻을 수 있어 합성수지 등 전방 수요산업의 기초소재 제조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이자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프타(Naptha)의 역할]




자료: 산업통상부

나프타 수급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업들의 소재 부족으로 연쇄 가동중단이 발생하게 됨. 예를 들어 나프타 공급 부족 시 조선업은 철판 절단용 에틸렌 가스 부족으로 조선소 선박의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 나. 검토의견

**나프타 국내 재고 고갈 후 대체 공급선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로 인해 수급 격차가 심화되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대체수입 물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프타 재고 부족 시 배분 우선순위 설정 및 수요 분산 등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심화로 인한 중동 내 주요 석유·가스시설 감산, 가동 중단으로 나프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차질로 운송 지연도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동 상황 이후 나프타의 가격은 80% 이상 상승하였음.[5)]

[중동상황 전·후 나프타 시세 현황]

(단위: $/미터톤, %)

| 지표명 | ('19.3월~) 최고가 | 시세 추이 | | | |
|---|---|---|---|---|---|
| | | '26.2.27.(A) | '26.3.11. | '26.3.19.(B) | (B-A)/A |
| Naphtha Middle East Gulf FOB LR1 Cargoes | 1,095.2 | 587.9 | 808.4 | 1,079.3 | 83.6 |
| Naphtha South Korea CIF Cargoes | 1,224.8 | 645.0 | 963.5 | 1,347.5 | 108.9 |
| Naphtha Singapore FOB Cargoes BBL | 129.5 | 68.9 | 102.4 | 138.6 | 101.2 |
| Naphtha Japan CIF Cargoes | 1,139.2 | 637.0 | 875.0 | 1,162.3 | 82.5 |

주) Naphtha Singapore FOB Cargoes BBL은 단위가 $/배럴임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블룸버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프타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시설 가동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중동 및 나프타 수입국 현황]

**(중동 공급 제한)**
- ㅇ (UAE) 루와이스(Ruwais) 정유 시설 드론 공격에 따른 화재 발생으로 가동 중단(3.10.) 및 샤(Shah) 가스전과 합샨(Habshan) 가스 시설 가동 중단(3.16., 3.19.)
- ㅇ (카타르) 카타르 에너지(QatarEnergy) LNG 및 부산물 생산 중단 발표(3.2.) 이후, 라스 라판(Las Raffan) 가스 시설 미사일 공격 피해(3.18.)
- ㅇ (기타 국가) 쿠웨이트(Kuwait Petroleum Corporation), 바레인(Bapco Energies), 오만(OQ) 등 원유 생산 및 정제 처리량 감축, 불가항력 선언

5) 표에 제시된 지표 중 ① Naphtha Middle East Gulf FOB LR1 Cargoes는 중동(걸프) 항구에서 선적된 나프타의 가격으로, 운임을 제외한 중형 유조선 기준 거래 금액이고, ② Naphtha South Korea CIF Cargoes는 한국으로 도착한 나프타의 수입 가격(운임 포함)으로 한국 석유화학 기업 입장에서 실제 원료 구매 가격을 의미함. ③ Naphtha Singapore FOB Cargoes BBL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는 나프타의 가격이고, ④ Naphtha Japan CIF Cargoes은 일본에 도착한 나프타의 가격을 의미함.

**(나프타 수입국의 비상조치)**

ㅇ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제조업체 PT Chandra Asri Pacific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 선언(3.2.)

ㅇ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석유화학 제조업체 PCS Pte., Aster Chem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료 공급 중단을 이유로 불가항력 선언(3.5., 3.6.)

ㅇ (인도) MRPL 정유소는 원유 재고 부족으로 인해 원유 증류시설 1곳 가동 중단(3.6.)

ㅇ (일본) 주요 정유사인 이데미츠 코산(Idemitsu Kosan)은 전쟁 장기화 대비를 위해 석유 제품 공급량 감축 시작(3.18.)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도 2025년 나프타 수입 금액 기준 중동 수입 의존도가 78%에 달해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2026년 3월 23일 나프타를 위기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2026년 3월 27일에는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였음. 관련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음.

[한국의 나프타 중동 수입 의존도 (수입액 기준)]

(단위: 백만불)

| 국가명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수입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 UAE | 5,137 | 29% | 4,112 | 22% | 3,851 | 23% |
| 알제리 | 2,223 | 13% | 2,468 | 13% | 2,576 | 16% |
| 카타르 | 1,521 | 9% | 2,409 | 13% | 2,094 | 13% |
| 쿠웨이트 | 1,081 | 6% | 2,076 | 11% | 1,453 | 9% |
| 오만 | 229 | 1% | 1,481 | 8% | 1,187 | 7% |
| 이라크 | 393 | 2% | 992 | 5% | 722 | 4% |
| 바레인 | 185 | 1% | 137 | 1% | 431 | 3% |
| 사우디 | 477 | 3% | 616 | 3% | 313 | 25 |
| 리비아 | 25 | 0% | - | - | 103 | 1% |
| 튀르키예 | - | - | 71 | 0% | 58 | 0% |
| 튀니지 | 331 | 2% | - | - | 26 | 0% |
| 이스라엘 | - | - | - | - | 18 | 0% |
| 이집트 | 114 | 1% | 85 | 0% | - | - |
| **중동(소계)** | **11,716** | **66%** | **14,447** | **76%** | **12,832** | **78%** |
| 기타국가 | 6,064 | 34% | 4,625 | 24% | 3,669 | 22% |
| 전체(합계) | 17,780 | 100% | 19,072 | 100% | 16,501 | 100% |

주) 중동 기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동지역본부 관할 국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나프타의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수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국내기업들의 나프타 재고는 약 3주 안팎 분량으로 예상되나,[6] 나프타 대체 공급선에서 수입 시 예상되는 해상운송 기간은 2025년 3월 25일 기준으로 최소 25일 내외에서 최대 65일 내외임.

[나프타 대체공급선 현황]

| 국가명 | 기업명 | 특징 | 예상 해상운송 기간 |
|---|---|---|---|
| 미국 | E, P, V사 등 | ○ 한국지사가 있으며 국내기업과 거래 경험 보유 | 45일 내외 |
| 인도 | BH사 | ○ 정부 소유 기업으로 연간 1,550만 톤 원유 정제 능력 보유 | 25일 내외 |
| 그리스 | H사 | ○ 월 10만 톤 납사 생산 중, 국내기업과 거래 경험 보유 | 65일 내외 |
| 알제리 | SO사 | ○ 알제리 납사 생산 독점 국영기업 | 40일 내외 |
| 나이지리아 | D사 | ○ 아프리카 최대 규모 정유소로 일 65만 배럴 정제 가능<br>○ 국내기업과 거래 경험 보유 | 50일 내외 |
| 오만 | O사 | ○ 오만 유일 납사 제조사로 국내기업과 거래 경험 보유 | 25일 내외 |

주) 예상 해상운송 기간은 SeaRates(UAE 소재 글로벌 물류사인 DP World가 운영하는 물류 솔루션 플랫폼)에서 2026년 3월 25일 조회한 예상 해상운송기간 기준으로 육로운송, 현지・공급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 경우 국내 재고 고갈 후 대체공급선에서 추가 나프타 물량이 유입되기까지의 시차로 수급 격차가 심화되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어, 나프타 수요기업의 소재 부족으로 산업 전반의 연쇄적인 가동 중단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른 선적과 수입을 지원하여 나프타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요 분산 계획과 나프타 배분 우선순위[7]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나프타 부족 대응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6) 다만, 나프타 재고는 수입・생산과 출하・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동태적으로 형성되고, 특정 시점에서의 저장량이 일반적으로 2주분으로 알려져있음. 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나프타의 양은 2주분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7) 나프타는 수액백, 의료용품의 포장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위생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급이 중단되고 소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①국민의 생명・안전, ②산업 전반의 파급효과, ③사회 구성원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된 나프타를 배분할 우선순위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관련 산업계에서 러시아산 나프타의 도입 및 나프타의 전략적 비축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 보조 외에도 정부 차원의 외교·통상적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긴급지원바우처 사업: 바우처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서비스 품질 감독 및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필요에 따라 민·관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55억원(60.1%) 증액된 679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긴급지원바우처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수출지원기반활용 | 91,364 | 180,171 | 181,074 | 214,074 | 33,000 | 18.2 |
| 통합지원사업 | 61,628 | 150,435 | 154,312 | 179,812 | 25,500 | 16.5 |
| 긴급지원바우처 | - | - | 42,443 | 67,943 | 25,500 | 60.1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산업통상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기업들이 중동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당초 본예산에 계획한 796개사 외에 567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도 관세대응바우처 평균 국고지원금액 4,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긴급지원바우처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긴급지원바우처(679억 4,300만원, 255억원 증액)
- (본예산) 796개사 × 7,650만원 × 69.7% = 424억 4,300만원
- **(추경) 567개사 × 4,500만원 = 255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8)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무역정책관)

긴급지원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요건(통상애로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평가를 통과한 후 선정되어야함. 이후 기업분담금(국고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을 부담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은 뒤 14개 분야[9]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

[수출바우처(긴급지원바우처) 진행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긴급지원바우처 지원 기업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중동 수출 애로기업에게 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Fast-Track'은 피해 심각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게 신청 후 3일 이내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제도이고, '지원 확대'는 기존 바우처 서비스 외에 추가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반송 비용, 전쟁운임할증료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2026년 제1회 추경안 긴급지원바우처 주요 지원내용]

| |
|---|
| ㅇ **(Fast-Track) 피해 심각 기업*은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 |
| * ① '25년도 對중동 수출 100만 불 이상 또는 ② 중동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 중 對중동 수출 50만 불 이상 기업 |
| ** 패스트트랙 탈락 기업은 일반트랙 신청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 |
| ㅇ **(지원 확대) 기존 바우처 서비스 外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반송비용, 전쟁운임할증료등 지원범위 포함** |
| * ①물류 반송 비용 ②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
| ③대체 목적지로 우회 국제운송비, ④중동지역 화물 현지 발생 지체료 등 지원범위 포함 |

자료: 산업통상부

9) 조사/일반 컨설팅,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관리, 홍보동영상,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국제운송,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보험보증

## 나. 검토의견

**바우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수요기업이 대폭 증가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바우처지원 실적을 서비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제운송' 이 전체 서비스 건수 중 35.8%, 전체 바우처 금액 중 27.5%를 차지하고 있고,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이 전체 서비스 건수의 14.8%, 전체 바우처 금액 중 23.9%를 차지하고 있어 두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5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 건수·바우처 금액 및 2026년도 3월말 기준 공급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 서비스분야 | 서비스 건수 | | 바우처 금액 | | 2026년도 3월말 기준 공급기관 | | | |
|---|---|---|---|---|---|---|---|---|
| | | | | | 국내 | 해외 파트너사 | | 합계 |
| | | 비중 | | 비중 | | | 중동 | |
| 조사/일반 컨설팅 | 559 | 2.7% | 7,482 | 4.9% | 199 | 79 | 2 | 278 |
| 디자인개발 | 1,559 | 7.5% | 12,238 | 8.0% | 52 | 8 | - | 60 |
| 브랜드개발/관리 | 75 | 0.4% | 1,303 | 0.9% | 44 | 4 | - | 48 |
| 홍보동영상 | 451 | 2.2% | 8,657 | 5.7% | 402 | - | - | 402 |
| 통번역 | 238 | 1.1% | 546 | 0.4% | 81 | 8 | - | 89 |
| 역량강화 교육 | 269 | 1.3% | 416 | 0.3% | 251 | 42 | 2 | 293 |
|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 3,091 | 14.8% | 36,448 | 23.9% | 47 | - | - | 47 |
| 해외규격인증 | 2,498 | 12.0% | 12,276 | 8.1% | 189 | 79 | 2 | 268 |
| 특허/지재권 | 2,450 | 11.8% | 10,987 | 7.2% | 82 | - | - | 82 |
| 홍보/광고 | 1,603 | 7.7% | 16,289 | 10.7% | 524 | - | - | 524 |
| 국제운송 | 7,456 | 35.8% | 41,867 | 27.5% | 320 | - | - | 320 |
| 서류대행/현지등록 | 180 | 0.9% | 558 | 0.4% | 98 | - | - | 98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226 | 1.1% | 2,979 | 2.0% | 305 | - | - | 305 |
| 무역보험보증 | 177 | 0.8% | 420 | 0.3% | - | - | - | - |
| 총합계 | 20,832 | 100% | 152,465 | 100% | 2,594 | 220 | 6 | 2,814 |

자료: 산업통상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들의 수출 경로 다변화 및 신규 판로 확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물류 차질 및 운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운송’ 서비스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선정·지원될 기업 역시 유사한 서비스 수요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특정 서비스 분야로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이를 뒷받침할 공급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서비스 분야별로 2025년 공급기관 현황을 보면,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의 경우 276개의 공급기관을 확보하였으나, 173개사가 산업통상부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미제공하였고, ‘국제운송’ 분야의 경우 319개의 공급기관을 확보하였으나, 144개사는 산업통상부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미제공하였음.

[2025년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서비스 공급기관 현황]

(단위: 개사)

| 서비스분야 | 2025년 분야별 공급기관 수주1) | 산업부 수출바우처 기준 서비스 미제공 공급기관 수 | |
|---|---|---|---|
| | | 2025년 | 2023~2025년주2) |
|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 276 | 173 | 262 |
| 국제운송 | 319 | 144 | 170 |

주1) 분야 간 중복 포함 및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수 포함(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주2) 중복 제거하고 3년간 한번도 서비스를 제외하지 않은 기업 수 총합
자료: 산업통상부

수행실적이 없는 공급기업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기관 간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서비스 공급기관 중에서 실제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이번 추경으로 바우처 지급량이 증가할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796개사 대비 567개사(71.2%) 수요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나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됨.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바우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급 서비스 품질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특례심사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하여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및 기금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00억원(141.8%) 증액된 1,705억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무역보험기금출연 | 80,000 | 380,000 | 70,500 | 170,500 | 100,000 | 141.8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최근 급변한 중동상황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 및 물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주요 자원 수입기업 대상과 중남미·동남아 등 대체시장 수입선 발굴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3조원 확대할 예정임.

이를 위해 ①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의 출연금 1,000억원(평균 운용배수 16.8), ②무역보험기금 자체재원(여유자금) 770억원(평균 운용배수 17.0)을 투입할 예정임.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ㅇ **수출 中企 긴급 지원: 목표지원규모 4,500억원 ÷ 12.5 = 360억원**
- 유동성지원: 목표지원규모 2,875억원 ÷ 운용배수 12.5 = 230억원
- 특례지원: 목표지원규모 1,625억원 ÷ 운용배수 12.5 = 130억원

ㅇ **공급망 안정화 지원: 목표지원규모 3,750억원 ÷ 운용배수 12.5 = 390억원**
- 수입자금지원: 목표지원규모 3,750억원 ÷ 운용배수 12.5 = 300억원
- 현지법인지원: 목표지원규모 1,125억원 ÷ 운용배수 12.5 = 90억원

ㅇ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 목표지원규모 7,500억원 ÷ 운용배수 30 = 250억원**
- 단기보험: 목표지원규모 7,500억원 ÷ 운용배수 30 = 25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10) 일반회계-무역보험기금출연(1138-881)(무역정책관)

구체적으로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①중동사태 대응 위한 수출 中企 긴급지원, ②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③대체 수출시장 발굴지원으로 구성되어있음.

먼저, **'중동사태 대응 위한 수출 中企 긴급지원'** 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물류 지원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원 유형 중 '유동성 지원' 은 400억원(추경 증액분 230억원 및 무역보험기금 자체재원 170억원)을 투입하여 5,000억원의 추가 보증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2배 우대하거나 보증료를 50% 할인할 예정임.

또 다른 지원유형인 '특례지원' 은 240억원(추경 증액분 130억원 및 무역보험기금 자체재원 110억원)을 투입하여 거액의 수출계약 성사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태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무요소 뿐만 아니라, 수출이행능력·타당성·성장 가능성·계약체결 내용 등 비(非)재무항목을 심사 후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것임.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은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광물 등 주요 자원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 유형 중 '원자재 확보 강화' 는 520억원(추경 증액분 300억원 및 무역보험기금 자체재원 220억원)을 투입하여 중동사태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석유화학, 에너지, 광물 등 자원 수입기업 대상 수입자금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또 다른 지원유형인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은 160억원(추경 증액분 90억원 및 무역보험기금 자체재원 70억원)을 투입하여 중동사태로 인해 일시적 운전자금(working capital)[11]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대체 수출시장 발굴지원'** 은 450억원(추경 증액분 250억원 및 자체재원 200억원)을 투입하여 중동 리스크를 피해 중남미·동남아 등 대체시장 수입선 발굴 시 수입자 한도를 적극 우대하여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임.

11) 운전자금은 임금, 원자재비 등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영자금을 의미함.

[2026년 제1회 추경 무역보험기금 사업 세부 유형별 비교표]

| 세부내역 | 중동사태 대응 위한 수출 中企 긴급지원 |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 | 대체 수출시장 발굴지원 |
|---|---|---|---|---|---|
| 지원유형 | 유동성지원 | 특례지원 | 원자재 확보 강화 |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 |
| 지원대상 | 전체 수출 중소·중견 기업 | 심사 통과 기업 | 원자재 수입기업 | 일시적 운전자금 애로기업 | 대체시장 수입선 발굴 기업 |
| 우대방안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한도 2배 우대 및 무감액 연장<br><br>수출신용보증 (매입,포괄매입) 보증부 대출건 만기연장 (최대 60일) | 내규상 지원 제한대상이나 기술력,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특례인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원 결정 | 수입보험한도 1.5배 우대 보험료율 최대 50% 할인 |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가격변동성 확대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국내기업 현지법인 앞 유동성 공급 | 단기수출보험 한도 3배 우대 보험료율 최대 50%할인 |
| 추경 증액분 (운용배수) | 230억원 (12.5배) | 130억원 (12.5배) | 300억원 (12.5배) | 90억원 (12.5배) | 250억원 (30배) |
| 무역보험기금 자체재원 (운용배수) | 170억원 (12.5배) | 110억원 (12.5배) | 220억원 (12.5배) | 70억원 (12.5배) | 200억원 (30배) |
| 지원목표 규모 | 5,000억원 | 3,000억원 | 6,500억원 | 2,000억원 | 13,500억원 |
| 세부사업 | 무역보험금지급 | 무역보험금지급 | 무역보험금지급 | 무역보험금지급 | 무역보험금지급 |
| 내역사업 | 중소기업수출신용 보증 보험금 등 | 중소기업수출신용 보증 보험금 등 | 단기무역거래 보험금 등 |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 보험금 등 | 단기무역거래 보험금 등 |
| 무역보험 상품종류 | 수출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기반보험 단기수출보험 | 수입보험 | 해외사업금융보험 | 단기수출보험 |

주) 무역보험기금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임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나. 검토의견

**첫째, 특례지원은 재무건전성이 낮아 지원이 어려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나 최근 특례지원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역선택을 방지하고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심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례지원은 대외변수 또는 시설투자·설비확충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무역보험공사 내규상 보험·보증 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미래 성장성과 기술력 등 비재무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무역보험 특례지원 실적을 보면, 2020~2024년간 연평균 152.8억원, 10.6건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에는 특례지원 제도개선[12] 및 중소중견기업 우대보증[13] 지원 수요 증가로 41건에 대해 2,143억원을 지원하여 특례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625억원 규모의 보험·보증을 수출애로기업 특례지원 등으로 추가 공급할 예정임에 따라 2026년에는 특례지원 규모가 총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020~2026년(안) 무역보험 특례지원(공급) 실적]

(단위: 억원,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연평균 | 2025년 | 2026년 (안) |
|---|---|---|---|---|---|---|---|---|
| 공급실적 | 139 | 183 | 254 | 115 | 73 | 152.8 | 2,143 | 3,000 |
| 공급건수 | 5 | 15 | 15 | 10 | 8 | 10.6 | 41 | 60 |

주) 2026년 공급건수(안)은 실제 개별 기업의 보증한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례지원 제도는 재무상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수단이나, 민간이 기피하는 고위험 거래가 무역보험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작용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14]에 따른 무역보험의 위험 및 손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12) 지원대상(우량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 추가), 지원금액(종목별 특별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지원종목(5개 종목 추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특례지원 저변을 확대

13) 국내 주요 산업 대표기업과 은행의 동반 출연기금을 기반으로 무보가 출연기업의 中企 협력사에 특별 우대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지원 사업

14)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을 의미함

따라서 특례지원 제도는 보험·보증 사고에 대한 리스크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확하고 개별 기업의 비재무적 지표가 재무적 한계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현재 특례지원 여부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특례인수위원회(이하 "특례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15] 2025년의 경우 특례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위원회 회의 개최건수는 4배, 심사건수는 약 4.6배 증가하는 등 특례위의 심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2021~2025년 무역보험 특례인수위원회 개최·심사 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개최건수 | 11 | 12 | 7 | 6 | 24 |
| 심사건수 | 16 | 15 | 10 | 9 | 42 |
| 특례지원건수 | 15 | 15 | 10 | 8 | 41 |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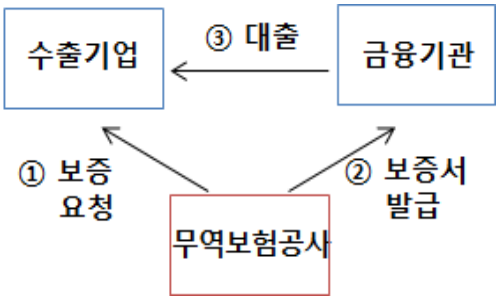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추경을 통한 특례지원 규모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특례위에서 특례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동상황과 무관한 기업이 단순 금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제한된 보증한도 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은 기업이 배제되어 무역보험의 수출 안정화 및 위기대응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제약을 일부 해소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원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하는 것임.

15) 금융·평가·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위원단(32명)을 구성하고, 특례위 개최 시마다 위원단에서 5명을 선정하여 특례위를 구성하고 있음.

[수출신용보증 제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정 기업의 대출에 대해 신용이나 지급을 보증할 경우 기업이 보증없이 차입을 시도하는 경우보다 금리가 낮아지게 됨.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별·차주 신용도별·은행 특별출연 협약 유무에 따라 상이하나, 최대 2.5%p까지 금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하였음.

보증 상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와 보증으로 낮아진 차입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이 보증이 없는 경우의 차입금리에 따른 이자비용보다 낮은 경우, 차입에 큰 어려움이 없거나 중동상황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기업도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보증 상품을 이용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16)]

[보증상품 이용 시 기업의 유인 구조]

보증료 + 보증으로 낮아진 이자비용 < 보증이 없는 경우의 이자비용 → 보증상품 이용
보증료 + 보증으로 낮아진 이자비용 > 보증이 없는 경우의 이자비용 → 보증상품 미이용

이번 추경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 및 수출·물류 리스크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경제의 공급망 안정과 수출기업의 유동성·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인데,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6) 신용공여 기간이 긴 중장기수출보험이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투자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료율·보증료율은 일반 차입금리보다 낮음.

그런데 이번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증액을 통해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보증사업들은 전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유동성지원), 일시적인 운전자금에 애로를 겪는 현지 해외 법인 등도 지원(현지법인 유동성 지원)하는 등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여 설정하였는데,

중동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금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경우 제한된 보증한도 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은 기업이 배제되어 무역보험의 수출 안정화 및 위기대응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지원이 단순 금융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①중동 상황 직접 피해 여부, ②민간 금융 대체 불가능 여부, ③지원의 긴급성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해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은 기업에 보증한도를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증 이후에도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증 지원 취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신규):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기획·평가·관리 필요

## 가. 개 요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사업은 매뉴얼이나 문서로 공식화하기 어려운 제조 명장의 경험・직관・판단 등이 녹아든 제조암묵지(Tacit Knowledge)를 디지털화 및 AI를 활용해 검증하여 제조업의 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및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8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제조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 | - | - | - | 80,000 | 80,000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이 사업은 제조기업과 AI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조암묵지를 정의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AI모델을 개발・검증하는 연구개발 사업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과제 50건에 대해, 단가 21억 3,330만원을 반영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800억원과 함께 민간 자금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출연금(360-05) : 800억원

- **(신규) 50건 × 21억 3,330만원 × 9/12개월 = 80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과제 당 단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데이터 디지털화, ②AI 개발・검증에 각각 30%를 배분하였고, ③인건비 장비구축 및 컨설팅에 20%, ④장비구축, ⑤컨설팅에 10%를 배분하였음.

17) 일반회계-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3541-450)(인공지능정책관)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과제당 단가]

(단위: %, 억원)

| 구분 | 세부 내역(예시) | 비율 | 금액 |
|---|---|---|---|
| 데이터 디지털화 | - 비정형 제조 데이터(영상, 음성, 로그, 센서 등) 수집 인력 인건비<br>- 데이터 정제·라벨링 용역 비용<br>- 데이터 파이프라인/ETL 툴 도입·운영비<br>- 클라우드 임시 스토리지 사용료(전처리 단계) | 30 | 4.8 |
| AI 개발·검증 | - PoC용 모델 개발·튜닝 인력(내부/외부) 인건비<br>- 모델 학습·추론 인프라 사용료(클라우드 GPU 등)<br>- 현장 테스트·파일럿 적용(파일럿 라인 세팅, 시험 생산 등) 비용<br>- 성능 검증(정확도·재현율·업무효율 개선 등) 분석·리포트 작성비 | 30 | 4.8 |
| 장비 구축 | - 비정형 데이터 수집용 장비(고해상도 카메라, 마이크, 진동·온도 센서, 게이트웨이 등) 구매비<br>-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서버, NAS 등) 도입비 일부 지원<br>- 네트워크·보안 장비(스위치, 방화벽 등) 구축비 일부<br>- 설치·시운전 및 일부장비 임대, 기본 유지보수(1년) 비용 | 10 | 1.6 |
| 컨설팅 | - 대학·연구소 전문가 매칭·자문료(데이터 모델링, 암묵지 구조화 방법론 자문 등)<br>- AI 활용 검증 단계별 컨설팅(문제 정의, 지표 설계, PoC·확산 전략 수립 등)<br>- 사업관리(PM)·성과관리 컨설팅 비용<br>- 교육·워크숍(명장-연구자-데이터팀 공동 워크숍) 운영비 | 10 | 1.6 |
| 인건비 등 인센티브 | - 참여 제조 명장·숙련공 참여수당·인건비 지원<br>- 파일럿 적용에 따른 추가 작업·교육 시간 보상<br>- 성과 기반 인센티브(모델 정확도/불량률 개선/생산성 향상 등 KPI 달성 시) 지급 재원 | 20 | 3.2 |
| 합 계 | | 100 | 16 |

자료: 산업통상부

## 나. 검토의견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은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공고부터 협약체결까지의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은 시작 전 ①사업공고 및 서류접수(30~45일), ②사전검토, 선정평가(위원회) 및 확정(약 30일), ③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15~30일)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게 됨.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이 사업의 향후 연간 집행계획에 따르면, 과제 선정평가에 2주를 계획하는 등 일반적인 소요기간 보다 단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연간 집행계획]

| 단계 | 주요 내용(요약) | 일정(안) | 비고 |
|---|---|---|---|
| 사업공고 | 주요 사업목표, 지원양식, 지원규모, 일정 등을 안내 | '26.4~5월 (1개월) | 예산편성 확정과 동시에 공고 시작 |
| 과제 선정평가 | 지원 필요성, 수행역량, 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 | '26.5월 (2주) | 공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면·대면 평가 신속 수행 |
| 착수·수행 및 1차 중간점검 | 협약체결, 암묵지 정의·지표 확정, 데이터 수집·정의·라벨링 및 초기 AI 모델 개발 | '26.6~10월 (5개월) | 6~9월 : 데이터 구축 집중<br>10월 : 중간점검·내부 리뷰 |
| 수행 및 2차 중간점검 | AI 고도화, 현장 파일럿 적용, 명장-AI 판단 비교·보완 | '26.11~'27.2월 (4개월) | 11~1월 : 파일럿/고도화<br>2월 : 명장-AI 기술 검증계획 수립 |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성과자료 제출 및 평가, 확산·후속 계획 정리 | '27.2월말 | |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168건의 수요가 확인되어 이 사업 참여를 위한 경쟁이 예상되고, 이의신청 등에 따라 협약체결이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50개의 과제 선정평가를 2주만에 마무리하는 것은 다소 촉박한 측면이 있어 보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관련 수요조사 결과]

| 시기 | 수요조사 내용 | 전체 수요건수 | 암묵지 관련 수요 |
|---|---|---|---|
| 2025년 9월 | 산기평 정기 통합 수요조사 | 1,446건 | 66건 |
| 2026년 2월 | 산기평이 AI팩토리, 암묵지, 팩토리 수출 등 주제로 별도 수요조사 | 693건 | 102건 |

자료: 산업통상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제조암묵지기반AI 모델개발(R&D)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연구개발성과 확보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통상부는 철저하게 이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 <세출증액>

## 5.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적시 자금배정을 통한 원활한 비축유 확보 노력 필요 등

### 가. 개 요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금을 교부하여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를 구입하고 비축기지를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584억 3,300만원(167.5%) 증액된 2,13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석유비축사업출자 | 79,901 | 79,901 | 55,300 | 213,733 | 158,433 | 167.5 |
| 비축유구입 | 49,281 | 49,281 | 26,300 | 181,733 | 155,433 | 591.0 |
| 비축기지유지보수 | 30,620 | 30,620 | 29,000 | 32,000 | 3,000 | 10.3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해 국내 원유 수입의 약 61%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 원유를 즉각 공급할 수 있는 완충 수단으로 정부 비축유를 추가 구입하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비축유 구입: 원유 130만 배럴(B) 구입을 위한 1,817억 3,300만원
- **원유 130만B×단가 $96.10/B×환율 1,450원/$**
○ 비축기지 유지보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교체비 32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1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석유비축사업출자(5432-301)(자원산업정책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①본예산 편성 당시 비축 목표였던 25만 5,000배럴 보다 104만 5,000배럴 많은 130만 배럴을 비축할 예정이고, ②국제 예상 유가와 운임료 인상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배럴 당 구입 단가를 74.66$/B(예상유가 68.89$/B+운임 및 보험료 5.77$/B)에서 96.10$/B(예상유가 88.85$/B+운임 및 보험료 7.56$/B)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③환율도 1,380원에서 70원 인상된 1,45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또한 비축시설 확충을 위한 사전 용역을 위해 3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및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026년 예산 산출내역 | 2026년 추경안 산출내역 |
|---|---|
| ○ 일반출자금(460-01) : **553억원**<br>가. 비축유 구입<br>원유 **255천배럴** 구입을 위한 **263억원**<br>**· 원유 255천B×단가 $74.66/B*×환율 1,380원/$**<br>*** (단가) 예상유가 $68.89/B+운임 및 보험료 $5.77/B**<br><br>나. 비축기지 유지보수<br>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교체비 **290억원**<br>· 노후시설보수 및 교체비 93억원(계속)<br>* 9개 비축기지 ×10억 3,300만원<br>· 노후 송유관 교체 설치비 75억원(계속)<br>· 거제 2단계 수리시스템 보완사업비 96억원(계속)<br>· 비축기지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26억원<br>* 4개 비축기지 × 6억 5,000만원 | ○ 일반출자금(460-01) : **2,137억 3,300만원**<br>가. 비축유 구입<br>원유 **1,300천배럴** 구입을 위한 **1,817억 3,300만원**<br>**· 원유 1,300천B×단가 $96.41/B*×환율 1,450원/$**<br>*** (단가) 예상유가 $88.85/B+운임 및 보험료 $7.56/B**<br><br>나. 비축기지 유지보수<br>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교체비 **320억원**<br>· 노후시설보수 및 교체비 93억원(계속)<br>* 9개 비축기지 ×10억 3,300만원<br>· 노후 송유관 교체 설치비 75억원(계속)<br>· 거제 2단계 수리시스템 보완사업비 96억원(계속)<br>· 비축기지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26억원<br>* 4개 비축기지 × 6억 5,000만원<br>**· 비축기지 부지선정 등 사전용역 : 30억원** |

자료: 산업통상부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여수, 서산, 거제, 울산에 원유비축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서산, 평택, 구리, 용인, 곡성, 동해에는 휘발유・등유・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제품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부는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손으로 비축유 구입을 위한 출자예산 492억 1,800만원 중 185억 4,800만원이 연도 내 미교부(이월)되고 한국석유공사가 단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선례를 고려하여 추경으로 편성된 출자예산이 적시에 교부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 799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611억 3,300만원(76.5%)을 집행하고, 187억 6,800만원(23.5%)을 이월하였음.

[2025년도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2025년 | | | | | | | | | 2026년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B) | 집행액 (C) | 다음년도 이월액 (D) | 불용액 (E) | 예산액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79,901 | 79,901 | - | - | - | 79,901 | 61,133 | 18,768 | - | 55,300 |

자료: 산업통상부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①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 492억 8,100만원과 ②비축기지 유지보수를 위한 306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 492억 8,100만원 중 185억 4,800만원과 비축기지유지보수를 위한 출자금 2억 2,000만원이 교부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임.

비축유 구입을 위한 출자금을 적시에 교부 받지 못한 한국석유공사는 사전계약 물량(46.5만B)에 대한 대금 부족액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금리 3.916%에 187억 6,800만원 상당의 미화를 단기차입(’26.1.6.~’26.7.3.)하였으며, 산업통상부는 2026년 1월말에서야 이월액을 한국석유공사로 교부하였음.

위와 같은 대응으로 당초 석유비축계획량인 1억 12만 1,000배럴 대비 47만 2,000배럴 초과한 1억 59만 3,000배럴을 비축할 수 있었으나, 한국석유공사가 월 약 6천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한 바 있음.

[2023~2026년 석유비축계획 대비 비축량 및 계획]

(단위: 백만원, 천배럴)

| 연도 | | 석유비축 계획량 | 석유 비축량 | 당해연도 석유 신규 비축량 | 신규 비축석유 구입액 및 재원 | | |
|---|---|---|---|---|---|---|---|
| | | | | | 합계 | 정부 출자금 | 석유공사 자체재원 |
| 2023 | | '25년까지 100,121 | 98,515 | 483 | 52,996 | 40,718 | 12,278 |
| 2024 | | | 99,485 | 921 | 84,079 | 36,545 | 47,534 |
| 2025 | | | 100,593 | 904 | 103,556 | 49,281 | 54,275 |
| 2026 | 본예산 | '30년까지 102,622 | - | 255 | 50,960 | 26,300 | 24,660 |
| | 추경 | | - | 1,300 | 181,733 | 181,733 | - |

주) 2026년은 예산서 상 계획으로 작성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석유공사

이러한 선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적시에 자금이 배정·교부되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비축이 어려워지거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추경으로 편성된 출자 예산이 적시에 교부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 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재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정체·감소하지만 세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세수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사업과 석유비축사업의 안정적인 병행 추진이 어려울 것이 우려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무공해차 보급 사업 등 에특회계 내 친환경 사업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에특회계 세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석유수입부과금·석유판매부과금·가스안전관리부담금·광해방지부담금)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세입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5년 에특회계 법정부담금 세입 개요]

| 구분 | 개요 |
|---|---|
| 석유수입 부과금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수입석유(원유/석유제품, LNG)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br>- 부과기준(법정상한선 36원/L) : 원유·석유제품 16원/L, LNG 일반용 24,242원/톤, LNG 발전용 3,800원/톤 |
| 석유판매 부과금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석유(고급휘발유, 부탄)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br>- 부과기준(법정상한선 36원/L) : 고급휘발유 36원/L, LPG(부탄) 62,283원/톤(≒36원/L) |
| 가스안전 관리부담금 | ○ 석유정제업자 및 LPG 제조·판매자, LPG 또는 LNG 수입자에게 판매 LPG, LNG에 대해 일정액의 안전관리부담금 징수<br>- 부과기준(법정상한선 LPG 5원/kg, LNG 4.4원/㎥) : LPG 4.5원/kg, LNG 3.9원/㎥ |
| 광해방지 부담금 | ○ 광산개발로 인한 광산피해(광해)의 방지 및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br>- 부과기준<br>· 광해방지사업 :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40%<br>· 산림(토지)복구사업 : 채무보증금액 × 광종별 요율 ÷ 개발연수 |

자료: 산업통상부

실제로 2022년 에특회계 법정부담금은 1조 8,030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2025년에는 1조 3,544억 600만원만 수납되어 4,486억 6,700만원(24.9%) 감소하였음.

[2022~2025년도 에특회계 법정부담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2 | 1,650,005 | 1,650,005 | 1,650,005 | 1,812,875 | 1,803,073 | 109.3 | 99.5 | 9,802 | - |
| 2023 | 1,821,355 | 1,821,355 | 1,821,355 | 1,225,225 | 1,218,059 | 66.9 | 99.4 | 4,707 | 2,459 |
| 2024 | 1,894,449 | 1,894,449 | 1,894,449 | 1,411,635 | 1,409,209 | 74.4 | 99.8 | 2,427 | - |
| 2025 | 1,837,282 | 1,837,282 | 1,837,282 | 1,357,118 | 1,354,406 | 73.7 | 99.8 | 2,712 | - |

자료: 산업통상부

반면 에특회계 투자계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2025년 집행액이 전년 대비 735억 9,200만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2~2025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실집행액]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2 | 2,407,761 | 2,182,761 | 5 | - | 2,182,766 | 1,744,230 [1,632,461] | 79.9 | 79.9 | 30 | 438,507 |
| 2023 | 2,565,224 | 2,565,224 | 30 | ±10 | 2,565,254 | 1,908,899 [1,437,365] | 74.4 | 74.4 | 61 | 656,294 |
| 2024 | 2,319,254 | 2,319,254 | 61 | ±12,016 | 2,319,315 | 1,521,067 [1,337,229] | 57.7 | 57.7 | 49 | 798,199 |
| 2025 | 2,263,104 | 1,900,854 | 49 | ±105,001 | 1,900,903 | 1,594,659 [1,508,569] | 83.9 | 83.9 | 98 | 306,146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와 같은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같은 탄소중립 정책의 확대가 오히려 재원 기반을 악화시켜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제약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음.

특히 최근 중동상황으로 발생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석유 수요를 줄이는 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에특회계 세입 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투자계정에 석유관련 사업들과 탄소중립 사업들이 함께 존재할 경우, 석유비축 증가 시 탄소중립 사업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자금 배정이 지연되는 등 에너지 안보 사업과 탄소중립 사업의 안정적인 병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구조의 문제점]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안보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에특회계 내에서 정책 목적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거나, 에특회계를 에너지 안보 관련 회계와 탄소중립 관련 회계로 분리하는 등의 재원 구조 개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6. 석유품질관리지원 사업: 최고가격제 시행 후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철저한 시장 감독 필요

## 가. 개 요

**‘석유품질관리지원’**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석유 및 가스의 품질·유통을 관리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23억 4,000만원(136.9%) 증액된 38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석유품질관리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석유품질관리지원 | 15,859 | 15,859 | 16,314 | 38,654 | 22,340 | 136.9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이번 추경안에는 ①석유 시장 불법행위 신고 창구 통합과 원스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석유통합관제센터’ 내역사업이 165억원 신규 편성되었고, ②노후 검사시험장비 및 암행 비노출검사장비 교체, 검사차량 추가 도입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검사시험장비’ 내역사업 예산 46억원, ③감시 및 현장점검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석유유통관리지원’ 내역사업 예산 12억 4,000만원이 증액됨.

[석유품질관리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ㅇ **석유통합관제센터: 165억원 (신규 편성)**
- 가격/수급 등 통합시스템(80억원), 석유통합콜시스템(24억원), 상황실 구축(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비·공사비, 50억원), 인건비(30명×5,500만원×8개월/12개월, 11억원)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검사시험장비: 49억 5,800만원 (46억원 증액)**
- 검사시험장비(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20대, 27억 5,800만원), 비노출검사장비(10대, 10억원), 검사차량지원(20대, 12억원)

ㅇ **석유유통관리지원: 137억 4,100만원 (12억 4,000만원 증액)**
- 경비(12억 4,000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1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석유품질관리지원사업(5432-302)(자원산업정책관)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석유통합관제센터’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에 따른 가격정보(석유공사)[20]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에 따른 수급정보(석유관리원)[21]를 우선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석유 시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는 최근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석유 시장 불법행위 신고 창구 통합과 원스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편성되었음.

‘석유통합관제센터’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2분기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3분기에 발주(입찰)·구조설계(가격/수급 통합, 석유통합콜시스템)를 추진할 예정이며, 4분기에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개발 및 테스트 등을 진행할 예정임.

[석유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 사업추진계획]

**○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절차도**

| ① 예산 교부 | ➡ | ② 발주·구조설계 | ➡ | ③시스템 구축, 개발 및 테스트 | ➡ | ④석유통합 관제센터 운영 | ➡ | ⑤ 정산·사후관리 |
|---|---|---|---|---|---|---|---|---|
| 산업부 | | 관리원/조달청 | | 관리원 | | 관리원 | | 산업부/관리원 |

① 예산 확보 및 교부(산업통상부) : 한국석유관리원에 보조금 교부
② 발주 및 시스템 구조 설계(석유관리원/조달청) : 관제센터의 시스템 구조(가격/수급 통합, 통합콜시스템) 및 보안 설계, 관제 운영 설계 등
③ 시스템 구축, 개발 및 테스트(석유관리원) : H/W 설치, S/W 개발 및 시범 운영
④ 석유통합관제시스템 운영(석유관리원) : AI기반 이상 징후 탐지, 통합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신고 접수·분석 → 高위험군에 대한 현장 점검
⑤ 정산·사후관리(산업부/석유관리원) : 예산 정산 및 관제센터 운영

**○ (집행계획) 2026년 내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사업 추진**

| | |
|---|---|
| 2분기 |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 |
| 3분기 | 발주(입찰)·구조설계(가격/수급 통합, 석유통합콜시스템) |
| 4분기 |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개발 및 테스트 등 |

자료: 산업통상부

20)「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2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검토의견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공급 충격이 지속될 경우 품귀·대기행렬·품질저하 등 비가격적 배분 왜곡이 발생하여 명목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보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석유품질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시장을 감독하고 가격과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22] 및 제23조[23]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및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산업통상부 고시를 통해 3월 13일과 3월 27일 2회에 걸쳐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설정하였음.[24]

---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 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석유의 도입방법 · 도입지역 등 수출입
13.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 ·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4) 가격상한(price ceiling) 정책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으로, 초과수요 및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다만,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운송비·물류비·생산비 상승을 통해 물가 전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석유와 같이 필수재 성격이 강하고 단기 가격탄력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 급등 국면에서 소비자 후생 보호 및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강한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가 있음.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등을 참고 )

[석유최고가격 현황]

| 시행일 | 구분 | 보통휘발유 | 자동차용 경유 | 선박용 경유 | 실내 등유 |
|---|---|---|---|---|---|
| 3월 13일 |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 리터당 1,724원 | 리터당 1,713원 | - | 리터당 1,320원 |
| |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리터당 1,743원 | 리터당 1,732원 | - | 리터당 1,339원 |
| 3월 27일 |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 리터당 1,934원 | 리터당 1,923원 | 리터당 1,923원 | 리터당 1,530원 |
| |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리터당 1,953원 | 리터당 1,942원 | 리터당 1,942원 | 리터당 1,549원 |

자료: 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022호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최고가격제 시행과 과잉수출제한[25]에 따라 공급가격과 수출물량에 제한을 받는 석유정제업자는 ①수출을 통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국내 판매 과정에서 역마진이 발생, ②물류비・해상운임・보험료 등이 상승한 상황에서 손실이 3개월 단위로 정산[26]됨에 따라 운전자금(working capital)[27] 부담 증가, ③석유 최고가격이 과거 유가를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 예상 시 최고가격 하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하락 예상 시에는 가격 조정을 기대한 수요가 이연되면서 수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됨.

25)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수출제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2026년 매월 수출하는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이 2025년 같은 기간 수출한 물량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하여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26)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방안」, ▲손실 보전, ▲정유사의 입증책임, **▲분기별 정산** 등 3가지 원칙에 의거 정부 재정으로 지원

27) 임금, 원자재비 등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자금

[석유 최고가격제의 수급 불균형 심화 메커니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유종별 최고액 산정 방식〉

직전 최고액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 × ( **‘기준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기간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

- 국제유가 인상 예상 → 수요자는 인상 전 현재 최고가격 하에서 수요 희망, 공급자는 인상된 미래 최고가격 하에서 공급 희망 → 수요 증가, 공급 감소 → 수급불균형 심화
- 국제유가 인하 예상 → 수요자는 인하된 미래 최고가격 하에서 수요 희망, 공급자는 인하 전 현재 최고가격 하에서 공급 희망 → 수요 감소, 공급 증가 → 수급불균형 심화

자료: 산업통상부 고시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따라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①국내 공급 축소, ②물류·유통 구조 조정, 제품 품질 하향 및 부가서비스 축소 등 비용 절감과 전가, ③판매 시점의 전략적 조정 등의 선택을 할 유인이 있음.

이러한 행태는 시중 석유 물량의 공급 감소로 이어져 품귀에 따른 탐색비용 증가, 석유 품질 저하에 따른 효율 감소 및 고장, 암시장 형성, 나아가 물류·발전·응급서비스 등 필수 수요처의 기능 저해 등 다양한 형태의 비가격적 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명목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보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우려가 있음.[28)]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고가격제가 사회 후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감독과 관리로 석유 수급 및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정유사의 손실을 적정하게 산정·보상하여 공급 축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석유품질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시장을 감독하여 가격과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석유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는 시점(4분기)까지 감독과 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8) 최고가격제의 의도와 달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과 불편이 심화되는 것임

# 7.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 석유 최고가격 비규제 유종 유통 시장 및 가격에 대한 감독 노력 필요

## 가. 개 요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피넷(Opinet)[29] 운영 개선, 석유시장 감시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9억 8,000만원(260.0%) 증액된 27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30]

[2026년도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석유유통구조개선 | 811 | 811 | 761 | 2,741 | 1,980 | 260.0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가정보 공개 플랫폼인 오피넷의 전산서버 교체 및 데이터 수집 용이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17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민단체 중심의 석유시장감시단을 운영하여 석유가격을 감독하고 소비자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석유시장 감시단’ 사업이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 27억 4,100만원
- **오피넷 운영 및 개선 21억 6,200만원 (17억원 증액)**
- 석유유통정보고도화 1억 3,600만원 (본예산과 동일)
- 석유유통시장경쟁촉진 1억 6,300만원 (본예산과 동일)
- **석유시장 감시단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자료: 산업통상부

29) 오피넷(Opinet)은 석유제품가격 조사·공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 석유공사가 2008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가정보 사이트임.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석유유통구조 개선(5432-303)(자원산업정책관)

구체적으로, **‘오피넷 운영 및 개선’** 은 ① 오피넷 전산서버가 7년 이상 운영되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른 서버 다운 및 로딩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교체예산 5억원, ② 피조사자의 피로도가 높은 ARS를 AI봇이 지원하여 24시간 무중단 상담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AICC[31] 기반 ARS 구축(6억원), ③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가격제보 시스템 3억원, ④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능 고도화(3억원)를 위한 예산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석유시장 감시단’** 사업은 석유시장 감시단 운영비 2억원과 소비자 교육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① 주간지표 및 월간·연말 보고서 발간, 알뜰주유소 가격 및 주변지역의 가격 비교·분석과 같은 가격감시, ② 석유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석유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자 교육, ③ 석유제품 소비자들의 의식 및 행태를 조사·분석하여 석유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소비자 설문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2026년도 및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026년 예산 산출내역 | 2026년 추경안 산출내역 |
|---|---|
| **가. 오피넷 운영 및 개선 (4억 6,200만원)**<br>· 석유제품 가격조사(1억 6,800만원)<br>· 오피넷 시스템 등 서비스유지(2억 9,400만원) | **가. 오피넷 운영 및 개선 (21억 6,200만원)**<br>· 석유제품 가격조사(1억 6,800만원)<br>· 오피넷 시스템 등 서비스유지(2억 9,400만원)<br>· **오피넷 노후 인프라 업그레이드 (5억원)**<br>* 석유정보 시스템 교체: 2억 2,500만원<br>* 스토리지 교체: 5,000만원<br>* 가상화 시스템 교체: 2억 2,500만원<br>· **오피넷 AICC 기반 고도화 등 개선비용 (12억원)**<br>* AICC 기반 ARS 구축: 6억원<br>* 소비자 가격제보 시스템: 3억원<br>*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능 고도화: 6억원<br><br>**나 석유시장 감시단 (2억 8,000만원)**<br>· **석유시장 감시단 운영비 2억원**<br>· **소비자 교육비 8,000만원** |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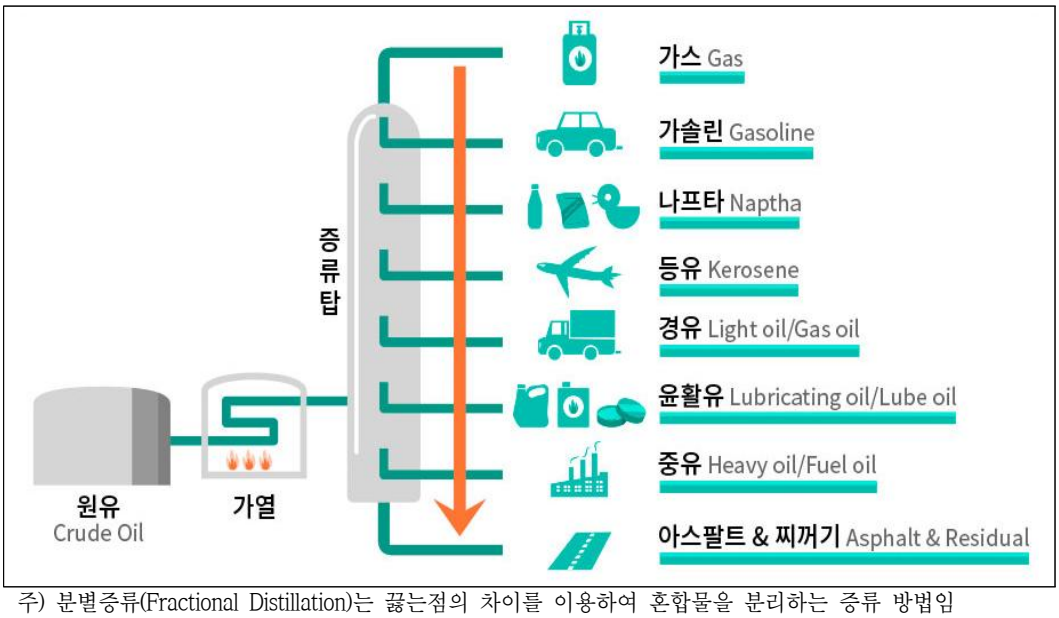
31) AICC(AI Contact Center)는 미리 설정된 안내나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기존 ARS(Automated Response System) 기반 고객응대 체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지능형 고객센터로 전환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석유 최고가격제는 보통휘발유·자동차용 경유·선박용 경유·실내 등유 등 민생과 직결된 일부 유종의 가격을 제한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나, 정유산업의 생산 구조와 석유제품 간 시장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특정 유종에 대한 가격 통제는 비규제 유종의 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심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 운영 시 감독 및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유사는 단일 원유를 투입하여 휘발유·경유·등유뿐만 아니라 나프타·항공유·중유 등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며,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기업 전체 수익 측면에서는 특정 제품의 수익 변동이 다른 제품의 수익으로 보완되거나 상쇄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원유 분별증류 도식도]




주)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는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증류 방법임
자료: Kixx 엔진오일 제품정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유종의 가격이 정책적으로 억제될 경우, 정유사는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마진 감소를 다른 제품에서 보전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며, 그 결과 가격통제 대상이 아닌 나프타·중유·윤활유·항공유 등 비규제 유종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함.[32]

예를 들어, 현재 최고가격제는 보통 휘발유·등유·경유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최고가격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유[33]나 부생연료유[34], 윤활유[35] 등의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급격해질 수 있음.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

| 자동차용 휘발유 | | 등유 (실내용) | 경유 | | 중유 | | | 부생 연료유 | | 아스팔트 | 용제 (1~10호) | 윤활유 | 항공유 | |
|---|---|---|---|---|---|---|---|---|---|---|---|---|---|---|
| 보통 휘발유 | 고급 휘발유 | | 자동차용 | 선박용 | A 중유 | B 중유 | C 중유 | 등유형 | 중유형 | | | | 항공 휘발유 | 항공 터빈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실제 석유 최고가격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한국 선박엔진용 초저황유(중유) 가격은 2026년 3월 2일 톤당 605.5$에서 2026년 3월 24일 톤당 1,050$로 73.4% 인상되었는데, 같은 기간 일본(54.7%)이나 UAE(65.2%) 선박엔진용 초저황유 가격 상승 비율이나 브렌트유(34.4%)나 서부텍사스유(29.7%) 가격 상승률에 비해 상당히 높음.

이는 일시적인 가격 교란 요인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나, 석유 가격 통제에 따른 부담이 규제되지 않은 중유 영역으로 전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32) 이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담이 규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이해될 수 있음.

33) 중유(heavy fuel oil)는 원유 분별증류 과정에서 잔류하는 고점도·고비점의 석유제품으로, 주로 발전용·선박용 연료 및 산업용 보일러 등에 사용되는 연료임.

3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35) 윤활유는 원유의 분별증류 과정에서 고비점 영역에서 얻어지거나 후속 정제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고점도 유분으로, 열적 안정성과 윤활성이 우수하여 기계의 마찰·마모 저감, 냉각, 방청 및 밀봉 등을 위해 자동차·산업설비 등에 사용됨.

[2026년 3월 2일~3월 24일 한국·일본·UAE 및 브렌트유·서부텍사스유 가격]

| | 3월 2일 | 3월 12일 | 3월 19일 | 3월 24일 |
|---|---|---|---|---|
| 한국 선박엔진용 초저황유 가격($/톤) | 605.50 | 1,498.75 | 1,240.00 | 1,050.00 |
| 일본 선박엔진용 초저황유 가격($/톤) | 598.00 | 1,012.00 | 1,080.00 | 925.00 |
| UAE 선박엔진용 초저황유 가격($/톤) | 575.00 | 1,126.00 | 1,110.00 | 950.00 |
| 브렌트유 가격($/배럴) | 77.74 | 100.46 | 108.65 | 104.49 |
| 서부텍사스유 가격($/배럴) | 71.23 | 95.73 | 96.14 | 92.35 |

주) Daily Price of "Marine fuel 0.5% bunker Delivered Fujairah (MFFJD00)" on「Platts Bunkerwire」및 Petronet을 참고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와 같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제한된 유종에 대한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비규제 유종인 중유 및 산업용 연료 가격 상승은 발전비용과 물류비를 상승시키고 전력요금 및 운송비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고가격제가 사회 후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유종 간 연계성·생산구조·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한편, 석유제품 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8.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협력 필요

## 가. 개 요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금을 지급하여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를 확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60억원(7.8%) 증액된 829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36)]

[2026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200,727 | 415,447 | 76,929 | 82,929 | 6,000 | 7.8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이 사업은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 100톤을 확보하여 영구자석용 희토류(네오디뮴[37)] 30톤, 디스프로슘[38)] 1톤)의 국내생산 공급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내역을 보면, ①국내 사용 후 희토자석 25톤, ②해외 사용 후 희토자석 50톤, ③영구자석 공정 스크랩(희토류 가공·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25톤, 도합 100톤 구입을 위한 예산을 kg당 41.25$, 환율 1,450원/$을 적용하여 60억원 편성하였음.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기관출자(460-01): 60억원(60억원 신규 편성)
- **[(국내·외 사용후 희토자석(국내 25톤, 해외 50톤)) + (영구자석 공정 스크랩 25톤)] ×1,000kg×41.25$/kg×환율(1,450/$) = 6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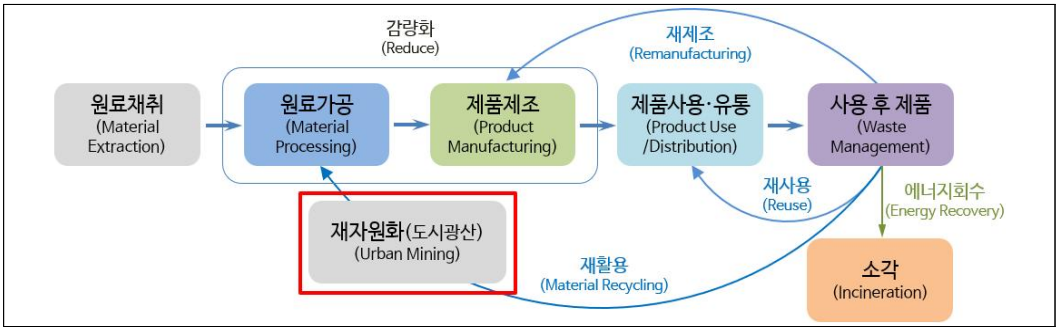
3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5440-304)(자원산업정책관)

37) 네오디뮴(Nd)은 희토류 금속 원소 중 하나로, 정제·분리가 어려워 공급이 제한적인 자원임. 이로 인해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한 전략물자로, 전기차·풍력발전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됨.

38) 디스프로슘(Dy)은 희토류 금속 원소 중 하나로, 매장량 대비 경제적 채굴과 분리가 어려워 공급이 제한되는 전략자원임. 특히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전기차 모터·풍력발전 등 고성능 자석에 필수적으로 사용됨.

재자원화는 국내 자원안보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을 위해, 희소금속 등을 포함한 재생자원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것임.

[핵심광물 재자원화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합동,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2025.10.31.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은 재자원화 사업을 지원하는 폐희토자석을 확보하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안에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39]세부사업이 국내 재자원화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양산능력 검증(20억원)과 재자원화 원료의 보관시설 임차 및 관리(8,000만원)를 위해 20억 8,000만원이 함께 증액 편성되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폐희토 자석에는 영구자석용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가 30~35% 함유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안을 통한 폐희토자석 원료 100톤 확보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연간 1,000톤 규모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추경 및 희토류 재자원화 시범사업(안)]

| 구분 | 추경 | 희토류 재자원화 시범사업(안) | | | | |
|---|---|---|---|---|---|---|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보조 사업 | 양산능력 검증<br>확보원료 관리 | 양산능력 개선 | 양산설비 건설<br>(연 1,000t 원료 처리) | | 양산개시<br>(연 500t) | 정상 양산<br>(연 1,000t) |
| 원료 확보 (자산) | 원료 100톤 확보 | 원료 200톤 추가 확보 (누적 300톤) | 원료 200톤 추가 확보 (누적 500톤) | 원료 400톤 추가 확보 (누적 900톤) | 원료 500톤 추가 확보 (누적 1,400톤) | 원료 600톤 추가 확보 (누적 2,000톤) |
| 인력 양성 | - | 현장 전문가 및 정제련 기술인력 양성 지원 | | | | |
| 예산 | 80.8억원<br>**(자산:60억원)** | 필요 예산 협의 | | | | |

자료: 산업통상부

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사업(5446-314)(자원산업정책관)

## 나. 검토의견

**폐희토자석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순환자원의 인정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순환자원 인정 과정에서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협력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임.[40]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하려는 폐희토자석이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폐모터 등에서 분리된 자석이 폐기물임에도 재자원화 목적으로 구매하여 장기간 보관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량 및 보관기간[41]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폐희토자석 등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42]화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순환자원의 인정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순환자원 인정 과정에서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43]

---

4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4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희토류 재자원화를 강화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간 긴밀하게 협의・협력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9조 7,828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708 | 2,708 | 2,705 | 2,705 | - | - |
| 기 금 | 92,215 | 91,501 | 95,123 | 95,123 | - | - |
| 합 계 | 94,922 | 94,208 | 97,828 | 97,828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8조 4,60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9,374억원(11.7%) 증가함.

예산은 5조 5,44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719억원(16.2%) 증가했으며, 기금은 12조 9,16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1,655억원(9.9%) 증가함.[1)]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36,372 | 40,218 | 47,728 | 55,447 | 7,719 | 16.2 |
| 기 금 | 116,116 | 169,402 | 117,505 | 129,161 | 11,655 | 9.9 |
| 합 계 | 152,488 | 209,620 | 165,233 | 184,607 | 19,374 | 11.7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규모는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498 | 2,498 | 2,502 | 2,502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0 | 210 | 203 | 203 | - | - |
| 합 계 | 2,708 | 2,708 | 2,705 | 2,705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9조 8,8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674억원(12.1%) 증가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61,716 | 91,899 | 83,433 | 94,107 | 10,674 | 12.8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357 | 357 | 106 | 106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148 | 4,148 | 4,672 | 4,672 | - | - |
| 합 계 | 66,221 | 96,404 | 88,211 | 98,885 | 10,674 | 12.1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9조 3,92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조 1,704억원(6.4%)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12조 2,329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7,200억원(6.3%) 증가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7조 1,596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504억원(6.7%) 증가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115,595 | 125,952 | 115,129 | 115,129 | 122,329 | 7,200 | 6.3 |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 70,860 | 113,858 | 67,092 | 67,092 | 71,596 | 4,504 | 6.7 |
| 합 계 | 186,455 | 239,810 | 182,221 | 182,221 | 193,925 | 11,704 | 6.4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2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조 2,378억원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에 3,200억원을 반영하였고,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모태출자조합’ 사업에 1,7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해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저변확대’사업 내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편성(1,550억원)하였고, 중동 상황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에 1,000억원을 반영하였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4,244,940 | 7,253,273 | 5,713,218 | 6,780,652 | 1,067,434 | 18.7 |
| 1 | 신용보증기금출연 | - | 100,000 | 80,000 | 180,000 | 100,000 | 125.0 |
| 2 | 기술보증기금출연 | 40,000 | 110,000 | 60,000 | 160,000 | 100,000 | 166.7 |
| 3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236,076 | 286,923 | 402,056 | 489,056 | 87,000 | 21.6 |
| 4 | 기술혁신기반조성 | 16,521 | 16,521 | 43,366 | 55,866 | 12,500 | 28.8 |
| 5 | 수출지원기반활용 | 127,560 | 217,360 | 150,203 | 250,203 | 100,000 | 66.6 |
| 6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82,058 | 92,058 | 93,572 | 105,756 | 12,184 | 13.0 |
| 7 | 마케팅지원사업 | 21,827 | 21,827 | 24,944 | 31,544 | 6,600 | 26.5 |
| 8 | 창업저변확대 | 20,318 | 20,318 | 24,830 | 189,630 | 164,800 | 663.7 |
| 9 | 창업사업화지원 | 403,567 | 457,567 | 461,838 | 536,918 | 75,080 | 16.3 |
| 10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 208,281 | 208,281 | 239,856 | 338,256 | 98,400 | 41.0 |
| 11 | 중소기업 재기지원 | 16,629 | 16,629 | 14,966 | 24,966 | 10,000 | 66.8 |
| 12 |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 87,238 | 87,238 | 69,290 | 74,640 | 5,350 | 7.7 |
| 13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1,457,941* | *1,792,941* | *1,851,937* | *2,021,937* | *170,000* | *9.2* |
| 14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전출* | *1,526,924* | *3,825,610* | *2,196,360* | *2,321,880* | *125,520* | *5.7*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3,518,350 | 4,418,350 | 3,604,678 | 4,324,678 | 720,000 | 20.0 |
| 15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250,000 | 550,000 | 250,000 | 500,000 | 250,000 | 100.0 |
| 16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382,450 | 482,450 | 316,378 | 416,378 | 100,000 | 31.6 |
| 17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1,635,800 | 1,835,800 | 1,605,800 | 1,755,800 | 150,000 | 9.3 |
| 18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750,100 | 750,100 | 612,500 | 662,500 | 50,000 | 8.2 |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19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500,000 | 800,000 | 820,000 | 990,000 | 170,000 | 20.7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5,441,574 | 9,121,384 | 5,596,383 | 6,046,776 | 450,393 | 8.0 |
| 20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83,422 | 83,422 | 131,069 | 191,389 | 60,320 | 46.0 |
| 21 | 소상공인성장지원 | 265,085 | 1,927,379 | 621,243 | 661,243 | 40,000 | 6.4 |
| 22 | 소상공인재기지원 | 274,806 | 360,455 | 351,649 | 376,249 | 24,600 | 7.0 |
| 23 | 소상공인지원(융자) | 3,770,000 | 4,220,000 | 3,362,000 | 3,682,000 | 320,000 | 9.5 |
| 24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465,205 | 1,940,172 | 564,895 | 565,495 | 600 | 0.1 |
| 25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583,056* | *589,956* | *565,527* | *570,400* | *4,873* | *0.9* |
| 합계 | | 13,204,864 | 20,793,007 | 14,914,279 | 17,152,106 | 2,237,827 | 15.0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 운영비는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활용되는 기존 사업들의 목적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음.

둘째, 융자 관련 사업은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출부실이 미래로 이연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보증사고율 증가 및 구상권 회수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모두의 창업 관련 사업: 관련성이 낮은 기존 사업비 활용 문제

### 가.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이른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2차에 걸쳐 기본코칭, 지역 오디션, 권역 오디션 등을 수행 후 연말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2026년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진행 계획(안)]

<table>
<tr><th>일정</th><th>3월~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1차<br>(기존<br>재원)</td><td>모집공고</td><td colspan="2">아이디어<br>심사</td><td colspan="2">기본코칭</td><td>지역 오디션</td><td>권역 오디션</td><td rowspan="2">파이널<br>대상자<br>선발</td></tr>
<tr><td>2차<br>(추경<br>재원)</td><td colspan="2">-</td><td>모집공고</td><td>아이디어<br>심사</td><td>기본코칭</td><td>지역·권역<br>오디션</td></tr>
</table>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① 일반/기술트랙, ② 로컬트랙 등 2개의 트랙으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이종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공개모집 후 각 단계마다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트랙의 단계별 진행 내용(1차 기준)]

| |
|---|
| ○ 아이디어 심사: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제출한 지원서 평가<br>- 선발 인원: 4,000명<br>- 지원 내용: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책임 멘토링, 범용 AI솔루션(총 2개월, 최대 100만원)<br>○ 1라운드(지역 예선): 멘토의 관찰 및 서면 평가<br>- 선발 인원: 500명<br>- 지원 내용: 초기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1,000만원, 책임 멘토링 및 기술 멘토링<br>○ 2라운드(지역 오디션): 지역별 멘토 기관 대상 공개 오디션<br>- 선발 인원: 200명<br>- 지원 내용: 초기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1,000만원, 책임 멘토링 및 선배 멘토링<br>○ 3라운드(권역 오디션): 기술분야별 전문 투자사 대상 권역별 비공개 오디션<br>- 선발 인원: 100명<br>- 지원 내용: 차년도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책임 멘토링<br>○ 4라운드(전국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br>- 선발 인원: 1명<br>- 지원 내용: 최종우승자 상금 및 투자금 최대 10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modoo.or.kr)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의 단계별 진행 내용(1차 기준)]

| |
|---|
| ○ 아이디어 심사: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제출한 지원서 평가<br>- 선발 인원: 1,000명<br>- 지원 내용: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책임 멘토링, 창업 기초교육, 오디션 준비과정 도움<br>○ 1라운드(권역 오디션): 권역별 창업 아이디어 공개 피칭<br>- 선발 인원: 600명<br>-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창업교육, 맞춤 멘토링, 육성공간(사무실) 지원<br>○ 2라운드(전국 예선): 멘토의 관찰 및 서면 평가<br>- 선발 인원: 100명<br>- 지원 내용: 분야별 책임 멘토링 및 선배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육성공간(사무실) 지원<br>○ 3라운드(전국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br>- 선발 인원: 1명<br>- 지원 내용: 최종우승자 상금 및 최대 1억원, 투자연계 지원,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modoo.or.kr)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 운영비 436억원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나, 2차 프로젝트 운영비 약 2,003억 2,000만원 및 별도 R&D 연계트랙 운영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총 3개 세부사업(‘창업저변확대’, ‘기술혁신기반조성’,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의 증액을 통해 충당할 예정임. 이에 각 사업별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일반회계 내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창업저변확대 | 20,318 | 20,318 | 24,830 | 189,630 | 164,800 | 663.7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 | - | - | 155,000 | 155,000 | 순증 |
| 기술혁신기반조성 | 13,359 | 13,359 | 43,366 | 55,866 | 12,500 | 28.8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기업가형 소상공인육성 | 83,422 | 83,422 | 131,069 | 131,069 | 191,389 | 60,320 | 46.0 |
|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 | 19,288 | 19,288 | 22,550 | 22,550 | 67,870 | 45,320 | 201.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추경안 세부 증액 내역]

| |
|---|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신규): 1,550억원<br>- 단계별 창업코칭 프로그램: 1,040억원(8,000명 × 1,300만원)<br>- 초기 사업화 지원: 320억원(기본코칭 8,000명 × 200만원, 지역·권역오디션 1,000명 × 1,600만원)<br>- 경진대회 및 홍보: 190억원(대국민 경진대회 50억원, 홍보 140억원)<br><br>○ 기술혁신기반조성: 125억원 증액(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별도 R&D 트랙)<br>-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의 연계 트랙 신설: 120억원(80개사 × 1.5억원)<br>- 전담기관 운영비: 5억원 증액<br><br>○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로컬트랙 운영비 453억 2,000만원 증액<br>- 교육·멘토링: 100억원(= 2,000명 × 200만원 + 1,200명 × 500만원)<br>- 사업화 지원: 280억원<br>* 창업수당 40억원(2,000명 × 200만원), 초기사업화자금 240억원(= 1,200명 × 2,000만원)<br>- 경진대회: 69억 2,000만원(오디션 51억원, 운영기관 인센티브 9억원, 상금 9억 2,000만원)<br>- 홍보비: 4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 운영비는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활용되는 기존 사업들의 목적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이미 3월 26일 모집공고 후 진행 단계에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1차 프로젝트의 운영비는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사업의 기정예산을 활용한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 내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260억원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서 176억원을 활용할 예정임.

그러나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심의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목적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같은 오디션 행사 사업과는 수행 절차, 참여자, 지원 내용, 사업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음.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구분 |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
| 수행 절차 | 창업진흥원 및 창경센터 등의<br>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발 | 멘토 및 대국민 오디션 등을 통해<br>지원 대상 선발 |
| 참여자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이전 사업자<br>(창업중심대학) 권역 내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이면서<br>이종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 |
| 지원 내용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br>창업프로그램 등 지원<br>(창업중심대학) 대학발 창업기업 대상<br>사업화자금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뿐만 아니라 오디션 우승<br>상금, 창업수당, 홍보비 등도 포함 |
| 사업 목적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의 단계별 지원<br>(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의 성장지원<br>및 대학·지역 창업 활성화 |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br>창업생태계의 조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대로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기정예산을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 융자 사업: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규모 설정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가.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자 사업 중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증액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지원’ 등 총 5개이며, 증액 규모는 총 8,700억원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증액된 5개 융자사업의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긴급경영 안정자금(융자) | 250,000 | 550,000 | 250,000 | 250,000 | 500,000 | 250,000 | 100.0 |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융자) | 382,450 | 482,450 | 316,378 | 316,378 | 416,378 | 100,000 | 31.6 |
| 수출기업 글로벌화 | 182,450 | 282,450 | 216,378 | 216,378 | 316,378 | 100,000 | 46.2 |
|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융자) | 1,635,800 | 1,835,800 | 1,605,800 | 1,605,800 | 1,755,800 | 150,000 | 9.3 |
| 재도약지원자금 (융자) | 750,100 | 750,100 | 612,500 | 612,500 | 662,500 | 50,000 | 8.2 |
| 재창업자금 | 200,000 | 200,000 | 100,000 | 100,000 | 150,000 | 50,000 | 50.0 |
| 소상공인지원 (융자) | 3,770,000 | 4,220,000 | 3,362,000 | 3,362,000 | 3,682,000 | 320,000 | 9.5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1,600,000 | 1,790,000 | 1,350,000 | 1,350,000 | 1,670,000 | 320,000 | 23.7 |
| 일시적경영 애로자금 | 350,000 | 350,000 | 50,000 | 50,000 | 120,000 | 70,000 | 140.0 |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 500,000 | 740,000 | 600,000 | 600,000 | 700,000 | 100,000 | 16.7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300,000 | 150,000 | 100.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재해 피해기업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당초 대비 2,500억원(100.0%) 증액된 5,000억원이 편성되었음.[2)]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변경안 세부내역]

| |
|---|
|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br>-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 부분 이상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br>* 경영애로 사유: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피해 등<br>-「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기업<br><br>○ 변경안 증액분: 2,500억원<br>- 2026년 1분기 신청금액과 2025년 신청 대비 대출 비율을 바탕으로 2026년 4월 이후의 추가 대출 예상액을 산출한 다음, 현재 기준 잔여 계획액만큼 차감하여 증액분을 계산<br>* [1,543억원(26.1분기 신청금액) × 1/3 × 9개월(=4월~12월) × 83.9%(25년 신청 대비 대출 비율)] - 1,473억원(26년 잔액)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도입, 원부자재 매입 비용 등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중동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대비 1,000억원(31.6%) 증액된 4,16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261-302)(중소기업정책실)

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중소기업정책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 대상<br>-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중소기업(수출 유망기업, 해외법인 지원자금 등)<br>* 실적 10만 달러 미만인 내수기업을 지원하는 '내수기업수출기업화'는 이번 변경안과 무관<br><br>○ 변경안 증액분: 1,000억원(=440개사 × 2.27억원)<br>- 중동 수출 중소기업 중 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 수를 추계 후, 이 중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기업 비율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에 위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 비율을 곱하여 계산<br>* 지원 대상 440개사 = 5,783개사 × 41% × 75% × 26.8%<br>** 중동 수출 중소기업 수 5,783개사, 10만 달러 이상 비중 41%,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중 75%,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에 위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중 26.8%<br>* 지원 단가 2.27억원 = 2022~2024년 간 실제 평균 지원금액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혁신 기술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대비 1,500억원(9.3%) 증액된 1조 7,558억원이 편성되었음.[4)]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변경안 세부내역]

| |
|---|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 대상<br>-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br>*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 업력 10년 이내<br><br>○ 변경안 증액분: 1,500억원<br>- 2026년 1분기 신청금액과 2025년 신청 대비 대출 비율을 바탕으로 2026년 4월 이후의 추가 대출 예상액을 산출한 다음, 현재 기준 잔여 계획액만큼 차감하여 증액분을 계산<br>* [6,137억원(26.1분기 신청금액) × 1/3 × 5.2개월(=잔여 지원가능기간) × 78.0%(25년 신청 대비 대출 비율)] - 6,840억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은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회피하는 재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내역사업인 재창업자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당초 대비 500억원(8.2%) 증액된 6,625억원이 편성되었음.[5)]

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5152-301)(중소기업정책실)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재도약지원자금 지원 대상<br>- 예비재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재창업 기업<br>*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운영(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동시 지원)<br><br>○ 변경안 증액분: 500억원(= 285개사 × 1.75억원)<br>- 폐업자 수에 따른 사업 신청 수가 대폭 증가함을 고려하여 증액<br>* 국세청 기준 총사업자 폐업 건수: 86.7만(2022) → 98.6만(2023) → 100.8만(202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내역사업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대비 3,200억원(9.5%) 증액된 3조 6,820억원이 편성되었음.[6)]

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261-302)(중소기업정책실)

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융자)(4151-301)(소상공인경영안정단)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변경안 세부내역]

○ 소상공인지원 중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재해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통상애로, 지역애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거나, 상시 근로자 중 50% 이상이 청년(만 34세 이하)인 경우

○ 변경안 증액분: 3,200억원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700억원 증액

  * 2026년 3월 집행 건수(약 1,200개사)가 전년 동기간 집행 건수(약 500개사) 대비 약 140%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당초 계획액(500억원) 대비 140% 증액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1,000억원 증액(=4,000개사 × 2,500만원)

  * 연간 지원 목표를 2.8만개사로 설정(=2025년 전체 신청건수 ÷ 접수규모 배수(2.5))하여, 당초 계획 목표(2.4만개사) 대비 초과분인 4,000개사를 초과 지원

  * 지원 단가 2,500만원 =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평균 지원금액

-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억원 증액(=4,167개사 × 3,600만원)

  * 전년 동기 대비 청년층 자금 수요가 30% 가량 급증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 지원 관련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약 4,100개사 추가 지원

  * 지원 단가 3,600만원 = 2025년 청년고용연계자금 평균 지원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변경안에서 증액된 융자사업의 한도, 기간, 금리 등은 아래와 같음.

[2026년 변경안에서 증액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자사업]

| 구분 |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 | 10억원(3년 15억원) | 5년 | 기준금리 + 0.5%p |
| | 재해중소기업 | 10억원(3년 15억원) | 5년 | 1.9% 고정금리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 | 30억원(운전 10억원) | 10년(시설), 5년(운전) | 기준금리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60억원(운전 5억원) | 10년(시설), 5년(운전) | 기준금리 - 0.3%p |
| 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자금 | 60억원(운전 5억원) | 10년(시설), 6년(운전) | 기준금리 |
| 소상공인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 | 7천만원 | 5년 | 기준금리 |
| | 신용취약소상공인 | 3천만원 | 5년 | 기준금리 + 1.6%p |
| | 청년고용연계 | 7천만원 | 5년 | 기준금리 |

주) 변경안에서 증액된 세부사업 중 증액된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융자사업에서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내역사업 중 ‘상생성장지원자금’과 내내역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 ‘재도전특별자금’ 등의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였음. 특히 상생성장지원자금 사업의 경우 당초 1,000억원(2,000개사 ×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말 기준 실적은 44억원(83개사 × 5,300만원)를 지원하는 데에 그쳤음.

[2025년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 건수 | | 금액 | | |
|---|---|---|---|---|---|
| | 계획(최종) | 실적 | 계획(당초) | 계획(수정) | 실적 |
| 일반경영안정자금 | 27,400 | 48,543 | 12,200 | 12,200 | 17,718 |
| 특별경영안정자금 | 41,000 | 55,724 | 16,000 | 17,900 | 16,550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난) | | | 1,000 | 1,000 | 1,704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 | | | 3,500 | **3,500** | **796**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 | 5,000 | 7,400 | 8,405 |
| 대환대출 | | | 2,000 | 2,000 | 1,705 |
| 재도전특별자금 | | | 2,500 | **2,000** | **1,325**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 500 | 500 | 627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 1,500 | 1,500 | 1,988 |
| 성장기반자금 | 19,000 | 13,759 | 8,500 | 8,500 | 7,531 |
| 상생성장지원자금 | 2,000 | 83 | 1,000 | **1,000** | **4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계획 대비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사업 수요로 보임. 예컨대 상생성장지원자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대출 금리 또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0.2%p 수준으로 타 지원사업 대비 메리트가 크지 않았던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하였음.

따라서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과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설정하지 않아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예컨대 재도전특별자금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를 2,5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3차례에 걸쳐 968억원으로 계획액을 감액하였는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다시 사업규모를 2,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제1회 변경안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가, 5월 기준 실집행액이 408억원(16.3%)에 불과함에 따라 비로소 제2회 변경안에서 500억원을 감액하였음.

그러나 제2회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업규모(2,000억원)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 수준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결국 연말 기준 집행액은 1,325억원(53.0%)에 그쳐 계획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발생하였음.

[2021~2025년 재도전특별자금 계획 대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 연도 | 당초 계획액(A) | 수정액 | 집행액(B) | 집행률(=B/A) |
|---|---|---|---|---|
| 2021 | 900 | 297 | 297 | 33.0 |
| 2022 | 1,400 | 243 | 243 | 17.4 |
| 2023 | 2,000 | 608 | 529 | 26.4 |
| 2024 | 2,500 | 968 | 902 | 36.1 |
| 2025 | 2,500 | 2,000 | 1,325 | 53.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집행실적을 토대로 재도전특별자금 등의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일부 융자사업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설정에 관한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예컨대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의 경우 폐업자 수에 따른 사업 신청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500억원(285개사 × 1.75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나, 이 사업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 기업 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증액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기준 총사업자 폐업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의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액된 1,000억원이므로, 이번 변경안을 통해 500억원만큼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500억원만큼 감액된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설정되는 것임.

[2023~2025년 재창업자금 지원 실적]

(단위: 개, 억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지원 기업 수 | 470 | 521 | 741 |
| 지원 금액 | 750 | 1,000 | 2,000 |
| 자금 집행률 | 100.0 | 100.0 | 1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사업의 경우도 2026년 3월 집행 건수(약 1,200개사)가 전년 동 기간 집행 건수(약 500개사) 대비 약 140%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계획액을 올해 당초

계획(500억원) 대비 140% 증액 변경하고 있으나, 이는 올해 당초 계획액이 전년(3,500억원)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증액의 근거와 증액 규모 간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히 설정하지 않으면, 2025년 재도전특별자금의 사례와 같이 추후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변경함으로써 계획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부실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출부실이 미래로 이연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주요 융자사업의 연도별 부실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재해),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등의 부실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등의 부실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2022년) 대비 높은 부실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주요 융자사업의 연도별 부실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재해) | 신규대출액 | 800,000 | 360,000 | 258,900 | 235,000 | 550,000 |
| | 대출잔액 | 2,486,058 | 2,541,744 | 2,231,181 | 1,750,664 | 1,648,473 |
| | 부실금액 | 53,684 | 86,911 | 122,825 | 109,718 | 91,103 |
| | 부실률 | **2.16** | **3.42** | **5.50** | **6.27** | **5.53**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기업글로벌화) | 신규대출액 | 350,000 | 380,000 | 150,000 | 134,370 | 282,450 |
| | 대출잔액 | 786,011 | 1,056,232 | 1,011,535 | 877,851 | 829,427 |
| | 부실금액 | 11,918 | 16,465 | 39,693 | 35,697 | 35,153 |
| | 부실률 | **1.52** | **1.56** | **3.92** | **4.07** | **4.24**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지원) | 신규대출액 | 1,400,000 | 1,300,000 | 2,030,000 | 1,835,800 | 1,535,800 |
| | 대출잔액 | 3,668,113 | 3,613,052 | 3,911,963 | 4,228,601 | 4,203,031 |
| | 부실금액 | 204,167 | 120,505 | 164,887 | 180,521 | 208,019 |
| | 부실률 | **5.57** | **3.34** | **4.21** | **4.27** | **4.95** |
|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 신규대출액 | 100,000 | 100,000 | 75,000 | 100,000 | 200,000 |
| | 대출잔액 | 459,087 | 472,703 | 452,000 | 424,819 | 472,459 |
| | 부실금액 | 42,966 | 30,474 | 38,904 | 43,154 | 36,313 |
| | 부실률 | **9.36** | **6.45** | **8.61** | **10.16** | **7.69** |
| 소상공인지원 (신용취약소상공인) | 신규대출액 | - | - | 814,900 | 736,900 | 840,500 |
| | 대출잔액 | - | - | 811,500 | 1,372,400 | 1,786,900 |
| | 부실금액 | - | - | 100,700 | 258,000 | 296,100 |
| | 부실률 | - | - | **12.41** | **18.80** | **16.57** |

주) 대출잔액, 부실금액, 부실률 등은 직접대출 건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주요 융자사업별 한계기업 대출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출잔액 대비 한계기업 대출잔액 비중은 2023년 3.28%, 2024년 5.56%, 2025년 6.15%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시기 대비 한계기업 대출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증액된 주요 융자사업별 한계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대출잔액(A1) | 2,580,507 | 2,580,082 | 2,232,793 | 1,752,201 | 1,649,514 |
| | 한계기업대출잔액(B1) | 80,526 | 60,581 | 66,402 | 102,887 | 83,706 |
| | 비중(=B1/A1) | **3.12** | **2.35** | **2.97** | **5.87** | **5.07** |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 대출잔액(A2) | 1,116,508 | 1,479,118 | 1,457,326 | 1,324,781 | 1,396,972 |
| | 한계기업대출잔액(B2) | 34,440 | 32,767 | 43,526 | 65,139 | 67,453 |
| | 비중(=B2/A2) | **3.08** | **2.22** | **2.99** | **4.92** | **4.83** |
|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 대출잔액(A3) | 6,911,965 | 7,320,443 | 7,597,235 | 7,546,645 | 7,234,072 |
| | 한계기업대출잔액(B3) | 223,572 | 174,621 | 258,327 | 413,421 | 457,620 |
| | 비중(=B3/A3) | **3.23** | **2.39** | **3.40** | **5.48** | **6.33** |
| 재도약 지원자금 | 대출잔액(A4) | 936,567 | 1,116,506 | 1,275,804 | 1,474,829 | 1,760,215 |
| | 한계기업대출잔액(B4) | 39,810 | 42,022 | 51,422 | 92,127 | 131,283 |
| | 비중(=B4/A4) | **4.25** | **3.76** | **4.03** | **6.25** | **7.46** |
| 계 | 대출잔액(A5) | 11,545,547 | 12,496,149 | 12,563,158 | 12,098,456 | 12,040,773 |
| | 한계기업대출잔액(B5) | 378,348 | 309,991 | 419,677 | 673,574 | 740,062 |
| | 비중(=B5/A5) | **3.28** | **2.48** | **3.34** | **5.57** | **6.15** |

주 1) 한계기업: 직전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 기업
2) 직접대출 건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부실률 및 한계기업 대출 비중이 유지되는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만기연장으로 이연된 잠재적 부실채권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재창업자금, 수출기업글로벌화 등의 사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해 부실률이 높아졌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요인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 조치가 2025년 9월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만기 재연장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부실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부실이 대규모로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있음.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조치 현황]

| 구분 | 기간 | 대책 | 관련 지침 |
|---|---|---|---|
| 최초 | 20.4.1.~<br>20.9.30.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br>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br>(2020.3.19.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2020.3. 중기부) |
| 1차<br>연장 | 20.10.1.~<br>21.3.31. |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br>유예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br>(2020.8.27.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0.9. 중기부) |
| 2차<br>연장 | 21.4.1.~<br>21.9.3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br>대상의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br>이자상환 유예조치(2021.3.2.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1.3. 중기부) |
| 3차<br>연장 | 21.10.1.~<br>22.3.31.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br>(2021.9.16.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1.9. 중기부) |
| 4차<br>연장 | 22.4.1.~<br>22.9.30.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br>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br>(2022.3.23. 금융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br>운용지침 개정(2022.3. 중기부) |
| 5차<br>연장 | 22.10.1.~<br>25.9.30.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br>지원방안(2022.9.27. 금융위) |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br>보증운용 지침(2022.9. 중기부) |
| 2026. 3. 현재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br>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br>점검회의 개최(2025.9.25. 금융위) | 전액 만기연장조치 종료에 따른<br>후속업무 지침(2025.9. 중기부) |

자료: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단기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을 비롯한 취약 부분의 부실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심사 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부실이 미래로 이연·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3.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정부는 중동발 공급망 경색, 고유가 등 대외환경 변화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교부하는 출연금 규모를 증액 편성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7]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00억원(125.0%) 증액된 1,800억원이 편성되었음.[8]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9]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00억원(166.7%) 증액된 1,600억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신용보증기금 출연 | - | 100,000 | 80,000 | 180,000 | 100,000 | 125.0 |
| 기술보증기금 출연 | 40,000 | 110,000 | 60,000 | 160,000 | 100,000 | 166.7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7)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8) 일반회계-신용보증기금 출연(1231-881)(중소기업정책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정부의 출연금

10) 일반회계-기술보증기금 출연(1231-882)(창업벤처혁신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용보증기금에 교부하는 출연금의 증액 목적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된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공급규모를 약 2.5조원만큼 확대(3.0조원 → 5.5조원)하는 것이며, 기술보증기금에 교부하는 출연금의 증액 목적은 신설 예정인 ‘중동 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약 1.2조원 예상) 등을 공급하는 것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증액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 세부내역]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증액분: 1,000억원

- 위기대응 특례보증 공급규모 확대(중동 상황으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약 2.5조원

* (**정부출연 1,0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1,000억원) × 보증배수 12.5

○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증액분: 1,000억원

- 추경안 확정 후 신설 예정인 ‘중동 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 공급: 약 1.2조원

* **정부출연 1,000억원** × 보증배수 1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기대응 특례보증 및 중동 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안) 관련 주요 내용]

| 구분 | 위기대응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중동 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안(기술보증기금) |
|---|---|---|
| 지원 조건 | 美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산업위기대응지역 피해기업, 재난지역 피해기업,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추가) | 중동 직접 수출기업, 중동산 원유 공급망 붕괴 피해 원자재 수요기업(석유, 화학, 플라스틱 등),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환율, 물류비 등)로 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
| 보증비율 | 90% | 95~100%(직접피해기업), 90%(간접피해기업) |
| 보증료율 | 0.5%p 차감(관세/중동), 0.3%p 차감(그 외) | 0.3~0.4%p 차감(직접피해기업), 0.2%p 차감(간접피해기업) |
| 보증한도 | 운전자금: 5억원(관세/중동), 3억원(그 외) 시설자금: 소요분 | 30억원 |
| 특이사항 | 보증금액에 따라 강화되는 내부심사 절차를 완화하여 신속 지원 예정 | 중동 수출 비중, 산업별 공급망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동 상황과 밀접 연관 기업을 더 우대하여 지원 예정 |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매년 보증사고율 증가 및 구상권 회수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단기적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별개로 기금관리기관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단기적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실이 기금으로 이전됨으로써 국가 재정에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기금별 보증 및 사고 관련 현황에 따르면 사고율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회수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금운용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사고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이후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보증사고율이 2023년부터 3%대에 진입한 이후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에 대한 회수율은 2021년 3.6%에서 2025년 2.7%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사고 관련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보증잔액(A) | 591,461 | 613,961 | 618,214 | 624,973 | 624,030 |
| 사고금액(B) | 11,604 | 12,556 | 20,468 | 22,750 | 22,966 |
| 사고율(=B/A) | **2.0** | **2.0** | **3.3** | **3.6** | **3.7** |
| 대위변제발생액(C) | 12,111 | 11,509 | 17,205 | 22,283 | 24,362 |
| 대위변제회수액(D) | 4,266 | 3,632 | 3,156 | 3,097 | 2,786 |
| 대위변제액(E=C-D) | 8,831 | 8,812 | 14,912 | 19,837 | 22,150 |
| 대위변제율(=E/A) | 1.5 | 1.4 | 2.4 | 3.2 | 3.5 |
| 구상권 잔액(F) | 94,237 | 82,962 | 76,344 | 80,447 | 84,902 |
| 구상권 회수율 | **3.6** | **3.4** | **3.2** | **3.1** | **2.7** |
| 기본재산(G) | 63,004 | 71,351 | 75,533 | 75,451 | 76,008 |
| 운용배수(=A/G) | 9.4 | 8.6 | 8.2 | 8.3 | 8.2 |

주) 2025년 신설된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제외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도 비슷하게 보증사고율이 2023년부터 4%대에 진입한 이후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에 대한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2025년 2.7%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기술보증기금 보증 및 사고 관련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보증잔액(A) | 262,684 | 265,029 | 279,176 | 284,713 | 299,242 |
| 사고금액(B) | 6,693 | 7,197 | 11,832 | 13,473 | 15,563 |
| 사고율(=B/A) | **2.5** | **2.7** | **4.2** | **4.7** | **5.2** |
| 대위변제발생액(C) | 6,734 | 6,701 | 11,105 | 13,358 | 15,677 |
| 대위변제회수액(D) | 1,945 | 1,892 | 1,853 | 2,040 | 1,919 |
| 대위변제액(E=C-D) | 4,903 | 4,958 | 9,567 | 11,568 | 14,258 |
| 대위변제율(=E/A) | 1.9 | 1.9 | 3.4 | 4.1 | 4.8 |
| 구상권 잔액(F) | 57,090 | 55,773 | 58,881 | 62,526 | 64,082 |
| 구상권 회수율 | **3.4** | **3.5** | **3.2** | **3.1** | **2.7** |
| 기본재산(G) | 29,176 | 33,670 | 34,424 | 33,174 | 31,375 |
| 운용배수(=A/G) | 9.0 | 7.9 | 8.1 | 8.6 | 9.9 |

자료: 기술보증기금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기금관리기관은 매년 보증사고율 증가 및 구상권 회수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4.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가. 개 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 15개 분야의 ‘수출바우처’를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00억원(66.6%) 증액된 2,50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수출지원기반활용 | 127,560 | 217,360 | 150,203 | 250,203 | 100,000 | 66.6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증액분은 ① 중동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물류바우처 500억원과, ② 미국 관세정책변화 등 통상 불확실성 대응 및 대체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촉진을 위한 일반바우처 500억원 등으로 구성됨.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1,000억원
- 물류바우처: 500억원(기업당 지원한도 1,500만원 × 보조율 70% × 약 4,800개사)
- 일반바우처: 500억원(기업당 평균 지원단가 5,760만원 × 보조율 64.6% × 약 1,40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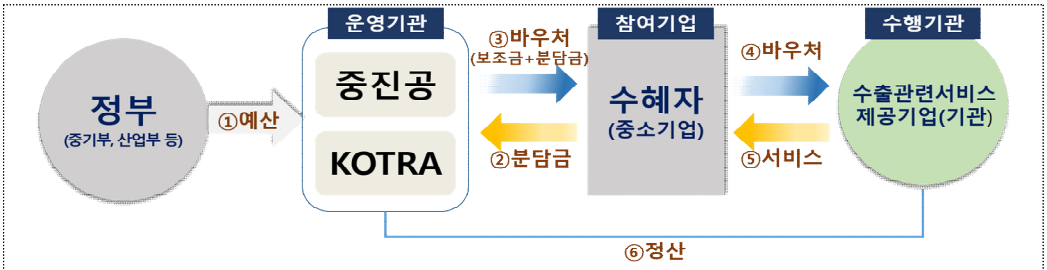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1)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중소기업정책실)

이 사업은 평가·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12]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13]

선발된 참여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지급 후,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부여하고 참여기업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소요비용을 정산함. 지원대상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최대 1억원 및 70%로, 전년도 수출액 및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을 정산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프로세스(참여기업 기준)]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 서비스거래 | 바우처정산 |
|---|---|---|---|---|---|
| 홈페이지 접수 |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참여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계약 ·수행 |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정산 대금 지급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지역 피해기업 대상 긴급 물류바우처를 2개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피해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특히 2026년 1차 수출바우처 선정기업 중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물류지원 한도를 부여할 예정임.

1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

13)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원분을 비롯하여 매년 수출바우처 중 일부가 공시된 사용기간 도과 후에 사용되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수출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차에 걸쳐 공고 및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세 차례 모두 사용기한을 2025년 내로 설정하였음.

[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추진 일정]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 1차 | 2차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 모집 공고 | 23.1.27. | 23.5.10. | 24.1.23. | 24.6.17. | 24.12.30. | 25.4.10. | 25.5.20. |
| 신청기간 | 23.1.16.<br>~23.2.2. | 23.7.1.<br>~24.3.31. | 24.1.23.<br>~24.2.13. | 24.6.17.<br>~24.7.4. | 25.1.7.<br>~25.1.23. | 25.4.10.<br>~25.4.21. | 25.5.20.<br>~25.5.30. |
| 선정일 | 23.3.31. | 23.6.30. | 24.4.29. | 24.8.30. | 25.4.14. | 25.5.21. | 25.7.18. |
| 바우처 사용기간 | 23.4.1.<br>~23.12.31.<br>(9개월) | 23.7.1.<br>~24.1.31.<br>(7개월) | 24.4.1.<br>~24.12.31.<br>(9개월) | 24.7.1.<br>~25.1.31.<br>(7개월) | 25.3.1.<br>~25.11.30.<br>(9개월) | 25.4.1.<br>~25.12.31.<br>(9개월) | 25.6.1.<br>~25.12.31.<br>(7개월) |
| 사업기간 | 23.4.1.<br>~24.2.29.<br>(11개월) | 23.7.1.<br>~24.3.31.<br>(9개월) | 24.4.1.<br>~25.2.28.<br>(11개월) | 24.7.1.<br>~25.3.31.<br>(9개월) | 25.3.1.<br>~26.1.31.<br>(11개월) | 25.4.1.<br>~26.2.28.<br>(11개월) | 25.6.1.<br>~26.2.28.<br>(9개월) |

주 1) 각 연도 1차, 2차는 일반바우처 기준임
2) 2025년도 사업은 2026년 2월 사업기간 종료 이후 현재 정산 진행 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일부 기업이 사업기간을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인지하여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음. 연도별 공시된 사용기간을 도과하여 사용된 수출바우처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 2023년 208억원, 2024년 71억원, 2025년 193억원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용기간(12월 31일까지)을 도과하여 연내 미집행된 수출바우처 규모가 건수 기준 11.6%, 금액 기준 9.7%에 달하였음.

[2023년 이후 연도별 공시된 사용기간을 도과하여 사용된 수출바우처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사용기간 도과 이후 사용된 규모(A) | | 전체 규모(B) | | 비중(=A/B)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기준 | 금액 기준 |
| 2023 | 3,752 | 20,811 | 20,245 | 112,457 | 18.5 | 18.5 |
| 2024 | 1,616 | 7,105 | 19,129 | 103,890 | 8.4 | 6.8 |
| 2025 | 4,229 | 19,291 | 36,613 | 199,008 | 11.6 | 9.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사업기간 종료 후 실제 사업비 정산까지 3개월 이상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2022년 이후 연도별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8월 이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음.

[2022년 이후 연도별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 현황]

| 연도 | 보조사업 완료일 | 결과보고서 제출일 | 정산 후 반납일 |
|---|---|---|---|
| 2022 | 2023. 9. 13. | 2023. 9. 13. | 2023. 9. 15. |
| 2023 | 2024. 8. 27. | 2024. 8. 27. | 2024. 8. 29. |
| 2024 | 2025. 8. 27. | 2025. 8. 27. | 2025. 9. 16. |
| 2025 | 사업 진행 중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위기 대응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수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대응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위주로 바우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분야 간 중복 포함) 2,943개사 중 1,605개사(54.5%)는 2025년 1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그 중 374개사(12.7%)는 2023~2025년 3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수행기관 등록 후 서비스 수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록 후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참여기업으로부터 선호가 낮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 서비스 미제공 수행업체의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부담을 낮추고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

(단위: 개사, 건)

| 구분 | 분야별 수행기관 수 | 서비스 제공 건수 | 서비스 미제공 수행기관 수 | |
|---|---|---|---|---|
| | | | 2025년 | 2023~2025년 |
| 국제 운송 | 289 | 1,808 | 158 | 59 |
| 디자인개발 | 536 | 2,216 | 251 | 43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79 | 88 | 67 | 12 |
| 브랜드개발/관리 | 70 | 173 | 28 | 6 |
| 서류대행/현지등록 | 84 | 187 | 61 | 11 |
| 역량강화 교육 | 50 | 288 | 23 | 4 |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243 | 997 | 161 | 56 |
| 조사/일반 컨설팅 | 274 | 641 | 186 | 51 |
| 통번역 | 59 | 564 | 15 | 4 |
| 특허/지재권 | 368 | 3,133 | 125 | 23 |
| 해외규격인증 | 87 | 631 | 32 | 7 |
| 홍보/광고 | 312 | 246 | 261 | 60 |
| 홍보동영상 | 319 | 230 | 237 | 38 |
| 사후정산 | - | 10,347 | - | - |
| 합 계 | 2,770 | 21,549 | 1,605 | 374 |

주 1) 분야 간 중복 포함(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2) 타 중앙행정기관 소관 수출바우처 수행 실적은 미반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분야 중 국제 운송 분야는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물류바우처가 해당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임.

다만 물류바우처를 제외한 일반바우처의 경우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같은 분야 내에서도 위기 대응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위주로 바우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가. 개 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제조로봇·자동화설비·인공지능 등의 접목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70억원(21.6%) 증액된 4,890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236,076 | 286,923 | 402,056 | 489,056 | 87,000 | 21.6 |
| 제조혁신구축지원 | 221,166 | 270,141 | 317,290 | 392,290 | 75,000 | 23.6 |
| 대중소 상생형 | 30,000 | 34,000 | 40,000 | 115,000 | 75,000 | 187.5 |
| 제조혁신인프라조성 | 11,910 | 13,782 | 12,126 | 24,126 | 12,000 | 99.0 |
|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 - | - | - | 12,000 | 12,000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내내역사업인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대기업 인프라를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 동반성장 및 제조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50억원(187.5%) 증액된 1,15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신규)’**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DX·AX 운영 인력 및 제조AI 솔루션 기업의 전문 AI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1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장비 등 관련 설비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주관기관)이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 전수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함.

14) 일반회계-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중소기업정책실)

이 사업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은 피지컬 AI를 활용하여 공장 전체의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으로, 기존 본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공장 내 단일 공정의 DX·AX 도입을 지원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한편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 내에 신속히 제조AI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과 AI 기술에 대한 동시 이해도가 높은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임.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 공장의 솔루션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는 Track1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개발 및 고도화하는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는 Track2로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임.

대중소 상생형 사업의 증액분 750억원은 본예산의 일반 및 AI트랙 사업과 별개의 제조AX 선도모델 신설 관련 지원비 중 정부 부담분(50%)이고,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운영 사업비 120억원은 Track1(90.5억원), Track2(18억원), 사업운영 및 기타 비용(11.5억원) 등으로 구성됨.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870억원

- 대중소 상생형: 750억원 증액

* 본예산의 일반(300억원) 및 AI트랙(100억원)과 별개로 제조AX 선도모델 신설(50개사 × 30억원 × 50%)

** 사업비 분담비율: 정부 50%, 대기업 10%, 도입기업 40%

** 단가 30억원 산출근거: 데이터 인프라 및 센서 구축 9억원, AI모델 개발 및 적용 7.5억원, 시스템 통합 6억원, 로봇 및 자동화설비 도입 7.5억원 등

-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신규): 120억원

* Track1(90.5억원): 과정운영비 20억원, 훈련수당 8억원, 인턴매칭비 25억원, 인턴십수당 37.5억원

** 과정운영비 산출근거: 1,000명(=10개 사업단 × 100명) × 2억원

** 훈련수당 산출근거: 1,000명 × 40만원 × 2개월

** 인턴매칭비 산출근거: 1,000명 × 수료비율 50% × 500만원

** 인턴십수당 산출근거: 1,000명 × 수료비율 50% × 250만원 ×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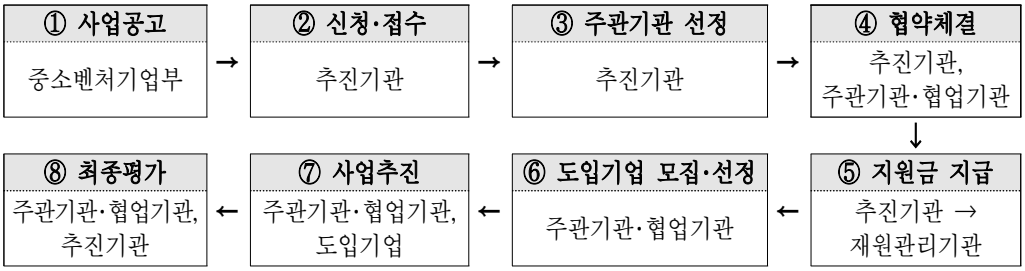
* Track2(18억원): 수행사운영비 3억원, 활용수당 15억원

** 활용수당 산출근거: 200명 × 250만원 × 3개월

* 사업운영 및 기타 비용: 11.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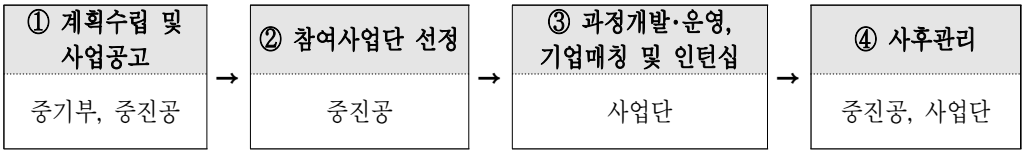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상생형 사업의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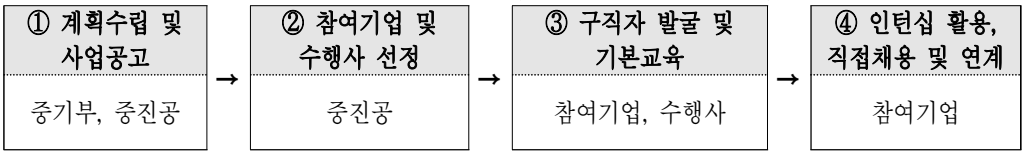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지원 절차]

<Track1: 스마트제조혁신 운영인력 양성·매칭 프로그램>




<Track2: 제조AI 솔루션 미래 전문인력 활용 프로그램>




## 나. 검토의견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27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세부사업계획 수립(4월) → 사업공고(5월) → 사업단 등 선정(6월) → 프로그램 운영(7월 이후) → 최종점검 및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7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여도 훈련 2개월, 인턴 3개월 등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 외에 훈련대상자 모집,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 설계 등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소기업 인턴 채용 과정은 직무 적합성, 지역,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따른 채용 여건 악화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턴과정 참여율 저조 및 이탈률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중간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6.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창업기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초격차 분야별 등 맞춤형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50억 8,000만원(16.3%) 증액된 5,36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창업사업화지원 | 403,567 | 457,567 | 461,838 | 536,918 | 75,080 | 16.3 |
| 창업패키지 | 162,255 | 204,255 | 195,187 | 246,267 | 51,080 | 26.2 |
| 지역창업패키지 | - | - | - | 51,080 | 51,080 | 순증 |
| 창업중심대학 | 77,475 | 77,475 | 88,250 | 112,250 | 24,000 | 27.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내내역사업인 **‘지역창업패키지(신규)’** 사업은 혁신 기술인재가 밀집한 지역(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4대 창업도시로 조성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510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통해 전문인력의 딥테크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40억원(27.2%) 증액된 1,1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증액분은 ① 4개 도시 내에서 이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기업’ 25개사와 ② 타 지역에서 4개 도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이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화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 이전비 및 인건비 등으로 구성됨.

15) 일반회계-창업사업화지원(5132-302)(창업벤처혁신실)

[지역창업패키지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510억 8,000만원 |
| - 지역성장 분야: 317억 2,000만원 |
| * 신산업 분야: 4개 도시 × 15개사 × 3억 5,000만원 = 210억원 |
| * 일반산업 분야: 4개 도시 × 10개사 × 2억 6,800만원 = 107억 2,000만원 |
| - 지역이전 분야: 193억 6,000만원 |
| * 신산업 분야: 4개 도시 × 10개사 × 3억 5,000만원 = 140억원 |
| * 일반산업 분야: 4개 도시 × 5개사 × 2억 6,800만원 = 53억 6,000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사업 상세 추진계획]

| 지원 분야 | | 지원 내용 |
|---|---|---|
| 전주기 지원 | R&D·실증 | · (창경센터) 스케일업을 위한 TIPS(일반트랙 10% 이상) 공급<br>· (지역 연구기관) 기술적 가능성 등 실증 지원 |
| | 사업화·투자 | · (사업화) 지역 특화산업 분야 사업화자금·IR·개방형 혁신 지원<br>· (투자) '지역성장펀드'를 5극 3특(수도권 제외) 권역 중심으로 조성 |
| | 판로·글로벌 | · (판로) 대기업·공공기관 간 개방형 혁신 지원<br>· (글로벌)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허브 프로그램' 연계 |
| 여건 개선 | 인프라 | · (창업) 스타트업 파크(~2030. 10곳), 메이커 스페이스<br>· (투자) 엔젤투자허브(~2030. 14곳), KVIC 지역사무소(~2030. 7곳) |
| | 규제 | · (규제개선) 창업도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
| | 정주 여건 | · 주거·교통·문화 등 범부처 거점 조성사업 연계 |

## 나. 검토의견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이미 일부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창업패키지 사업 중 '지역이전' 분야에서는 지역 이전비, 인건비 등 자금 활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기업 자기부담금 중 일부(일반산업 관련 창업기업은 1,200만원, 신산업 관련 창업기업은 1,500만원)를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이 사업에서 창업도시로 지원할 예정인 4개 도시(대전, 대구, 광주, 울산) 중 일부는 이미 기업유치 관련 조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할 예정인 지역 이전비 등과 유사한 항목을 지원하고 있음.

[창업도시별 기업유치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 주요 지원 항목 | 관련 조례 내용 |
|---|---|---|
| 대전 | 이전보조금, 임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 |
| 대구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등 |
| 울산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등 |

주) 도시별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은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해당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지출증액>

## 7.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신규 펀드의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700억원(20.7%)이 증액된 9,900억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중소기업모태출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 500,000 | 800,000 | 820,000 | 820,000 | 990,000 | 170,000 | 20.7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예산인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고, 민간자본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가 이루어지며, 자펀드는 조성 후 약 4년간 투자되고 5~8년간 운용된 후 청산됨.

2026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사업은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등 분야에 대해 8,200억원이 편성된 바 있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창업열풍 펀드 300억원, 지역성장펀드 1,200억원, 재도전펀드 200억원 등 총 1,700억원을 추가 증액하려는 것임.

1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창업벤처혁신실)

[2026년 모태조합 출자 자펀드 분야별 출자계획]

(단위: 억원)

| 계정명 | 분야명 | 당초 계획 | 제2회 추경안 | 투자 내용 |
|---|---|---|---|---|
| 중진 | NEXT UNICORN PROJECT | 4,000 | 좌동 | AI 등 딥테크 관련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 |
| | LP 플랫폼 | 500 | 좌동 |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투자자 등의 벤처투자 유도 |
| | 글로벌 | 500 | 좌동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
| | **재도전** | **300** | **500** | **재창업기업, 사업전환기업 등 재도약 기업 지원** |
| | 회수활성화 | 300 | 좌동 | 인수합병(M&A) 및 구주매각(세컨더리) 거래 지원 |
| | 임팩트 | 100 | 좌동 | 사회적기업 등 소셜 임팩트 분야 |
| | 여성기업 | 100 | 좌동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여성인 기업 등 |
| 지방 | **지역성장** | **2,000** | **3,200** | **지방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1,000억원 규모 모펀드 2개 추가 조성** |
| 혁신모험 | **창업초기** | **200** | **500** |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 열풍 참여기업 중심으로 벤처투자 유치 지원** |
| 청년 | 청년창업 | 200 | 좌동 | 대표이사가 만39세 이하인 청년기업 등 |
| 계 | | 8,200 | 9,900 (+1,700)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방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1,000억원 규모의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모펀드) 2개를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결성된 모펀드는 60% 내외를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함으로써 지역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임.

창업열풍펀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창업 기업 등 스타트업 열풍 참여기업 중심으로 초기창업기업의 벤처투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임.

재도전펀드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패 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당초 계획 대비 조성 목표를 확대하여 333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임.

[2026년도 변경안을 통해 신규 또는 증액 조성될 펀드 개요]

| |
|---|
| ○ 지역성장 펀드: 3,200억원(1,200억원 증액)<br>- (지원내용)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방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2,000억원 규모의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모펀드) 추가 조성<br>* 1,000억원 규모 모펀드 2개 조성 계획, 2030년까지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조성 계획<br>* 발굴·보육 역량이 우수한 지역AC 전용펀드와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 보완 예정<br>- (산출근거) 1,200억원 = 모펀드당 평균 600억원 투자 × 2개 지역 내외<br><br>○ 창업열풍 펀드: 500억원(300억원 증액)<br>- (지원내용)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창업 기업 등 스타트업 열풍 참여기업 중심으로 초기창업 기업의 벤처투자 유치 지원<br>*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창업가 등에 총 100억원(20%) 이상 투자 예정<br>- (산출근거) 300억원 = 5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60% 출자<br><br>○ 재도전 펀드: 500억원(200억원 증액)<br>- (지원내용)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패 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전용 벤처펀드 조성<br>* 기존에는 경영악화 기업도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으나, 향후에는 실패창업자에 집중 투자 예정<br>- (산출근거) 200억원 증액분 = 333억원 규모 펀드 조성 × 60% 출자<br><br>□ 추진일정(안)<br>○ 출자 공고(4월) → 운용사 선정(6월) → 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9월 이후)<br>* 지역성장펀드는 3월 중으로 선정된 후순위 협상대상자 중 추가 선정 및 모펀드 결성(하반기)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이번 변경안을 통해 신설 예정인 지역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소관 국민성장펀드 중 지역성장 관련 부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펀드 운용 시 국민성장펀드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이번 변경안을 통해 신설될 예정인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방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2,000억원 규모의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사업으로는 이미 2026년 예산에 편성된

금융위원회 소관 ‘국민성장펀드[17]’가 존재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양자 간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국민성장펀드 또한 지역성장펀드와 마찬가지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을 주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 40%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극·3특 전략 및 지역 우대 정책과의 연계도 도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모태조합과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방식(직접/간접)이나 지원분야(전략분야/소외분야), 성장단계 등이 상이하여 두 정책금융 상품 간 유사중복이나 간섭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민성장펀드 및 중소기업모태조합 비교]

| 구분 | 국민성장펀드 | 중소기업모태조합 |
|---|---|---|
| 지원(투자) 방식 |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 간접투자 중심 |
| 분야 | 10대 첨단 전략 산업, 90개 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초기창업·청년·여성 등 시장 소외 분야, 콘텐츠·스포츠·관광·영화·해양 등 |
| 성장 단계 | 중소·중견·대기업, 인프라 등 메가프로젝트 중심 |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
| 재원 | 정책자금(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일부 펀드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 | (모태펀드) 정부 부처 재정 출자 (모태자펀드) 모태펀드, 민간자금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상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약 60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에 먼저 배분되어 주요 지역투자를 선점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역성장펀드 운용 시 국민성장펀드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차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17)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에 제공하여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펀드로, 2026년부터 1조원 규모의 한국산업은행 출자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이며,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의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예컨대 중소기업모태조합은 기업 성장단계 중 초기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중견기업·대기업에 대규모 융자·출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조합과 국민성장펀드가 기업 성장단계별 정책금융 지원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지출증액>

## 8.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신규)’** 사업은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소상공인 성장지원 | 265,085 | 1,927,379 | 621,243 | 621,243 | 661,243 | 40,000 | 6.4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 - | - | - | - | 40,000 | 40,000 | 순증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의 신설 사유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관광·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문화 분야 창업이 충분한 성공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지역 기반 창업가와 혁신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하여 상품의 시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이 사업의 계획액 400억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익모델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과제를 공고 후, 400개 과제에

1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정책실)

대해 과제마다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는 푸드, 뷰티, 패션, 홈&리빙, K-컬쳐, 웰니스, 조향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신규): 400억원 |
|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유사사업의 지원 현황과 경쟁률을 고려하여 400개 × 1억원 지원 |
| * 신청규모: 강한소상공인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백년소공인 등에서 지원한 과제 수 1,610여 개를 반영 |
| * 경쟁률: 2026년 시범운영 결과 50개 모집에 196개 신청(3.92:1)한 것을 고려함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지원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사후관리 |
|---|---|---|---|---|---|---|---|---|---|---|
| 중기부 | | 소상공인→ 전문기관 | | 평가위원회 | | 전문기관, 주관기관 | | 주관기관 | | 전담기관, 주관기관 |

## 나. 검토의견

**이번 변경안을 통해 신설 예정인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중 일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번 변경안을 통해 신설될 예정인 이 사업의 변경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기존 ‘강한소상공인 지원 사업’, ‘로컬기업 육성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며, 목적 및 지원 내용도 유사한 측면이 있음.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과 유사 사업 간 비교]

| 구분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 강한 소상공인 지원 | 로컬기업 육성 |
|---|---|---|---|
| 목적 | 생활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기반 성장 촉진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생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앵커스토어·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원대상 | 지역 유망 소상공인 및 로컬창업가 |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 지원내용 | 생활문화 혁신 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생산 지원 (최대 1억원) | 소상공인이 로컬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BM고도화, 사업화 지원 (최대 1억원) | 로컬기업 발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및 사업화 지원 (최대 5천만원) |
| 수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 및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소상공인의 기업가형 전환, 글로벌 소비재 시장 진출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로컬 브랜드 생태계 구축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9.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예방책 마련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재창업까지의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246억원(8.1%)이 증액된 3,30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소상공인 재기지원 | 274,806 | 360,455 | 351,649 | 351,649 | 376,249 | 24,600 | 7.0 |
| 희망리턴 패키지 | 245,010 | 311,492 | 305,550 | 305,550 | 330,150 | 24,600 | 8.1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희망리턴패키지는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음. 이 중 ①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폐업지원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것이고, ②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은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기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임.

이번 변경안에서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207억원(사업정리컨설팅 27억원, 점포철거비 지원 180억원),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이 39억원(경영진단 15억원, 사업화PM지원 24억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1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소상공인정책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증액분: 246억원 |
|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증액분: 207억원 |
| * 사업정리컨설팅 27억원(=3,000건 × 90만원), **점포철거비 지원 180억원(=3,000건 × 600만원)** |
| - 재기사업화지원 사업 증액분: 39억원 |
| * 경영진단 15억원(=1,200건 × 125만원), 사업화PM지원 24억원(=1,200건 × 200만원) |
| ** 사업화PM지원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단가(=횟수)를 50% 감액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임대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평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것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1,800억원(=3만건 ×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실 위험이 높은 선제적 지원대상 3,000명에 대한 점포철거비 추가 반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18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임대차 점포에 한정)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평(3.3$m^2$) 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② 점포철거비 지원 기수혜자, ③ 유사사업 수혜자,
  ④ 주거용도 건축물, ⑤ 사업장 이전, ⑥ 지원 제외업종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신청서류 제출(1차) | 신청서류 검토 | 점포철거 | 정산서류 제출(2차) | 정산서류 검토 | 비용지급 | 현장점검 |
| 소상공인 (온라인) | 소진공 (재기플래너)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온라인) | 소진공 (재기플래너) | 소진공 →소상공인 | 공단 (재기플래너)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사업액의 조기 소진 및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하여 정책대상자에게 적시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평당 지원 단가 및 최대 지원 한도의 지속적 상향에 따라 실제 집행 건수가 2021년 15,679건에서 2025년 50,95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계획액 또한 2021년 195억원에서 2025년 1,795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사업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2021년과 2024년에는 실집행액이 계획액을 초과하여 타 사업에서의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급기야 2024년과 2025년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었음.

[연도별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 1평당 지원단가 | 최대 지원 한도 | 계획액 | 실집행액 | 목표 건수 | 실제 건수 | 사업 마감일 |
|---|---|---|---|---|---|---|---|
| 2021 | 8만원 | 200만원 | 19,500 | 23,508 | 9,750 | 15,679 | - |
| 2022 | 8만원 | 250만원 | 33,200 | 30,487 | 13,280 | 16,323 | - |
| 2023 | 13만원 | 250만원 | 49,800 | 48,852 | 20,000 | 22,404 | - |
| 2024 | 13만원 | 250만원 | 54,700 | 62,439 | 22,000 | 29,533 | 2024-11-07 |
| 2025 | 20만원 | 400→600만원 | 179,545 | 179,545 | 50,613 | 50,952 | 2025-11-21 |

주 1) 계획액 및 목표 건수의 경우 각 연도 추경 기준으로 작성
2) 2025년 목표 건수의 경우 제2회 변경안에 따른 지원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지원은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와 같이 실집행액이 계획액을 초과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연도까지 기다리거나, 기금운용계획을 추가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일견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잦은 변경은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심의한 계획안 및 변경안의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 간 괴리를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하여 정책대상자에게 적시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계획 변경은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단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점포철거비 사업의 1평당 지원단가와 최대 지원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점포철거 소상공인 및 철거업체가 철거비용을 실제 소요된 금액 대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또한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점포철거비 지원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2024년 간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2026년 4월 1일부터 점포철거비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단의 후속 관리조치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신고센터의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6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또한 지원요건에 따르면 유사 사업의 수혜자는 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련 사업의 지원 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2월 유사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포철거비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였고, 총 7건을 적발 후 환수절차에 착수하였음.

[2026년 2월 점포철거비 중복 수령 적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 지원금액 | 지원금 수령일자 | | 중복 수령 적발일자 | 조치 결과 |
|---|---|---|---|---|---|
| | | 지방자치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 | |
| 1 | 2.2 | 2024-10-24 | 2025-04-29 | 2026-02-20 | 환수 예정 (사전처분통지 발송) |
| 2 | 2.2 | 2024-08-27 | 2025-07-24 | 2026-02-20 | |
| 3 | 2.3 | 2025-06-30 | 2025-07-30 | 2026-02-12 | |
| 4 | 2.0 | 2025-07-08 | 2025-08-18 | 2026-02-10 | |
| 5 | 1.0 | 2025-07-03 | 2025-07-30 | 2026-02-20 | |
| 6 | 0.5 | 2025-08-14 | 2025-08-26 | 2026-02-12 | |
| 7 | 3.0 | 2024-08-27 | 2025-04-28 | 2026-02-20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점포철거비를 중복으로 수령한 소상공인들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수령일자와 중복 수령 적발일자의 간격을 살펴보면, 2025년 8월에 지원금을 수령한 2건을 제외한 5건은 중복 수령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적발되지 않았음. 즉, 여전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간 지원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기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점포철거비 이상징후 탐지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유사 사업 지원정보를 기관 간 사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처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7,018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예 산 | 6,459 | 6,459 | 7,018 | 7,018 | - | - |
| 합 계 | 6,459 | 6,459 | 7,018 | 7,018 | - | -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6,40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원(1.5%) 증가함.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추경안 (B) | 증감 (B-A) | (B-A)/A |
| 예 산 | 5,566 | 5,566 | 6,308 | 6,403 | 95 | 1.5 |
| 합 계 | 5,566 | 5,566 | 6,308 | 6,403 | 95 | 1.5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 | - | 7,018 | 7,018 | - | -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7,811 | 7,811 | - | - | - | - |
| 합 계 | 7,811 | 7,811 | 7,018 | 7,018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추경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40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원(1.5%) 증가함.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 | - | 6,236 | 6,331 | 95 | 1.5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7,811 | 7,811 | - | - | - | - |
|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72 | 72 | 72 | 72 | - | - |
| 합 계 | 7,883 | 7,883 | 6,308 | 6,403 | 95 | 1.5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 규모(총계 기준)는 95억원임.[2)]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여 수출기업의 매출증가·정부의 세수 확보 및 국가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신규로 95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추경안 |
|---|---|---|
| [일반회계] | | |
| 1 |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 9,500 |
| 합 계 | | 9,500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신규):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정부 소유의 K-브랜드[3] 증명표장을 국내 및 해외에 등록하여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9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 - | - | - | 9,500 | 9,500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70개국에 정부 인증 표장을 출원하기 위해 28억원을 편성하였고, ②해외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품인증 기술 도입지원 35억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③국내 및 해외 홍보비 25억원, ④민간위탁 전담기관 인건비 및 사업운영경비 4억원을 편성하였음.

---

3) ‘K-브랜드’는 대한민국(Korea)과 브랜드(Brand)의 합성어로, ‘한국산’ 및 ‘한류’등과 관련된 브랜드를 의미함. 이 사업 적용대상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한국 내(內) 생산제품이나, 한국기업의 해외 생산제품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4) 일반회계-K-Brand 정부 인증제도 운영(신규)(1531-308)(지식재산분쟁대응국)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정부 증명표장 국내·외 출원 (28억원)**<br>- 4,000만원(해외 1개국 평균 출원 비용)×70개국=28억원<br>○ **해외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 구축 (38억원)**<br>- (정품인증기술 도입지원) 35억원 = 7원×10억개×0.5(기업 자부담률 50%)<br>-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3억원<br>○ **국내 및 해외(70개국) 홍보비 (25억원)**<br>- 영상제작 및 해외 주요 매체·SNS 송출 등 25억원<br>○ **전담기관 운영비 (4억원)**<br>- (인건비) 3억 5,000만원=10명×500만원×7개월<br>- (사업운영경비) 5,000만원 |

자료: 지식재산처

## 나. 검토의견

**첫째,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초기에 재정 투입과 정부 주도의 운영을 통해 제도기반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행정부담과 재정부담의 심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가짜 K-브랜드 유통 규모는 2021년 기준 최대 약 11조원으로 추정되며,[5] 기업 피해 외에도 국가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6]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도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경우 타국 정부의 수사·단속 등 집행 비협조, 소송비용 부담 및 낮은 손해배상액[7] 등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권리자인 'K-브랜드 국가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차원의 K-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5)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총 국제 교역액은 2021년 최대 11조 960억원(미화 9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정품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OECD, 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2024.7.)

6)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매출(약 7조원), 제조업 일자리(약 1.4만개) 및 정부 세수(약1.8조원)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7)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심 기준으로 중국 위조상품 침해 손해배상액은 A사 4,700만원, B사 3,750만원, C사 6,550만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재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증명표장을 만들고 출원·관리하여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부터 침해 시 권리구제까지 정부가 모두 대응하고, 기업 제품에 증명표장을 부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재정 소요가 발생함.

권위를 가진 정부가 증명표장의 권리자로서 인증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유통단속과 통관보류 등을 요청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8] 모든 과정에 정부가 직접 관여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증명표장의 부착·활용에 재정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9]

유사한 증명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간협회가 인증 주체로 기능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 1986년 정부가 직접 증명표장을 도입·운영하였으나, 2002년 비영리단체 AMCL로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하였음.[10]

[해외 증명표장 사례]

| 국가명 | 표장 | 인증 주체 | 유효 기간 | 인증기준 |
|---|---|---|---|---|
| 호주 | AUSTRALIAN MADE | 민간 협회 | 1년 (매년 재갱신) | · 호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야하고, 제조·생산 비용의 50% 이상이 호주 내에서 발생해야 함 |
| | PRODUCT OF AUSTRALIA | | | · 중요한 원재료·구성요소의 원산지가 호주이며, 생산·제조 등 (거의) 모든 공정이 호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 프랑스 | ORIGINE FRANCE GARANTIE | 민간 협회 | 3년 (매년 정기검사) | ·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프랑스에서 취득되고, 프랑스 내 생산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의 50% 이상일 것 |
| | SERVICE FRANCE GARANTI | | | · 서비스 핵심 인력 90% 이상이거나 고객 접점 인력 90% 이상이 프랑스 내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었을 것 |
| 영국 | MADE IN BRITAIN / MADE IN BRITAIN NORTHERN IRELAND | 민간 협회 | 1년 (매년 인증필요) | · 제조업 : 영국 내 제조시설에서 원재료의 실질적 변형·공정을 거친 제품을 생산<br>· 소프트웨어 : 개발부터 유지보수 공정까지 영국 내에서 발생 |

자료: 지식재산처

8) 한국 지식재산처와 해외 유사기관 간 소통에서도 위조상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9) 이론적으로 정부 중심의 운영은 시장 변화 대응에 대한 유연성을 저하시켜 기업 참여 확대와 제도 확산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10) AMCL(Australian Made Campaign Limited)은 2002년 양도협약(Deed of Assignment)과 관리협약(Management Deed)등을 통해 정부와의 연계는 일정하게 유지하였음.

이러한 운영방식의 변화는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증명표장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자체재원으로 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보임.

지식재산처는 K-Brand의 위조상품 피해가 심각하므로 제도 초기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기반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초기 정부지원이 제도의 안정화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행정부담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증명표장 없는 K-Brand 위조제품이 확산되어 인증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증명표장이 대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QR코드 내 정품인증을 위한 비가시성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증명표장을 만들고, 해외 소비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정품 여부 확인 결과를 정부가 모니터링 하는 것임.

공식적인 증명표장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할 경우 QR코드를 통해 인증사이트로 연결되고, 제품의 비가시성 고유코드를 통해 인증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인증되는 구조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 증명표장 활용 기술(예시)]




주) 위 사진의 증명 표장은 예시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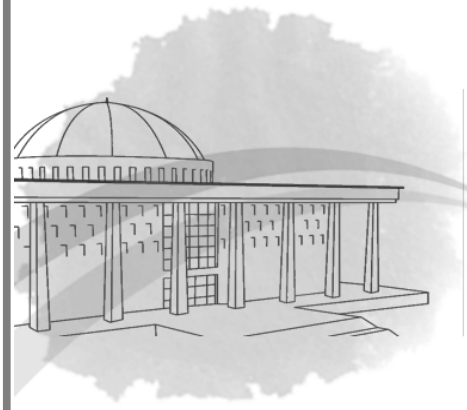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만약 소비자의 인증 실패와 동일 코드의 반복적인 인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위조 상품의 생산·유통지역으로 의심하고[11] 지식재산처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그런데 이와 같은 인증·모니터링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증명표장이 대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공신력을 갖고 있어야 함. 인지도와 공신력이 없는 경우 QR 코드 없는 위조상품들이 확산되어 증명표장을 통한 인증시스템이 무력화되기 때문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해외 소비자·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증명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증명표장의 인지도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 좁은 지역에서 반복인증 시 생산거점을 의심하고 넓은 지역에서 반복인증 시 유통지역을 의심하는 것임.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10조 9,352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예산은 1조 4,311억원, 기금은 109조 5,042억원으로 각각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3,957 | 13,957 | 14,311 | 14,311 | - | - |
| 기 금 | 993,621 | 993,621 | 1,095,042 | 1,095,042 | - | - |
| 합 계 | 1,007,578 | 1,007,578 | 1,109,352 | 1,109,352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정유진 예산결산조사관 eugene@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37조 8,21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263억원(0.2%) 증가함.

예산은 78조 2,68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263억원(0.4%) 증가한 반면, 기금은 59조 5,53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723,680 | 720,347 | 779,419 | 782,682 | 3,263 | 0.4 |
| 기 금 | 531,229 | 531,739 | 595,530 | 595,530 | - | - |
| 합계 | 1,254,909 | 1,251,576 | 1,374,949 | 1,378,212 | 3,263 | 0.2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조 4,311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12,798 | 12,798 | 12,947 | 12,947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 | 8 | 8 | 8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32 | 732 | 899 | 899 |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420 | 420 | 457 | 457 | - | - |
| 합 계 | 13,958 | 13,958 | 14,311 | 14,311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조 2,6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263억원(0.4%) 증가함.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705,565 | 702,129 | 732,668 | 735,832 | 3,164 | 0.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6,234 | 16,337 | 44,817 | 44,916 | 99 | 0.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881 | 1,881 | 1,933 | 1,933 | - | - |
| 합 계 | 723,680 | 720,347 | 779,418 | 782,681 | 3,263 | 0.4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9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3,262억 7,700만원임.[2)]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주요 사회복지시설들의 업무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66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추경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6,602 |
| 2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2,065 |
| 합 계 | | 8,667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828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9,055,324 | 9,217,263 | 10,282,429 | 10,590,122 | 307,693 | 3.0 |
| 1 | 의료급여 | 8,688,201 | 8,822,328 | 9,839,997 | 10,122,834 | 282,837 | 2.9 |
| 2 | 긴급복지 | 350,109 | 373,007 | 405,254 | 418,329 | 13,075 | 3.2 |
| 3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 7,655 | 7,655 | 14,586 | 16,729 | 2,143 | 14.7 |
| 4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 4,261 | 4,261 | 5,909 | 9,288 | 3,379 | 57.2 |
| 5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4,243 | 4,243 | 16,280 | 17,567 | 1,287 | 7.9 |
| 6 | 보험정책사업관리 | 855 | 5,769 | 403 | 5,375 | 4,972 | 1,233.7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39,090 | 49,439 | 43,607 | 53,524 | 9,917 | 22.7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7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9,090 | 49,439 | 43,607 | 53,524 | 9,917 | 22.7 |
| 합 계 | | 9,094,414 | 9,266,702 | 10,326,036 | 10,643,646 | 317,610 | 3.1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 규정의 신설 또는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 전환 등 기능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둘째,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연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신규):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 전환 등 기능 개편 필요

### 가. 개 요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른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에 20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6년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 - | - | 2,065 | 2,065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4)]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

3) 일반회계-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3350-302)(건강정책국)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

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는 경우 그 자격을 얻게 되며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음.

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일차의료취약지[5]에 소재하고 있는 193개 보건지소(69개 시·군)에 1명씩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57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비용 3억 6,400만원과 150명의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17억 100만원이 편성됨.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며 국비지원율은 50%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363.6백만원 |
| - 기존 보건진료전담공무원(43명) 보강교육 등: 38.7백만원 |
| · (보강교육) 0.6백만원×43명×50%(보조율) = 12.9백만원 |
| · (임상교육) 0.6백만원×43명×2회×50% = 25.8백만원 |
| - 직렬 전환 예정자(114명) 직무교육 등: 324.9백만원 |
| · (신규교육) 4.5백만원×114명×50% = 256.5백만원 |
| · (임상교육) 0.6백만원×114명×2회×50% = 68.4백만원 |
| ○ 기간제대체인력(150명, 월 3.5백만원): 1,701백만원 |
| - 전환 예정자(114명) 6개월 교육 중 대체인력 |
| · 114명×3.5백만원×6월×50% = 1,197백만원 |
| - 별도 기간제 채용 예정 인력(36명) |
| · 36명×3.5백만원×8월×50% = 504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에서 의료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과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 전환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2024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

---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5)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을 말함.

부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 자격을 갖춘 인원이 줄어들고 복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현역병 입대가 늘어나면서[6] 2026년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전년 대비 37.9% 줄어든 587명에 불과함.

읍·면 단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 개소수는 2025년 730개(전체의 59.5%)에서 2026년 1,023개(전체의 82.1%)로 늘어나면서 의료취약지의 상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의료 공백을 완화하고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의 취지는 민생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추경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진료소에서 단독으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7]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8]에 따라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에 설치되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진료·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9]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0]

---

6)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3년임.

7)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8)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

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취약지역 중 인구 5,000명 미만의 리·동에 설치되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단독으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설치 현황]

| 구 분 | 설치근거 | 설치기준 | 개소수 | 인력현황(개소당, 명) | | | | | 일평균 내원건수 (개소당, 건) |
|---|---|---|---|---|---|---|---|---|---|
| | | | | 전체 | 의사 (공보의 포함) | 공보의 | 치과 의사·한의사 | 간호사 | |
| 보건소 (보건의료원 제외) | 「지역보건법」 | 시·군·구별 1개소 | 246 | 108.6 | 1.9 | 0.5 | 2.1 | 44.9 | 34.5 |
| 보건의료원 | | | 16 | 112.3 | 8.8 | 5.3 | 3.4 | 39.1 | 141.8 |
| 보건지소 | | 읍·면별 1개소 | 1,326 | 3.8 | 0.5 | 0.4 | 0.7 | 1.2 | 4.5 |
|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동·리 단위 오·벽지 | 1,894 | 1.0 | - | - | - | 1.0 | 5.5 |

주 1)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함
2) 보건의료원은 병원(의사 등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함
3)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외함
4) 대부분의 보건진료소(약 95%)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명이 근무 중임
5)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법」[11] 및 「간호법」[12]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의료법」
제2호(의료인)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보건진료소에 한하여 간호사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단독 의료행위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 보건지소에서의 의료행위 허용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13] 법 개정 전까지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14]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 · 치과의학 ·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 · 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12)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13)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695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이 2025년 10월 24일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3월 10일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됨.

14) 보건복지부는 193개 보건지소 중 42개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151개소는 보건지소를 유지하면서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건의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신규): 야간 근무자 인건비 편성 방식 개선과 적기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5가지 사회복지시설[15]의 업무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에 66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 - | - | 6,602 | 6,602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 총 629명의 청년인력에 대한 인건비(월 240만 4,000원, 8개월)를 자치단체경상보조[17]로 편성하였는데, 각 시설별 청년인력 인원을 살펴보면 40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8]에 40명, 20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9]에 40명, 59개 정신요양시설[20]에 118명, 343개 야간연장돌봄시설[21]에 380명,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22]

1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야간연장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임.

16) 일반회계-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2631-341)(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17) 국고지원율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5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50%, 정신요양시설 70%(서울 50%), 야간연장돌봄시설 50%, 자립지원전담기관 70%(서울 50%)임.

18) 주요 업무내용: 노인학대 신고접수 전화운영・접수, 의심사례 직접조사, 학대피해자・가해자 상담,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 운영, 학대피해노인 사례관리

19) 주요 업무내용: 학대피해에 따른 시설보호 및 의료비 지원, 원가족 회복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20) 주요 업무내용: 가족의 돌봄 등 도움을 받기 어려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만성・중증의 정신질환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요양 및 보호 서비스 제공

21) 주요 업무내용: 2025년 여름 화재 아파트 아동 사망 사건 계기로 야간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아동 돌봄(2026년 신규)

22) 주요 업무내용: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등으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소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자조모임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교육, 체험프로그램, 심리지원 등) 운영

에 51명의 청년인력을 배치할 계획임.[23)]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385백만원) |
| · 1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자치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385백만원) |
| · 2명×2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
| ○ 정신요양시설 자치단체경상보조: 1,521백만원 |
|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521백만원) |
| · 2명×59개소×월 2,404천원×8개월×67% |
| ○ 야간연장돌봄시설 자치단체경상보조: 3,654백만원 |
| -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3,654백만원) |
| · 380명×월 2,404천원×8개월×50% |
|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치단체경상보조: 657백만원 |
| -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 인력지원 (657백만원) |
| · (서울 1개소) 총 8명×월 2,404천원×8개월×50% |
| · (지역 16개소) 총 43명×월 2,404천원×8개월×70% |
| · 기타 인건비 1,000,000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야간연장돌봄시설은 신체 피로도가 높은 야간근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고, 8개월분 인건비의 집행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년인력 채용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채용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예산 편성 방식과 사업비 집행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보건복지부는 야간연장돌봄시설 청년인력의 월 지급액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2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간근무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피로도

23)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일반회계, 2133-300),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사업(일반회계, 3345-315),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38-301),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1331-304) 등에서 5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가 높은 야간근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야간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326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24] 343개소와 시·도 상담센터 17개소에 센터당 1명씩 청년인력을 배치하고 규모가 큰 센터에는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 380명의 청년인력을 배치할 계획임.

[야간연장돌봄시설 청년인력 배치 계획]

(단위: 명, 개소)

| 지방자치단체 | 청년인력 배치 | 야간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 | |
|---|---|---|---|---|
| | | 1형 센터 (13시부터 22시까지) | 2형 센터 (13시부터 24시까지) | 합 계 |
| 서 울 | 60 | 50 | 2 | 52 |
| 인 천 | 22 | 11 | 3 | 14 |
| 경 기 | 43 | 30 | 5 | 35 |
| 부 산 | 44 | 36 | 7 | 43 |
| 대 구 | 23 | 19 | 3 | 22 |
| 광 주 | 14 | 12 | 1 | 13 |
| 대 전 | 14 | 11 | 2 | 13 |
| 울 산 | 6 | 4 | 1 | 5 |
| 세 종 | - | - | - | - |
| 강 원 | 13 | 10 | 2 | 12 |
| 충 북 | 11 | 10 | 0 | 10 |
| 충 남 | 10 | 9 | 0 | 9 |
| 전 북 | 29 | 26 | 2 | 28 |
| 전 남 | 14 | 12 | 1 | 13 |
| 경 북 | 41 | 37 | 3 | 40 |
| 경 남 | 31 | 26 | 4 | 30 |
| 제 주 | 5 | 4 | 0 | 4 |
| 합 계 | 380 | 307 | 36 | 343 |

주 1) 야간연장돌봄시설은 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시설(1형 센터)과 13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설(2형 센터)로 구분
2) 돌봄시설의 기본운영시간은 13시부터 20시까지이고, 야간연장돌봄시설은 22시 또는 24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함
3) 돌봄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시간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준수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4) 시·도 상담센터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돌봄시설은 운영시간에 따라 1형 센터(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와 2형 센터

24) 야간연장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구분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을 위하여 주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전국 4,176개소)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전국 1,347개소)임.

(13시부터 24시까지 운영)로 구분되는데, 2형 센터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센터 비중이 높은 편임.

[야간연장돌봄시설 중 2형 센터 참여 현황]

| 구 분 | 아동 정원 | 참여 센터 |
|---|---|---|
| 지역아동센터 34개소 | 30명 이상 | 구리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성남 초원교실지역아동센터, 수원 광교지역아동센터, 김해 목양비전지역아동센터, 전주 솔내지역아동센터, 경주 성동지역아동센터, 진주 아이마당지역아동센터, 전주 우아지역아동센터, 인천 청담지역아동센터, 서울지역아동센터, 춘천지역아동센터, 경주 아란지역아동센터, 인천 예사랑지역아동센터, 대구 나눔과기쁨지역아동센터, 김천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대구 그린지역아동센터 등 16개소 |
| | 25명 이상 30명 미만 | 부산 영도원광지역아동센터, 부산 남부산지역아동센터, 부산 반송지역아동센터, 대구 둥지지역아동센터, 대전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 대전 석봉지역아동센터, 양주 은하수지역아동센터, 성남 힘찬지역아동센터, 창원 늘해랑지역아동센터, 부산 가야지역아동센터, 서울 드림지역아동센터, 부산 수안빛지역아동센터, 부산 이레지역아동센터, 강릉 늘만나지역아동센터, 순천 중앙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 |
| | 10명 이상 25명 미만 | 밀양 삼랑진지역아동센터, 부산 초량중앙지역아동센터, 인천 고려대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 |
|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 20명 | 울산 이진다함께돌봄센터, 광주 문흥다함께돌봄센터 등 2개소 |

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는 아동 수 30명 이상인 센터는 4명(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3명), 아동 수 25명 이상 30명 미만인 센터는 3명(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아동 수 10명 이상 25명 미만인 센터는 2명(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1명)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각 센터에 배치된 청년인력이 센터별 사정에 따라 최대 22시까지 하루 8시간의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예정인데,[25] 야간연장돌봄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신체 피로도가 높은 야간근무가 많고 현재 야간연장돌봄시설의 야간 종사자에게는 야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26]이 지급되고 있는바, 야간근무 청년인력의 근무시간을 단축 조정하거나 야간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야간근무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임.

25)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22시 이후 근무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26) 보건복지부는 야간연장돌봄시설 종사자의 야간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형 센터에는 센터당 월 70만원, 2형 센터에는 센터당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국비지원율: 서울 30%, 지방 50%, 평택 70%).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629명의 청년인력을 5월에 배치하기 위하여 8개월분의 인건비를 추경안에 계상하였으나 국회의 추경안 의결 이후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기관별 채용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보면 사업이 연내에 모두 완료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27)]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계획 대비 채용 인력 비율'의 목표치를 80%로 설정하였는데 사업 준비 기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 부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홍보 강화, 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 점검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의 채용과 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27) 이 사업은 국비지원율이 50~70%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회복지시설별 청년인력의 채용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3. 의료급여 사업: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의료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828억 3,700만원(2.9%) 증액된 10조 1,228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2026년도 의료급여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의료급여 | 8,688,201 | 8,822,328 | 9,839,997 | 10,122,834 | 282,837 | 2.9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29)]를 대상으로 기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중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30)]

이번 추경안은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 둔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및 의료 접근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내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증액 편성됨.

---

28) 일반회계-의료급여(1132-302)(사회복지정책실)

2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됨.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이재민,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율은 서울 50%, 나머지 자치단체 80%임.

[의료급여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9조 8,399억 9,7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br>: 9,837,767백만원<br>① 기관부담금(본인부담 제외 진료비): 9,703,500백만원<br>- 기본진료비: 9,928,400<br>* 기초1종 8,814,094 (1,189천명×9,790천원×75.7%)<br>* 기초2종 726,081 (342천명×2,805천원×75.7%)<br>* 타법 388,225 (75천명×6,807천원×75.7%)<br>- 부양의무자 완화: 21,556<br>- 요양병원 간병 지원: 76,300<br>- 정액수가 개선비: 39,640<br>-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7,364<br>- 재정절감액: △369,760<br>② 본인부담금지원비: 55,685백만원<br>- 본인부담보상상한금: 6,003<br>- 건강생활유지비: 48,865<br>- 임신출산 본인부담금: 817<br>③ 기타 지원비: 64,108백만원<br>- 장애인보조기기: 20,898<br>- 요양비: 43,210<br>④ 위탁수수료: 14,454백만원<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671<br>- 국민건강보험공단: 5,783<br>⑤ 신고포상금: 20백만원<br>❍ 민간위탁사업비:<br>사례관리지원단 1,092백만원<br>❍ 민간경상보조:<br>사례관리지원단 560백만원<br>❍ 사업운영비:<br>사례관리지원단 1,042백만원 | 10조 1,228억 3,4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br>: 10,120,604백만원<br>① 기관부담금(본인부담 제외 진료비): 9,986,337백만원<br>- 기본진료비: 10,211,237<br>* **기초1종** 9,038,875 (1,189천명×9,790천원×75.7%) **+ (29천명×10,204천원×75.7%)**<br>* **기초2종** 765,537 (342천명×2,805천원×75.7%) + **(18천명×2,895천원×75.7%)**<br>* **타법** 406,825 (75천명×6,807천원×75.7%) + **(4천명×6,941천원×75.7%)**<br>〈 이하 변동 없음〉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연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

보건복지부는 연내 의료급여 예산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경안을 편성하였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160만 6,607명인데 비해, 2026년 2월 기준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3만 8,888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이미 본예산 편성 인원을 초과한 상황임.

[2026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26년 본예산 편성 기준 수급자 수 | 실제 수급자 수 | |
|---|---|---|---|
| |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 기초1종 | 1,189,321 | 1,195,664 | 1,201,552 |
| 기초2종 | 341,945 | 357,179 | 358,392 |
| 타 법 | 75,341 | 78,987 | 78,944 |
| 합 계 | 1,606,607 | 1,631,830 | 1,638,888 |

주 1) 기초1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
2) 기초2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의 구성원
3) 타법: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52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155만 9,922명, 2025년 162만 7,778명으로 2024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기초1종 | 1,057,446 | 1,080,804 | 1,090,617 | 1,136,323 | 1,191,482 |
| 기초2종 | 372,128 | 357,625 | 346,313 | 345,335 | 357,171 |
| 타 법 | 86,951 | 83,863 | 80,111 | 78,264 | 79,125 |
| 합 계 | 1,516,525 | 1,522,292 | 1,517,041 | 1,559,922 | 1,627,778 |

주 1) 기초1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
2) 기초2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의 구성원
3) 타법: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4) 각 연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예산 소요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3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에도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약 2,0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669,543 | 189,851 | 55,296 | 11,493 | - | - | - | 정산중 (미지급금 발생) |

주 1) 2018년과 2019년의 미지급금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2020년과 2021년의 미지급금은 연말 지급을 위한 전산처리 이후 차년도 지급(행정처리기간 소요)으로 인한 것임
2) 2025년은 정산중으로 약 2,0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3) 국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무지출 항목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중소병원 등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함.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본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32]을 통하여 부족 재원을 충당하

31)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시정조치요구사항이 있었음.

였는데 2026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추경안을 편성한바,[33]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에 대한 예측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데[34] 이러한 기금은 예산이 실제 집행액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그 차이를 적립하거나 보전하여 안정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의료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나 2025년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연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2) 제2회 추경(2025년 6월 23일 정부 제출, 7월 4일 국회 의결)

33) 반복적으로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회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국회의 본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34)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4. 긴급복지 사업: 합리적인 사업 수요 예측 및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30억 7,500만원(3.2%) 증액된 4,18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35)]

[2026년도 긴급복지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긴급복지 | 350,109 | 373,007 | 405,254 | 418,329 | 13,075 | 3.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36)]에 대해 생계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1인 기준 월 78만 3,000원),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등 1회 300만원 이내), 주거비(임시거소 제공 등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8,900원 이내)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생계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함.[37)]

35) 일반회계-긴급복지(1133-300)(사회복지정책실)

36) 지원대상 저소득층은 소득,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 2억 4,1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의 재산 기준, 856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의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7)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율은 서울 50%, 나머지 자치단체 80%임.

[긴급복지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052억 5,400만원 | ○ 긴급복지 사업관리비: 239백만원<br>○ 긴급복지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br>: 405,015백만원<br>- **생계지원**: 309,092백만원<br>(**375,155건**×1,077천원×76.5%)<br>- 의료지원: 81,189백만원<br>(51,948건×2,043천원×76.5%)<br>- 기타지원: 14,734백만원 | 4,183억 2,900만원 | ○ 긴급복지 사업관리비: 239백만원<br>○ 긴급복지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br>: 418,090백만원<br>- **생계지원**: 322,167백만원<br>(**391,025건**×1,077천원×76.5%)<br>- 의료지원: 81,189백만원<br>(51,948건×2,043천원×76.5%)<br>- 기타지원: 14,734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단기간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소요를 예측할 경우 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추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및 자치단체의 실집행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경우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우선 지원하고 추후에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업으로, 매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긴급복지 종류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기 타 | 합 계 |
|---|---|---|---|---|---|---|---|
| 2020년 | 지원건수 | 600,117 | 42,093 | 22,995 | 906 | 173,963 | 840,074 |
| | 지원금액 | 318,708 | 56,698 | 4,823 | 249 | 13,819 | 394,297 |
| 2021년 | 지원건수 | 443,293 | 47,215 | 16,115 | 652 | 166,058 | 673,333 |
| | 지원금액 | 237,397 | 67,021 | 3,259 | 189 | 13,041 | 320,906 |
| 2022년 | 지원건수 | 315,215 | 43,234 | 12,090 | 534 | 120,751 | 491,824 |
| | 지원금액 | 185,276 | 65,331 | 2,603 | 96 | 10,305 | 263,611 |
| 2023년 | 지원건수 | 344,278 | 50,656 | 11,751 | 716 | 111,106 | 518,507 |
| | 지원금액 | 231,755 | 77,809 | 2,500 | 84 | 12,217 | 324,365 |
| 2024년 | 지원건수 | 346,522 | 48,145 | 9,911 | 713 | 91,244 | 496,535 |
| | 지원금액 | 262,409 | 75,553 | 2,228 | 86 | 10,796 | 351,072 |
| 2025년 | 지원건수 | 347,742 | 53,888 | 8,671 | 587 | 73,803 | 484,691 |
| | 지원금액 | 267,260 | 87,870 | 1,905 | 72 | 8,935 | 366,173 |

주) 기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자료: 보건복지부

경기침체, 사회재난 등 복합적 위기 요인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긴급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생계비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예산 편성 방식과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증가율(5.6%)을 반영한 증가건수(월 1,763건)가 연말까지 동일하게 이어질 것을 가정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단기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소요를 추산하는 방식은 정책환경의 변화, 계절적 요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와 연말에 높게 나타나지만 연중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료, 건설업 및 야외 노동의 감소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긴급복지 수요도 연초에 높지만 연중에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38)]

38) 실제로 2025년 생계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5월부터 11월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 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3.6 | 3.1 | 2.9 | 2.8 | 2.7 | 2.7 | 2.7 | 2.0 | 2.3 | 2.1 | 2.3 | 3.3 |
| 2024년 | 3.7 | 3.2 | 3.0 | 3.0 | 3.0 | 2.9 | 2.5 | 1.9 | 2.1 | 2.3 | 2.2 | 3.8 |
| 2025년 | 3.7 | 3.2 | 3.1 | 2.9 | 2.8 | 2.8 | 2.4 | 2.0 | 2.1 | 2.2 | 2.2 | 4.1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및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도 본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39]을 통하여 부족재원 228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 불용액이 67억 1,100만원으로 추경 증액분의 29.3%에 달하는바, 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불용사유 |
|---|---|---|---|---|
| 2022 | 290,775 | 263,611 | 27,164 | 긴급복지 사업비 집행잔액 |
| 2023 | 339,182 | 324,365 | 14,817 | 긴급복지 사업비 집행잔액 |
| 2024 | 358,212 | 351,072 | 7,140 | 긴급복지 사업비 집행잔액 |
| 2025 | 372,753 | 366,042 | 6,711 | 긴급복지 사업비 집행잔액 |

자료: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사업은 다른 복지제도에 비하여 재산 조사 등이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방식도 보충급여 방식이 아닌 가구 규모별 정액지원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9) 제2회 추경(2025년 6월 23일 정부 제출, 7월 4일 국회 의결)

[연도별 부정수급 발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유 형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 353 | 247 | 208 | 172 | 479 | 400 | 500 | 541 | 400 | 411 |

자료: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에 대해 2021년 이후 매년 200건이 넘는 환수결정이 있었고 2025년에는 396건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나 환수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업관리를 체계화하여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연도별 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 도 | 환수결정건수 | 환수결정금액 | 환수건수 | 환수금액 |
|---|---|---|---|---|
| 2021 | 338 | 230 | 303 | 191 |
| 2022 | 206 | 170 | 153 | 110 |
| 2023 | 470 | 374 | 395 | 287 |
| 2024 | 493 | 528 | 365 | 354 |
| 2025 | 396 | 407 | 270 | 239 |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예산 추계를 통해 증액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 점검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5.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현장 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40]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사회적 낙인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41] 대비 21억 4,300만원(29.2%) 증액된 9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42]

[2026년도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7,655 | 7,655 | 14,586 | 16,729 | 2,143 | 14.7 |
|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 - | - | 7,344 | 9,487 | 2,143 | 29.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일부 자치단체(서울 영등포구,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43]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 재정에 더해 국민의 자발적 후원과 기부물품을 활용하여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40)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함.

41) 2026년도 예산안에는 49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개소 수 확대 필요성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 대비 23억 7,000만원 증액된 73억 4,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됨.

42) 일반회계-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2631-308)(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43) 국비지원율은 50%임.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73억 4,400만원 | ○ 푸드뱅크사업단 운영지원<br>: 1,532,000천원<br>- 운영인력 3명(12개월)<br>: 112,000천원<br>- 물류비 등 운영비: 275,000천원<br>○ 물품구입비: 4,000,000천원<br>- 코너 1개소당 5백만원×[(100개소×4개월)+(150개소×8월)]×50%=4,000백만원<br>○ 전담인력 인건비·수당 지원: 1,302,200천원<br>- (광역) 3.1백만원×27명×12월×50% + (기초) 0.5백만원×2명×100개소×4월×50%+0.5백만원×2명×150개소×8월×50%<br>○ 신규설치비: 300,000천원<br>- 10백만원×60개소(시범 30개소+본 30개소)×50%<br>○ 일반 사업 운영비: 210,000천원<br>- 일반용역비 100백만원, 일반수용비 62백만원, 임차료 30백만원, 국내여비 12백만원, 사업추진비 6백만원 | 94억 8,700만원 | ○ 푸드뱅크사업단 운영지원<br>: 1,532,000천원<br>- 운영인력 3명(12개월)<br>: 112,000천원<br>- 물류비 등 운영비: 275,000천원<br>○ 물품구입비: 5,500,000천원<br>(**+1,500,000천원**)<br>- 코너 1개소당 5백만원×[(100개소×4개월)+(150개소×8월)**+(150개소×4개월)]**× 50% = 5,500백만원<br>○ 전담인력 인건비·수당 지원: 1,645,200천원(**+343,000천원**)<br>- (광역) 3.1백만원×27명×12월×50% **+3.1백만원×7명×4월×50%** + (기초) 0.5백만원×2명×100개소× 4월×50%+0.5백만원×2명×150개소×8월×50%**+0.5백만원×2명×150개소×4월×50%**<br>○ 신규설치비: 600,000천원<br>(**+300,000천원**)<br>- 10백만원×60개소(시범 30개소+본 30개소)×50%<br>**+10백만원×60개소×50%**<br>○ 일반 사업 운영비: 210,000천원<br>- 일반용역비 100백만원, 일반수용비 62백만원, 임차료 30백만원, 국내여비 12백만원, 사업추진비 6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푸드뱅크[44] 등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3~5개 품목의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후 물품을 제공하며 필요 시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 개요]

| |
|---|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신청/소득기준 불필요) |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
| * 표준 제공물품 3~4개를 기본으로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원 물품 선정 |
| (지원장소) 푸드마켓 + 신규 설치 코너 |
| * 자치단체 여건(접근성 등) 고려,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코너 신규 설치 |
| (이용 절차) 처음은 그냥 드림 →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 필요시 복지자원 연계・사례 관리 |
| * 지원 필요자에게는 푸드뱅크 수준(월 1~2회) 물품 지속 제공. 상담 후 지속 지원 불필요자에 대해서는 추가 이용 제한(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제한 요건 설정) |
| (운영 체계) 광역푸드뱅크 일괄구매 → 매월 기초푸드마켓 배송, 기초푸드마켓에서 배송된 물품+자체 모집품(1:1) 분배 |
| * 現 푸드뱅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수요・공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전국푸드뱅크), 지역별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과 함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 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100개소를 지원하고 5월부터 본 사업을 개시하면서 1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 물품구입비 지원대상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물품 구입 및 배분 업무 담당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44) 푸드뱅크는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 17개 광역푸드뱅크, 450여개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조직된 물적나눔 시스템으로, 전국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푸드뱅크는 광역・기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이 운영 중임.

이 사업은 복지대상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1차 방문 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2차 방문 시부터는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로의 연계를 유도하고 있음.

이번 추경안은 1차 방문에 대한 물품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1차 방문자에게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까지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제한된 추경 재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단순히 기본 먹거리 제공에 그칠 경우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되어 예산 대비 복지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고 동일한 이용자가 반복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자원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있음.

이 사업은 1차 방문자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려는 목적과 함께 2차 방문 시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로의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2차 방문 이후 현장 상담에 대한 제도 설계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담 업무는 전문성이 높지 않은 기존 푸드뱅크 종사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차 방문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로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채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세출증액>

# 6. 긴급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유형별 예산 편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억 6,700만원(20.4%) 증액된 5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45]

[2026년도 긴급돌봄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 39,090 | 49,439 | 43,607 | 53,524 | 9,917 | 22.7 |
| 긴급돌봄 지원 | 3,500 | 4,148 | 4,240 | 5,107 | 867 | 20.4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화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면제되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자치단체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설정하고 있음.

주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서비스 신청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지급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026년 현재 15개 시・도[46] 및 164여개 시・군・구에서 참여하고 있음.[47]

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2635-305)(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46)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유사한 자체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

[긴급돌봄 지원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2억 4,0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br>- 11,000명×50만원×자치단체보조 70%+운영비 3억9,000만원 | 51억 700만원 | ○ 자치단체경상보조<br>- **13,477명×50만원**×자치단체보조 70%+운영비 3억 9,0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나. 검토의견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서비스 유형별로 산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구조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추경 증액분의 집행 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과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돌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억 6,700만원을 추경안에 증액 편성하였음.

긴급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추경을 통해 충분한 돌봄 지원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긴급돌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1인당 50만원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유형별 실제 지원 구조를 반영하지 않아 불완전한 예산 추계가 될 수 있음.

긴급돌봄 서비스는 기본돌봄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로 구분되고, 2025년 기준 기본돌봄 서비스는 바우처 기본한도가 132만원, 방문목욕 서비스는 바우처 기본한도가 32만 8,000원으로 서비스별로 바우처 기본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2025년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 지원 인원 및 지원액을 살펴보면, 기본돌봄 서비스는 2,958명이 1인당 평균 128만원의 바우처를 사용했고, 방문목욕 서비스는 168명

47)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 70%, 시·도 15%, 시·군·구 15%임. 성장촉진지역(8개 시·도의 70개 시·군·구)의 경우 국가 80%, 시·도 10%, 시·군·구 10%임.

이 1인당 평균 29만원의 바우처를 사용하였음.

[2025년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수 및 지원액]

(단위: 명, 백만원)

| 기본돌봄 서비스 | | | 방문목욕 서비스 | | | 합 계(중복제거) | | |
|---|---|---|---|---|---|---|---|---|
| 이용자 수 | 지원액 | 1인당 지원액 | 이용자 수 | 지원액 | 1인당 지원액 | 이용자 수 | 지원액 | 1인당 지원액 |
| 2,958 | 3,792 | 1.28 | 168 | 49 | 0.29 | 2,961 | 3,841 | 1.30 |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서비스 유형별 바우처 기본한도, 서비스 유형별 선택 여부 등에 따라 산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구조이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서비스 유형별 지원 단가 및 이용자 수 등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추경[48]에서도 긴급돌봄 지원 사업비를 6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고 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이 본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부 | | | | 지방자치단체 | | |
|---|---|---|---|---|---|---|
| 본예산액 | 추경액 | 집행액 | 불용액 | 실집행액 | 불용액 | 불용액 발생 사유 |
| 3,500 | 4,148<br>(648 증액) | 3,923 | 225 | 3,309 | 614 | 국비 추경 확보 이후 지방비 추경 및 교부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예산집행까지의 시차 발생에 따른 계획 대비 집행 지연 |

주) 2025년 총 불용액은 8억 3,900만원임(보건복지부 불용액 2억 2,5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6억 1,4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자치단체가 30%(성장촉진지역은 2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의 특성상 추경을 통해 국비가 증액된 비율만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증액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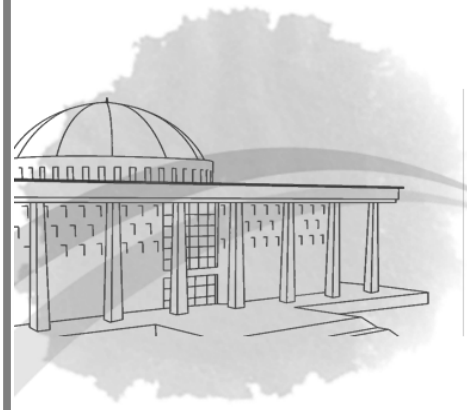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서비스 유형별 지원 구조를 반영하여 예산 단가와 수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자치

48) 제2회 추경(2025년 6월 23일 정부 제출, 7월 4일 국회 의결)

단체의 재정 여건 및 지방비 확보 시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49)]

49)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자치단체 조사 시 지방비 매칭 시기 및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상 수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으며, 그간에는 신규사업(2024년 6월 개시)으로서 일시적이고 비정형적인 수요에 기반한 사업 특성상 단가 추계가 어려웠으나 향후 실제 이용단가를 반영한 추계를 하겠다고 설명함.

# 기후에너지
#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8조 4,85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5,837 | 15,837 | 23,391 | 23,391 | - | - |
| 기 금 | 55,633 | 55,633 | 61,459 | 61,459 | - | - |
| 합 계 | 71,470 | 71,470 | 84,850 | 84,850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2조 2,83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245억원(2.4%) 증가함.

예산은 15조 4,68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77억원(0.7%) 증가하고, 기금은 6조 8,14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168억원(6.5%) 증가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29,839 | 129,956 | 153,609 | 154,687 | 1,077 | 0.7 |
| 기 금 | 31,798 | 35,918 | 63,979 | 68,147 | 4,168 | 6.5 |
| 합 계 | 161,637 | 165,874 | 217,588 | 222,834 | 5,245 | 2.4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3,138억원(7.0%) 증가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환경개선 특별회계 | 73,468 | 77,242 | 70,582 | 70,657 | 75 | 0.1 |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1,879 | 1,879 | 44,781 | 47,844 | 3,063 | 6.8 |
| 합 계 | 75,347 | 79,121 | 115,363 | 118,501 | 3,138 | 7.0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조 9,5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98억원(0.6%) 증가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81,873 | 86,243 | 79,014 | 79,089 | 75 | 0.1 |
| 환경개선 특별회계 | 73,468 | 77,242 | 70,582 | 70,657 | 75 | 0.1 |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32,007 | 27,754 | 48,797 | 49,845 | 1,048 | 2.1 |
| 합 계 | 187,348 | 191,239 | 198,393 | 199,591 | 1,198 | 0.6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7조 4,13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57억원(△0.1%) 감소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4조 5,08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57억원(△0.1%) 감소하고,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조 9,057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전력산업기반기금 | 38,752 | 38,793 | 45,137 | 45,137 | 45,080 | △57 | △0.1 |
| 기후대응기금 | 26,517 | 25,997 | 29,057 | 29,057 | 29,057 | - | - |
| 합 계 | 65,269 | 64,790 | 74,194 | 74,194 | 74,137 | △57 | △0.1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1,141억 3,400만원임.[2)]

그 중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5,401억 4,8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12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3개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에 2,20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624억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에 588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02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128억원,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에 363억원을 증액하였음.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에코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19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5,982,683** | **6,360,082** | **5,462,180** | **5,469,680** | **7,500** | **0.1** |
| 1 |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 | *5,982,683* | *6,360,082* | *5,462,180* | *5,469,680* | *7,500* | *0.1*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2,904,604** | **2,545,914** | **3,011,565** | **3,116,388** | **104,823** | **3.5** |
| 2 | 에너지바우처 | 481,541 | 481,541 | 494,027 | 504,257 | 10,230 | 2.1 |
| 3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263,104 | 1,900,854 | 2,284,513 | 2,374,513 | 90,000 | 3.9 |
| 4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159,959* | *163,519* | *233,025* | *237,618* | *4,593* | *2.0*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130,181** | **130,181** | **116,685** | **124,185** | **7,500** | **6.4** |
| 5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 42,366 | 42,336 | 31,376 | 36,976 | 5,600 | 17.8 |
| 6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87,815 | 87,815 | 85,309 | 87,209 | 1,900 | 2.2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702,036** | **1,080,978** | **1,320,372** | **1,699,583** | **379,261** | **28.7** |
| 7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15,034 | 115,034 | 114,952 | 151,276 | 36,324 | 31.6 |
| 8 | 전력효율향상 | 104,329 | 371,432 | 125,922 | 127,210 | 1,288 | 1.0 |
| 9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326,300 | 426,300 | 648,000 | 868,469 | 220,469 | 34.0 |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8개 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기금은 2개(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임.

| | | | | | | | |
|---|---|---|---|---|---|---|---|
| 10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56,373 | 168,212 | 214,332 | 276,712 | 62,380 | 29.1 |
| 11 |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 - | - | 217,166 | 275,916 | 58,800 | 27.1 |
| **기후대응기금** | | **163,824** | **163,824** | **183,000** | **224,064** | **41,064** | **22.4** |
| 1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107,593 | 107,593 | 108,575 | 121,411 | 12,836 | 11.8 |
| 13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 11,219 | 11,219 | 8,753 | 11,042 | 2,289 | 26.2 |
| 14 | CCU메가프로젝트(R&D) | - | - | 20,000 | 42,405 | 22,405 | 112.0 |
| 15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45,012* | *45,012* | *45,672* | *49,206* | *3,534* | *7.7* |
| 합계 | | 9,883,328 | 10,280,979 | 10,093,802 | 10,623,670 | 540,148 | 5.4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한편 감액이 포함된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4,260억 1,400만원이며, 모두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사업임.

총 감액규모는 4,260억 1,400만원(총계 기준)으로, 그 구성내역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감액 △3,792억 6,100만원(94.8%)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감액 △467억 5,300만원(8.6%)임.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 (B) | 감액분 (B-A) | (B-A)/A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314,433** | **478,426** | **680,935** | **295,985** | **△384,950** | **△56.5** |
| 1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100,000* | *443,259* | *400,000* | *20,739* | *△379,261* | *△94.8* |
| 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14,433* | *35,167* | *280,935* | *275,246* | *△5,689* | *△2.0* |
| **기후대응기금** | | **246,395** | **246,395** | **265,317** | **224,253** | **△41,064** | **△15.5** |
| 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46,395* | *246,395* | *265,317* | *224,253* | *△41,064* | *△15.5* |
| 합계 | | 560,828 | 724,821 | 946,252 | 520,238 | △426,014 | △38.6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난방전기화 사업에서 컨소시엄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과 상쇄배출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컨소시엄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의 운영기관은 2월 초에 이미 선정되었고, 창업기업선정도 3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추경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운영기관과 지원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변경계획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연내에 ESS 설치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환경개선특별회계】

### <세출증액>

## 1. 난방 전기화 사업: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관련 수익 귀속 주체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난방 전기화'** 사업은 화석연료 기반 난방에서 공기열 전기 기반 난방인 히트펌프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6억원(38.7%) 증액된 20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6년도 난방 전기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 42,366 | 42,366 | 31,376 | 36,976 | 5,600 | 17.8 |
| 난방 전기화 | - | - | 14,450 | 20,050 | 5,600 | 38.7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히트펌프를 구매 및 설치하려는 가정을 대상으로 1,400만원을 한도로 국비 40%(560만원), 지방비 30%를 보조하여 자부담률을 30%로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안은 본예산으로 지원하려는 2,580가구에서 1,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환경개선특별회계-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1633-303)(수소열산업정책관)

[난방 전기화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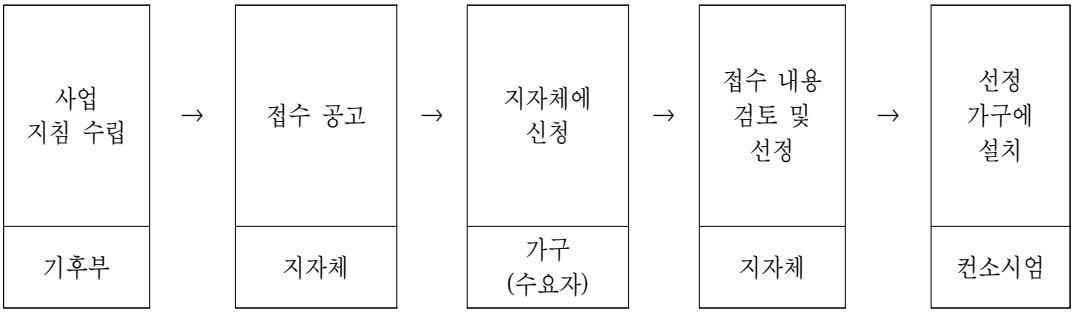
| 2026년 예산 | | 2026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44.5 | ○ 히트펌프 설치 지원(1,400만원 x 40% x 2,580가구) : 144억 5,000만원 | 200.5 | ○ 히트펌프 설치 지원(1,400만원 x 40% x 3,580가구) : 200억 5,000만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각 가구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가구가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증 후 설치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컨소시엄(시공사 및 가상발전소 사업자 등으로 구성)에서 히트펌프를 설치함.

[난방 전기화 사업 집행 과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히트펌프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 방식과 달리 실외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여 물을 가열하고 이를 실내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게 됨.[4)]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수행 지침에 해당하는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 이후 컨소시엄 내 가상발전소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히트펌프 설치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쇄배출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 상쇄배출권은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은 할당대상업체[5]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난방전기화 사업에서 컨소시엄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과 상쇄배출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컨소시엄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귀속 주체를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히트펌프 설치사업의 기획·시행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30%, 선정 가구 30%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컨소시엄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선정된 가구에 히트펌프 설치 및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만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히트펌프 설치로 발생하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이를 등록한 상쇄배출권으로 인한 수익이 컨소시엄에 귀속되도록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하고 있음.

그러나 위 지침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귀속되는 사업자는 난방 전기화 사업의 기획·시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 해석되는데, 이 사업에서 기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가구가 각자 분담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사업의 기획·대상자 선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은 채 히트펌프 설치 및 모니터링 역할만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6]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난방전기화 사업을 통해 설치된 히트펌프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이로 인한 수익이 컨소시엄에 모두 귀속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히트펌프 설치 가구 선정 시 건물 단열 성능 등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히트펌프의 효율성은 설치 주택의 외기 기온에 따라 좌우되므로 지원 대상 주택이 히트펌프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을 통해 설치를 지원하려는 히트펌프는 실외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여 물을 가열하고 이를 실내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이에 따라 실외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열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외기 온도가 낮아질수록 흡수 가능한 열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가 커져 전체 효율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실제 연구결과, 외기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히트펌프의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투입 전기에너지 대비 냉·난방 열에너지 비율)가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는 등[7] 외기 온도가 히트펌프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에 해당함.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설치지원 가구 선정 시 제주, 전남 등 가구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만 온난지역을 판단하고 있고, 건물 단열 성능 등을 고려하라는 지침만을 마련하여 그 외 다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 및 선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6)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부담 비율을 고려해 주택 소유주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에게 외부사업 관련 수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7) Sezen, Kutbay, and Afsin Gungor. “Performance analysis of air source heat pump according to outsid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ith mathematical model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263 (2022)

[난방전기화 사업 업무처리 지침]

1-2. 지원 대상
가. 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온난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연립주택 가구에 지원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된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1) 연탄·화목·등유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보일러 사용 가구
2) 인구소멸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소재한 가구
3) 주택 단열 효율이 높은 가구
4)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이하 생략)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설치 가구의 외기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히트펌프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효율이 저하되어 기존 난방을 히트펌프로 전환하여 탄소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겠다는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8)]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설치지원 주택 선정 시 히트펌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외기 온도 등 환경이 히트펌프를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8)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10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순 지역 구분이 아닌 온도차를 고려한 지역별 보정계수가 담긴 고시를 제정하여 선정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임

##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 추가 선정되는 운영기관과 지원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은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9억원(47.5%) 증액된 59억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87,815 | 87,815 | 85,309 | 87,209 | 1,900 | 2.2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22,999 | 22,999 | 21,873 | 23,773 | 1,900 | 8.7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4,000 | 4,000 | 4,000 | 5,900 | 1,900 | 47.5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①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10)]의 신청을 받아 그 중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비를 지급하고 ② 녹색산업 분야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기업별 창업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2026년 본예산은 ① 운영기관 2개소에 운영 비용의 70%까지 최대 3억원을 지급(총 6억원)하고 ② 창업기업 총 40개소에 사업 비용의 70%까지 최대 8,000만원(총 3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 추경안은 ① 운영기관을 1개소 늘려 최대 3억원을 지급하고 ② 창업기업을 20개소 늘려 각 최대 8,000만원을 지급(총 16억원)하는 것으로 총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9) 환경개선특별회계-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4462-313)(녹색전환정책관)

10)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서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 세부내역]

(단위: 억원)

| 2026년 예산 | | 2026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0 | ○ 운영기관 지원(3억원 x 2개소) : 6억원<br>○ 기업 지원(0.8억원 x 40개소) : 32억원<br>○ 운영비 : 2억원 | 59 | ○ 운영기관 지원(3억원 x 3개소) : 9억원<br>○ 기업 지원(0.8억원 x 60개소) : 48억원<br>○ 운영비 : 2억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검토의견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의 운영기관은 2월 초에 이미 선정되었고, 창업 기업 선정도 3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추경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운영기관과 지원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2026년 진행 경과 상 ① 운영기관은 2026년 1월 16일에 모집공고 기한이 마감되어 선정평가를 거쳐 2026년 2월 초 이미 선정되었고, 현재 지원기업 선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 중임.

또한 ② 지원기업의 경우 2026년 3월 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았고,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정 평가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4월 중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 집행 과정]

| |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선정 평가 | → | 지원금 지급 | → | 사업 수행* |
|---|---|---|---|---|---|---|---|---|---|
| 운영기관 | 25.12.29.~ 1.16. | | 26.1.12.~ 1.16. | | 26.1.17.~ 1.31. | | 26.4. | | 26.3.~ 10. |
| 지원기업 | 26.2.9.~ 3.3. | | 26.2.19.~ 3.3. | | 26.3.4.~ 3.31. | | 26.4. | | 26.4.~ 10. |

주) 운영기관은 3월 지원기업 선정 평가시 참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려는 ① 운영기관 1개소는 현재 운영기관 2개소가 선정이 완료되고 업무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② 지원기업 20개소도 이미 40개소의 기업이 선정이 완료된 후에 선정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공고된 일정 및 규모와 다르게 진행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선 기존 일정대로 3월 말 지원 기업 40개소를 확정하고, 추경안에 따른 운영기관 1개소 및 지원기업 20개소는 별도 공고 없이 당초 선발 계획에 따라 접수된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평가 최종점수 순으로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① 운영기관의 경우 이미 선발된지 2개월이 경과하였고,[11] ② 지원기업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과 다른 규모와 일정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므로, 지원기업 선정 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12][13][14]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순히 기존 점수 순으로 추가 선발하기에 앞서 기간 경과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사업 계획 변동 여부, 공고 조건과 다른 선발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1) 특히, 이미 선발된 운영기관은 현재 지원기업 선정평가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선발될 운영기관이 이들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2)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25. 12. 29.)
□ 모집규모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총 2개사**

| 모집 부문 | 지원 규모(예정) |
|---|---|
| 자원순환, 물 | 1개사 |
|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1개사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3)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6. 02. 09.)
□ 모집규모 : **총 40개사(명) 내외**

| 모집 부문 | 지원 규모(예정) |
|---|---|
| 자원순환 또는 물 | 예비청년창업자 또는<br>초기청년창업기업 20 개사 내외 |
| 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 예비청년창업자 또는<br>초기청년창업기업 20 개사 내외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4)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모집공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출증액>

## 3.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2억 3,000만원(2.1%) 증액된 5,04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에너지바우처 | 481,541 | 481,541 | 494,027 | 504,257 | 10,230 | 2.1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등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 추경안은 등유 평균판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등유 평균가격 상승분에 50%의 추가 상승률을 예측하여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에 각 50,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2억 3,000만원도 증액 편성되었음.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너지바우처(5146-301)(기후에너지정책관)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 2026년 예산 | | 2026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940.27 | ○ 에너지바우처 (488,844백만원)<br>- 144만 가구 × 36.7만원 × 0.925 = 488,844백만원<br>○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3,311백만원)<br>- 11.5만 건 × 7.6천원 + 1.05만 건 × 23.2만원 = 3,311백만원<br>○ 사업운영비 (1,872백만원) | 5,042.57 | ○ 에너지바우처 : 498,844백만원**(+10,000백만원)**<br>- (144만 세대 × 36.7만원 × 0.925) + (**20만 세대 × 5만원**) = 498,844백만원<br>○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3,311백만원)<br>- 11.5만 건 × 7.6천원 + 1.05만 건 × 23.2만원 = 3,311백만원<br>○ 사업운영비 : 2,102백만원**(+230백만원)**<br>- 카드 제작 및 배송 : 14만(전액사용자) x 1,000원 = 140백만원<br>- 카드 사용 수수료 : 20만 x 5만원x 0.4% = 40백만원<br>- 등유·LPG 예외지급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 50백만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연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에 비해 실제 사용액이 저조하므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절차 간소화 등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발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고지서 자동 요금 차감 또는 ②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16]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2026년 7월(하절기)부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에 비해 사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2023년에는 4,364억 900만원을 발급하였으나 2,679억 7,700만원만이 실제 사용되었고(사용률

16) 에너지바우처 발급방식은 ① 요금차감 방식과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구분됨. ① 요금차감 방식은 주민센터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 등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주민센터에 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전기요금 등을 결제할 때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임

61.4%), 2024년에는 4,850억 4,300만원을 발급하였으나 3,421억 9,800만원만이 사용되었으며(사용률 70.6%), 2025년에는 5,212억 1,200만원을 발급하였으나 3,762억 3,900만원만이 사용되었음(사용률 72.2%).

[최근 3년간 에너지바우처 실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발급액 (a) | 436,409 | 485,043 | 521,212 |
| 사용액 (b) | 267,977 | 342,198 | 376,239 |
| 사용률 (b/a) | 61.4% | 70.6% | 72.2% |
| 미사용액 | 168,432 | 142,845 | 144,973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2023년 1,684억 3,200만원, 2024년 1,428억 4,500만원, 2025년 1,449억 7,3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바우처 지급액보다 ① 실제 에너지사용 비용이 작거나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바우처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지 못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았음에도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취약에너지 계층의 에너지 비용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집행 중 예산을 변경하여 홍보 등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 재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사업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운영비’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 중 12억 6,100만원을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사업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에너지바우처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날짜 | ~에서 | 금액 | ~으로 | 사유 |
|---|---|---|---|---|
| | 내역사업명 | | 내역사업명 | |
| 25. 7. 30. | 동절기바우처 | 1,261 | 사업운영비 | 바우처 미사용 가구 등에 효과적으로 바우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등 수급자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사용지원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조정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원으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홍보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에 부합하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은 전기화물차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00억원(31.4%) 증액된 3,767억원이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무공해차 보급 | 2,263,104 | 1,900,854 | 2,284,513 | 2,374,513 | 90,000 | 3.9 |
| 전기자동차 보급 | 1,521,770 | 1,242,770 | 1,611,370 | 1,701,370 | 90,000 | 5.5 |
| 전기화물차 보급 (지자체보조) | 546,000 | 331,650 | 286,700 | 376,700 | 90,000 | 31.4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기화물차 1대당 1,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보조금을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 집행 과정]

| 국고보조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보조 | 사업 정산 |
|---|---|---|
| 기후부 → 시 · 도 | 시 · 도(또는 기초 지자체) → 무공해차(전기 · 수소) 구매자 | 시 · 도 → 기후부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무공해차 보급(1633-311)(녹색전환정책관)

2026년 본예산에 따른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은 전기화물차 총 28,670대를 대상으로 각 1,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총 2,86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안을 통해 지원 대수를 9,000대(900억원) 더 늘려 총 37,670대에 대해 각 1,000만원씩 보조하려는 것임.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 2026년 예산 | | 2026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867 | ○ 전기화물차 보급(1,000만원 x 28,670대) : 2,867억원 | 3,767 | ○ 전기화물차 보급(1,000만원 x 37,670대) : 3,767억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검토의견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여 2025년 제2회 추경 시 감액 조정된 바 있고, 추경안에 따른 전기화물차 보급 물량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보다도 많은 대수가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추경안에 따른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은 본예산에 따른 28,670대 지원에 9,000대를 더하여 총 37,670대의 전기 화물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그런데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4년 본예산 6,006억원 중 2,308억 1,500만원만이 실집행(실집행률 38.4%) 되었고, 2025년 본예산 5,460억원 중 2,774억 7,200만원(실집행률 50.8%)만이 실집행되었음.

또한, 2026년에는 2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2,867억원 중 42억 8,500만원만이 실집행(실집행률 1.49%)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 2024년 본예산 | 2024년 실집행금액 (실집행률)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추경예산 | 2025년 본예산 대비 실집행금액 (실집행률) | 2026년 본예산 | 2026년 실집행금액 (실집행률) |
|---|---|---|---|---|---|---|---|
| 전기화물차 (지자체보조) | 600,600 | 230,815 (38.4%) | 546,000 | 331,650 | 277,472 (50.8%) | 286,700 | 4,285 (1.49%) |

주) 2026년 실집행금액은 2026년 2월 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6월, 연말 기준 약 50%의 실집행률을 예상하고 지자체보조 전기화물차 사업의 지원 대수를 54,600대에서 27,300대로, 예산액도 5,460억원에서 2,730억원으로 감액조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음.

[2025년 제2회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18] | 차이 |
|---|---|---|
| 자치단체 보조 전기화물차 보급(1,000만원 x 54,600대) : 5,460억원 | 자치단체 보조 전기화물차 보급(1,000만원 x 27,300대) : 2,730억원 | △27,300대 (2,730억원) |
| 사유 : 실집행 추이 고려시 2025년 50% 집행 전망 → 불용 예상액 2,730억(2.7만대) 감액 필요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설정한 보급 목표에 비해 실제 전기 화물차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2026년 2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1.4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보급 목표와 실제 수요 간 괴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이 집행되는 구조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2025년 9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전기화물차 수요조사 결과는 32,373대로 나타나, 추경안에 따른 37,670대보다 5,297대 적은 수준임.

1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예산은 전기화물차 21,435대(2,143억 5,000만원)만을 감액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전기화물차 보급 수요조사 결과]

| | 2025년 9월 수요조사 결과 | 추경에 따라 편성된 대수 | 차이 |
|---|---|---|---|
| 전기화물차 | 32,373대 | 37,670대 | 5,297대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로 편성된 물량이 실제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수요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 <지출증액>

## 5. 가정형 태양광 사업(신규): 편성 물량의 연내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가정형 태양광'** 사업은 일반가정의 베란다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인 베란다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2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가정형 태양광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156,373 | 168,212 | 214,332 | 214,332 | 276,712 | 62,380 | 29.1 |
| 가정형 태양광 | - | - | - | - | 25,000 | 25,000 | 순증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가정 내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형 태양광(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베란다 태양광 설치 비용 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공모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19) 전력산업기반기금-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5202-303)(재생에너지정책관)

[가정형 태양광 사업 집행 과정]

| 사업 공모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사업 승인 | → | 사업 추진 | → | 사업비 정산 |
|---|---|---|---|---|---|---|---|---|
| 공단 | | 지자체 | | 공단 | | 지자체 | | 지자체, 공단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100,000가구에 각 25만원(태양광 설비 및 설치비 총 100만원의 25%[20])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정형 태양광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
|---|
| ○가정형 태양광 지원(신규, **100,000가구** x 1백만원 (500W) x 25%) : 250억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검토의견

**가정형 태양광 지원사업의 태양광 설치지원 100,000개소는 2016년~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던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3년간 보급 개소 합계인 78,912개소에 2030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 목표를 고려하여 산출되었는바, 편성 물량이 연내에 전량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예산은 총 100,000개소의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수요로 산출하여 편성되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수행하던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3년간 집행실적 합계(총 78,912개소)에 2030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임.[21]

20) 국비 지원비율(25%) 외 나머지 75%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결정하여 집행할 계획임

21) 2030년까지 베란다 태양광 총 200만 가구 보급 목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규모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던 사업으로, 해당 사업으로 2016년 5,499개소, 2017년 19,168개소, 2018년 54,245개소를 지원하여 3년간 총 78,912개소 설치를 지원하였음.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집행 결과]

(단위: 개소)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
| 보급 가구 수 | 5,499 | 19,168 | 54,245 | 78,912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2018년에 사업이 종료되어 이미 사업이 종료된 지 7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현재와는 수요 여건이 상이할 수 있고 단순히 과거 3년간의 집행 합계를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수요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 및 가구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6.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 융자지원 대상 여부의 철저한 검토 필요

## 가. 개 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2,204억 6,900만원(34.0%) 증액된 8,68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 (A) | 변경안 (B) | 증감 (B-A) | (B-A)/A |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 326,300 | 426,300 | 648,000 | 648,000 | 868,469 | 220,469 | 34.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을 공고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자금신청자의 신청서를 접수·평가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청자가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절차로 집행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공고 | → | 자금추천 접수 | → | 자금추천 심사·평가 | → | 추천서 발급 | → | 은행 대출 |
|---|---|---|---|---|---|---|---|---|
| 기후에너지 환경부 | | 자금신청자 | | 신재생 에너지센터 | | 신재생 에너지센터 | | 자금신청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2) 전력산업기반기금-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5202-304)(재생에너지정책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보다 ① 태양광 지원에서 85% 지원(햇빛소득마을[23])하는 설비 용량을 10MW 추가 및 80% 지원(기타 융자)하는 설비 용량을 124.5MW 추가(1,344억 6,900만원)하고, ② 풍력발전을 180MW 추가(800억원)하며, ③ 태양광 이차보전금(6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2,204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 2026년 계획안 | | 2026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6,480 | ○ (태양광) 476,000백만원<br>(100MW × 1,250백만원 × 85%<br>+ 370MW × 1,250백만원 × 80%)<br>○ (비태양광) 170,000백만원<br>- 육상풍력 80,000백만원<br>(160MW x 2,500백만원 x 20%)<br>- 해상풍력 80,000백만원<br>(200MW x 8,000백만원 x 5%)<br>- 기타 10,000백만원<br>(10MW × 1,250백만원 × 80%)<br>○ 생산자금 2,000백만원<br>(2,000백만원 x 1건) | 8,684.69 | ○ (태양광) 610,469백만원<br>(**110MW** × 1,250백만원 × 85%<br>**+ 494.5MW** × 1,250백만원 × 80%)<br>○ (비태양광) 250,000백만원<br>- 육상풍력 120,000백만원<br>(**240MW** x 2,500백만원 x 20%)<br>- 해상풍력 120,000백만원<br>(**300MW** x 8,000백만원 x 5%)<br>- 기타 10,000백만원<br>(10MW × 1,250백만원 × 80%)<br>○ 생산자금 2,000백만원<br>(2,000백만원 x 1건)<br>○ **(태양광 이차보전) 6,000백만원**<br>**(340MW × 1,250백만원 × 85% × 2.5% × 8/12개월)**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검토의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자금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지원대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해당하는 자에게만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에 따른 금융지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8월 이후에 착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대출 금액도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됨.

23) 마을 공동체에서 유휴지,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그런데 이러한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심사·평가 결과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부적정 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3년 자금추천 대상이 아님에도 추천서 발급 및 대출을 받은 건수가 12건(대출액 총 22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비대상자에게 추천서가 교부되어 이에 근거하여 총 2억 7,900만원의 부적절한 은행 대출이 이루어져 회수되는 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적정 대출 규모가 총 25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의 부적정 대출 이후 회수 내역]

(단위: 백만원)

| | 2023 | | 2024 | | 2025 | | 합계 | |
|---|---|---|---|---|---|---|---|---|
| |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건수 | 액수 |
| 자금추천 비대상 | 12건 | 2,279 | 1건 | 245.5 | - | 33.5* | 13건 | 2,558 |

주) 2025년 회수 금액은 2024년 자금 추천 비대상자에 대한 잔금을 회수한 것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자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천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사·평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작 금융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집행 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추천서를 교부하도록 추천서 발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7.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조속한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588억원(50.0%) 증액된 1,764억원이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 | - | 217,116 | 217,116 | 275,916 | 58,800 | 27.1 |
| AI 활용 ESS 구축지원 | - | - | 117,600 | 117,600 | 176,400 | 58,800 | 50.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 설치 비용인 11억 7,100만원/MWh의 50%(각 5억 8,550만원/MWh)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ESS 설치 사업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구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1분기에 사업공고, ESS신청 및 접수를 받아 2분기에 신청서를 평가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3·4분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24) 전력산업기반기금-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5203-333)(전력망정책관)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집행계획]

| 2025.4분기 | ⇨ | 2026.1분기 | ⇨ | 2026.2분기 | ⇨ | ~2026.4분기 | ⇨ | 2027~2031년 |
|---|---|---|---|---|---|---|---|---|
| 사업시행 준비 |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신청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사업 수행 | |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에 따른 ESS 20개소(400MWh)에 10개소(200MWh)를 더하여 총 30개소(600MWh)의 ESS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585억 5,000만원 및 사업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58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 2026년 계획안 | | 2026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1,176 | ○ ESS 설치지원 : 117,100백만원<br>- 20개소(400MWh)×1,171백만원×보조율 50% = 117,100백만원<br>○ 사업운영비 : 500백만원<br>- 1개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1,764 | ○ ESS 설치지원 : 175,650백만원<br>- 30개소(600MWh)×1,171백만원×보조율 50% = 175,650백만원<br>○ 사업운영비 : 750백만원<br>- 1개 × 750백만원 = 750백만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나. 검토의견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변경계획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연내에 ESS 설치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AI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 및 승인한 후 3월 중 공모를 실시하여 4~6월 중 사업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계획서는 작성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초안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AI 활용 ESS 구축지원 월별 사업계획]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획 | 에너지공단 계획서 작성 | | **승인 및 공모** | 사업자 선정 | | | 운영 | | | | | |
| 실제 | 에너지공단 계획서 작성 | | **초안 검토 중** | | | | | | |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업의 2026년 당초 계획액 1,176억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교부조차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 집행액이 없는 상황임.

[2026년 3월 말 기준 AI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 부처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계획액 | 집행액 | 교부액 (A) | 전년도 이월액(B) | 계획현액 (C=A+B) | 실집행액 (D) | 실집행률 (D/C) |
| 한국에너지 공단 | 117,600 | - | - | - | - | - |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그런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안에 따른 사업자 선정 기간 중 기존 ESS 설치 20개소에 10개소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및 추진 일정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함.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물량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변경 사업계획을 수립·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기존 사업계획 승인 및 공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경계획 절차 또한 연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계획안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 통과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추가 물량을 반영한 변경계획도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수립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35조 9,08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3억원(0.6%) 증가함.

예산은 3,613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고, 기금은 35조 5,46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3억원(0.6%) 증가함.[2)]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3,472 | 3,472 | 3,613 | 3,613 | - | - |
| 기 금 | 343,910 | 343,910 | 353,373 | 355,466 | 2,093 | 0.6 |
| 합 계 | 347,382 | 347,382 | 356,986 | 359,080 | 2,093 | 0.6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백호열 예산결산조사관 bhy@assembly.go.kr (02-6788-5688)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38조 2,14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386억원(1.4%) 증가함.

예산은 7조 64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986억원(6.0%) 증가하고, 기금은 31조 1,50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1억원(0.5%) 증가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57,549 | 60,722 | 66,657 | 70,643 | 3,986 | 6.0 |
| 기 금 | 295,903 | 311,370 | 310,104 | 311,505 | 1,401 | 0.5 |
| 합 계 | 353,452 | 372,092 | 376,761 | 382,147 | 5,386 | 1.4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613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3,254 | 3,254 | 3,264 | 3,264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8 | 218 | 349 | 349 | - | - |
| 합 계 | 3,472 | 3,472 | 3,613 | 3,613 | - | -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조 6,95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986억원(5.5%) 증가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57,183 | 59,605 | 65,395 | 69,261 | 3,866 | 5.9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866 | 1.317 | 895 | 895 | - |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229 | 1,529 | 2,660 | 2,780 | 120 | 4.5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3,985 | 3,985 | 4,021 | 4,021 | - | - |
| 합 계 | 63,263 | 66,436 | 72,971 | 76,957 | 3,986 | 5.5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52조 6,93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319억원(0.4%)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임금채권보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조 1,062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093억원(23.3%) 증가하였고,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5,64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26억원(4.2%) 증가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고용보험기금 | 276,955 | 276,955 | 276,108 | 276,108 | 276,108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234,181 | 234,181 | 209,002 | 209,002 | 209,002 | - |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21,829 | 21,829 | 25,121 | 25,121 | 25,121 | - |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9,142 | 9,142 | 8,969 | 8,969 | 11,062 | 2,093 | 23.3 |
| 근로복지진흥기금 | 5,661 | 5,928 | 5,419 | 5,419 | 5,645 | 226 | 4.2 |
| 합 계 | 547,769 | 548,036 | 524,618 | 524,618 | 526,937 | 2,319 | 0.4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사업은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기준)는 6,304억 5,000만원임.

(※ 총지출 기준으로는 10개 세부사업, 5,386억 1,500만원)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186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20억원)의 2개 사업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899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90억원), 신용보증대위변제(226억원)의 3개 사업 및 청년집중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80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258억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65억원),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2억원), 내일배움카드(일반)(2,530억원)의 5개 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5,386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 | | | | |
| 1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109,730 | 109,730 | 106,820 | 108,000 | 1,180 | 1.1 |
| 2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777,181 | 802,597 | 907,959 | 933,709 | 25,750 | 2.8 |
| 3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 291,779 | 291,779 | 284,752 | 311,221 | 26,469 | 9.3 |
| 4 | 내일배움카드(일반) | 580,161 | 596,161 | 627,325 | 880,349 | 253,024 | 40.3 |
| 5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845,709 | 1,010,865 | 1,012,830 | 1,092,963 | 80,133 | 7.9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6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원 | 107,864 | 137,864 | 150,108 | 162,108 | 12,000 | 8.0 |
| 고용보험기금 | | | | | | | |
| 7 | 고용유지지원금 | 70,255 | 81,368 | 70,225 | 88,784 | 18,559 | 26.4 |
| 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8,284,165* | *6,965,780* | *6,893,689* | *6,875,130* | *△18,559* | *△0.3* |
| 임금채권보장기금 | | | | | | | |
| 9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 70,352 | 78,481 | 70,635 | 160,579 | 89,944 | 127.3 |
| 1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80,090* | *121,127* | *42,025* | *161,394* | *119,369* | *284.0* |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 | | | |
| 11 | 생활안정자금(융자) | 91,462 | 106,342 | 89,432 | 98,407 | 8,975 | 10.0 |
| 12 | 신용보증대위변제 | 31,659 | 64,611 | 37,734 | 60,315 | 22,581 | 59.8 |
| 13 |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 *31,215* | *57,887* | *40,172* | *62,753* | *22,581* | *56.2* |
| 14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08,887* | *167,335* | *188,221* | *156,665* | *△31,556* | *△16.8* |
| 합 계 | | 11,780,509 | 10,591,927 | 10,521,927 | 11,152,377 | 630,450 | 6.0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청년집중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K-뉴딜아카데미 사업을 편성하여 1만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내 집행 등 및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과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집중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1유형 중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27만 2,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거 집행실적 및 2026년 2월말 기준 1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수가 4만 2,156명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경우 중동 상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제충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집행 시 해당 업종·지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원요건의 설정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899억 4,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K-뉴딜아카데미 사업(신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상황으로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기업 등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1,482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6년도 K-뉴딜아카데미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내일배움카드(일반) | 580,161 | 596,161 | 627,325 | 880,349 | 253,024 | 40.3 |
| K-뉴딜아카데미 | - | - | - | 148,244 | 148,244 | 순증 |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478,116 | 478,116 | 521,313 | 626,093 | 104,780 | 20.1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이번 추경안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K-뉴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총괄운영기관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등이 설계·운영할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해당비용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참여 수당을 지급함.

3) 일반회계-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직업능력정책국)

[K-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 구 분 | K-뉴딜아카데미 |
|---|---|
| 사업내용 | 대기업 등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도전을 지원 |
| 참여대상 | (기업) 대기업 등<br>(청년) 15~34세 청년 |
| 운영기간 | 300시간, 3개월 이상 |
| 지원수준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 기업 우대 |
| 프로그램 | 직무 분야 훈련과 직무 外 프로그램으로 기업 자율 구성 |
|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 (신규) | 훈련비: 1,225억 6,400만원<br>훈련수당: 226억 8,000만원<br>운영지원센터 운영비: 22억 5,000만원<br>총괄운영센터 운영비: 7억원<br>일반수용비: 5,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이번 추경안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참여대상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연내 집행 및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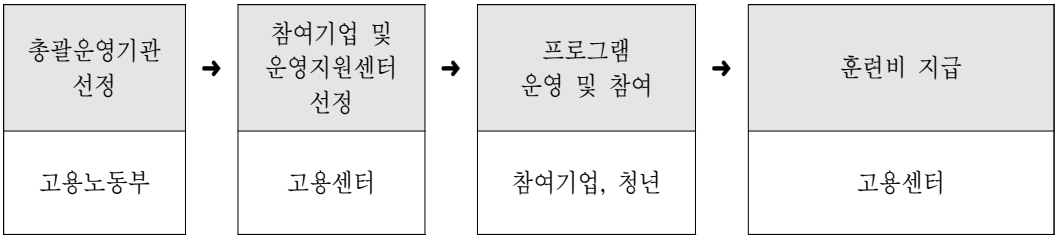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선호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1만 5,000명의 사업 대상인원에게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총괄운영기관이 참여기업과 운영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총괄운영기관 운영 시 산업별 전문가,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현장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4)]

4)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대상인원을 1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은 30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2026년도 K-뉴딜아카데미 사업 진행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중동 상황으로 인해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추경예산안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2025년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5]의 경우 사업공모 단계부터 훈련 실시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6]된 점을 고려하면, K-뉴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아직 총괄운영기관 선정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기업들도 프로그램 계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이 사업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를 들어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위에서 언급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안의 목적에 맞게 보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등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 집행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고, 총괄운영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심의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임.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153-35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6) 2025년의 경우 사업공모 단계에서 40일,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30일, 지원금 지급 단계 및 본 훈련실시 단계까지 23일이 소요됨.

**둘째,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내역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1,047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6,26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훈련 목표인원을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0,000명 증가시켰음.

[2026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개요]

| 사업명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
| 사업기간(재원) | 2021~계속(일반회계) |
| 개 요 |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 지원기간 | 훈련과정 참여기간 |
| 지원요건 | 출석률에 따른 훈련비 및 단위기간별 80%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 등 지원 |
| 지원수준 | 훈련비 전액 지원(1회), 훈련장려금(월 최대 20만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지급 |
| 지원목표 | 49,500명 → 59,500명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KDT사업의 개요에 따르면, 두 내역사업 모두 대기업 등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훈련시킬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 등은 AI, 클라우드, 핀테크 등과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사업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K-디지털 트레이닝 주요 훈련과정]

| 구분 |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분야 |
|---|---|---|---|
| 기업 | 삼성 | 청년 SW·AI 아카데미 | 빅데이터 |
| | 케이티 | AIVLE School | AI |
| | SK AX | SK AI 리더 아카데미 | AI |
| 혁신훈련기관 | 엘리스 | 엘리스 AI 트랙 | AI |
| | 팀스파르타 | 실무형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 과정 | 클라우드 |
| 대학 | 서울대학교 | 빅데이터 핀테크 AI 과정 | 핀테크 |
| | 성균관대학교 | Digital/Analog IC 기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과정 | 반도체 |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중동 상황으로 인해 가중되는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확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추진 방식이 유사한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1유형(청년) 지원 목표인원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가. 개 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01억 3,300만원(7.9%) 증액된 1조 92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국민취업지원제도 | 845,709 | 1,010,865 | 1,012,830 | 1,092,963 | 80,133 | 7.9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종료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 등)에게 소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7)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고용서비스정책관)

이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table>
<tr><th colspan="3" rowspan="3">구분</th><th colspan="4">지원대상 및 요건</th><th colspan="3">지원내용</th></tr>
<tr><th rowspan="2">연령</th><th rowspan="2">소득</th><th rowspan="2">재산</th><th rowspan="2">취업경험</th><th rowspan="2">취업지원<br>서비스</th><th colspan="2">소득지원</th></tr>
<tr><th>구직<br>촉진수당</th><th>취업활동<br>비용</th></tr>
<tr><td rowspan="4">1<br>유형</td><td colspan="2">요건심사형</td><td>15~69세</td><td>중위소득<br>60%↓</td><td>4억원↓</td><td>2년이내 100일<br>(800시간) 이상</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rowspan="2">선발형</td><td>청년</td><td>15~34세</td><td>중위소득<br>120%↓</td><td>5억원↓</td><td>선발시 고려</td></tr>
<tr><td>비경활</td><td>15~69세</td><td>중위소득<br>60%↓</td><td>4억원↓</td><td>선발시 고려</td></tr>
<tr><td rowspan="3">2<br>유형</td><td colspan="2">특정계층</td><td>15~69세</td><td>×</td><td>×</td><td>×</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청년</td><td>15~34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중장년</td><td>35~69세</td><td>중위소득<br>100%↓</td><td>×</td><td>×</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1유형 24.2만명(요건심사형 11.7만명・선발형(청년) 10.5만명・선발형(비경활) 2만명), 2유형 10.8만명(특정계층 1.2만명・청년 7.8만명・중장년 1.8만명)으로 35만명을 지원목표로 설정하였음.

이번 추경안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증액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참여자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민간위탁비를 786억 2,300만원 증액, ②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지원단' 경비 15억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801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8,736억 2,0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br>❍ 구직촉진수당: 7,182억 4,800만원<br><br>❍ 민간위탁비: 709억 7,700만원<br><br>❍ 운영비: 21억 200만원<br>❍ 취업성공수당 822억 9,300만원 | 9,537억 5,300만원 **(증 801억 3,3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br>**❍ 구직촉진수당: 7,805억 7,500만원**<br>**623억 2,700만원 증액**<br>① (구직촉진수당) 60만원(지원단가)×30,000명×0.94(IAP수립률)×5.1회(평균지급횟수)×0.7('26년 지급분)<br>② (부양가족수당) 10~40만원(지원단가)×30,000명×0.94(IAP수립률)×[0.074 / 0.043 / 0.009 / 0.001(가구원수별 비율)]×5.1회(평균지급횟수)×0.7('26년 지급분)<br>**❍ 민간위탁비: 872억 7,300만원**<br>**162억 9,600만원 증액:**<br>① 기본위탁비: 44,888백만원<br>② 알선취업성공금: 24,289백만원<br>③ 위탁기관 코칭 프로그램: 1,800백만원<br>**(추경)**<br>**① 기본위탁비: 12,825백만원**<br>**② 알선취업성공금: 3,471백만원**<br><br>**〈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신규〉**<br>**❍ 인건비 지원: 12억원**<br>**12억원 순증**: 160만원×125명×6개월<br>**❍ 기관 지원비: 3억원**<br>**3억원 순증**: 40만원×125명×6개월<br>**❍ 참여자 재해보상보험가입: 1천만원**<br>**1천만원 순증**<br>❍ 운영비: 21억 200만원<br>❍ 취업성공수당 822억 9,3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추가지원을 위해 3만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내 27만 2,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한 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추가 지원 3만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추가인원에 따른 구직촉진수당(604억 400만원)과 부양가족수당(19억 2,300만원), 추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162억 9,600만원)를 증액하였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추가 3만명분) 산출내역]

① 구직촉진수당 62,327백만원
- (구직촉진수당) 60만원(지원단가)×30,000명×0.94(IAP수립률)×5.1회(평균지급횟수)×0.7('26년 지급분)
- (부양가족수당) 10~40만원(지원단가)×30,000명×0.94(IAP수립률)×[0.074 / 0.043 / 0.009 / 0.001(가구원수별 비율)]×5.1회(평균지급횟수)×0.7('26년 지급분)

② 민간위탁비 16,296백만원
- (기본위탁비) 45만원(지원단가)×30,000명×0.95(IAP수립률)
- (취업인센티브) AB등급[30 / 55 / 80 / 135만원(단가)]×1,995명×0.214(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률)×0.95 (1개월 근속률)×[0.226 / 0.418 / 0.172 / 0.184(취업처 비중)] + CD등급[10 / 35 / 60 / 115만원(단가)]×26,505명×0.214(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률)×0.95(1개월 근속률) × [0.146 / 0.373 / 0.191 / 0.29(취업처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2월말까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의 수급자격 인정 인원 현황을 보면, 총 4만 2,156명이 인정되어 목표인 27만 2,000명의 15.5%에 불과함.

2026년 1월에서 2월까지 월평균 약 2만 1,078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이와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더라도 당초 목표한 1유형 목표 지원 인원인 27만 2,000명에 미달할 것으로 보임.

[2022~2026.2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유형 수급자격 인정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2022 | 20,034 | 19,629 | 24,972 | 17,462 | 20,664 | 19,497 | 18,689 | 16,485 | 5,648 | 23,477 | 16,923 | 13,490 | 216,970 |
| 2023 | 15,597 | 16,712 | 20,045 | 19,136 | 23,727 | 21,692 | 19,275 | 17,108 | 18,296 | 19,628 | 20,419 | 15,111 | 226,746 |
| 2024 | 20,530 | 16,326 | 20,078 | 20,973 | 27,686 | 22,443 | 24,629 | 19,141 | 18,854 | 25,407 | 17,512 | 16,085 | 249,664 |
| 2025 | 19,489 | 23,821 | 26,161 | 25,628 | 17,522 | 12,954 | 17,695 | 14,837 | 16,000 | 16,162 | 14,906 | 14,905 | 220,080 |
| 2026 | 23,449 | 18,707 | 사업 추진 중 | | | | | | | | | | 42,156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고용노동부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인원은 1, 2월에 저조하였다가 3월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며,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 요건을 완화하여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 설명함.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인원은 약 21만명~25만명 수준에서 유지된 것을 보면,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7만 2,000명은 현행 참여실적 대비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인원 증가분 3만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청년들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의 운영여건, 전문성,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민간위탁기관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기관은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으로 나뉘며, 1유형 선발형 청년 및 2유형 청년층은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을 판단하고, 이후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추가 지원 3만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추가되는 사업물량인 1유형 청년 3만명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도 증액(162억 9,600만원)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요건을 완화하여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추가되는 인원은 모두 민간위탁기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청년 참여자는 모집 단계, 심층상담, 취업활동계획, 프로그램 연계 등 밀도있는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추경 증가분의 원활한 집행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인력운영 여건과 위탁단가의 적정성, 상담사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지속가능성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청년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청년 인원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청년들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운영여건, 전문성,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민간위탁기관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세출증액>

# 3.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 재난, 산업구조 전환 등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 발생 시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20억원(26.7%) 증액된 570억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 107,864 | 137,864 | 150,108 | 162,108 | 12,000 | 8.0 |
| 버팀이음프로젝트 | - | 30,000 | 45,000 | 57,000 | 12,000 | 26.7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은 2025년 추경[9)] 시 대미 통상환경, 재난(경북지역 산불) 등 예기치 못한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반영(300억원)된 사업인데,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제도 개편 시 버팀이음프로젝트(450억원) 사업명으로 본예산에 편성됨.

[2026년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 2026년도 추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450억원 | 버팀이음프로젝트 450억원<br>(9개소×50억) | 570억원 | 버팀이음프로젝트 570억원<br>(9개소×50억) + (4개소×30억) |

자료: 고용노동부

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056-317)(노동시장정책관)

9) 제1회 추경(2025년 5월)

기존 버팀이음프로젝트는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 후 후속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위기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음.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버팀이음프로젝트(120억원) 또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이므로 추경안 확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설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2026년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개요]

| 구분 | 버팀이음프로젝트 |
|---|---|
| 지원 산업 | 고용 위기, 산업위기 지정관련 업종 |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산업위기(선제대응)<br>지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우선), 이에 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
| 지원 방식 /<br>운영 방향 | (지원방식) 비공모 신청 원칙, 다만 예산 사정을 고려 필요시 공모(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시 1회)<br>(운영방향) 구조적·국지적 충격으로 인한 지역·주력산업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접 생활권에서의 매칭을 우선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전환과 생활 안정을 동시 지원 |
| 지원규모 | 지역당 최대 80억원 |
| 2026년 3월 현재<br>선정결과 | 2026. 3. 24. 기준 5개* 광역 200억 지원(100억 추가 배정 예정)<br>* 전남(여수), 경북(포항), 충남(서산), 광주(광산), 울산(남구)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노동부는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의 악화 및 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주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행복카드[10]·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재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 등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참조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설계·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10) 기준 금액 내에서 의료, 자기개발, 문화, 여가 등을 위하여 사용

[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예시 ]

| 구분 |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 재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 |
|---|---|---|
| 지원 대상 | 해당 산업 악화, 사업장 폐쇄 및 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 |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
| 지원 패키지 | ①정주비 + ②교통비 + ③기타(이주비 등) | ①건강검진비 + ②행복카드 + ③심리상담비 + ④기타 |
| 추가 지원 | - | 고용둔화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추가 지원으로 월 최저임금 수준 보장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 업종 및 지역에 대한 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추경안 확정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중동 상황에 따라 영향이 큰 업종(석유화학·물류 운송 관련 등 전·후방산업)이 밀집된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추경예산안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면밀한 사업 설계를 통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4월 중 사업 공고(지방자치단체 사전 협의 포함) 및 지원 대상지역 선정을 통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11]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 지원 대상 산업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추경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선정 방식은 예산당국과 협의 후 추진한다는 계획인바,

11) 2025년 제1회 추경 당시, 예산 확정(5.1.) 후 공모-사업 추진(6.18.)까지 약 7주 소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업 설계 과정이 필수적인데, 사업 설계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격적인 사업 시작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지역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번 추경안의 편성 목적을 감안할 때 사업의 적시성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 업종 및 지역에 대한 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추경안 확정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

### <지출증액>

## 4.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 가. 개 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85억 5,900만원(26.4%) 증액된 88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고용유지지원금 | 70,255 | 81,368 | 70,225 | 70,225 | 88,784 | 18,559 | 26.4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외부 환경의 악화로 인해 감원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을 막고 사업주가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또는 각종 복지 비용을 줄이며 근로자의 숙련유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일시적 고용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및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에서 규정한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

12)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1045-350)(노동시장정책관)

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무급의 경우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임.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제한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보전금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함.[13)]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 동안 금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유급고용유지조치와 무급고용유지조치로 나뉘는데, 휴업과 휴직 각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이행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예를 들어 휴업 또는 휴직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유급' 휴업 또는 휴직의 경우, '휴업'은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피보험자의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나,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를 면제하는 것을 고용유지조치 이행 조건으로 하고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내용은 유급 휴업·휴직과 무급 휴업·휴직으로 나뉘어 있음.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을 기준으로 업종과 지원한도를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을 기준으로 2/3를 1일 6만 8,100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를 1일 7만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규모별로도 차등을 두어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 일반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단축율이 50% 이상인 경우 2/3)을 1일 6만 8,100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을 지원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단축율이 50% 이상인 경우 3/4)를 1일 6만 8,100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간 지원하고 있음.

반면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지원수준은 업종이나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6만 8,100원을 한도로 최대 180일 간 지원되고 있음.

13) 단, 무급 지원유형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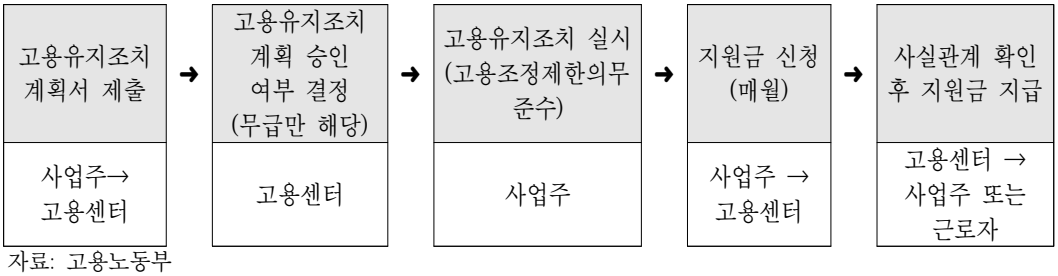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유급 고용유지지원금</th><th>무급 고용유지지원금</th></tr>
<tr><td colspan="2">고용조정<br>불가피한 사유</td><td colspan="2">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br>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br>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td><td>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br>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br>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td></tr>
<tr><td rowspan="2">고용유지<br>조치<br>이행조건</td><td>휴업</td><td colspan="2">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td><td>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및 휴업기간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br>실시비율: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br>▲10% 이상 (100명~999명),<br>▲100명 이상 (1,000명 이상)</td></tr>
<tr><td>휴직</td><td colspan="2">1개월 이상 근로 면제 후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td><td>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 이상)을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휴직 실시 후 금품 미지급<br>실시비율: ▲10명 이상 (99명 이하)<br>▲10% 이상 (100명~999명)<br>▲100명 이상 (1,000명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3">지원수준</td><td>일반업종</td><td>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br>▲우선지원 2/3<br>▲대규모 1/2 또는 2/3*<br>*단축률 50% 이상</td><td rowspan="3">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br>(근로자별 지급)</td></tr>
<tr><td>고용위기<br>선제대응<br>지역</td><td>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br>▲우선지원 8/10<br>▲대규모 6/10 또는 7/10*<br>*단축률 50% 이상</td></tr>
<tr><td>특별고용<br>지원업종<br>/고용위<br>기지역</td><td>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br>▲우선지원 9/10<br>▲대규모 2/3 또는 3/4*<br>*단축률 50%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2">지원한도<br>(기간)</td><td>일반업종<br>/고용위기<br>선제대응<br>지역</td><td>▲ 1일 68,100원<br>(연 180일)</td><td rowspan="2">▲1일 68,100원<br>(재직기간 중 180일)</td></tr>
<tr><td>특별고용<br>지원업종<br>/고용위<br>기지역</td><td>▲우선지원 1일 7만원<br>▲대규모 1일 68,100원<br>(연 180일)</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함.[14] 이 때 사업주는 고용조정제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해고 등을 할 수 없음. 이후 매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

[2026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출 및 생산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과 그 협력업체의 경영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이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고용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14) 다만,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함.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계획 | | 2026년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702억 2,500만원 | ○ 보험금(320-04): 702억 500만원<br>가. 휴업·휴직(686억 8,900만원)<br>・(본예산) 37,575명×854,240원×2.14개월 ≒ 686억 8,900만원<br><br>나. 무급휴업・휴직(15억 1,600만원)<br>・(본예산) 315명×1,476,000원×3.26개월 ≒ 15억 1,600만원 | 887억 8,400만원 | ○ 보험금(320-04): 887억 6,400만원<br>가. 휴업·휴직(872억 4,800만원)<br>・(본예산) 37,575명×854,240원×2.14개월 ≒ 686억 8,900만원<br>・(추경) 10,155명×854,000원×2.14개월 =185억 5,900만원<br>나. 무급휴업・휴직(15억 1,600만원)<br>・(본예산) 315명×1,476,000원×3.26개월 ≒ 15억 1,600만원 |
| |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br>· 채권관리비용 2,000만원 | |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br>· 채권관리비용 2,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중동 상황에 따른 고용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용악화 대비를 목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출계획액을 증액하였는바, 고용노동부는 연내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용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반기 고용악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출액을 증액하였음.

과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모두 80% 미만이었고, 2025년 제1회 추경 시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등에 따른 고용충격 적시 대응 및 하반기 고용악화 대비를 위해 111억 1,3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96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6년의 경우 3월 23일 기준 계획현액 702억 2,500만원 중 154억 1,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2.0%이고, 1분기 집행실적이 연중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집행률은 약 88%로 예상됨.

[2022~2026년(2026.3.23.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개, 명, %)

| 연도 | 예산 | | 실적 | | | |
|---|---|---|---|---|---|---|
| | 당초 | 현액(A) | 사업장 | 순인원 | 집행액(B) | 집행률(B/A) |
| 2022년 | 597,621 | 596,901 | 14,268 | 137,114 | 463,802 | 77.7 |
| 2023년 | 197,220 | 197,220 | 6,204 | 61,176 | 126,802 | 64.3 |
| 2024년 | 71,372 | 71,372 | 3,727 | 44,842 | 70,126 | 98.3 |
| 2025년 | 70,255 | 81,368 | 3,065 | 32,797 | 71,729 | 88.2 |
| 2026년 (3. 23. 기준) | 70,225 | 70,225 | 1,038 | 12,380 | 15,416 | 22.0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증액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동 상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제충격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집행 시 해당 업종·지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원요건의 설정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장의 경영악화를 전제로 집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일시적 경제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유급)·30%(무급)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나, 중동 상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제충격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업종별·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집행 시 해당 업종·지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한 보다 세분화된 지원요건의 설정 및 적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지출증액>

## 5.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 개선 필요

### 가. 개 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장례·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89억 7,500만원(10.0%)이 증액된 98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생활안정자금(융자) | 91,462 | 106,342 | 89,432 | 89,432 | 98,407 | 8,975 | 10.0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16)]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 12월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융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및 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로 확대하였음.

---

15) 근로복지진흥기금-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근로기준정책관)

16)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음.

[2026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 구분 | | 대상 및 조건 |
|---|---|---|
| 사업 내용 | | • 저소득 노동자(비정규직, 특고, 1인 자영업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사업 기간 | | • '96년부터 ~ 계속 |
| 사업 근거 | |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br>•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1호) |
| 융자대상 | ①의료비<br>②혼례비<br>③장례비<br>④노부모부양비<br>⑤자녀양육비 |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br>(*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br>•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026년 268만원) 이하<br>(*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
| | ⑥소액생계비 |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br>(*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br>•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br>•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026년 268만원) 이하<br>(*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
| 융자한도 | ①의료비<br>③장례비 | • 1,000만 원 |
| | ②혼례비 | • 1,250만 원 |
| | ④노부모부양비 | • 2,000만 원 한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
| | ⑤자녀양육비 | •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18세 미만 자녀) |
| | ⑥소액생계비 | • 200만 원 |
| |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
| 금리 |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 |
| 상환 |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자료: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89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차보전이 아닌 금융기관 대하방식[17]으로 진행되는 기존 융자사업을 증액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용충격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측면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출계획액을 증액하였는데, 중동 상황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026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계획 | | 2026년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894억<br>3,200만원 | ○ 생활안정자금(융자) 854억 7,500만원<br>= 14,118명 × '24년 융자종목별 평균단가<br>- 의료비 3,054명×370만원('24년 평균단가)<br>= 113억원<br>- 혼례비 3,423명×1,220만원('24년 평균단가)<br>= 417억 6,100만원<br>- 장례비 165명×890만원('24년 평균단가)<br>= 14억 6,900만원<br>- 노부모요양비 1,222명×430만원('24년 평균단가)<br>= 52억 5,500만원<br>- 자녀양육비 5,114명×460만원('24년 평균단가)<br>= 235억 2,400만원<br>- 소액생계비 1,140명×190만원('24년 평균단가)<br>= 21억 6,600만원<br><br>○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30억원<br>= (20,000명 × 500만원) × 이차보전율 3.0%<br>○ 2025년 이전 융자잔액 이차보전금<br>9억 5,700만원 | 984억<br>700만원 | ○ 생활안정자금(융자) 944억 5,000만원<br>= 14,118명 × '24년 융자종목별 평균단가<br>- 의료비 3,054명×370만원('24년 평균단가)<br>= 113억원<br>- 혼례비 3,423명×1,220만원('24년 평균단가)<br>= 417억 6,100만원<br>- 장례비 165명×890만원('24년 평균단가)<br>= 14억 6,900만원<br>- 노부모요양비 1,222명×430만원('24년 평균단가)<br>= 52억 5,500만원<br>- 자녀양육비 5,114명×460만원('24년 평균단가)<br>= 235억 2,400만원<br>- 소액생계비 1,140명×190만원('24년 평균단가)<br>= 21억 6,600만원<br><br>**- ('26년 추경) 추가소요 89억 7,500만원**<br>**= 1,662명×540만원('26.1~2월 융자지원 평균단가)**<br><br>○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30억원<br>= (20,000명×500만원)×이차보전율 3.0%<br>○ 2025년 이전 융자잔액 이차보전금<br>9억 5,7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17) 대하 방식이란 소관 부처 또는 기금관리주체(주관기관)이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시중은행 또는 공공기관(취급기관)에 융자금을 대여하면 취급기관이 해당 자금으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시행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함.

## 나. 검토의견

**2020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대상에 포함된 이후의 집행실적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안정이라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른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하였음.

이에 2020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18]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였음.[19]

다만, 사업대상이 확대된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직종 중에서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 107억 1,200만원 중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가 35억 8,600만원으로, 전체 융자금액의 33.5%를 차지하였고,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원 2,097명 중 보험설계사가 773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였음.

고용노동부가 2021년 11월 실시한 「제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융자대상 확대(특고)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20]

---

18)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개 업종(① 보험설계사, ②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전속 퀵서비스 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모집인, ⑨ 전속 대리운전기사, ⑩ 건설기계조종사, ⑪ 방문강사, ⑫ 방문판매원, 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⑭ 가전제품 설치기사, ⑮ 화물차주)과 기타업종(경륜선수, 대리운전기사(비전속), 학원강사 등)뿐만 아니라, 위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산재보험 미적용 직종 등 모든 업종이 융자를 받을 수 있음.

19)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2020.9.)

[2020~2026년(3월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지원 비율]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 | | 계 | | 의료비 | | 혼례비 | | 장례비 | | 부모 요양비 | | 자녀 학자금 | | 자녀 양육비 | | 임금감소 생계비 | | 소액 생계비 |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0년 | 전체 | 2,869 | 24,359 | 219 | 1,142 | 68 | 842 | 12 | 120 | 101 | 491 | 326 | 1,638 | - | - | 1,190 | 15,558 | 952 | 4,556 |
| | 보험설계사 | 1,622 | 12,474 | 145 | 783 | 33 | 409 | 5 | 50 | 51 | 249 | 194 | 981 | - | - | 577 | 7,074 | 617 | 2,928 |
| | 비중 | 56.5 | 51.2 | 66.2 | 68.6 | 48.5 | 48.6 | 41.7 | 41.7 | 50.5 | 50.7 | 59.5 | 59.9 | - | - | 48.5 | 45.5 | 64.8 | 64.3 |
| '21년 | 전체 | 2,517 | 13,304 | 346 | 1,563 | 132 | 1,589 | 15 | 135 | 86 | 423 | 375 | 1,867 | 546 | 2,697 | 339 | 3,413 | 678 | 1,616 |
| | 보험설계사 | 1,446 | 6,979 | 235 | 1,082 | 51 | 623 | 11 | 95 | 47 | 231 | 187 | 931 | 312 | 1,542 | 163 | 1,407 | 440 | 1,068 |
| | 비중 | 57.4 | 52.5 | 67.9 | 69.2 | 38.6 | 39.2 | 73.3 | 70.4 | 54.7 | 54.6 | 49.9 | 49.9 | 57.1 | 57.2 | 48.1 | 41.2 | 64.9 | 66.1 |
| '22년 | 전체 | 4,509 | 20,481 | 679 | 2,939 | 315 | 3,749 | 31 | 254 | 263 | 1,226 | 606 | 2,949 | 1,212 | 5,945 | 218 | 1,076 | 1,185 | 2,342 |
| | 보험설계사 | 2,127 | 8,973 | 342 | 1,500 | 75 | 918 | 11 | 101 | 102 | 433 | 311 | 1,527 | 503 | 2,439 | 166 | 835 | 617 | 1,221 |
| | 비중 | 47.2 | 43.8 | 50.4 | 51.0 | 23.8 | 24.5 | 35.5 | 39.8 | 38.8 | 35.3 | 51.3 | 51.8 | 41.5 | 41.0 | 76.1 | 77.6 | 52.1 | 52.1 |
| '23년 | 전체 | 4,115 | 17,572 | 670 | 2,314 | 265 | 3,199 | 25 | 228 | 249 | 1,075 | 592 | 2,718 | 1,193 | 5,633 | 97 | 461 | 1,024 | 1,944 |
| | 보험설계사 | 2,085 | 8,258 | 391 | 1,283 | 76 | 915 | 15 | 144 | 130 | 547 | 338 | 1,540 | 546 | 2,538 | 62 | 308 | 527 | 983 |
| | 비중 | 50.7 | 47.0 | 58.4 | 55.4 | 28.7 | 28.6 | 60.0 | 63.2 | 52.2 | 50.9 | 57.1 | 56.7 | 45.8 | 45.1 | 63.9 | 66.8 | 51.5 | 50.6 |
| '24년 | 전체 | 2,232 | 10,418 | 412 | 1,337 | 247 | 2,991 | 11 | 91 | 119 | 482 | 335 | 1,544 | 703 | 3,224 | - | - | 405 | 749 |
| | 보험설계사 | 966 | 3,974 | 217 | 618 | 63 | 757 | 4 | 25 | 41 | 155 | 162 | 755 | 303 | 1,344 | - | - | 176 | 320 |
| | 비중 | 43.3 | 38.1 | 52.7 | 46.2 | 25.5 | 25.3 | 36.4 | 27.5 | 34.5 | 32.2 | 48.4 | 48.9 | 43.1 | 41.7 | - | - | 43.5 | 42.7 |
| '25년 | 전체 | 2,097 | 10,712 | 476 | 1,865 | 244 | 2,981 | 17 | 138 | 110 | 499 | - | - | 1,063 | 4,886 | - | - | 187 | 344 |
| | 보험설계사 | 773 | 3,586 | 206 | 749 | 65 | 801 | 9 | 68 | 34 | 137 | - | - | 387 | 1,708 | - | - | 72 | 123 |
| | 비중 | 36.9 | 33.5 | 43.3 | 40.2 | 26.6 | 26.9 | 52.9 | 49.3 | 30.9 | 27.5 | - | - | 36.4 | 35.0 | - | - | 38.5 | 35.8 |
| '26년 3월 | 전체 | 757 | 3,840 | 76 | 240 | 62 | 704 | 1 | 10 | 18 | 78 | - | - | 569 | 2,749 | - | - | 31 | 60 |
| | 보험설계사 | 313 | 1,528 | 39 | 137 | 17 | 183 | 0 | 0 | 4 | 14 | - | - | 250 | 1,189 | - | - | 3 | 4 |
| | 비중 | 41.3 | 39.8 | 51.3 | 57.1 | 27.4 | 26.0 | 0.0 | 0.0 | 22.2 | 17.9 | - | - | 43.9 | 43.3 | - | - | 9.7 | 6.7 |

자료: 고용노동부

이번 추경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취약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융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융자사업 홍보와 사업 관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기에 융자를 받아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 「제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p.29.

##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 <지출증액>

# 6.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 가. 개 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21] 및 제26조[22]에 따라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225억 8,100만원(59.8%)이 증액된 60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신용보증 대위변제 | 31,659 | 86,331 | 37,734 | 37,734 | 60,315 | 22,581 | 59.8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계정)이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사업은 ①「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21)「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2)「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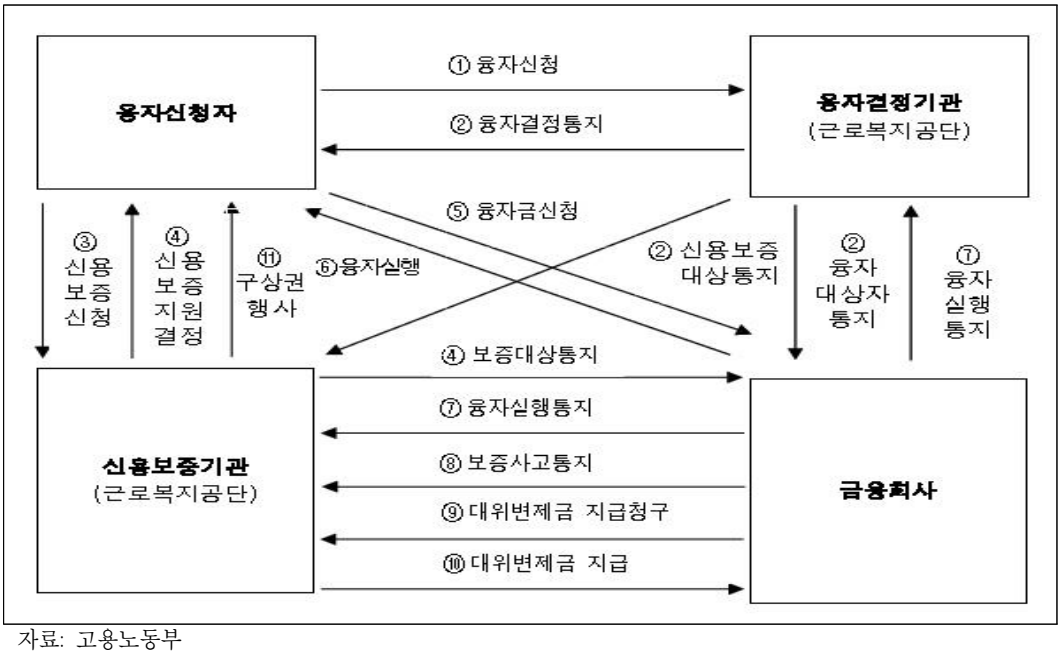
23)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근로기준정책관)

융자,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④「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이 있음.

신용보증사업계정의 보증을 제공받는 융자사업의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증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건을 확인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보를 하고 대행금융기관에게 융자대상자를 통지함. 이후 각 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대상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각 기금에 반납함.

만약 대출 상환 사고(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계정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 사업 예산에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융자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위변제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됨.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본예산 대비 225억 8,100만원 증액된 60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table>
<tr><th colspan="2">2026년도 계획</th><th colspan="2">2026년도 변경안</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 rowspan="2">377억<br>3,400만원</td><td>○ 신용보증대위변제: 368억 6,700만원<br>- '25년말 추정보증잔액에 최근 5년간('20～'24년) 융자사업별 대위변제율의 평균(4.995%) 적용・산출<br>- (산출식) 융자사업별 '25년말 추정보증잔액 × 대위변제율(4.995%)<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5년말 추정 보증잔액</th><th>대위 변제율</th><th>대위 변제금</th></tr>
<tr><td>생활안정자금</td><td>338,111</td><td rowspan="6">4.995</td><td>16,887</td></tr>
<tr><td>임금체불생계비<br>(체불근로자생계비 포함)</td><td>107,899</td><td>5,390</td></tr>
<tr><td>소액생계비</td><td>1,292</td><td>65</td></tr>
<tr><td>직업훈련생계비</td><td>239,606</td><td>11,968</td></tr>
<tr><td>산재생활안정자금</td><td>51,197</td><td>2,557</td></tr>
<tr><td>계</td><td>738,105</td><td>-</td><td>36,867</td></tr>
</table></td><td rowspan="2">603억<br>1,500만원</td><td>○ 신용보증대위변제: 594억 4,800만원 (+225억 8,100만원)<br>- '25년 대위변제 이월금액 (미집행분) 3,061백만원과 '26년 신용보증 대위변제 필요금액 63,734백만원을 합산한 후 '26년 대위변제 절감액 7,347백만원[1]과 '26년 기배정 예산 36,86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br>1) 1,452건(' 21～' 25년 평균 사고해제건수) × 노력도110% ×4.6백만원(' 25년 평균대위변제단가*) = 7,347백만원<br>* 85,808백만원( '25년 대위변제액) ÷ 18,479건( '25년 대위변제 건수)<br>(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청구예상액</th><th>구분</th><th>청구예상액</th></tr>
<tr><td>'26.1월</td><td>6,065</td><td>'26.7월</td><td>4,730</td></tr>
<tr><td>'26.2월</td><td>5,863</td><td>'26.8월</td><td>5,044</td></tr>
<tr><td>'26.3월</td><td>5,576</td><td>'26.9월</td><td>5,389</td></tr>
<tr><td>'26.4월</td><td>5,378</td><td>'26.10월</td><td>5,009</td></tr>
<tr><td>'26.5월</td><td>5,828</td><td>'26.11월</td><td>4,621</td></tr>
<tr><td>'26.6월</td><td>5,090</td><td>'26.12월</td><td>5,141</td></tr>
<tr><td>계</td><td colspan="3">63,734</td></tr>
</table></td></tr>
<tr><td>○ 신용보증료환급: 8억 6,700만원<br>- '25년말 추정보증잔액에 최근 5년간('20～'24년) 융자사업별 보증료 환급비율의 평균 적용・산출 → 867백만 원<br>- 융자사업별 '25년말 추정보증잔액 × 보증료 환급률<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5년말 추정 보증잔액</th><th>보증료 환급률</th><th>환급 보증료</th></tr>
<tr><td>생활안정자금</td><td>338,111</td><td>0.10</td><td>338</td></tr>
<tr><td>임금체불생계비<br>(체불근로자생계비 포함)</td><td>107,899</td><td>0.25</td><td>270</td></tr>
<tr><td>소액생계비</td><td>1,292</td><td>0.12</td><td>2</td></tr>
<tr><td>직업훈련생계비</td><td>239,606</td><td>0.09</td><td>216</td></tr>
<tr><td>산재생활안정자금</td><td>51,197</td><td>0.08</td><td>41</td></tr>
<tr><td>계</td><td>738,105</td><td></td><td>867</td></tr>
</table></td><td>○신용보증료환급: 8억 6,700만원<br>- '25년말 추정보증잔액에 최근 5년간('20～'24년) 융자사업별 보증료 환급비율의 평균 적용・산출 → 867백만원<br>- 융자사업별 '25년말 추정보증잔액 × 보증료 환급률<br>(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5년말 추정 보증잔액</th><th>보증료 환급률</th><th>환급 보증료</th></tr>
<tr><td>생활안정자금</td><td>338,111</td><td>0.10</td><td>338</td></tr>
<tr><td>임금체불생계비<br>(체불근로자생계비 포함)</td><td>107,899</td><td>0.25</td><td>270</td></tr>
<tr><td>소액생계비</td><td>1,292</td><td>0.12</td><td>2</td></tr>
<tr><td>직업훈련생계비</td><td>239,606</td><td>0.09</td><td>216</td></tr>
<tr><td>산재생활안정자금</td><td>51,197</td><td>0.08</td><td>41</td></tr>
<tr><td>계</td><td>738,105</td><td></td><td>867</td></tr>
</table></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는「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에 따른 의무지출로서, 금융회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이행 청구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 도과 시 연 2%의 추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번 추경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지출계획액 8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향후 신용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이 사업을 통해 3만 4,833명의 근로자들이 1,701억 3,0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음. 사업별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이 가장 큰 규모의 924억 4,800만원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326억 8,700만원),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융자(244억 8,100만원), 산재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205억 1,400만원) 순임.

[2021~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융자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 구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2026년 2월말 | |
|---|---|---|---|---|---|---|---|---|---|---|---|---|
|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 143,946 (40.9) | 24,801 (50.0) | 220,676 (71.4) | 41,639 (76.1) | 165,030 (53.8) | 30,639 (59.7) | 118,234 (61.3) | 20,306 (55.5) | 92,448 (54.3) | 15,781 (45.3) | 29,780 (46.1) | 5,482 (39.2) |
|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 173,005 (49.1) | 20,383 (41.1) | 53,848 (17.4) | 8,405 (15.4) | 78,953 (25.7) | 13,103 (25.5) | 25,055 (13.0) | 10,053 (27.5) | 24,481 (14.4) | 12,570 (36.1) | 4,405 (6.8) | 2,257 (16.1)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 15,481 (4.4) | 1,588 (3.2) | 15,636 (5.1) | 1,580 (2.9) | 15,617 (5.1) | 1,637 (3.2) | 14,265 (7.4) | 1,515 (4.1) | 20,514 (12.1) | 2,185 (6.3) | 2,534 (3.9) | 288 (2.1) |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19,724 (5.6) | 2,842 (5.7) | 18,918 (6.1) | 3,080 (5.6) | 47,207 (15.4) | 5,910 (11.5) | 35,391 (18.3) | 4,734 (12.9) | 32,687 (19.2) | 4,297 (12.3) | 27,913 (43.2) | 5,967 (42.6) |
| 신용보증합계 | 352,157 (100.0) | 49,614 (100.0) | 309,078 (100.0) | 54,704 (100.0) | 306,807 (100.0) | 51,289 (100.0) | 192,945 (100.0) | 36,608 (100.0) | 170,130 (100.0) | 34,833 (100.0) | 64,633 (100.0) | 13,994 (100.0) |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해당 융자사업 신용보증 지원금액 또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금액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크게 확대되었는데,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일환으로 2020년부터 취약계층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금별로 융자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금액이 증가한 것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도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2~2026년도 사업별 대위변제금 회수 및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2026년 2월 말 | |
|---|---|---|---|---|---|---|---|---|---|---|
| | 회수 | 지급 | 회수 | 지급 | 회수 | 지급 | 회수 | 지급 | 회수 | 지급 |
|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 5,088 | 17,432 | 4,742 | 18,346 | 5,147 | 16,301 | 5,961 | 49,699 | 1,244 | 7,313 |
|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 1,479 | 8,782 | 1,784 | 12,510 | 2,139 | 10,975 | 2,794 | 32,186 | 600 | 4,614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 896 | 1,399 | 747 | 1,739 | 780 | 1,529 | 728 | 1,527 | 90 | 183 |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2 | 92 | 21 | 439 | 86 | 750 | 142 | 2,390 | 40 | 382 |
| 합 계 | 7,465 | 27,705 | 7,294 | 33,034 | 8,152 | 29,555 | 9,625 | 85,802 | 1,974 | 12,492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회수관리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이 74억 6,300만원 발생하였고, 2025년의 경우 63억 3,400만원의 불납결손액과 761억 5,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2020~2026년(2월 말)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B) | 수납률 (B/A)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2020 | 15,451 | 6,908 | 44.71 | 8,543 | 3,361 |
| 2021 | 18,418 | 7,147 | 38.80 | 11,271 | 4,170 |
| 2022 | 27,711 | 7,756 | 27.99 | 19,955 | 6,532 |
| 2023 | 33,035 | 7,320 | 22.16 | 25,715 | 6,942 |
| 2024 | 29,555 | 8,173 | 27.65 | 21,382 | 7,463 |
| 2025 | 85,803 | 9,647 | 11.24 | 76,156 | 6,334 |
| 2026년 2월 말 | 12,492 | 1,975 | 15.81 | 10,519 | - |

자료: 고용노동부

구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융자 건의 거치기간 경과와 2022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근로계층의 대위변제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함.

이번 추경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구상채권액도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금채권보장기금】

### <지출증액>

## 7.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미상환 융자금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은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899억 4,400만원(127.3%) 증액된 1,605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당초 | 수정 | 당초 | 현계획(A) | 변경안(B) | 증감(B-A) | (B-A)/A |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 70,352 | 86,356 | 70,635 | 70,635 | 160,579 | 89,944 | 127.3 |

주 1)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6년도 현계획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①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임금 지불여력이 부족하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되,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주 융자’와 ②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를 융자하는 ‘근로자 융자’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25)]

---

24) 임금채권보장기금-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3054-304)(근로기준정책관)

25) **사업주 융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및 조사(체불사업주→지방고용노동관서) ⇒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체불사업주→근로복지공단) ⇒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근로복지공단→금융기관 등) ⇒ 융자금 지급 및 상환(금융기관) ⇒ 채무불이행시 채권 양도(금융기관→근로복지공단) ⇒ 미수채권 회수 절차(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근로자 융자**: 융자 신용보증 신청(근로자) ⇒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근로복지공단) ⇒ 융자계약 체결(근로자 및 은행) ⇒ 융자금 지급(은행)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의 내용]

| 구 분 | 사업주 융자(2012.8.~) | 근로자 융자(2021.6.~) |
|---|---|---|
| 지원형태 | 융자 | 융자 |
| 지원대상 |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 |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 체불확인서 필요 |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3.7% | 1.5% |
| 융자금액 |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융자 (사업주별) 1억 5천만원 (근로자별) 1천 5백만원[26] | 총 체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 (1천만원 한도)[27] |
| 융자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899억 4,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영애로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생안정을 위한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가 임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28]보다 사업주가 융자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함.

---

2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7)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3조(생계비 융자 상한액) ① 규칙 제8조의12제3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을 1,500만원으로 한다.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2026년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계획 | | 2026년도 변경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706억 3,500만원 | ○ 기타민간융자금: 706억 3,500만원<br>1. 체불청산지원 융자 : 706억 3,500만원<br>가. 사업주<br>5,580명×6,655,000원(371억 3,500만원)<br>나. 근로자<br>4,645명×7,212,000원(335억원) | 1,605억 7,900만원 | ○ 기타민간융자금:1,605억 7,900만원<br>1. 체불청산지원 융자 : 1,605억 7,900만원<br>가. 사업주<br>9,952명×6,655,000원(662억 3천만원)<br>나. 근로자<br>(부족분) 7,758명×7,212,000원(559억 4,900만원)<br>(대규모체불)5,324명×7,212,000원(384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융자 등의 확대에 따라 융자금 실행 이후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1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추진하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하면서 소득요건 제한을 삭제하여 융자대상을 확대한 바 있고, 사업주 융자금액 상향 및 융자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융자 이용자 수 및 융자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29)]

2020년부터 2026년 2월 말까지의 체불청산지원 융자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및 집행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29) 2021.6.9.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함.
2024.8.7. 융자사유를 완화(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융자사유 폐지)함.

[2020~2026년(2월 말) 체불청산지원 융자 내역]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 사업주 융자 | | | 근로자 융자 | | 합계 | |
|---|---|---|---|---|---|---|---|
| | 사업장수 | 근로자 | 금액 | 근로자 | 금액 | 근로자 | 금액 |
| 2020 | 505 | 5,344 | 19,240 | - | - | 5,344 | 19,240 |
| 2021 | 555 | 4,178 | 21,255 | 2,842 | 19,724 | 7,020 | 40,979 |
| 2022 | 342 | 2,678 | 14,259 | 3,080 | 18,918 | 5,758 | 33,177 |
| 2023 | 482 | 4,210 | 25,579 | 5,910 | 47,207 | 10,120 | 72,786 |
| 2024 | 668 | 5,965 | 39,806 | 4,945 | 37,112 | 10,910 | 76,918 |
| 2025 | 870 | 7,556 | 53,224 | 4,297 | 32,687 | 11,853 | 85,911 |
| 2026. 2월 말 | 208 | 1,601 | 12,360 | 5,965 | 27,909 | 7,566 | 40,269 |

자료: 고용노동부

이렇듯 이 사업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융자제도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예산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18년부터 2026년 2월 말까지의 체불청산지원 융자사업에 따른 융자금 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미상환금액이 2018년 65억 5,200만원에서 2025년 735억 2,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융자 집행액이 증가하면서 상환되지 못한 융자금이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체불청산지원 융자금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상환대상금액 (a) | 상환금액 (b) | 미상환금액 (a-b) | 누적상환금액 | 누적 미상환금액 |
|---|---|---|---|---|---|
| 2018 | 7,020 | 3,737 | 3,283 | 8,932 | 6,552 |
| 2019 | 9,647 | 5,333 | 4,314 | 14,265 | 10,866 |
| 2020 | 14,001 | 6,285 | 7,716 | 20,550 | 18,582 |
| 2021 | 17,058 | 9,387 | 7,671 | 29,937 | 26,253 |
| 2022 | 20,631 | 16,111 | 4,520 | 46,048 | 30,773 |
| 2023 | 24,674 | 20,797 | 3,877 | 66,845 | 43,080 |
| 2024 | 27,741 | 27,188 | 553 | 94,033 | 56,301 |
| 2025 | 33,967 | 34,660 | △693 | 128,693 | 73,526 |
| 2026. 2월 말 | 6,615 | 5,540 | 1,075 | 134,233 | 77,1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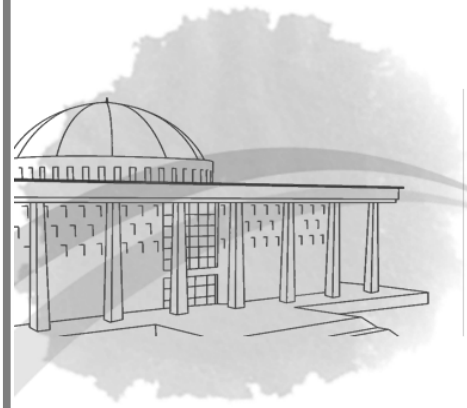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누적 미상환금액의 증가는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체된 채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융자 집행액이 증가 추세에 있고, 융자 요건의 완화 및 제도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융자금 누적 미상환 금액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상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채권 분석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회수를 추진하는 등 미상환 융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Ⅰ. 개 관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27조 8,851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16,921 | 16,921 | 29,746 | 29,746 | - | - |
| 기 금 | 259,488 | 259,488 | 249,105 | 249,105 | - | - |
| 합 계 | 276,409 | 276,409 | 278,851 | 278,851 | - | -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62조 8,99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1억원(0.2%) 증가함.

예산은 24조 6,93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2억원(0.5%) 증가하고, 기금은 38조 2,06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감 (B-A) | (B-A)/A |
| 예 산 | 227,248 | 232,896 | 245,761 | 246,932 | 1,172 | 0.5 |
| 기 금 | 354,512 | 366,705 | 382,060 | 382,060 | - | - |
| 합 계 | 581,760 | 599,601 | 627,821 | 628,992 | 1,172 | 0.2 |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3)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877억원(0.6%) 증가함.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010 | 2,010 | 2,440 | 2,440 | -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37,856 | 138,156 | 148,578 | 149,455 | 877 | 0.6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8 | 8 | 8 | 8 | -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2,049 | 2,049 | 1,624 | 1,624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837 | 5,837 | 6,176 | 6,176 | - | - |
| 합 계 | 147,760 | 148,059 | 158,826 | 159,703 | 877 | 0.6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조 2,23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49억원(0.5%) 증가함.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 (B-A) | (B-A)/A |
| 일반회계 | 234,213 | 242,222 | 278,464 | 279,636 | 1,172 | 0.4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37,856 | 138,156 | 148,578 | 149,455 | 877 | 0.6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137 | 137 | 198 | 198 | -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2,036 | 2,036 | 1,611 | 1,611 |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380 | 20,610 | 21,334 | 21,334 | - | - |
| 합 계 | 394,621 | 403,160 | 450,185 | 452,234 | 2,049 | 0.5 |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조정규모(총계 기준)는 2,048억 9,000만원임.[2)]

신규사업은 1건으로,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 피해회복금(경매차익, 임대인 변제 등)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달 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사업에 27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추경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 27,941 |

증액이 포함된 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조 5,533억 9,600만원임. 그 중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은 4개이고, 제외되는 사업은 2개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교통비 부담 경감 혜택 확대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87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공사 지연 우려 등에 따라 발주처-시공사 간 분쟁 발생 예상으로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 법률 지원 등 확대를 위해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음.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 증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8,085,601 | 8,263,673 | 3,898,232 | 6,363,920 | 2,465,688 | 63.3 |
| 1 | 정책연구개발사업 | 4,015 | 4,015 | 2,878 | 3,878 | 1,000 | 34.7 |
| 2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및운영(정보화) | 3,151 | 3,151 | 4,305 | 4,438 | 133 | 3.1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3*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56,510 | 56,510 | 56,490 | 56,890 | 400 | 0.7 |
| *4* |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전출* | *6,790,354* | *6,710,482* | *2,141,022* | *4,517,469* | *2,376,447 (감액별도)* | *111.0* |
| *5* |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전출 (교통・에너지・환경세분)* | *1,231,571* | *1,489,515* | *1,693,537* | *1,781,245* | *87,708* | *5.2* |
| 교통시설특별회계 | | 237,460 | 237,460 | 557,970 | 645,678 | 87,708 | 15.7 |
| 6 | 대중교통비환급지원 | 237,460 | 237,460 | 557,970 | 645,678 | 87,708 | 15.7 |
| 합계 | | 8,323,061 | 8,501,133 | 4,456,202 | 7,009,598 | 2,553,396 | 57.3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또한 감액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총 감액규모(총계 기준)는 2조 3,764억 4,700만원이며,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주요 감액으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재원 조성을 위한 세부내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분 감액 2조 3,764억 4,700만원임.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 감액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 본예산 (당초) | 추경 (수정) | 본예산 (현계획)(A) | 추경안 (변경안)(B) | 증액분 (B-A) | (B-A)/A |
| 일반회계 | | - | - | *4,276,798* | *1,900,351* | *△2,376,447* | *△55.6* |
| *1* |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전출 (교통・에너지・환경세분)* | - | - | *4,276,798* | *1,900,351* | *△2,376,447* (증액별도) | *△55.6* |
| 합계 | | - | - | *4,276,798* | *1,900,351* | *△2,376,447* | *△55.6* |

주 1) 총계 기준
2) 기울임(이탤릭체) 표시된 사업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임
3)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4) 2025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5) 2026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추경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신규)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 경과에 따른 최소보장비율 등을 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여 적정 지원액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서 국토교통부는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시스템 기반 마련,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여부 확인 등 추경 증액분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출증액>

## 1.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신규): 관련 법률 개정 경과를 반영한 사전준비 필요 등

### 가. 개 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등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279억 4,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 - | - | - | 27,941 | 27,941 | 순증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3) 일반회계-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1034-325)(전세사기피해자지원단)

구체적으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4]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경·공매 후의 피해자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보전하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 개요]

○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현금 지원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다목)**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를 회복한 자
  * 이미 경·공매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
  * 고액피해자(5억원 초과), 스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 등 제외
- (피해회복금) 배당,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의 총합
- (최소보장비율)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로서, 추경안에서는 **1/3 (33.3%)**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추경안에서는 3.6만명의 전세사기피해자에서 연내 경·공매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4만명 중 최소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정되는 2,097건에 대하여 신청비율 40%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건수 839건을 산정함. 여기에 최소보장비율 33.3%(1/3) 수준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평균 3,310만원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최소지원금 예산 27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탁관리비 1억 7,700만원도 편성함.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추경안: 279억 4,100만원(최소지원금 277억 6,400만원, 위탁관리비 1억 7,700만원)**

□ **최소지원금: 277억 6,400만원(839건 × 3,310만원)**

ㅇ (2026년 지원대상 수) 4,800건 × 43.7% × 40% ≒ 839건

- 전체 지원 건수: 4,800건
  * 3.6만명(셀프낙찰자 0.4만명 제외) 중 최소보장비율 1/3 미달되는 피해자는 약 4,800명 추정
- 전체 지원 건수 중 2026년말까지 경·공매가 종료되는 비율: 43.7%
  * LH, 법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경공매 종료 피해자 1.4만명 가정
  * 43.7% = 1.4만명 / 3.2만명 × 100
- 지급률: 40%
  * 유사사례 신청률 및 연차별 신청·지급 분산 등 고려

ㅇ (지원단가) 3,310만원

- LH 매입 여부 및 피해자 유형(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등)별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위한 최소 지원금 총액(약 1,587억원)에 대한 1인당 평균 지원액
  * 1,587억원(최소지원금 총액) ÷ 4,800건(최소보장 1/3 미달 피해자) ≒ 3,310만원

□ **위탁관리비: 1억 7,700만원(5억 3,100만원 × 4/12개월)**

자료: 국토교통부

추경안에서 최소보장비율을 33%(1/3)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범위과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고려하였다는 의견임.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주택임대차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구분 | 지역 | 소액 임차인 범위 (A) | 최우선변제금 (B) | (B/A) |
|---|---|---|---|---|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3 (0.33) |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
| 4호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첫째,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 경과에 따른 최소보장비율 등을 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여 적정 지원액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피해회복금 범위, 최소보장비율 등은 사업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임.

또한, 해당 사항들은 피해자의 자력구제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필요최소 수준, 전세사기피해자의 현 위기상황 정도, 동종 및 유사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임.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률 개정 여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 지원액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제도 관련 추경안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 대표발의 (제안일) | 지원대상 | 피해회복금 산정 | 최소보장 비율 | 처리현황 |
|---|---|---|---|---|---|
| 2213499 | 한창민 ('25.10.10) | 전세사기피해자<br>+임차보증금 요건비미 임차인<br>+채무불이행의도 요건 미비 임차인 | · 임대료 재정지원,<br>· 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br>· 임차보증금반환채권상 변제금<br>· 긴급복지 지원액 | 1/2 (50%) | 소관위 심사 |
| 2214122 | 윤종오 ('25.11.11) | 전세사기피해자 | · 경매차액,<br>· 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 | 1/2 (50%) | 소관위 심사 |

| 의안번호 | 대표발의<br>(제안일) | 지원대상 | 피해회복금 산정 | 최소보장<br>비율 | 처리현황 |
|---|---|---|---|---|---|
| 2214484 | 염태영<br>('25.11.21) | 전세사기피해자<br>+전입신고 요건미비<br>임차인 | · 임대료 재정지원,<br>· 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br>· 임차보증금반환채권상 변제금 | 1/3<br>(33.3%) | 소관위<br>심사 |
| 2217510 | 복기왕·엄태영<br>('26.3.16) | 전세사기피해자<br>+피해예상 임차인<br>(외국인 제외) | · 임대료 재정지원,<br>· 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br>· 임차보증금반환채권상 변제금 | 1/2<br>(50%) | 소관위<br>접수 |
| '26년 추경안 | | 전세사기피해자<br>+피해예상 임차인<br>+경·공매종료 피해자<br>(고액전세, 피해주택<br>직접매수자 제외) | · 임대료 재정지원,<br>· 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br>· 임차보증금반환채권상 변제금<br>· 배당·경매차액 | 1/3<br>(33.3%) | -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및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세부지원기준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조속히 완료하여 추경안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 일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신규 추경안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건비, 직접경비 등 연간 소요비용 5억 3,100만원 중 4개월치인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 추경안 위탁관리비 내역]

□ **위탁관리비: 1억 7,700만원(5억 3,100만원 × 4/12개월)**
- 연간 위탁관리비 5억 3,100만원의 4개월치 예산
  * 5억 3,100만원 = ① 4억 6,500만원(인건비) + ② 1,800만원(경비・일반관리비)
  + ③ 4,800만원(부가세)

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사업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 수행 인력의 충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매뉴얼 작성에 따른 소요 기간도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임. 최소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자력구제 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기준과 액수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임.

특히 인력·시스템 및 제도 설계가 마련되었어도 개별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보장금 산정을 위한 피해회복금 조사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 피해구제와 추경안 사업의 조기집행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사업 준비를 조속히 완료하는 등 추경안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 일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추경안에 따른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지원금 사후정산 등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전세보증보험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임.

예를 들면, 최소지원금 지원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회복금이 확인된 경우 사후 정산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수반되어져야 할 것임.[5)]

동시에 가해자의 전세사기 의도를 무력화하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음.

특히, 추경안 사업은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구제책인데, 사전예방책으로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6)]의 실집행률이 '25년 결산 기준 46.2% 수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A)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실집행액 (C) | 집행률 (B/A) | 실집행률 (C/A)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2023 | 6,100 | - | 6,100 | 5,630 | 1,446 | 92.3 | 23.7 | - | 470 |
| 2024 | 11,780 | △512 | 11,268 | 6,616 | 3,181 | 56.2 | 27.0 | - | 4,652 |
| 2025 | 11,780 | △4,680 | 7,100 | 6,630 | 5,439 | 56.3 | 46.2 | - | 470 |
| 2026 | 7,980 | - | - | - | | - | - | - | - |

주) 2023년 7월부터 제도 실시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5) 이와 관련하여 추가 피해회복금이 확인된 경우에 대한 사후정산 방안 및 미반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엄태영)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임.

6) 일반회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1034-322)(주택토지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 개시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책 홍보 문자 발송,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실집행률을 추가로 끌어올리기 위해 '25년 11월에 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증 가입 서식을 개정하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노력하는 중이라는 의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 절차 간소화와 홍보 강화 이상의 집행실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지원금 제도보다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신속한 피해구제와 보장률 등에서 유리할 수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청년층의 전세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거절 사유를 분석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2.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 분쟁의 선제적 대처를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4억원(6.8%) 증액된 6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56,510 | 56,510 | 56,490 | 56,890 | 400 | 0.7 |
|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 5,887 | 5,887 | 5,887 | 6,287 | 400 | 6.8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추경안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발주처-시공사 간 분쟁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법무·세무회계·해외건설분야에서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건수와 단가를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2026년도 본예산 | 추경안 |
|---|---|
| i)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 25억원<br>- 타당성조사 22건×1억원, 수주활동 20건×1,500만원<br>ii)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 28억 8,600만원<br>- 시장조사단파견 10건×2,000만원, 발주처 초청연수 9억원, GICC 등 다자협력 9억원, 해외진출 공동거점 지원 2건×2억 3,750만원<br>- 해외건설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4억 1,100만원(법률 550만원×36개, 세무 550만원×36개, 전문가 자문 50만원× 30회)<br>iii) 위탁관리비 : 501백만원 | ii)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 **32억 8,600만원**<br>- 해외건설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8억 1,100만원**<br>**(기존)** 4억 1,100만원(법률 550만원×36개, 세무 550만원×36개, 전문가 자문 50만원× 30회)<br>**(추가) 4억원(법률 1,100만원×18개, 세무 1,100만원×18개, 전문가 자문 100만원× 4회)**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7) 일반회계-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건설정책국)

## 나. 검토의견

**해외건설기업이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기준 중동지역 9개국[8]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경제활동 실적을 요약하면, 총 275개 사업, 1,409억 달러 규모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68개 기업이 진출 중이며, 그 중 39개가 중소·중견 기업임.

2024년과 2025년의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전체 101건에 3억 7,108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중동지역에서는 18건(전체의 17.8%)에 8,774만원(전체의 23.6%)이 지원되었음.

[2024, 2025년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 실적]

(단위: 건, 천원)

| 연도 | 구분 | 내용 | 지원건수 | | 지원금액 | |
|---|---|---|---|---|---|---|
| | | | 전체 | 중동 | 전체 | 중동 |
| 2024 | 법률 | 계약서 서류 검토, 인허가 사항 등 | 20 | 6 | 109,890 | 33,440 |
| | 세무 | 현지 세무, 회계처리 | 19 | 3 | 100,650 | 17,050 |
| | 전문가 자문 | 계약, 법률 등 사업 애로사항 | 24 | 1 | 11,432 | 500 |
| 2025 | 법률 | 법인설립, 계약서, 투자규정 등 | 23 | 5 | 123,310 | 22,550 |
| | 세무 | 회계감사, 세무신고, 재무제표 | 2 | 1 | 19,800 | 13,200 |
| | 전문가 자문 | 계약, 법률 등 사업 애로사항 | 13 | 2 | 6,000 | 1,000 |
| 합계 (비중) | | | 101 | 18 (17.8%) | 371,082 | 87,740 (23.6%) |

주) 지원금 지원 시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또한, 컨설팅 내용을 보면, 계약, 인허가 요건, 현지 세무,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서류 검토와 법률 자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8) 이란·이스라엘·쿠웨이트·UAE·카타르·바레인·사우디·이라크·요르단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에 따른 컨설팅 내용]

☐ **지원대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 **자문법인/자문 전문가**
○ 자문법인 : 법률법인, 노무법인, 세무법인
○ 전문가 : 해외건설 주요 부문(계약/클레임, 금융/재무, 공종, 물류/조달, 영문문서 검토, 리스크 관리)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 **지원내용**
가. 법률: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독소조항 검토(계약체결 준비단계 포함),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등 주요 법률적 쟁점 자문 제공
나. 노무: 노동관계(고용・근로조건 포함)및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
다. 세무: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부 이슈에 대한 자문
라. 전문가: 견적, 입찰 및 계약 준비, 리스크 분석, 보증서 발급, 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전반에서의 실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향후 전쟁에 따른 공기 연장, 현지 업체 및 근로자와의 분쟁, 유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에 관한 분쟁이 예상되므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건설기업들의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피해 발생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분쟁 상황에 따른 중소·중견 해외건설기업의 컨설팅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향후 전쟁 피해규모와 분쟁 여부에 대한 예측과 전쟁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세무 자문 콘텐츠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면, 중동 법령·세무에 대한 분쟁 사례 등을 정리하고 관련 전문가 풀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임.

향후 증액된 예산을 통해 공사 지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외 발주사 또는 관련 업체와의 분쟁을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추경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3. 정책연구개발사업: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실적을 충실히 반영한 연구용역 관리 필요

## 가. 개 요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교통·건설·주택·지역·도시·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전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 긴급 정책현안과 수시 과제에 대해 단기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억원(34.7%) 증액된 38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정책연구개발사업 | 4,015 | 4,015 | 2,878 | 3,878 | 1,000 | 34.7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구체적으로 추경안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방안”)에 따른 “수도권 내 6만호 주택 공급”에 대한 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이 편성되었음.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지역주민들의 교통난 우려 해소를 위해 교통체계 선제적 검토, 해소방안 마련 등 정책의 이행담보력을 확보하고자 함.

[정책연구개발사업 추경안에 따른 연구용역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개요
- ㅇ (과업명) 수도권 남부권 · 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
- ㅇ (과업기간) ’26.5월 ~ ’26.12월(8개월)
- ㅇ (과업예산) 10억원
-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ㅇ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현황를 파악
- ㅇ 택지개발 등 인구변화를 반영한 수도권 동남권 장래교통 수요 예측
- ㅇ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교통체계 연계방안과 지역간·지역내 교통혼잡 완화 방안 검토

자료: 국토교통부

9) 일반회계-정책연구개발사업(4148-301)(기획조정실)

##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내 실제 주택공급 계획·실적을 교통개선 대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교통체증이 만연하므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과 병행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바, 연구용역을 통해 1.29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의 적시성과 국민 신뢰성 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연구용역에 따른 교통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실태와 향후 교통환경 변화 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1.29방안이 주택공급 계획 단계에 있으므로, 계획에 따른 실제 착공 상황과 그 외 공공·민간 주택공급 실적 등이 빠짐 없이 적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도시철도·광역철도 등 교통수단 및 노선 계획, 최적의 도로·철도공사 일정 관리가 도출된다면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1.29방안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위치, 계획 물량과 착공시기 등 추진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10)]

[1.29방안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단위: 천호)

| 주요입지 | 공급물량 | 추진일정 (예상 착공시기) |
|---|---|---|
| **◇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 **43.5*<br>(36.1)** | |
| ① (서울) 용산구 일원<br>(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 | 12.6*<br>(5.2) |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완료, 사업계획 수립·변경 후 착공('28년~'29년) |
| ② (경기) 과천시 일원(과천경마장, 방첩사) | 9.8 |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국방부·농식품부, '26.上), 지구 지정 후 착공('30년) |
| ③ (서울) 노원구 태릉 CC | 6.8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 계획 수립 후 착공('30년) |
| ④ (서울) 동대문구 일원<br>(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 1.5 | '28.上까지 이전을 완료(국방부·재경부)하여 착공('29년) |
| ⑤ (서울) 불광동 연구원<br>(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 1.3 | 기관 이전을 '27.上까지 완료(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하고, 사업 승인·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여 착공('29년) |

10) 착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현 시점에서 조기착공, 사업 일정 조정 또는 물량 증감의 여지는 있다고 보임.

(단위: 천호)

| 주요입지 | 공급물량 | 추진일정 (예상 착공시기) |
|---|---|---|
| ⑥ (경기) 광명 경찰서 | 0.6 | '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행안부)하고 착공('29년) |
| ⑦ (경기) 하남 신장 테니스장 | 0.3 | 사업 승인('27), 철거('29) 후 착공('29년) |
| ⑧ (서울) 강서 군부지 | 0.9 | 위탁개발사업 승인('26.12)을 통해 착공('27년) |
| ⑨ (서울) 독산 공군부대 | 2.9 | 오염토 정화('27~'30) 등 거쳐 착공('30년) |
| ⑩ (경기) 남양주 군부대 | 4.2 |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착공('29년) |
| ⑪ (경기) (구)국방대학교 | 2.6 | 실시계획 인가('27), 부지 조성('28) 후 착공 ('29년) |
| **◇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 **6.3** | |
| **◇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 | **9.9** | |
| ① 서울의료원 남측부지(0.5)<br>②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2)<br>③ 성수동 舊 기마대 부지(0.3)<br>④ 용산 유수지(0.5)<br>⑤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0.3)<br>⑥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0.4)<br>⑦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0.3) | ⑧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0.7)<br>⑨ 방이동 복합청사(0.2)<br>⑩ 수원우편집중국(0.9)<br>⑪ 광명세무서(0.2)<br>⑫ 성남세관(0.1)<br>⑬ 국토지리정보원(0.2)<br>⑭ 기타(4.0) | |
| **합 계** | **59.7*<br>(52.3)** | |

자료: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16.1.29.) 자료를 재작성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내 실제 주택공급 계획·실적을 교통개선 대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4.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속한 ISP 추진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은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여 불법·불공정 행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억 3,300만원(3.2%) 증액된 4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3,151 | 3,151 | 4,305 | 4,438 | 133 | 3.1 |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2,914 | 2,914 | 4,132 | 4,265 | 133 | 3.2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는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8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성]

| 시스템명 (운영시점) | 업무 내용 | 사용자 |
|---|---|---|
| ①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02) | 지자체의 건설업 등록·처분 | 지자체 |
| ②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03)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건설사업자,발주자 |
| ③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08)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건설사업자,발주자 |
| ④ 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07) | 벌점 부과현황 통합 관리 | 발주자 |
| ⑤ 건설사업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03) | CM능력 평가·공시 | 한국CM협회 |
| ⑥ 타워크레인이력관리시스템(Tower, ’18) | 타워크레인 설치·점검정보 등 관리 | 검사기관 |
| ⑦ 정부인트라넷(GOV, ’01) | 정부의 정책 정보 조회 | 국토부 |
| ⑧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01) | 대국민 건설산업 정보 제공 | 일반 국민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11) 일반회계-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4246-518)(건설정책국)

추경안에서는 발주자・원하도급사 등의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수립비용을 편성하고 있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
|---|
|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기반 대금직불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1억 3,300만원<br>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업무 활동비 (1억 3,190만원)<br>· 3.7MM (0.74명 × 5개월) × 3,570만원 = 1억 3,190만원<br>나 보고서 인쇄 등 직접경비 (110만원)<br>· 62.2원 × 1,000매 × 4부 × 4종 = 110만원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유사 대금지급시스템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구축 예산이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ISP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추경안을 통해 구축하려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원하도급자 간 자금흐름 시 특수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자별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금체불 방지시스템”임.[12)]

이를 통해 건설공사 대금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하도급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하며, 임금의 지연지급 또는 체불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생계형 건설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공부문에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기부),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이 있으며, 민간부문에는 노무비닷컴, 클린페이 등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ISP 설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특수 가상계좌는 발주자의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해도 제3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함.

[공공·민간부문 대금지급 시스템 현황]

| 부문 | 시스템명 | 주요내용 | 대금지급 절차 | 추경안 사업과의 차이점 |
|---|---|---|---|---|
| 공공 | 하도급지킴이 | 인출제한 기능이 있는 실물계좌 사용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자재・장비/근로자 | 실물계좌 사용 |
| 공공 | 체불e제로 | 수급인 e계좌를 거쳐 수령대상자별 e계정에 입금 | 발주자→수급인e계좌→각 수령계좌 | 수급인 e계좌를 거쳐 지급 |
| 공공 | 상생결재시스템 | 협력재단 명의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 자재・장비, 근로자에게 지급 | 발주자→예치계좌→하수급인, 자재・장비/근로자 |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대금 결제 |
| 민간 | 노무비닷컴 | 인출제한 기능이 있는 실물계좌 사용 | 수급인→하수급인→자재・장비/근로자 | 실물계좌 사용 |
| 민간 | 클린페이 | 인출제한 기능이 있는 실물계좌 사용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자재・장비/근로자 | 실물계좌 사용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예산사업의 조기집행과 사업효과의 조속한 달성이라는 추경안 편성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 구축비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ISP 수립에 필요한 용역기간(약 6개월 예정)과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9월)를 고려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 과제공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정보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 일정 | 추진내용 |
|---|---|
| '26.3 ~ '26.4 | 과업심의 및 사전협의(행안부) |
| '26.4 | 건설산업정보망에 대한 위탁변경계약 및 ISP용역 하도급 승인 |
| '26.5 | ISP 사업계획서 수립 등 발주 준비, 입찰공고, 계약 체결 |
| '26.6 ~ '26.11 | ISP 실시 (6개월) |
| (~'26.5.31) | 기획예산처 '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 |
| (~'26.9.3) | 국회 '27년 예산안 제출일 |

주) 국토교통부는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ISP 종료 이전 중간산출물을 통해 예산안 반영을 검토한다는 의견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이외에도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 사업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해당 개정 사항도 ISP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공사대금 직접지급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 의안번호 | 의안명<br>(제안자, 제안일) | 주요내용 |
|---|---|---|
| 02738 | 건설산업기본법<br>(엄태영, '24.8.12) | ㅇ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현장 사용 의무화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의무화 |
| 04202 | 건설산업기본법<br>(윤종오, '24.9.23) | ㅇ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현장 사용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의무화<br>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을 면제 사유로 추가 |
| 08184 | 건설산업기본법<br>(윤종오, '25.2.14.) | ㅇ 공공이 출자한 법인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발주자 직접 지급, 기계장비대여 지급보증 확인 등 의무) 확대 적용 |
| 10127 | 건설산업기본법<br>(문진석, '25.4.25.) |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활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br>- 민간 발주공사에서 시스템 활용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 비용의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 10861 | 건설산업기본법<br>(송기헌, '25.6.16.) | ㅇ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도록 의무화 |
| 11613 | 건설산업기본법<br>(김주영, '25.7.22.) | ㅇ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현장 사용 의무화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의무화 |
| 14564 | 건설산업기본법<br>(이용우, '25.11.26) | ㅇ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현장 사용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의무화<br>ㅇ 공공발주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민간발주 공사에까지 확대 |
| 14910 | 건설산업기본법<br>(염태영, '25.12.4) | ㅇ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현장 사용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의무화<br>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을 면제 사유로 추가<br>ㅇ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 지급 의무화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세출증액>

## 5.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매칭 지방비 확보 등 사전확인 필요

### 가. 개 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에게 정률 또는 정액의 환급금을 지원하는 “모두의카드”(종전 “K-패스” 사업에서 2026년 사업명칭 변경) 사업으로, 202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77억 800만원(15.7%) 증액된 6,456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도 | | 2026년도 |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B-A)/A |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237,460 | 237,460 | 557,970 | 645,678 | 87,708 | 15.7 |

주)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기준

모두의카드 사업은 ①정률할인 방식의 「기본형」과 ②정액할인 방식의 「일반형·플러스형」으로 구분되며, 세부 환급률 또는 정액금은 다음 표와 같음.

[2026년 모두의카드 사업 개요]

1 기본형(정률형)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자에게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3%) 환급('24.5~)

: 2026년 신설

| 구분 | 일반 | 청년 | 2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 3자녀 | 저소득 |
|---|---|---|---|---|---|---|
| 환급률 | 20% | 30% | 30% | 30% | 50% | 53.3% |

13) 교통시설특별회계-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 일반형·플러스형(정액형)**

ㅇ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차액)을 전액 환급

- ①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일반형과 ②광역버스·GTX 등 광역 이동 수단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형으로 구분
  * 일반형 :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
  * 플러스형 :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수단까지 포함
- 지방 혜택 확대를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우대
  *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4개(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

| 구 분 | 일반 국민 | | 청년·2자녀·어르신 | | 3자녀 이상·저소득 | |
|---|---|---|---|---|---|---|
| | 일반 | 플러스 | 일반 | 플러스 | 일반 | 플러스 |
| 수도권 | 6.2 만원 | 10 만원 | 5.5 만원 | 9만원 | 4.5 만원 | 8 만원 |
| 일반 지방권 | 5.5 만원 | 9.5 만원 | 5 만원 | 8.5만원 | 4 만원 | 7.5 만원 |
| 우대지원지역 | 5 만원 | 9 만원 | 4.5 만원 | 8만원 | 3.5 만원 | 7 만원 |
| 특별지원지역 | 4.5 만원 | 8.5 만원 | 4 만원 | 7.5만원 | 3 만원 | 6.5 만원 |

자료: 국토교통부

추경안은 기본형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을 6개월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각각 50%씩 인상하려는 것임.

[2026년 추경안에 따른 모두의카드(기본형) 사업 제도변경 내용]

| 환급률 | 일반 | 청년 | 2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 3자녀 | 저소득 |
|---|---|---|---|---|---|---|
| 기존 | 20% | 30% | 30% | 30% | 50% | 53.3% |
| 추경안 | 30% | 45% | 45% | 45% | 75% | 83.3% |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작성

이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은 ①기본형 이용자 대상 추가할인 환급액, ②일반형·플러스형으로부터 기본형으로 넘어오는 이용자로 인한 증액(기본형 이용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에서 일반형·플러스형 이용자 감소에 따른 감소분 차이), ③추경 효과에 따라 신규 진입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그 밖에 기후동행카드 등 유사 대중교통 환급제도로부터 넘어오는 이용자로 인한 증액(순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14]

14)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또는 기후동행카드)으로부터 기본형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정액형이 유리해지는 월 이용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임. 일반인의 경우 종전에는 49회 이상을 이용해야 정액형(모두의카드 일반형의 경우 62,000원)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였는데, 추경안에 따라 기본형의 환급률이 상승(20%→30%)한 이후에는 56회 이상을 이용할 수 있어야 정액형 이용이 유리해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한시적 기본형 환급률 인상(6개월) : 877억 800만원
- (기본형 이용자 대상 추가할인) 211만명 × 7,580원 × 47.51% × 6개월 = 455억 8,200만원
- (추경 효과 등으로 증가되는 신규 대상자) 65만명 × 22,740원 × 47.51% × 6개월 = 421억 2,600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시스템 기반 마련,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여부 확인 등 추경 증액분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추경안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비를 절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과 유류사용량 절감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추경안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경안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기반 마련과 변경된 할인제도 안내 등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추경안 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서울 40%, 그 외 50%)으로서, 추경안에 따라 증가하는 정부 분담액 877억 800만원(전체 사업비의 47.51%)에 매칭되는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추경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 마련되어야 하는 비용은 969억 200만원

---

〈이용횟수에 따른 할인금 액수 비교(일반인 이용자 대상)〉

(단위: 원)

| 이용횟수(횟수)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
| 기존 (20% 할인) | 14,955 | 15,274 | 15,592 | 15,910 | 16,228 | 16,546 | 16,865 | 17,183 | 17,501 | 17,819 | 18,137 |
| 추경안 (30% 할인) | 22,433 | 22,910 | 23,388 | 23,865 | 24,342 | 24,820 | 25,297 | 25,774 | 26,252 | 26,729 | 27,206 |
| 모두의카드 (일반형)(62,000원) | 12,777 | 14,368 | 15,959 | 17,550 | 19,141 | 20,732 | 22,323 | 23,914 | 25,505 | 27,096 | 28,687 |

주) 회당 요금은 1,591원/회 (2026년 예산 기준)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2.49%, 당초 6,138억 9,000만원에서 변경된 7,107억 9,100만원의 차이)임. 이는 2025년에 지자체에서 부담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액 2,573억 7,200만원의 38%이고, 추경안에 따라 2026년에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2025년 대비 4,534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율도 176.2%에 달함.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2024년 1,281억원에서 2025년 2,574억, 2026년(추경안) 7,108억원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일부 지자체에서 매칭 지방비 확보에 미흡할 경우, 연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환급액이 감액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국고/지방비 분담 상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국비 | | | 지방비(추정치) | | | 합계 금액 |
|---|---|---|---|---|---|---|---|
| | 금액 | 전년 대비 증가 | | 금액 | 전년 대비 증가 | | |
| | | 증가액 | 증가율 | | 증가액 | 증가율 | |
| 2024년 | 112,349 (46.73%) | - | - | 128,073 (53.27%) | - | - | 240,422 |
| 2025년 | 224,147 (46.55%) | 111,798 | (99.5) | 257,372 (53.45%) | 129,299 | (101.0) | 481,519 |
| 2026년 본예산(A) | 555,647 (47.51%) | 331,500 | (147.9) | 613,890 (52.49%) | 356,518 | (138.5) | 1,169,537 |
| 2026 추경안(B) | 643,355 (47.51%) | 419,208 | (187.0) | 710,791 (52.49%) | 453,420 | (176.2) | 1,354,146 |
| 2026 본예산 대비 추경안 (B-A) | **87,708** | - | - | **96,902** | - | - | **184,610** |

주 1) 금액 밑 괄호는 합계 금액 중 국비/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른 매칭비율을 의미함
2) 국비는 2024년과 2025년은 결산 기준이고, 2026년은 예산 기준
3) 지방비는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른 추정치로서 실제 집행금액과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작성

실제 2024년 결산 당시 예산 과소 추계로 사업비 추가 소요가 발생되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전용(126억 4,300만원)과 예비비(276억원)를 동원하여 국비 분담액을 확보한 반면,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25개 일부 지자체들은 12월에 대중교통비 환급액 총 4,000만원을 감액 지급한 바 있음.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실집행액]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 2024 | 73,469 | 73,469 | - | 12,643 | 27,600 | 113,712 | 113,268 [113,214] | 154.2 | 99.6 | - | 444 |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추경안에 따른 국비 분담액 877억 800만원에 대응하여 지방비도 같이 확보됨으로써 모두의카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 등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